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001-10

2019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목차

제1편 2019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 | |
|----------------------------|----|
| 제1장 농업·농촌 경제동향 | 3 |
| 제1절 농업구조 | 3 |
| 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 3 |
| 2. 농경지 | 4 |
| 제2절 농가경제 | 7 |
| 1. 소득 동향 | 7 |
| 2. 가계지출 동향 | 11 |
| 3.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 12 |
| 4. 농가자산 동향 | 12 |
| 5. 농가부채 동향 | 13 |
| 6.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 지표 | 13 |
| 7. 주·부업별 지표 | 14 |
| 8. 영농형태별 주요 지표 | 15 |
| 9. 경지규모별 주요 지표 | 15 |
| 10. 경영주 연령별 주요 지표 | 16 |
| 11. 지역별 주요 지표 | 16 |
| 제3절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지수 | 17 |
| 1. 개황 | 17 |
| 2.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 18 |
| 3.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 19 |
| 제4절 농업생산성 및 농림업 부가가치 | 21 |
| 1. 개황 | 21 |
| 2.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 22 |
| 3. 농림업 부가가치 | 23 |

목차

| | |
|--------------------------------------|----|
|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 동향 | 24 |
| 제1절 국내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 | 24 |
| 1. 식량 수급 동향 | 24 |
| 2. 원예·특용작물 | 26 |
| 3. 축산물과 사료작물 | 31 |
| 제2절 식품 수급동향 | 36 |
|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 36 |
| 2. 식품 수요현황 | 40 |
| 3. 식품산업 동향 | 45 |
| 제3절 농식품 교역동향 | 50 |
| 1. 농식품 수출입동향 | 50 |
| 2.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 52 |
| 제3장 국제 곡물수급 및 농식품 산업 동향 | 53 |
| 제1절 국제곡물 수급과 가격동향 | 53 |
| 1. 국제곡물 수급동향 | 53 |
| 2. 국제곡물 가격동향 | 56 |
| 제2절 주요 국가 농업·농촌 동향 및 양자간 통상 협력 | 59 |
| 1. 주요 국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 59 |
| 2. 주요 국가 통상 협력 | 69 |

목차

제2편

2019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 | |
|---|-----|
| I. 총론 | 81 |
| II.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확충 | 84 |
| 제1장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 안정 | 84 |
| 제1절 농식품산업의 지원 기반 강화 | 84 |
| 1. 경영체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 | 84 |
| 2.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 86 |
| 제2절 농가 소득 안정 | 89 |
| 1. 쌀소득보전직불제 운영 | 89 |
| 2.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운영 | 93 |
| 3. 발농업직접직불제 운영 | 95 |
| 4.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 96 |
| 5. FTA 피해보전직불제 운영 | 98 |
| 6.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 101 |
| 7. 직불제 통합·개편 추진 | 103 |
| 제3절 농가 경영 안정 | 105 |
| 1. 농지은행 활성화 | 105 |
| 2. 재해농가 지원 확충 | 109 |
| 3.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 110 |
| 4. 가축재해보험 운영 내실화 | 112 |
| 5. 농업부문 세제 지원 | 113 |
| 6. 농가 부채 경감 대책 추진 | 117 |
| 7.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운영 | 118 |
| 8. 농기계 임대 활성화 | 120 |
| 9. FTA 폐업 지원 | 122 |

목차

| | |
|---|------------|
| 제2장 농식품 유통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 | 124 |
| 제1절 농산물 유통 효율화 | 124 |
| 1. 산지유통 주체의 역량강화 | 124 |
| 2. 생산자, 소비자의 자율적 농산물 수급관리체계 구축 | 127 |
| 3. 소비자와 산지 간 직접 거래 활성화 | 129 |
| 4.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 131 |
| 5.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134 |
| 6. 농업관측정보 활용 강화 | 137 |
| 제2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 141 |
| 1. 공공비축 제도 운영 | 141 |
| 2. 쌀 적정생산 | 144 |
| 3. 발식량작물 안정생산 | 146 |
| 4. 산지생태축산의 활성화 | 148 |
| 5. 도시농업 활성화 | 150 |
| | |
| Ⅲ.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 153 |
| | |
| 제3장 핵심 인력 양성 및 전문경영체 육성 | 153 |
|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153 |
| 2. 농업법인 활성화 | 156 |
| 3. 농업 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 159 |
| 4. 농업경영체 컨설팅 활성화 | 161 |
| 5. 귀농·귀촌 활성화 | 163 |
| | |
| 제4장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 | 166 |
| 제1절 농식품 혁신성장 역량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 166 |
| 1. ICT 융복합 촉진 및 확산 | 166 |

목차

| | |
|---------------------------------------|------------|
| 2. 농림축산식품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169 |
| 3.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 176 |
| 4. 시설원예 과학화 및 에너지 절감 | 178 |
| 5.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시설 확충 | 181 |
| 6. 종자산업의 육성 | 183 |
| 7. 곤충산업 육성 | 186 |
| 제2절 농업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189 |
| 1. 농협 사업구조 개편 | 189 |
| 2.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내실화 | 194 |
| 3. 농업금융시스템 개편 | 198 |
| 제5장 농식품 안전성·품질관리 강화 | 201 |
| 제1절 농축산물 안전성관리 강화 | 201 |
| 1.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실효성 강화 | 201 |
| 2.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203 |
| 3.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 205 |
| 4.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관리 | 206 |
| 5.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사업 및 소비정보망(웹) 활성화 | 208 |
| 6. 축산물 이력제 추진 | 210 |
| 제2절 가축방역 및 동식물 검역검사 강화 | 212 |
| 1. 가축질병 방역강화 | 212 |
| 2. 동물 및 축산물 검역검사 강화 | 218 |
| 3. 식물검역 강화 | 221 |
| 4. 축산물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 224 |
| 5.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 225 |

목차

| | |
|--|------------|
| 제3절 친환경농업육성 | 228 |
| 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 228 |
| 2. 친환경비료 지원 | 229 |
| 3. 친환경농업 직불제 | 232 |
| 4.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 234 |
| 5.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 236 |
| 제6장 식품산업 선진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 238 |
| 제1절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 238 |
| 1.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 | 238 |
| 2.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 240 |
| 3. 전통 발효식품산업 활성화 | 243 |
| 4. 전통주 등의 체계적 산업 육성 | 246 |
| 5.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249 |
| 6.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추진 | 251 |
| 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소비 활성화 | 254 |
| 제2절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한식 세계화 | 256 |
| 1. 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 256 |
| 2.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 세계화 | 260 |
| IV.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농촌 조성 | 264 |
| 제7장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활력 증진 | 264 |
| 제1절 농어촌 복지여건 개선 | 264 |
| 1.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 264 |
| 2.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 | 269 |
| 3.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 272 |

목차

| | |
|------------------------------------|------------|
| 4.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 275 |
| 5. 여성·취약농가 지원 확대 | 277 |
| 6.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상수준 확대 | 280 |
| 7. 농지연금 활성화 | 282 |
| 제2절 통합형 지역개발 및 농어촌 산업육성 | 283 |
| 1. 농촌 종합개발 | 283 |
| 2. 농촌 주거환경 개선 | 288 |
| 3.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 | 291 |
| 4. 농촌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확대 | 296 |
| 5. 향토자원 산업화 | 299 |
| 6. 농공단지 조성사업 | 302 |
| 7. 사회적 경제 | 304 |
| 제3절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구축 | 305 |
|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305 |
| 2. 밭 기반 정비사업 | 307 |
| 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 308 |
| 4.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 309 |
| 5. 수리시설개보수 | 311 |
| 6. 농촌용수개발사업 | 312 |
| 7. 대단위 농업개발 및 간척사업 | 316 |
| V. 농식품산업 국제협력 | 319 |
| 제8장 체계적인 대외 협상 및 해외 농업 자원 개발 | 319 |
| 제1절 체계적인 대외 협상 | 319 |
| 1. WTO/DDA 협상 대응 | 319 |
| 2. FTA 협상 대응 | 322 |

목차

| | |
|-------------------------------|-----|
| 제2절 국제협력 및 해외농업자원 개발 강화 | 324 |
| 1. 국제농업협력사업 내실화 | 324 |
| 2. 식량원조사업 | 328 |
| 3.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 330 |
| 4. OECD 활동 | 333 |
| 5.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활동 | 337 |

표·그림목차

표목차

| | |
|---|----|
| 〈표 1-1-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 4 |
| 〈표 1-1-2〉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 5 |
| 〈표 1-1-3〉 농경지 이용현황 | 6 |
| 〈표 1-1-4〉 휴경면적 | 6 |
| 〈표 1-1-5〉 농가소득 | 7 |
| 〈표 1-1-6〉 농가소득 구성비 | 8 |
| 〈표 1-1-7〉 농업소득 | 8 |
| 〈표 1-1-8〉 농업총수입 | 9 |
| 〈표 1-1-9〉 농업총수입 구성비 | 9 |
| 〈표 1-1-10〉 농업경영비 | 10 |
| 〈표 1-1-11〉 농업외소득 | 10 |
| 〈표 1-1-12〉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 11 |
| 〈표 1-1-13〉 가계비 지출 | 11 |
| 〈표 1-1-14〉 처분가능소득 / 잉여금 | 12 |
| 〈표 1-1-15〉 농가자산 | 12 |
| 〈표 1-1-16〉 농가부채 | 13 |
| 〈표 1-1-17〉 2019년 전업/겸업 농가 주요 지표 | 14 |
| 〈표 1-1-18〉 2019년 주·부업별 지표 | 14 |
| 〈표 1-1-19〉 2019년 영농형태별 주요 지표 | 15 |
| 〈표 1-1-20〉 2019년 경지구묘별 주요 지표 | 16 |
| 〈표 1-1-21〉 2019년 경영주 연령별 주요 지표 | 16 |
| 〈표 1-1-22〉 2019년 지역별 주요 지표 | 17 |
| 〈표 1-1-23〉 농가교역조건지수 동향 | 17 |
| 〈표 1-1-24〉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 19 |
| 〈표 1-1-25〉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 20 |
| 〈표 1-1-26〉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 21 |
| 〈표 1-1-27〉 농업생산성 지표 | 21 |
| 〈표 1-1-28〉 주요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10a당) | 22 |
| 〈표 1-1-29〉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가율 | 23 |

표·그림목차

| | |
|--|----|
| 〈표 1-2-1〉 연도별 식량 생산량 | 24 |
| 〈표 1-2-2〉 연도별 전체 양곡 수급 상황 | 25 |
| 〈표 1-2-3〉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 26 |
| 〈표 1-2-4〉 채소류 생산 동향 | 27 |
| 〈표 1-2-5〉 주요 품목별 생산 동향 | 27 |
| 〈표 1-2-6〉 과실류 수급 동향 | 28 |
| 〈표 1-2-7〉 화훼산업 현황 | 29 |
| 〈표 1-2-8〉 특용작물 수급 동향 | 30 |
| 〈표 1-2-9〉 버섯류 수급 동향 | 30 |
| 〈표 1-2-10〉 버섯종류별 수출액 | 31 |
| 〈표 1-2-11〉 쇠고기 수급 동향 | 32 |
| 〈표 1-2-12〉 돼지고기 수급 동향 | 32 |
| 〈표 1-2-13〉 닭고기 수급 동향 | 33 |
| 〈표 1-2-14〉 계란 수급 동향 | 33 |
| 〈표 1-2-15〉 우유 수급 동향 | 34 |
| 〈표 1-2-16〉 사료 수급 추이 | 34 |
| 〈표 1-2-17〉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 35 |
| 〈표 1-2-18〉 초지조성 실적 | 35 |
| 〈표 1-2-19〉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 지출액 추이(전국가구 1인 이상) | 36 |
| 〈표 1-2-20〉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2018년도 전국가구 평균) | 37 |
| 〈표 1-2-21〉 1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 38 |
| 〈표 1-2-22〉 영양소별 영양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비율의 변화 추이 | 38 |
| 〈표 1-2-23〉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 41 |
| 〈표 1-2-24〉 연도별 자금률 추이 | 42 |
| 〈표 1-2-25〉 주요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 44 |
| 〈표 1-2-26〉 주요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 45 |
| 〈표 1-2-27〉 식품제조업 연도별 추이 | 45 |
| 〈표 1-2-28〉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2018) | 46 |
| 〈표 1-2-29〉 규모별 추이 | 47 |
| 〈표 1-2-30〉 외식산업 연도별 추이 | 47 |
| 〈표 1-2-31〉 업종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 | 48 |
| 〈표 1-2-32〉 음식점업 시도별 현황(2017) | 49 |

표·그림목차

| | |
|--|-----|
| 〈표 1-2-33〉 사업체수 연도별 추이 | 49 |
| 〈표 1-2-34〉 농식품 수출 실적 | 50 |
| 〈표 1-2-35〉 국가별 농식품 수출 실적 | 51 |
| 〈표 1-2-36〉 농식품 남북교역동향 | 52 |
| 〈표 1-2-37〉 농림수산물 교역 현황 | 52 |
| 〈표 1-3-1〉 국제 주요 곡물 수급동향 | 55 |
| 〈표 1-3-2〉 국제 곡물 가격 동향 | 58 |
| 〈표 1-3-3〉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 60 |
| 〈표 1-3-4〉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상위 5개 국가('18) | 60 |
| 〈표 1-3-5〉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 60 |
| 〈표 1-3-6〉 對 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9) | 61 |
| 〈표 1-3-7〉 2019년 중국의 주요 농업지표 | 63 |
| 〈표 1-3-8〉 일본의 주요 농업지표 | 64 |
| 〈표 1-3-9〉 EU의 주요 농업지표 | 66 |
| 〈표 1-3-10〉 한·미간 농림축산식품 교역 동향 | 70 |
| 〈표 1-3-11〉 주요 수출 품목 | 70 |
| 〈표 1-3-12〉 주요 수입 품목 | 71 |
| 〈표 1-3-1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실적 | 74 |
| 〈표 1-3-14〉 대 캐나다 주요 수출입 농림축산식품('19) | 74 |
| 〈표 2-1-1〉 농업경영체 등록현황 | 85 |
| 〈표 2-1-2〉 연도별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신규 선정·지원 및 예산 현황 | 87 |
| 〈표 2-1-3〉 들녘경영체 직접생산비 절감율 조사결과 | 88 |
| 〈표 2-1-4〉 연도별 직불금 지급현황 | 90 |
| 〈표 2-1-5〉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급실적 | 94 |
| 〈표 2-1-6〉 발농업 직불제 지급실적 | 96 |
| 〈표 2-1-7〉 피해보전직불제의 지급요건 (법 제7조제1항 각 호) | 99 |
| 〈표 2-1-8〉 직불제 개편 전·후 비교 | 104 |
| 〈표 2-1-9〉 前 농지구묘화사업 추진 실적 | 106 |
| 〈표 2-1-10〉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前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실적 | 107 |
| 〈표 2-1-1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실적 | 108 |
| 〈표 2-1-12〉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지임대 추진실적 | 108 |

표·그림목차

| | |
|---|-----|
| 〈표 2-1-13〉 농작물재해보험 성장추이 | 111 |
| 〈표 2-1-14〉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 113 |
| 〈표 2-1-15〉 연도별 조세감면 현황 | 114 |
| 〈표 2-1-16〉 농업용 면세유 현황 | 115 |
| 〈표 2-1-17〉 농업부문 영세율 세부내역 | 115 |
| 〈표 2-1-18〉 농업부문 부가세환급 세부내역 | 116 |
| 〈표 2-1-19〉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 및 감면세액 | 119 |
| 〈표 2-2-1〉 연도별 공영도매시장 거래실적(청과부류) | 131 |
| 〈표 2-2-2〉 2017~2019년 농축산물 신유통경로 거래액 | 135 |
| 〈표 2-2-3〉 2019년 주요 농축산물 부류별 관측정보 발표시기 | 138 |
| 〈표 2-2-4〉 추곡수매와 공공비축 비교 | 141 |
| 〈표 2-2-5〉 양곡연도말 공공비축미곡 재고량 목표 및 매입물량 | 142 |
| 〈표 2-2-6〉 국가별 쌀 약정 현황 | 143 |
| 〈표 2-2-7〉 축산비 중 사료비 비중(2019) | 148 |
| 〈표 2-2-8〉 산지생태축산농장 현황(2019) | 149 |
| 〈표 2-2-9〉 산지생태축산 자문단 구성 현황(2019) | 149 |
| 〈표 2-2-10〉 연도별 도시농업 현황 | 150 |
| 〈표 2-3-1〉 2019년 지역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 154 |
| 〈표 2-3-2〉 2019년 지역별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 155 |
| 〈표 2-3-3〉 농업법인 연차별 운영 추이 | 157 |
| 〈표 2-3-4〉 농업법인당 주요 경영지표 | 158 |
| 〈표 2-3-5〉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 162 |
| 〈표 2-4-1〉 스마트 팜 확산 가속화 대책 | 167 |
| 〈표 2-4-2〉 스마트 팜 확산방안 | 167 |
| 〈표 2-4-3〉 스마트팜 연도별 보급실적 | 168 |
| 〈표 2-4-4〉 농림식품 R&D 투자 현황 | 170 |
| 〈표 2-4-5〉 전문위원회별 기획보고서 주제 | 171 |
| 〈표 2-4-6〉 2019년 농림식품 과학기술 세미나 및 심포지엄 | 172 |
| 〈표 2-4-7〉 SNS 활용 기술 컨설팅 추진 건수 | 173 |
| 〈표 2-4-8〉 'Best Farmer 영농기법 모델화 과제' 추진 현황 | 174 |
| 〈표 2-4-9〉 연도별 농림어업 에너지소비량 | 179 |
| 〈표 2-4-10〉 연도별 에너지절감시설 지원현황 | 180 |

표·그림목차

| | |
|--|-----|
| 〈표 2-4-11〉 연도별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현황 | 180 |
| 〈표 2-4-12〉 작물별 품종보호등록 현황 | 184 |
| 〈표 2-4-13〉 연도별 종자업 등록현황 | 185 |
| 〈표 2-4-14〉 연도별 육묘업 등록현황 | 185 |
| 〈표 2-4-15〉 국내 곤충산업 현황 | 187 |
| 〈표 2-4-16〉 농식품투자조합 결성('10~'19) 현황 | 195 |
| 〈표 2-4-17〉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취급기관(2019년말 기준) | 199 |
| 〈표 2-5-1〉 연도별 농산물 등 안전성 검사실적 | 204 |
| 〈표 2-5-2〉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추진 실적 | 206 |
| 〈표 2-5-3〉 축산물이력제 단계별 운영현황('19.12월 기준) | 211 |
| 〈표 2-5-4〉 연도별 구제역 발생현황 | 212 |
| 〈표 2-5-5〉 연도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현황 | 214 |
| 〈표 2-5-6〉 연도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 | 215 |
| 〈표 2-5-7〉 국내 야생멧돼지 및 환경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현황 | 215 |
| 〈표 2-5-8〉 연도별 소 브루셀라병 발생현황, KAHIS | 216 |
| 〈표 2-5-9〉 연도별 소 결핵병 발생현황, KAHIS | 216 |
| 〈표 2-5-10〉 OIE 위험무시국 지위요건(예찰점수 산정기준): 7년간 30만점 이상 검사 | 217 |
| 〈표 2-5-11〉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 추진 현황 | 220 |
| 〈표 2-5-12〉 수출입 식물검역 실적(화물+휴대+우편식물) | 222 |
| 〈표 2-5-13〉 수입식물에서 발견된 병해충 실적 | 223 |
| 〈표 2-5-14〉 세계 각국의 비료사용량 | 230 |
| 〈표 2-5-15〉 유기질 비료 연도별 지원현황 | 230 |
| 〈표 2-5-16〉 유기질비료 지원조건(국고, '19년) | 231 |
| 〈표 2-5-17〉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실적 | 232 |
| 〈표 2-5-18〉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지급단가(2019) | 236 |
| 〈표 2-5-19〉 친환경 축산물 인증 현황 | 237 |
| 〈표 2-5-20〉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금 지급 현황 | 237 |
| 〈표 2-6-1〉 식품 연구개발 투자 분야 | 239 |
| 〈표 2-6-2〉 식품 분야 유망기술 지원 계획 | 240 |
| 〈표 2-6-3〉 연도별 농식품 수출 동향 | 257 |
| 〈표 2-6-4〉 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 | 258 |

표·그림목차

| | |
|--|-----|
| 〈표 2-7-1〉 도시-농어촌 서비스 차이 | 264 |
| 〈표 2-7-2〉 농어촌서비스기준 | 265 |
| 〈표 2-7-3〉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수행절차(안) | 271 |
| 〈표 2-7-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실적 | 273 |
| 〈표 2-7-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 274 |
| 〈표 2-7-6〉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실적 | 274 |
| 〈표 2-7-7〉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현황 | 276 |
| 〈표 2-7-8〉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실적 | 278 |
| 〈표 2-7-9〉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추진실적 | 279 |
| 〈표 2-7-10〉 농업인안전보험 추진 실적 | 281 |
| 〈표 2-7-11〉 농지연금 사업 추진 실적 | 282 |
| 〈표 2-7-12〉 일반농산어촌 123개 시·군 | 284 |
| 〈표 2-7-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 285 |
| 〈표 2-7-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내용 예시 | 286 |
| 〈표 2-7-15〉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도별 예산 내역 | 287 |
| 〈표 2-7-16〉 농촌주택개량사업 개요 | 289 |
| 〈표 2-7-17〉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실적 | 300 |
| 〈표 2-7-18〉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분야별 지원 실적 | 301 |
| 〈표 2-7-19〉 농공단지 부처별 지원 현황 | 303 |
| 〈표 2-7-20〉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 306 |
| 〈표 2-7-21〉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 307 |
| 〈표 2-7-22〉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 309 |
| 〈표 2-7-23〉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 310 |
| 〈표 2-7-24〉 방조제 개보수 추진현황 | 310 |
| 〈표 2-7-25〉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 311 |
| 〈표 2-7-26〉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현황 | 312 |
| 〈표 2-7-27〉 연도별 논 및 수리답 현황 | 313 |
| 〈표 2-7-28〉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추진현황 | 313 |
| 〈표 2-7-29〉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추진 현황 | 314 |
| 〈표 2-7-30〉 소규모 용수개발 추진 현황 | 314 |
| 〈표 2-7-31〉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 현황 | 315 |

표·그림목차

그림목차

| | |
|--|-----|
| 〈표 2-7-32〉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개발유형 | 316 |
| 〈표 2-7-33〉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현황 | 317 |
| 〈표 2-7-34〉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시행지구 현황 | 318 |
| 〈표 2-8-1〉 농식품부의 협력사업 지역별 현황 | 326 |
| 〈표 2-8-2〉 2019년도 보조사업 실적 및 성과 | 332 |
| | |
| 〈그림 1-1-1〉 경지면적 변동추이(천ha) | 5 |
| 〈그림 1-2-1〉 영양소별 에너지섭취분율 변화 추이 | 39 |
| 〈그림 1-3-1〉 국제 곡물 가격 변동 주기 | 56 |
| 〈그림 1-3-2〉 유럽연합(EU) 공동농업정책(CAP)의 변천 동향 | 67 |
| 〈그림 2-1-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 | 85 |
| 〈그림 2-2-1〉 양곡관리 시스템 | 142 |
| 〈그림 2-5-1〉 축산물 이력정보 조회방법 | 211 |
| 〈그림 2-6-1〉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 | 257 |
| 〈그림 2-7-1〉 스마트 팜 2.0 서비스 개념도 | 292 |
| 〈그림 2-7-2〉 농경지 전자지도 팜맵 | 293 |
| 〈그림 2-7-3〉 2018~2019년 팜맵 기반농업활동 지원정보 개방 | 294 |
| 〈그림 2-7-4〉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연계도 | 295 |
| 〈그림 2-8-1〉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의사결정기구(Governing Bodies) 개요 ... | 338 |

제1편

2019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장 농업·농촌 경제동향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 동향

제3장 국제 곡물수급 및 농식품 산업 동향

제1장 농업·농촌 경제동향

제1절 농업구조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사무관 김연정

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2019년 12월 1일 현재 전국 농가 수는 1,007천가구로 전년의 1,021천가구보다 1.3%(14천가구)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는 2,245천명으로 전년의 2,315천명보다 3.0%(70천명) 감소하였다.

가구원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가는 583천가구로 전년의 580천가구보다 0.5%(3천가구) 증가하였다. 전업농가의 전체 농가 대비 비중은 57.9%로 전년(56.8%) 대비 1.1%p 증가하였다. 가구원이 농업과 농업 이외 일을 함께하는 겸업농가는 424천가구로 전년 441천가구보다 3.7%(17천가구) 감소하였다.

전체 인구(51,709천명) 중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전년보다 0.2%p 감소하였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2019년 경영주 65세 이상 비율은 62.0%로 최근 2년간 6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령화율을 나타내는 농가인구 65세 이상 비율은 46.6%로 전년(44.7%) 보다 1.9%p 증가하였다.

※ 국가 전체 65세 이상 비율(%) : ('16)13.2 → ('17)13.8 → ('18)14.3 → ('19)14.9

농가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1,100천명(49.0%), 여성이 1,145천명(51.0%)으로 여성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 구 분 | 단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18년 대비 | | |
|--------------------|--------------|----------------|-----------------|-----------------|-----------------|-----------------|-----------------|-----------------|-----------|------|
| | | | | | | | | 증감 | 증감률(%) | |
| 농 가 호 수 | 천호 | 1,121 | 1,089 | 1,068 | 1,042 | 1,021 | 1,007 | △14 | △1.3 | |
| 전 업 농가 (비 중) | 천호 (%) | 599 (53.4) | 598 (55.0) | 597 (55.9) | 585 (56.2) | 580 (56.8) | 583 (57.9) | 3 1.1p | 0.5 - | |
| 겸 업 농 가 (비 중) | 천호 (%) | 522 (46.6) | 490 (45.0) | 471 (44.1) | 457 (43.8) | 441 (43.2) | 424 (42.1) | △17 △1.1p | △3.7 - | |
| 농 가 인 구 (총인구비중) | 천명 (%) | 2,752 (5.4) | 2,569 (5.0) | 2,496 (4.9) | 2,422 (4.7) | 2,315 (4.5) | 2,245 (4.3) | △70 △0.2p | △3.0 - | |
| 호당농가인구 | 명 | 2.46 | 2.36 | 2.34 | 2.32 | 2.27 | 2.23 | △0.04 | △1.7 | |
| 경영주 65세 이상 비율 | % | 55.7 | 53.5 | 55.5 | 58.2 | 60.3 | 62.0 | 1.7p | - | |
| 농가인구 65세 이상 비율 | % | 39.1 | 38.4 | 40.3 | 42.5 | 44.7 | 46.6 | 1.9p | - | |
| 성 별 농 가 인 구 | 남 성 (구성비) | 천명 (%) | 1,340 (48.7) | 1,265 (49.2) | 1,222 (48.9) | 1,184 (48.9) | 1,130 (48.8) | 1,100 (49.0) | △30 | △2.7 |
| | 여 성 (구성비) | 천명 (%) | 1,412 (51.3) | 1,305 (50.8) | 1,275 (51.1) | 1,238 (51.1) | 1,185 (51.2) | 1,145 (51.0) | △40 | △3.4 |

출처: 통계청 '15년은 농림어업총조사, '14, '16~'19년은 농림어업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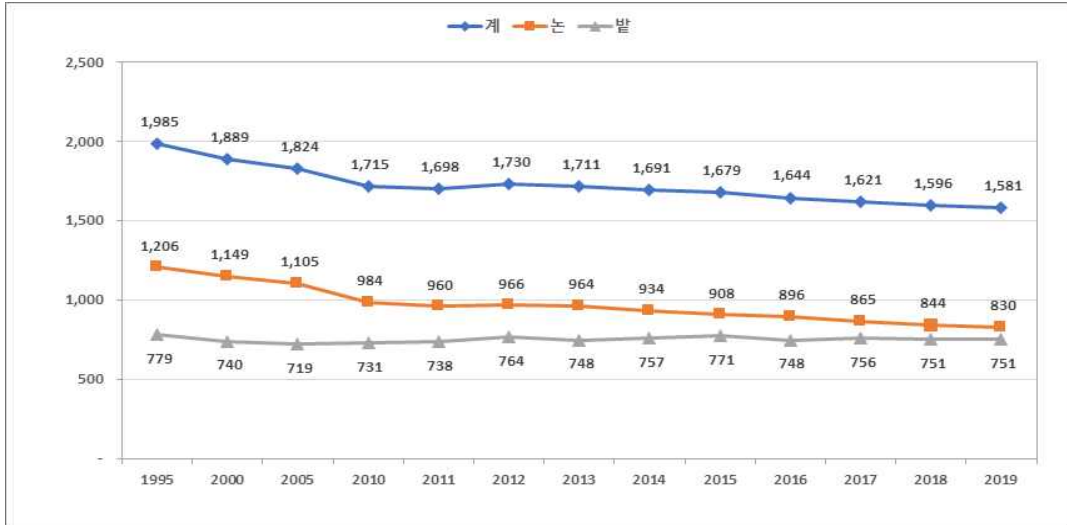
2. 농경지

농경지 면적은 도시화에 따른 건물건축, 공공시설물 건립 등 타 용도 전환면적이 증가하여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19년 말 경지면적은 1,581천ha로 전년보다 14.7천ha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논 면적은 830천ha로 전년에 비하여 14.5천ha 감소하였으며, 밭 면적은 751천ha로 전년대비 0.2천ha가 감소하였다.

2019년 작물 재배면적은 1,643천ha로 전년보다 17천ha가 감소하였고, 경지이용률은 107.2%로 전년보다 0.5%p 증가하였다. 논 경지이용률은 109.6%이며, 밭 경지이용률은 104.6% 이다.

경지이용면적 중 식량작물은 924천ha로 전년보다 0.2천ha 감소, 채소는 266천ha로 16천ha 감소, 과수는 161천ha로 4천ha 감소하였다. 한편 휴경면적은 60.5천ha로 전년보다 0.5천ha 감소하였고, 전년 전체경지면적에서 휴경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03%p 증가한 3.8%로 나타났다.

〈그림 1-1-1〉 경지면적 변동추이(천ha)



출처 :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1-2〉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단위 : ha)

| 연도별 | 증 가 | | | | | 감 소 | | | | | | 증 감 면 적 |
|------|--------|--------|--------|-------|--------|--------|--------|--------|--------|--------|--------|---------|
| | 계 | 논밭 전환 | 개간 | 간척 | 기타 | 계 | 논밭 전환 | 건물 건축 | 공공 시설 | 유휴지 | 기타 | |
| 2004 | 18,592 | 10,350 | 7,249 | 345 | 648 | 31,652 | 13,050 | 6,695 | 5,742 | 4,209 | 1,959 | △13,060 |
| 2005 | 10,426 | 8,695 | 1,008 | 411 | 312 | 22,021 | 8,695 | 5,209 | 3,517 | 3,068 | 1,532 | △11,595 |
| 2006 | 30,691 | 26,144 | 4,159 | 16 | 372 | 54,260 | 26,144 | 9,819 | 6,315 | 4,462 | 7,520 | △23,569 |
| 2007 | 22,420 | 18,125 | 3,392 | 550 | 353 | 41,311 | 18,125 | 10,167 | 4,067 | 6,127 | 2,825 | △18,891 |
| 2008 | 32,734 | 27,122 | 4,643 | 443 | 526 | 55,518 | 27,122 | 9,834 | 5,157 | 10,037 | 3,368 | △22,784 |
| 2009 | 61,785 | 35,094 | 23,013 | 2,685 | 993 | 83,782 | 35,094 | 15,156 | 13,939 | 14,984 | 4,609 | △21,997 |
| 2010 | 36,122 | 26,621 | 7,875 | 354 | 1,272 | 57,619 | 26,621 | 8,356 | 9,318 | 10,138 | 3,186 | △21,497 |
| 2011 | 30,609 | 24,297 | 5,175 | 412 | 725 | 47,870 | 24,297 | 7,940 | 5,627 | 7,410 | 2,596 | △17,261 |
| 2012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 64,125 | 29,641 | 23,802 | 367 | 10,316 | 82,671 | 29,641 | 5,336 | 1,163 | - | 46,531 | △18,546 |
| 2014 | 39,646 | 28,413 | 11,232 | 1 | - | 59,969 | 28,413 | 2,855 | 1,197 | 833 | 26,672 | △20,323 |
| 2015 | 23,788 | 22,704 | 1,083 | - | - | 35,878 | 22,704 | 5,421 | 1,449 | 271 | 6,033 | △12,090 |
| 2016 | 50,312 | 40,716 | 1,590 | 1 | 8,005 | 85,734 | 40,716 | 9,972 | 5,410 | 16,066 | 13,570 | △35,422 |
| 2017 | 43,120 | 41,324 | 1,383 | - | 414 | 65,923 | 41,324 | 8,269 | 3,418 | 8,672 | 4,241 | △22,803 |
| 2018 | 24,045 | 22,423 | 1,413 | - | 210 | 49,227 | 22,423 | 7,895 | 3,257 | 9,893 | 5,759 | △25,182 |
| 2019 | 29,524 | 28,513 | 994 | - | 17 | 44,181 | 28,513 | 6,627 | 2,680 | 3,377 | 2,983 | △14,657 |

출처 : 2019년 농업면적통계 보고서(통계청발간), 2012년은 표본조사에서 원격탐사로 조사방법이 변경으로 인한 시계열 단절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1-3〉 농경지 이용현황

(단위 : 천ha)

| 구 분 | 2000 | 2005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18년 대비 | |
|---------------------|---------|---------|---------|---------|---------|---------|---------|---------|----------|--------|
| | | | | | | | | | 증감 | 증감률(%) |
| 작물재배면적 | 2,098 | 1,921 | 1,754 | 1,682 | 1,680 | 1,641 | 1,660 | 1,643 | △17 | △1.0 |
| 식 량 작 물 | 1,318 | 1,234 | 1,013 | 983 | 962 | 920 | 924 | 924 | △0.2 | 0.0 |
| (미 곡) | (1,072) | (980) | (816) | (799) | (779) | (755) | (738) | (730) | △8 | △1.1 |
| (맥 류) | (68) | (61) | (38) | (44) | (47) | (38) | (54) | (47) | △6 | △11.9 |
| (두류 등) | (177) | (193) | (159) | (139) | (136) | (127) | (133) | (147) | 14 | 10.6 |
| 경 제 작 물 | 780 | 687 | 741 | 699 | 718 | 721 | 679 | 663 | △16 | △2.3 |
| (채 소) | (296) | (240) | (213) | (269) | (263) | (272) | (282) | (266) | △16 | △5.8 |
| (과 수) | (169) | (150) | (153) | (162) | (166) | (167) | (165) | (161) | △4 | △2.5 |
| (기 타) ¹⁾ | (315) | (298) | (375) | (267) | (289) | (282) | (232) | (237) | 5 | 2.1 |
| 경 지 면 적 | 1,889 | 1,824 | 1,691 | 1,679 | 1,644 | 1,621 | 1,596 | 1,581 | △15 | △0.9 |
| 경지이용률(%) | 110.5 | 104.7 | 109.9 | 106.7 | 103.9 | 103.9 | 106.7 | 107.2 | 0.5p | - |
| (논) | (106.3) | (102.9) | (118.3) | (109.5) | (104.0) | (102.2) | (109.2) | (109.6) | 0.4p | - |
| (밭) | (116.9) | (107.3) | (99.4) | (103.4) | (103.8) | (105.9) | (103.8) | (104.6) | 0.8p | - |

주 1) 특용·약용작물, 기타작물 합계임

2) 경지이용률(%) = 경지이용(작물재배)면적/경작가능경지면적 × 100

출처 :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1-4〉 휴경면적

(단위 : 천ha)

| 구 분 | 2000 | 2005 | 2010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18년 대비 | |
|-----------------------|------|------|------|------|------|------|------|------|----------|--------|
| | | | | | | | | | 증감 | 증감률(%) |
| 휴경면적 | 16.8 | 44.2 | 50.5 | 40.4 | 51.7 | 61.2 | 61.0 | 60.5 | △0.5 | △0.8 |
| 논 | 4.3 | 24.1 | 20.1 | 13.2 | 12.2 | 17.1 | 14.2 | 15.7 | 1.5 | 10.7 |
| 밭 | 12.5 | 20.1 | 30.4 | 27.1 | 39.5 | 44.1 | 46.9 | 44.8 | △2.1 | △4.3 |
| 휴경률 ¹⁾ (%) | 0.9 | 2.4 | 2.9 | 2.4 | 3.1 | 3.7 | 3.8 | 3.8 | 0.03p | - |

주 1) 휴경률은 전년경지면적에 대한当年 휴경면적 비율임

출처 :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절 농가경제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사무관 김연정

1. 소득 동향

◆ 농가소득

2019년도 농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41,182천원으로 전년(42,066천원)에 비하여 2.1%(884천원) 감소하였다. 소득 종류별로 보면 농업소득이 10,261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5.9% 감소한 반면 농업외소득은 17,327천원, 이전소득은 11,230천원으로 각각 2.2%, 11.9% 증가하였다. 비경상소득은 2,364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6% 증가하였다.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은 24.9%이며, 농업외소득은 42.1% 수준이다. 농업소득의 감소는 농업경영비는 5.9% 증가한 반면 농업총수입 중 축산수입은 4.5% 증가하였으나 농작물수입이 5.7% 감소하여 농업총수입이 전체적으로 3.7%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농업외소득의 증가는 급료수입(농외임금) 등이 줄어든 영향으로 사업외소득은 감소하였지만 도소매업, 건설업 등에서 소득이 증가한 영향으로 겸업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다.

이전소득의 증가는 직불금 단가 인상과 국민연금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하여 공적보조금이 14.1% 늘어난 것이 증가의 요인으로 보인다.

〈표 1-1-5〉 농가소득

(단위 : 천원, %)

| 구 분 | 2000 | 2005 | 2010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18년 대비 | |
|-----------------------|--------|--------|--------|--------|--------|--------|--------|--------|----------|-------|
| | | | | | | | | | 증감 | 증감률 |
| 농 가 소 득 ¹⁾ | 23,072 | 30,503 | 32,121 | 37,215 | 37,197 | 38,239 | 42,066 | 41,182 | △884 | △2.1 |
| □ 경 상 소 득 | 23,072 | 25,778 | 28,654 | 34,101 | 34,102 | 35,217 | 39,764 | 38,818 | △946 | △2.4 |
| ○ 농 업 소 득 | 10,897 | 11,815 | 10,098 | 11,257 | 10,068 | 10,047 | 12,920 | 10,261 | △2,659 | △25.9 |
| ○ 농업외소득 | 7,432 | 9,884 | 12,946 | 14,939 | 15,252 | 16,269 | 16,952 | 17,327 | 375 | 2.2 |
| ○ 이 전 소 득 | 4,743 | 4,078 | 5,610 | 7,906 | 8,783 | 8,902 | 9,891 | 11,230 | 1,339 | 11.9 |
| □ 비경상소득 ²⁾ | - | 4,725 | 3,467 | 3,114 | 3,095 | 3,022 | 2,302 | 2,364 | 62 | 2.6 |

주 1) 농가소득=경상소득(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2) 비경상소득 : 경조수입, 사고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또는 타가구로부터 얻은 수입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1-6〉 농가소득 구성비

(단위 : %)

| 구 분 | 2000 | 2005 | 2010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농 가 소 득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경 상 소 득 | 100.0 | 84.5 | 89.2 | 91.6 | 91.7 | 92.1 | 94.5 | 94.3 |
| ○ 농 업 소 득 | 47.2 | 38.7 | 31.4 | 30.2 | 27.1 | 26.3 | 30.7 | 24.9 |
| ○ 농 외 소 득 | 32.2 | 32.4 | 40.3 | 40.1 | 41.0 | 42.5 | 40.3 | 42.1 |
| ○ 이 전 소 득 | 20.6 | 13.4 | 17.5 | 21.2 | 23.6 | 23.3 | 23.5 | 27.3 |
| □ 비 경 상 소 득 | - | 15.5 | 10.8 | 8.4 | 8.3 | 7.9 | 5.5 | 5.7 |
| 〈 일 본 〉 | | | | | | | | |
| ○ 농 업 소 득 | 12.8 | 24.6 | 26.2 | 30.8 | 35.5 | 36.3 | 34.1 | - |

주 1) 일본은 2003년 조사체계개편(경영주 부부 및 농업 관련 세대원 중심으로 파악)

2) 일본은 농가총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구성비임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농업소득

2019년 농업경영비는 전년에 비해 5.9%(1,338천원) 증가한 24,175천원이며,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제외한 2019년 농업소득은 전년에 비해 20.6% 감소한 10,261천원이다. 농업소득률도 29.8%로 전년에 비해 6.3%p 감소하였다.

〈표 1-1-7〉 농업소득

(단위 : 천원, %)

| 구 분 | 2000 | 2005 | 2010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18년 대비 | |
|---------|--------|--------|--------|--------|--------|--------|--------|--------|----------|-------|
| | | | | | | | | | 증감 | 증감률 |
| 농 업 소 득 | 10,897 | 11,815 | 10,098 | 11,257 | 10,068 | 10,047 | 12,920 | 10,261 | △2,659 | △20.6 |
| (농업소득률) | (55.8) | (44.6) | (37.1) | (33.4) | (32.2) | (32.9) | (36.1) | (29.8) | △6.3p | △3.7 |
| ○ 농업총수입 | 19,514 | 26,496 | 27,221 | 33,654 | 31,279 | 30,580 | 35,757 | 34,436 | △1,321 | △3.7 |
| ○ 농업경영비 | 8,617 | 14,681 | 17,123 | 22,398 | 21,211 | 20,533 | 22,837 | 24,175 | 1,338 | 5.9 |

주 : 농업소득 = 농업총수입 - 농업경영비, 농업소득률 = (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19년 농업총수입은 34,436천원으로 전년(35,757천원)에 비하여 3.7%(1,321천원) 감소하였다. 축산수입은 4.5% 증가하였고, 미곡수입, 채소수입, 과수수입은 각각 1.9%, 8.2%, 12.4% 감소하였다.

〈표 1-1-8〉 농업총수입

(단위 : 천원, %)

| 구 분 | 2000 | 2005 | 2010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18년 대비 | |
|----------------------|--------|--------|--------|--------|--------|--------|--------|--------|----------|-------|
| | | | | | | | | | 증감 | 증감률 |
| 농업총수입 | 19,514 | 26,496 | 27,221 | 33,654 | 31,279 | 30,580 | 35,757 | 34,436 | △1,321 | △3.7 |
| ○ 미곡수입 | 7,758 | 7,264 | 5,368 | 6,393 | 5,070 | 5,426 | 6,756 | 6,630 | △126 | △1.9 |
| ○ 축산수입 | 2,571 | 6,386 | 5,892 | 10,530 | 9,222 | 8,029 | 10,027 | 10,478 | 451 | 4.5 |
| ○ 채소수입 | 4,765 | 6,388 | 7,251 | 8,138 | 8,411 | 7,994 | 9,174 | 8,426 | △748 | △8.2 |
| ○ 과수수입 | 2,443 | 2,945 | 4,147 | 4,346 | 4,329 | 4,141 | 4,626 | 4,052 | △574 | △12.4 |
| ○ 기타수입 ¹⁾ | 1,977 | 3,513 | 4,564 | 4,248 | 4,247 | 4,990 | 5,174 | 4,850 | △323 | △6.2 |

주1) : 맥류, 잡곡, 두류, 서류, 화훼, 기타 포함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19년 농업총수입의 구성비는 축산수입(30.4%), 채소수입(24.5%), 미곡수입(19.3%), 기타수입(14.1%), 과수수입(11.8%) 순이다.

〈표 1-1-9〉 농업총수입 구성비

(단위 : %)

| | 2000 | 2005 | 2010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농업총수입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미곡수입 | 39.8 | 27.4 | 19.7 | 19.0 | 16.2 | 17.7 | 18.9 | 19.3 |
| ○ 축산수입 | 13.2 | 24.1 | 21.6 | 31.3 | 29.5 | 26.3 | 28.0 | 30.4 |
| ○ 채소수입 | 24.4 | 24.1 | 26.6 | 24.2 | 26.9 | 26.2 | 25.7 | 24.5 |
| ○ 과수수입 | 12.5 | 11.1 | 15.2 | 12.9 | 13.8 | 13.5 | 12.9 | 11.8 |
| ○ 기타수입 | 10.1 | 13.3 | 16.8 | 12.6 | 13.6 | 16.3 | 14.5 | 14.1 |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19년 농업경영비는 24,175천원으로 전년(22,837천원)에 비하여 5.9%(1,338천원)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년에 비해 수선 및 농구비(7.6%), 노무비(3.9%), 양축비(8.9%), 비료·농약비(7.5%), 임차료(13.8%), 기타비용(3.5%)이 모두 증가하였다.

〈표 1-1-10〉 농업경영비

(단위 : 천원, %)

| 구 분 | 2000 | 2005 | 2010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18년 대비 | |
|-------------------------|-------|--------|--------|--------|--------|--------|--------|--------|----------|------|
| | | | | | | | | | 증감 | 증감률 |
| 농업경영비 | 8,617 | 14,681 | 17,123 | 22,398 | 21,211 | 20,533 | 22,837 | 24,175 | 1,338 | 5.9 |
| ○ 수선및농구비 | 1,414 | 318 | 372 | 521 | 501 | 513 | 605 | 651 | 46 | 7.6 |
| ○ 노 무 비 | 600 | 913 | 897 | 1,447 | 1,314 | 1,385 | 1,908 | 1,983 | 75 | 3.9 |
| ○ 양 축 비 ¹⁾ | 1,175 | 2,748 | 3,126 | 5,041 | 4,534 | 4,074 | 5,077 | 5,528 | 451 | 8.9 |
| ○ 비료·농약비 | 1,245 | 1,625 | 2,117 | 2,249 | 2,193 | 2,089 | 2,433 | 2,615 | 182 | 7.5 |
| ○ 임 차 료 | 1,613 | 1,096 | 912 | 1,301 | 1,024 | 1,249 | 1,343 | 1,528 | 185 | 13.8 |
| ○ 기 타 비 용 ²⁾ | 2,569 | 7,981 | 9,699 | 11,840 | 11,645 | 11,223 | 11,471 | 11,873 | 402 | 3.5 |

주 1) 동물관리비, 사료비의 합계

2) 감가상각비, 종묘비, 광열비, 수리비, 위탁영농비, 조세 및 부담금, 지급이자, 농업부문보험료, 기타판매 및 관리비, 기타재료비 등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농업외소득

2019년 농업외소득은 17,327천원으로 전년(16,952천원)에 비하여 2.2%(375천원)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사업외소득이 11,499천원으로 0.5% 감소한 반면 겸업소득은 5,828천원으로 8.0%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겸업소득 : 임업, 어업, 제조업 등 농업 외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

* 사업외소득 : 노임, 급료, 임대료 등 사업 외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

〈표 1-1-11〉 농업외소득

(단위 : 천원, %)

| 구 분 | 2000 | 2005 | 2010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18년 대비 | |
|--------------------|-----------------|-----------------|-----------------|------------------|------------------|------------------|------------------|------------------|----------|------|
| | | | | | | | | | 증감 | 증감률 |
| 농업외소득 | 7,432 | 9,884 | 12,946 | 14,939 | 15,252 | 16,269 | 16,952 | 17,327 | 375 | 2.2 |
| ○ 겸업소득 (구 성 비) | 1,435 (19.3) | 2,531 (25.6) | 3,467 (26.8) | 3,733 (25.0) | 3,855 (25.3) | 4,406 (27.1) | 5,398 (31.8) | 5,828 (33.6) | 430 | 8.0 |
| ○ 사업외소득 (구 성 비) | 5,997 (80.7) | 7,353 (74.4) | 9,480 (73.2) | 11,206 (75.0) | 11,397 (74.7) | 11,863 (72.9) | 11,554 (68.2) | 11,499 (66.4) | △55 | △0.5 |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2019년 이전소득은 11,230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1.9%(1,339천원) 증가하였으며, 비경상소득은 2,364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6%(62천원) 증가하였다.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한 소득은 전년에 비해 11.5%(1,401천원) 증가한 13,594천원이다.

〈표 1-1-12〉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단위 : 천원, %)

| 구 분 | 2000 | 2005 | 2010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18년 대비 | |
|-------------|-------|-------|-------|--------|--------|--------|--------|--------|----------|------|
| | | | | | | | | | 증감 | 증감률 |
| 합 계 | 4,743 | 8,803 | 9,077 | 11,020 | 11,878 | 11,924 | 12,193 | 13,594 | 1,401 | 11.5 |
| ○ 이 전 소 득 | 4,743 | 4,078 | 5,610 | 7,906 | 8,783 | 8,902 | 9,891 | 11,230 | 1,339 | 11.9 |
| ○ 비 경 상 소 득 | - | 4,725 | 3,467 | 3,114 | 3,095 | 3,022 | 2,302 | 2,364 | 62 | 2.6 |

주) 2003년부터 이전소득 중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등은 비경상소득으로 분리 신설됨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가계지출 동향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합한 2019년 가계비는 35,339천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비지출은 27,221천원으로 전년(26,033천원)에 비하여 4.6%(1,188천원)가 증가하였고, 비소비지출은 8,118천원으로 전년(7,794천원)에 비하여 4.2%(324천원) 증가하였다.

〈표 1-1-13〉 가계비 지출

(단위 : 천원, %)

| 구 분 | 2000 | 2005 | 2010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18년 대비 | |
|---|--------|--------|--------|--------|--------|--------|--------|--------|----------|-----|
| | | | | | | | | | 증감 | 증감률 |
| 가 계 비 | 18,003 | 26,649 | 27,672 | 30,613 | 31,049 | 30,640 | 33,828 | 35,339 | 1,511 | 4.5 |
| ○ 소 비 지 출 | 18,003 | 19,378 | 21,264 | 24,741 | 24,999 | 24,738 | 26,033 | 27,221 | 1,188 | 4.6 |
| ○ 비 소 비 지 출 ¹⁾ | - | 7,271 | 6,408 | 5,872 | 6,050 | 5,902 | 7,794 | 8,118 | 324 | 4.2 |
| 농업소득의 가계비 총족도 (농업소득/가계비) | - | 44.3 | 36.5 | 36.8 | 32.4 | 32.8 | 38.2 | 29.0 | - | - |
| 평 균 소 비 성 향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²⁾) | - | 83.4 | 82.7 | 78.9 | 80.3 | 76.5 | 76.0 | 82.3 | - | - |

주 1) 2003년부터 조세, 사회보험 등으로 구성된 비소비지출이 분리 신설됨

2) 20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비소비지출, 2003년 이전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조세부담금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농가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농가의 처분가능소득은 2019년 33,06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3.5%(1,208천원) 감소하였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농가 잉여금은 5,843천원으로 전년(8,238천원)에 비하여 29.1%(2,395천원) 감소하였다.

〈표 1-1-14〉 처분가능소득 / 잉여금

(단위 : 천원, %)

| 구 분 | 2000 | 2005 | 2010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18년 대비 | |
|------------------------|--------|--------|--------|--------|--------|--------|--------|--------|----------|-------|
| | | | | | | | | | 증감 | 증감률 |
| ○ 처분가능소득 ¹⁾ | 22,838 | 23,232 | 25,712 | 31,343 | 31,147 | 32,337 | 34,271 | 33,063 | △1,208 | △3.5 |
| ○ 소비지출 | 18,003 | 19,378 | 21,264 | 24,741 | 24,999 | 24,738 | 26,033 | 27,221 | 1,188 | 4.6 |
| ○ 잉여금 ²⁾ | 4,361 | 3,854 | 4,449 | 6,602 | 6,149 | 7,599 | 8,238 | 5,843 | △2,395 | △29.1 |

주 1) 20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비소비지출, 2003년이전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조세부담금

주 2) 2003년부터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 2003년이전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비 - 분가지출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농가자산 동향

2019년 말 현재 가구당 평균자산은 529,455천원으로 전년(495,687천원)에 비하여 6.8%(33,768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정자산은 451,987천원으로 토지, 건물, 대동물 등의 영향으로 전년(425,721천원)에 비해 6.2%(26,266천원) 증가하였고, 유동자산은 77,469천원으로 예·적금(정기) 등 금융자산이 늘어 전년(69,966천원)에 비해 10.7%(7,503천원) 증가하였다.

〈표 1-1-15〉 농가자산

(단위 : 천원, %)

| 구 분 | 2000 | 2005 | 2010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18년 대비 | |
|-----------------------|-------------------|-------------------|-------------------|-------------------|-------------------|-------------------|-------------------|-------------------|----------|------|
| | | | | | | | | | 증감 | 증감률 |
| 농 가 자 산 | 159,975 | 298,178 | 372,476 | 453,580 | 474,309 | 505,881 | 495,687 | 529,455 | 33,768 | 6.8 |
| 고 정 자 산 ¹⁾ | 125,918 (78.7) | 238,399 (80.0) | 289,435 (77.7) | 358,793 (79.1) | 368,226 (77.6) | 386,714 (76.4) | 425,721 (85.9) | 451,987 (85.4) | 26,266 | 6.2 |
| 유 동 자 산 ²⁾ | 34,057 (21.3) | 59,779 (20.0) | 83,041 (22.3) | 94,787 (20.9) | 106,084 (22.4) | 119,166 (23.6) | 69,966 (14.1) | 77,469 (14.6) | 7,503 | 10.7 |

주 1) 고정자산 :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기구·비품, 대동·식물, 무형자산

주 2) 유동자산 : 현금, 예금 등 금융자산, 재고자산(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소동물 등)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농가부채 동향

농가부채는 2019년 말 현재 가구당 35,718천원으로 전년(33,269천원)에 비해 7.4%(2,449천원) 증가하였다. 이중 농업용 부채는 14,506천원으로 전년(13,687천원)에 비해 6.0%(819천원) 증가하였으며, 4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가계용, 겸업용, 기타용 부채 등 농업용 이외의 부채는 21,212천원으로 전년(19,582천원)에 비해 8.3%(1,630천원) 증가하였다.

농가의 단기상환능력 평가지표인 당좌자산 대비 농가부채 비율(농가부채/당좌자산)은 48.9%로 전년(50.6%)에 비하여 1.7%p 낮아졌다.

〈표 1-1-16〉 농가부채

(단위 : 천원, %)

| 구 분 | 2000 | 2005 | 2010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18년 대비 | |
|-------------------------------------|--------|------------------|------------------|------------------|------------------|------------------|------------------|------------------|----------|-----|
| | | | | | | | | | 증감 | 증감률 |
| 농 가 부 채 (A) | 20,207 | 27,210 | 27,210 | 27,215 | 26,730 | 26,375 | 33,269 | 35,718 | 2,449 | 7.4 |
| ◦농업용부채 (구 성 비) | - | 16,315 (60.0) | 12,930 (47.5) | 11,917 (43.8) | 11,924 (44.6) | 10,618 (40.3) | 13,687 (41.1) | 14,506 (40.6) | 819 | 6.0 |
| ◦농업용이외부채 ¹⁾ (구 성 비) | - | 10,894 (40.0) | 14,280 (52.5) | 15,298 (56.2) | 14,806 (55.4) | 15,758 (59.7) | 19,582 (58.9) | 21,212 (59.4) | 1,630 | 8.3 |
| 당 좌 자 산 (B) | - | 54,354 | 77,668 | 89,109 | 101,306 | 113,931 | 65,765 | 73,084 | 7,319 | 0.1 |
| 단기상환능력 ²⁾ [(A/B)×100] | - | 50.1 | 35.0 | 30.5 | 26.4 | 23.2 | 50.6 | 48.9 | △1.7p | |

주 1) 농업용이외 부채는 가계용 + 겸업용 + 기타용 부채임

2) 당좌자산 대비 농가부채가 적을수록(수치가 적을수록) 상환능력이 개선됨을 의미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 지표

2019년 전·겸업별 농가소득은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의 소득이 많고, 제1종 겸업농가보다 제2종 겸업농가의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종 겸업농가의 소득이 52,598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업농가의 소득은 농가소득 평균의 77.0% 수준이었다.

자산의 경우는 제1종 겸업농가가 592,567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채 규모는 제2종 겸업농가가 46,378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 1-1-17〉 2019년 전업/겸업 농가 주요 지표

(단위 : 천원, %)

| 구 분 | 평 균 (A) | 전업농가 (B) | 겸업농가 | | 전국평균 대비 | | |
|------------------|-----------------|-----------------|-----------------|-----------------|---------|-------|-------|
| | | | 제1종(C) | 제2종(D) | B/A | C/A | D/A |
| 농 가 소 득 | 41,182 | 31,727 | 49,409 | 52,598 | 77.0 | 120.0 | 127.7 |
| 가 계 지 출 | 35,339 | 29,148 | 37,016 | 44,032 | 82.5 | 104.7 | 124.6 |
| 자 산 | 529,455 | 512,057 | 592,567 | 534,738 | 96.7 | 111.9 | 101.0 |
| 부 채 (부채 / 자산) | 35,718 (6.7) | 26,309 (5.1) | 46,038 (7.8) | 46,378 (8.7) | 73.7 | 128.9 | 129.8 |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7. 주·부업별 지표

2019년 주업농가 중 전문농가의 농가소득이 51,595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급농가 소득(34,788천원)의 1.5배 수준이었다. 전문농가의 자산은 652,524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농가의 자산(404,792천원)은 전문농가의 62.0% 수준이었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자급농가가 8.3%로 가장 높았다.

※ 주·부업농가 기준

- 전문농가 : 경지규모 3h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0만원 이상 농가
- 일반농가 : 경지규모 3ha 미만인면서 농업총수입 2,000만원 미만 농가
- 부업농가 : 경지규모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만원 이상 농가 중 농업외수입이 농업 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 자급농가 :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 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농가

〈표 1-1-18〉 2019년 주·부업별 지표

(단위 : 천원, %)

| 구 분 | 평 균 | 주 업 농 가 | | 부업농가 | 자급농가 |
|------------------|-----------------|-----------------|-----------------|-----------------|-----------------|
| | | 전문농가 | 일반농가 | | |
| 농 가 소 득 | 41,182 | 51,595 | 21,859 | 51,932 | 34,788 |
| 가 계 지 출 | 35,339 | 37,836 | 24,175 | 43,194 | 35,442 |
| 자 산 | 529,455 | 652,524 | 404,792 | 588,793 | 384,832 |
| 부 채 (부채 / 자산) | 35,718 (6.7) | 49,713 (7.6) | 13,781 (3.4) | 44,659 (7.6) | 32,127 (8.3) |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8. 영농형태별 주요 지표

2019년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은 축산농가가 75,46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수농가가 35,273천원으로 나타났다. 논벼 재배농가의 소득은 30,246천원으로 평균 농가소득(41,182천원)의 73.4% 수준이었다.

자산의 경우 축산농가가 980,69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수농가(584,151천원), 논벼농가(514,758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채/자산 비율은 화훼농가 11.8%, 축산농가 11.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논벼 농가는 2.9%로 가장 낮았다.

〈표 1-1-19〉 2019년 영농형태별 주요 지표

(단위 : 천원, %)

| 구 분 | 평 균 | 논벼 | 과수 | 채소 | 특작 | 화훼 | 전작 ¹⁾ | 축산 |
|-----------|---------|---------|---------|---------|---------|---------|------------------|---------|
| 농 가 소 득 | 41,182 | 30,246 | 35,273 | 28,844 | 27,163 | 31,866 | 28,024 | 75,466 |
| 가 계 지 출 | 35,339 | 27,380 | 33,112 | 29,764 | 29,873 | 33,392 | 28,263 | 40,229 |
| 자 산 | 529,455 | 514,758 | 584,151 | 404,491 | 421,439 | 449,745 | 455,658 | 980,696 |
| 부 채 | 35,718 | 15,168 | 24,533 | 24,965 | 12,513 | 53,161 | 13,600 | 109,289 |
| (부채 / 자산) | (6.7) | (2.9) | (4.2) | (6.2) | (3.0) | (11.8) | (3.0) | (11.1) |

주 : 1) 농업총수입 중 맥류, 잡곡, 두류, 서류수입의 합이 최대인 농가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9. 경지규모별 주요 지표

2019년 경지규모별 농가소득은 경지규모가 10ha 이상일 때 112,60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0.5ha 미만인 경우는 35,053천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10ha이상 농가소득의 31.1%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지규모별 농가자산은 경지규모가 10.0ha 이상일 때 1,053,097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채/자산 비율은 경지규모가 7.0~10.0ha 경우에 16.3%로 가장 높았다.

〈표 1-1-20〉 2019년 경지규모별 주요 지표

(단위 : 천원, %)

| 구 분 | 평균 | 0.5ha 미만 | 0.5~1.0ha | 1.0~1.5ha | 1.5~2.0ha | 2.0~3.0ha | 3.0~5.0ha | 5.0~7.0ha | 7.0~10.0ha | 10.0ha 이상 |
|-----------|---------|----------|-----------|-----------|-----------|-----------|-----------|-----------|------------|-----------|
| 농 가 소 득 | 41,182 | 35,053 | 36,198 | 37,180 | 43,573 | 47,187 | 53,389 | 68,243 | 77,562 | 112,603 |
| 가 계 지 출 | 35,339 | 33,621 | 33,720 | 34,026 | 34,966 | 36,216 | 39,423 | 46,767 | 49,217 | 59,658 |
| 자 산 | 529,455 | 404,404 | 466,158 | 561,586 | 633,994 | 599,194 | 749,846 | 787,066 | 976,306 | 1,053,097 |
| 부 채 | 35,718 | 28,220 | 30,165 | 34,039 | 36,434 | 30,160 | 51,910 | 59,719 | 158,688 | 97,836 |
| (부채 / 자산) | (6.7) | (7.0) | (6.5) | (6.1) | (5.7) | (5.0) | (6.9) | (7.6) | (16.3) | (9.3) |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0. 경영주 연령별 주요 지표

2019년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은 50대가 66,745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 연령층의 소득은 27,989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농가자산은 40대 이하가 820,810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605,847천원), 60대(582,148천원)의 순이었다. 농가부채는 40대 이하가 145,655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75,133천원)와 60대(37,390천원)의 순이었다.

〈표 1-1-21〉 2019년 경영주 연령별 주요 지표

(단위 : 천원, %)

| 구 분 | 평균 | 40대 이하 | 50~59 | 60~69 | 70세 이상 |
|-----------|---------|---------|---------|---------|---------|
| 농 가 소 득 | 41,182 | 55,219 | 66,745 | 47,398 | 27,989 |
| 가 계 지 출 | 35,339 | 55,664 | 53,115 | 38,391 | 26,383 |
| 자 산 | 529,455 | 820,810 | 605,847 | 582,148 | 446,561 |
| 부 채 | 35,718 | 145,655 | 75,133 | 37,390 | 15,135 |
| (부채 / 자산) | (6.7) | (17.7) | (12.4) | (6.4) | (3.4) |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1. 지역별 주요 지표

2019년 지역별 농가소득을 살펴보면 경기지역 농가가 가구당 50,576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제주(48,963천원), 충남(44,019천원), 전북(41,214천원), 전남(39,320천원) 지역 순이었다. 자산의 경우 제주지역이 921,802천원으로 월등히 많았고, 부채는 제주(75,128천원), 경기(59,652천원) 지역 순서로 많았다.

〈표 1-1-22〉 2019년 지역별 주요 지표

(단위 : 천원, %)

| | 전국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농가소득 | 41,182 | 50,576 | 38,727 | 39,220 | 44,019 | 41,214 | 39,320 | 37,547 | 36,923 | 48,963 |
| 가계지출 | 35,339 | 42,804 | 34,702 | 33,549 | 33,959 | 32,889 | 32,895 | 32,325 | 33,615 | 43,985 |
| 자산 | 529,455 | 896,295 | 464,675 | 481,892 | 530,823 | 379,365 | 344,399 | 411,169 | 464,360 | 921,802 |
| 부채 | 35,718 | 59,652 | 34,473 | 22,825 | 35,351 | 23,534 | 26,805 | 28,860 | 29,976 | 75,128 |
| (부채/자산) | (6.7) | (6.7) | (7.4) | (4.7) | (6.7) | (6.2) | (7.8) | (7.0) | (6.5) | (8.2) |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제3절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지수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사무관 김연정

1. 개황

2019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9.1로 전년에 비해 0.6% 상승하였으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4.1로 전년에 비해 1.6% 상승하였다.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4.8로서 전년에 비해 1.0% 하락하였다. 여기서 농가교역조건지수가 100 이상이면 채산성이 호전된 것으로, 100 이하이면 채산성이 악화된 것을 나타낸다.

〈표 1-1-23〉 농가교역조건지수 동향

(2015=100)

| 구분 | 2005 | 2010 | 2012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농가판매가격지수(①) | 81.3 | 87.9 | 103.3 | 100.0 | 102.9 | 107.6 | 108.5 | 109.1 |
| 농가구입가격지수(②) | 75.0 | 91.7 | 97.3 | 100.0 | 99.3 | 100.9 | 102.5 | 104.1 |
| 농가교역조건지수(①/②×100) | 108.4 | 95.9 | 106.2 | 100.0 | 103.6 | 106.6 | 105.9 | 104.8 |

자료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2.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19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9.1로 전년에 비해 0.6% 상승하였고, 곡물은 122.4로 전년에 비해 3.6% 상승하였으며, 청과물은 117.0로 전년에 비해 1.0% 하락하였다. 축산물은 97.4로 전년에 비해 0.3% 상승하였다.

◆◆ 곡 물

2019년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2.4로 전년에 비해 3.6%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미곡, 두류/잡곡, 맥류는 각각 전년보다 9.4%, 6.7%, 3.2% 상승한 반면 서류는 37.0% 하락하였다.

◆◆ 청과물

2019년 청과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7.0로 전년에 비해 1.0% 하락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채소류가 101.6으로 전년에 비해 8.4% 하락한 반면, 과실류는 142.5로 전년에 비해 9.4% 상승하였다. 채소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근채류, 엽채류, 조미채소류, 과채류가 전년에 비해 각각 18.2%, 10.0%, 9.2%, 5.0% 하락하였다.

◆◆ 축산물

2019년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7.4로 전년에 비해 0.3% 상승하였다. 가축이 101.0으로 전년에 비해 0.6% 하락한 반면 기타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1.0로 1.8% 상승하였다.

◆◆ 기타 농산물

특용작물·화훼·부산물 등 기타 농산물의 2019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2.3으로 전년에 비해 0.4%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화훼가 108.7로 전년에 비해 5.7% 하락하였으나, 부산물과 특용작물은 각각 11.2%, 4.2% 상승하였다.

〈표 1-1-24〉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15=100)

| 구 분 | 가중치 | 지 수 | | | | | | 증감률(%) |
|--------------|--------------|-------|-------|-------|-------|-------|-------|-----------|
| | | 2012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19/'18) |
| 총 지 수 | 1,000 | 103.3 | 100.0 | 102.9 | 107.6 | 108.5 | 109.1 | 0.6 |
| 곡 물 | 200.1 | 110.2 | 100.0 | 91.8 | 94.5 | 118.2 | 122.4 | 3.6 |
| 미 곡 | 146.0 | 105.8 | 100.0 | 89.6 | 86.5 | 112.2 | 122.8 | 9.4 |
| 맥 류 | 8.7 | 74.7 | 100.0 | 104.6 | 95.0 | 93.4 | 96.4 | 3.2 |
| 두류/잡곡 | 27.5 | 181.9 | 100.0 | 100.3 | 129.7 | 138.0 | 147.3 | 6.7 |
| 서 류 | 17.9 | 120.7 | 100.0 | 89.6 | 105.3 | 148.3 | 93.4 | △37.0 |
| 청 과 물 | 314.0 | 114.6 | 100.0 | 111.5 | 121.8 | 118.2 | 117.0 | △1.0 |
| 채 소 | 196.1 | 113.9 | 100.0 | 109.3 | 107.6 | 110.9 | 101.6 | △8.4 |
| (엽채류) | - | 99.6 | 100.0 | 124.0 | 105.3 | 110.9 | 99.8 | △10.0 |
| (근채류) | - | 112.8 | 100.0 | 132.4 | 144.6 | 132.8 | 108.6 | △18.2 |
| (조미채) | - | 123.6 | 100.0 | 105.5 | 113.5 | 112.0 | 101.7 | △9.2 |
| (과채류) | - | 108.9 | 100.0 | 103.9 | 97.2 | 106.5 | 101.2 | △5.0 |
| 과 실 | 117.9 | 115.7 | 100.0 | 115.2 | 145.4 | 130.3 | 142.5 | 9.4 |
| 축 산 물 | 378.3 | 76.0 | 100.0 | 102.5 | 105.8 | 97.1 | 97.4 | 0.3 |
| 가 축 | 240.7 | 70.0 | 100.0 | 106.9 | 101.2 | 101.6 | 101.0 | △0.6 |
| 기타축산물 | 137.6 | 90.8 | 100.0 | 94.9 | 113.7 | 89.4 | 91.0 | 1.8 |
| 기타농산물 | 107.6 | 96.8 | 100.0 | 99.7 | 96.7 | 101.9 | 102.3 | 0.4 |
| 특용작물 | 64.7 | 91.4 | 100.0 | 96.4 | 92.9 | 94.3 | 98.3 | 4.2 |
| 화 채 | 39.3 | 113.9 | 100.0 | 105.5 | 101.8 | 115.3 | 108.7 | △5.7 |
| 부 산 물 | 3.6 | 110.5 | 100.0 | 97.3 | 109.2 | 93.1 | 103.5 | 11.2 |

출처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3.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19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4.1로 가계용품(0.3%), 재료비(3.1%), 노무비(4.2%), 경비(3.8%), 자산구입비(0.7%)가 모두 올라 전년에 비하여 1.6% 상승하였다.

◆ 가계용품

2019년 가계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4.9로 전년대비 0.3% 상승하였다.

◆ 재료비

2019년 재료비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95.6으로 전년대비 3.1%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종자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는 전년에 비해 각각 4.5%, 1.6%, 4.0%, 1.9% 상승하였고, 비료비는 72.6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 노무비

2019년 노무비의 구입가격지수는 119.6로 전년보다 4.2% 상승하였다.

◆ 경비

2019년 경비의 구입가격지수는 106.6으로 전년보다 3.8%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영농광열비가 0.6% 하락하였으나, 임차료, 농업위탁비, 판매자재비는 각각 8.4%, 3.7%, 1.1% 상승하였다.

◆ 자산구입비

2019년 자산구입비의 구입가격지수는 112.4로 전년보다 0.7%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기계구입, 가축구입비가 각각 0.4%, 1.4% 상승하였다.

〈표 1-1-25〉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15=100)

| 구분 | 가중치 | 지수 | | | | | | 증감률(%) |
|--------|-------|-------|-------|-------|-------|-------|-------|-----------|
| | | 2012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19/'18) |
| 총지수 | 1,000 | 97.3 | 100.0 | 99.3 | 100.9 | 102.5 | 104.1 | 1.6 |
| 가계용품 | 484.8 | 97.6 | 100.0 | 101.3 | 103.3 | 104.6 | 104.9 | 0.3 |
| 재료비 | 250.6 | 105.8 | 100.0 | 94.7 | 93.2 | 92.7 | 95.6 | 3.1 |
| 종자 | 27.5 | 92.7 | 100.0 | 100.6 | 100.6 | 107.7 | 112.6 | 4.5 |
| 비료 | 39.0 | 121.7 | 100.0 | 79.3 | 75.2 | 72.6 | 72.6 | 0.0 |
| 농약 | 29.3 | 93.6 | 100.0 | 99.2 | 96.9 | 95.3 | 96.8 | 1.6 |
| 사료 | 136.0 | 105.8 | 100.0 | 96.3 | 95.4 | 94.4 | 98.2 | 4.0 |
| 영농자재 | 18.7 | 117.2 | 100.0 | 100.1 | 98.3 | 95.9 | 97.7 | 1.9 |
| 노무비 | 45.0 | 84.5 | 100.0 | 104.1 | 108.8 | 114.8 | 119.6 | 4.2 |
| 경비 | 129.0 | 150.8 | 100.0 | 93.9 | 98.0 | 102.7 | 106.6 | 3.8 |
| 영농광열비 | 32.6 | 155.7 | 100.0 | 82.9 | 94.1 | 108.4 | 107.7 | △0.6 |
| 임차료 | 40.5 | 91.9 | 100.0 | 98.5 | 97.5 | 101.3 | 109.8 | 8.4 |
| 농작업위탁비 | 42.5 | - | 100.0 | 97.3 | 102.0 | 101.7 | 105.5 | 3.7 |
| 판매자재비 | 13.3 | - | 100.0 | 96.5 | 96.5 | 96.5 | 97.6 | 1.1 |
| 자산구입비 | 90.6 | 76.5 | 100.0 | 106.7 | 109.4 | 111.6 | 112.4 | 0.7 |
| 기계구입 | 58.9 | 92.8 | 100.0 | 99.4 | 101.3 | 104.2 | 104.6 | 0.4 |
| 가축구입비 | 31.7 | 56.1 | 100.0 | 120.3 | 124.4 | 125.2 | 126.9 | 1.4 |

출처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제4절 농업생산성 및 농림업 부가가치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사무관 김연정

1. 개황

2019년 농가에서 영농작업에 투입한 주요 생산요소 중 호당 자영농의 노동시간은 1,101시간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하였고, 농업자본투입액의 경우는 78,068천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당 경지면적은 1.57ha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표 1-1-26〉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단위 : 시간, 천원, ha)

| 구 분 | 2000 | 2005 | 2010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18년 대비 | |
|----------|--------|--------|--------|--------|--------|--------|--------|--------|----------|--------|
| | | | | | | | | | 증감 | 증감률(%) |
| 자영농업노동시간 | 1,253 | 1,469 | 1,103 | 1,043 | 962 | 881 | 1,172 | 1,101 | △71 | △6.1 |
| 농업자본투입액 | 31,425 | 49,721 | 53,323 | 62,951 | 61,430 | 59,649 | 75,994 | 78,068 | 2,074 | 2.7 |
| 호당 경지면적 | 1.37 | 1.43 | 1.46 | 1.54 | 1.54 | 1.56 | 1.56 | 1.57 | - | - |

* 호당경지면적 = 경지면적 / 농가수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농가경제통계(수익성·생산성·안정성지표)

2019년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17천원으로 전년 18천원보다 5.6% 감소하였다.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노동집약도는 87시간으로 전년보다 10.8%가 감소하였으며,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자본액을 나타내는 자본집약도는 6,167천원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하였다.

〈표 1-1-27〉 농업생산성 지표

| 구 분 | 단위 | 2000 | 2005 | 2010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19년 대비 | |
|---------------------|--------|-------|-------|-------|-------|-------|-------|-------|-------|----------|--------|
| | | | | | | | | | | 증감 | 증감률(%) |
| 노동생산성 ¹⁾ | 천원/시간 | 12 | 12 | 16 | 19 | 20 | 21 | 18 | 17 | △1 | △5.6 |
| 토지생산성 ²⁾ | 천원/10a | 1,051 | 1,141 | 1,273 | 1,563 | 1,506 | 1,506 | 1,756 | 1,471 | △285 | △16.2 |
| 자본생산성 ³⁾ | 천원 | 470 | 364 | 325 | 323 | 306 | 317 | 278 | 239 | △39 | △14.0 |
| 노동집약도 ⁴⁾ | 시간/10a | 89 | 93 | 81 | 80 | 77 | 70 | 98 | 87 | △11 | △10.8 |
| 자본집약도 ⁵⁾ | 천원/10a | 2,237 | 3,138 | 3,920 | 4,841 | 4,924 | 4,754 | 6,324 | 6,167 | △157 | △2.5 |

주 1) 노동생산성(농업부가가치/자영농업노동시간) : 투입된 노동력과 그 결과로서 얻은 생산량의 비율

2) 토지생산성(농업부가가치/경지면적) : 토지면적 단위당 생산량

3) 자본생산성(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투입액) : 투입된 자본에 대한 생산량

4) 노동집약도(자영농업노동시간/경지면적)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입된 노동량

5) 자본집약도(농업자본액/경지면적)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입된 농업자본액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수익성·생산성·안정성지표)

2.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2019년 10a당 생산비는 논벼가 773천원으로 전년 796천원보다 2.9% 감소하였고, 마늘이 3,348천원으로 전년 3,461천원보다 3.3%, 양파는 2,533천원으로 전년 2,537천원보다 0.2%, 고추는 3,491천원으로 전년 3,665천원보다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비는 양파는 전년보다 2.6% 증가한 반면, 논벼, 마늘, 고추는 각각 2.0%, 3.7%,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8〉 주요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10a당)

(단위: 천원)

| 구분 | 연도 | 2000 | 2005 | 2010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18년 대비 | |
|-----|----------|-------|-------|-------|-------|-------|-------|-------|-------|----------|--------|
| | | | | | | | | | | 증감 | 증감률(%) |
| 논 벼 | 총수입(A) | 1,041 | 879 | 822 | 994 | 856 | 975 | 1,178 | 1,153 | △25 | △2.2 |
| | 생산비(B) | 538 | 588 | 614 | 692 | 674 | 691 | 796 | 773 | △23 | △2.9 |
| | 경영비(C) | 280 | 334 | 388 | 433 | 427 | 433 | 495 | 485 | △10 | △2.0 |
| | 순수익(A-B) | 503 | 292 | 208 | 302 | 182 | 283 | 382 | 379 | △3 | △0.6 |
| | 소 득(A-C) | 761 | 546 | 434 | 561 | 430 | 541 | 683 | 667 | △16 | △2.3 |
| 마 늘 | 총수입(A) | 1,427 | 2,007 | 4,268 | 5,072 | 5,801 | 4,842 | 3,613 | 3,288 | △325 | △9.0 |
| | 생산비(B) | 1,226 | 1,423 | 1,811 | 2,928 | 3,271 | 3,376 | 3,461 | 3,348 | △113 | △3.3 |
| | 경영비(C) | 683 | 798 | 1,091 | 1,520 | 1,861 | 1,911 | 2,073 | 1,997 | △76 | △3.7 |
| | 순수익(A-B) | 201 | 584 | 2,457 | 2,144 | 2,530 | 1,466 | 151 | △60 | △211 | △140.0 |
| | 소 득(A-C) | 744 | 1,209 | 3,177 | 3,553 | 3,940 | 2,931 | 1,539 | 1,291 | △248 | △16.1 |
| 양 파 | 총수입(A) | 1,519 | 1,908 | 3,244 | 3,522 | 3,621 | 4,525 | 2,706 | 2,782 | 76 | 2.8 |
| | 생산비(B) | 921 | 1,048 | 1,422 | 2,166 | 2,445 | 2,494 | 2,537 | 2,533 | △4 | △0.2 |
| | 경영비(C) | 485 | 610 | 936 | 1,404 | 1,650 | 1,755 | 1,631 | 1,674 | 43 | 2.6 |
| | 순수익(A-B) | 598 | 860 | 1,822 | 1,356 | 1,176 | 2,032 | 168 | 249 | 81 | 47.7 |
| | 소 득(A-C) | 1,034 | 1,298 | 2,308 | 2,117 | 1,971 | 2,771 | 1,074 | 1,108 | 34 | 3.1 |
| 고 추 | 총수입(A) | 1,837 | 2,209 | 2,452 | 3,331 | 2,830 | 3,420 | 5,344 | 3,626 | △1,718 | △32.1 |
| | 생산비(B) | 1,127 | 1,497 | 1,908 | 3,301 | 3,270 | 3,295 | 3,665 | 3,491 | △174 | △4.8 |
| | 경영비(C) | 428 | 638 | 929 | 1,109 | 1,060 | 1,049 | 1,281 | 1,222 | △59 | △4.6 |
| | 순수익(A-B) | 711 | 712 | 544 | 30 | △440 | 125 | 1,678 | 136 | △1,542 | △91.9 |
| | 소 득(A-C) | 1,410 | 1,572 | 1,523 | 2,222 | 1,770 | 2,371 | 4,062 | 2,404 | △1,658 | △40.8 |

출처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논벼, 마늘, 양파, 고추 소득분석),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농림업 부가가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서흥석

2019년도 농림어업 총부가가치는 2015년 연쇄가격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32조 8,590억 원 수준이다. 반면 명목가격 기준으로는 농림어업을 구성하는 모든 부류의 부가가치가 감소하여 총부가가치는 전년대비 6.1% 감소한 31조 1,35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배업과 축산업 부가가치는 명목가격 기준으로 전년대비 각각 3.5%, 12.8% 감소하였다. 재배업은 특용·약용작물의 생산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량작물 및 채소의 생산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영농광열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영농자재와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간재비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반면, 축산업 부가가치는 한우의 생산액 증가(5.9%)에도 불구하고 돼지의 도축마릿수 증가 및 누적된 수입재고량 영향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생산액이 큰 폭 감소(△10.2%)하여 축산업 생산액은 전년과 비슷하였으나 사료비 및 가축비가 전년 대비 상승함에 따라 12.9% 감소하였다.

임업 부가가치는 생산액 증가(1.9%)에도 불구하고 중간재비의 큰 폭 증가 영향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하였으며, 어업 부가가치는 생산액 감소(△3.5%)와 중간재비 증가(1.9%)로 인해 전년 대비 12.3% 감소하였다.

〈표 1-1-29〉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가율

(단위 : 10억 원, 명목, (2015년 연쇄가격 기준))

| 구 분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p) |
|---------|---------|--------------------|--------------------|--------------------|--------------------|--------------------|--------------------|--------------------|
| 농 립 어 업 | | 31,503 (31,697) | 32,144 (33,307) | 33,225 (33,225) | 32,362 (31,353) | 33,974 (32,060) | 33,150 (32,109) | 31,135 (32,859) |
| 실 증 감 륜 | 농 립 어 업 | 0.1 (4.2) | 2.0 (5.1) | 3.4 (-0.2) | -2.6 (-5.6) | 5.0 (2.3) | -2.4 (0.2) | -6.1 (2.3) |
| | 재 배 업 | 1.9 (7.0) | -5.2 (5.3) | 1.1 (0.0) | -5.7 (-5.0) | 2.6 (4.5) | 5.9 (-4.1) | -3.5 (2.4) |
| | 축 산 업 | -0.2 (3.7) | 39.4 (-4.0) | 13.4 (0.9) | 3.6 (-0.7) | 8.5 (-6.2) | -23.4 (10.0) | -12.8 (3.6) |
| | 임 업 | -1.4 (-4.4) | 6.2 (17.4) | -2.0 (-3.6) | -3.9 (-8.8) | -0.5 (3.7) | 2.2 (2.0) | -4.3 (-0.4) |
| | 어 업 | -10.9 (-7.3) | -2.7 (6.5) | 3.1 (-1.6) | 6.3 (-19.5) | 16.8 (6.0) | -7.9 (1.9) | -12.3 (1.6) |

자료 : 한국은행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 동향

제1절 국내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

1. 식량 수급 동향

▮ 식량정책과 서기관 김정락

◆ 식량 공급

2019 양곡연도 전체 식량작물의 생산량은 4,417천톤(정곡)으로 2018양곡연도 4,496천톤보다 79천톤 증가하였다. 정부의 쌀 적정생산 유도 정책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며, 폭염과 잦은 강수 등 기상 영향으로 생산 단수가 감소하여 쌀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쌀이 전년 3,972천톤에 비해 104천톤 감소한 3,868천톤이 생산되었으며, 밀, 서류의 경우도 전년보다 감소한 15천톤, 201천톤이 생산되었다. 반면, 보리, 옥수수, 콩은 작황 호조에 따른 생산단수 증가 등 전년보다 증가한 137천톤, 78천톤, 89천톤이 생산되었다.

〈표 1-2-1〉 연도별 식량 생산량

(단위 : 천톤)

| 양곡년도 | 합계 | 쌀 | 보리쌀 | 밀 | 옥수수 | 콩 | 서류 | 기타 |
|--------------|-------|-------|-----|----|-----|-----|-----|----|
| 2012 | 4,748 | 4,224 | 57 | 37 | 74 | 129 | 202 | 25 |
| 2013 | 4,578 | 4,006 | 61 | 19 | 83 | 123 | 255 | 31 |
| 2014 | 4,827 | 4,230 | 88 | 23 | 80 | 154 | 219 | 33 |
| 2015 | 4,811 | 4,241 | 76 | 27 | 82 | 139 | 210 | 36 |
| 2016 | 4,858 | 4,327 | 74 | 38 | 78 | 104 | 201 | 36 |
| 2017 | 4,687 | 4,197 | 75 | 37 | 74 | 75 | 198 | 31 |
| 2018 | 4,496 | 3,972 | 103 | 26 | 74 | 86 | 206 | 29 |
| 2019 (잠정) | 4,417 | 3,868 | 137 | 15 | 78 | 89 | 201 | 29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 식량 수요

전체 식량작물의 소비량은 21,042천톤으로 전년 20,706천톤 대비 336천톤이 증가하였다. 식량용은 전년 대비 48천톤이 증가한 9,705천톤이 소비되었고, 사료용은 전년대비 288천톤이 증가한 11,337천톤이 소비되었다. 식량의 연말재고는 2,368천톤으로 전년 2,877천톤에 비해 509천톤이 대폭 감소하였다.

2019 양곡연도 전체 곡물자급률은 21.0%로 2018년 21.7% 비해 하락하였다.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45.8%로 2018년 46.9%보다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곡물생산량 증 비중이 높은 쌀의 생산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한편 1인당 양곡소비량은 2018년 111.7kg보다 2.2kg 감소한 109.5kg으로 나타났다. 곡종별로 보면 쌀이 전년도 61.0kg에서 59.2kg, 밀은 31.6kg에서 31.6kg, 옥수수는 3.2kg에서 3.1kg, 콩은 6.4kg에서 6.3kg, 서류는 3.1kg에서 3.0kg, 보리는 1.3kg에서 1.4kg, 기타작물은 5.1kg에서 4.9kg으로 나타났다.

〈표 1-2-2〉 연도별 전체 양곡 수급 상황

(단위 : 천톤)

| 양곡연도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잠정) |
|-----------------------|--------|--------|--------|--------|--------|--------|--------|--------|--------|--------|--------|--------|----------|
| 이 | 2,509 | 2,904 | 3,019 | 2,031 | 2,706 | 2,463 | 1,775 | 1,852 | 2,456 | 2,726 | 3,166 | 3,098 | 2,878 |
| 생 | 7,102 | 7,013 | 5,816 | 5,931 | 5,720 | 5,511 | 4,578 | 4,829 | 4,811 | 4,858 | 4,687 | 4,496 | 4,417 |
| 수 | 7,336 | 10,022 | 14,258 | 14,624 | 13,860 | 14,806 | 15,126 | 15,876 | 15,578 | 16,045 | 15,294 | 15,991 | 16,114 |
| 소 | 14,667 | 16,282 | 19,974 | 19,961 | 19,858 | 19,939 | 19,627 | 20,090 | 20,108 | 20,461 | 20,050 | 20,706 | 21,042 |
| - 식량용 | 9,921 | 9,981 | 10,601 | 10,014 | 9,591 | 9,553 | 9,106 | 9,127 | 9,221 | 9,325 | 9,625 | 9,657 | 9,705 |
| - 사료용 | 4,746 | 6,301 | 9,373 | 9,285 | 8,887 | 9,743 | 9,987 | 10,381 | 10,521 | 10,903 | 10,425 | 11,049 | 11,337 |
| 연 말 재 고 | 2,280 | 3,657 | 3,119 | 2,625 | 2,428 | 2,841 | 1,852 | 2,456 | 2,726 | 3,102 | 3,099 | 2,877 | 2,368 |
| 자 급 률 (%) | 48.4 | 43.1 | 29.1 | 29.7 | 29.3 | 27.6 | 23.3 | 24.0 | 23.9 | 23.7 | 23.4 | 21.7 | 21.0 |
| (사료용 제외시) | (71.6) | (70.3) | (55.7) | (55.6) | (53.6) | (54.1) | (47.5) | (49.7) | (50.2) | (50.8) | (48.7) | (46.9) | (45.8) |
| 1 인 당 연 간 소비량 (k g) | 181.7 | 167.0 | 160.5 | 153.2 | 137.5 | 128.0 | 119.1 | 117.1 | 115.9 | 114.5 | 113.2 | 111.7 | 109.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표 1-2-3〉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단위 : kg)

| 양곡년도 | 계 | 쌀 | 보리쌀 | 밀 | 옥수수 | 콩 | 서 류 | 기 타 |
|----------|-------|-------|-----|------|-----|-----|-----|-----|
| 1985 | 181.7 | 128.1 | 4.6 | 32.1 | 3.1 | 9.3 | 3.1 | 1.4 |
| 1990 | 167.0 | 119.6 | 1.6 | 29.8 | 2.7 | 8.3 | 3.3 | 1.7 |
| 1995 | 160.5 | 106.5 | 1.5 | 33.9 | 3.3 | 9.0 | 3.0 | 3.3 |
| 2000 | 153.3 | 93.6 | 1.6 | 35.9 | 5.9 | 8.5 | 4.3 | 3.5 |
| 2005 | 137.5 | 80.7 | 1.2 | 33.2 | 4.9 | 9.3 | 4.2 | 4.0 |
| 2007 | 131.9 | 76.9 | 1.1 | 33.7 | 4.5 | 8.5 | 3.3 | 3.9 |
| 2008 | 127.3 | 75.8 | 1.1 | 30.9 | 4.5 | 7.6 | 3.5 | 3.9 |
| 2009 | 125.2 | 74.0 | 1.2 | 31.3 | 4.0 | 7.6 | 3.4 | 3.7 |
| 2010 | 128.0 | 72.8 | 1.3 | 34.4 | 3.9 | 8.3 | 3.5 | 3.8 |
| 2011 | 126.7 | 71.2 | 1.3 | 35.0 | 3.7 | 7.8 | 3.4 | 4.3 |
| 2012 | 122.5 | 69.8 | 1.3 | 32.9 | 3.7 | 8.0 | 3.1 | 3.7 |
| 2013 | 119.1 | 67.2 | 1.3 | 31.3 | 3.5 | 7.9 | 3.9 | 4.0 |
| 2014 | 116.9 | 65.1 | 1.3 | 31.7 | 3.5 | 8.1 | 3.3 | 3.9 |
| 2015 | 115.9 | 62.9 | 1.3 | 32.2 | 3.6 | 8.2 | 3.2 | 4.5 |
| 2016 | 114.5 | 61.9 | 1.4 | 32.1 | 3.4 | 8.0 | 3.1 | 4.6 |
| 2017 | 113.2 | 61.8 | 1.3 | 32.4 | 3.3 | 6.5 | 3.0 | 4.9 |
| 2018 | 111.7 | 61.0 | 1.3 | 31.6 | 3.2 | 6.4 | 3.1 | 5.1 |
| 2019(잠정) | 109.5 | 59.2 | 1.4 | 31.6 | 3.1 | 6.3 | 3.0 | 4.9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2. 원예·특용작물

◇◇ 채소류

■ 원예산업과 서기관 김상돈

2019년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5.8% 감소한 225.9천ha이었고, 생산량은 전년보다 5.5% 감소한 8,681천톤이었다. 고추·마늘·양파 등 조미채소류의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배추·무·양배추 등 채소류의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전체 생산량은 감소하였다.

〈표 1-2-4〉 채소류 생산 동향

(단위: ha, 천톤)

| 구분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 채소 | 재배면적 | 316,604 | 403,386 | 386,391 | 297,961 | 245,251 | 252,229 | 251,558 | 246,725 | 224,959 | 217,261 | 226,804 | 239,806 | 225,872 |
| 류 | 생산량 | 8,677 | 10,586 | 11,282 | 9,583 | 8,381 | 8,662 | 9,243 | 9,904 | 8,549 | 8,040 | 8,662 | 9,186 | 8,68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봄 무·배추 재배면적은 12.5천ha로 전년보다 12.3% 감소하여 생산량은 전년보다 9.6% 감소한 572천톤이었다. 고랭지 무·배추 재배면적은 7.3천ha로 전년보다 15.1%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317천톤으로 전년보다 15.3% 감소하였다. 가을 무·배추 재배면적은 16.3천ha로 전년보다 16.0%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1,465천톤으로 전년보다 21.7% 감소하였다.

고추는 재배면적이 32천ha로 전년보다 9.8%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은 9.7% 증가한 78천톤이 생산되었다. 마늘은 재배면적이 28천ha로 전년보다 2.3%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16.9% 증가한 388천톤이 생산되었다. 양파는 재배면적이 22천ha로 전년보다 17.6% 감소하였으며, 생산량은 4.8% 증가한 1,594천톤이 생산되었다.

〈표 1-2-5〉 주요 품목별 생산 동향

| 구분 | | 2018 | | | 2019 | | |
|-------|-----|-----------|-------------|-----------|-----------|-------------|-----------|
| | | 재배면적 (ha) | 단수 (kg/10a) | 생산량 (톤) | 재배면적 (ha) | 단수 (kg/10a) | 생산량 (톤) |
| 엽근 채소 | 배추 | 31,143 | 7,681 | 2,391,946 | 26,381 | 7,182 | 1,894,625 |
| | 무 | 23,406 | 5,275 | 1,234,561 | 23,737 | 5,864 | 1,391,905 |
| | 상추 | 3,773 | 2,479 | 93,543 | 3,629 | 2,634 | 95,582 |
| | 양배추 | 7,906 | 4,701 | 371,651 | 6,980 | 4,702 | 328,198 |
| | 당근 | 2,154 | 3,396 | 73,143 | 2,069 | 3,254 | 67,327 |
| 양념 채소 | 고추 | 28,824 | 248 | 71,509 | 31,644 | 248 | 78,437 |
| | 마늘 | 28,351 | 1,170 | 331,741 | 27,689 | 1,400 | 387,671 |
| | 양파 | 26,425 | 5,756 | 1,520,969 | 21,777 | 7,322 | 1,594,45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과실류

▮ 원예경영과 사무관 강해림

과수 총 재배면적은 1997년 176.1천ha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은 161천ha로 '97년 대비 8.6% 감소한 수준이다. 과종별 재배면적은 사과 33천ha, 배 10천ha, 포도 13천ha, 감귤 21천ha, 단감 8.6천ha, 복숭아 21천ha로 6대 과종 모두 전년대비 재배면적은 감소하였다. 기타 과종 또한 전년대비 재배면적은 감소하여 과수 재배면적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9년 과실 생산량은 2,206천 톤으로 전년대비 2.1%증가한 수준이며, 2018년 대비 사과, 복숭아, 감귤은 증가한 반면 배, 포도, 단감은 재배면적의 감소 또는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신선과실류 수출은 주로 배, 단감, 사과이며, 2019년 수출량은 44천 톤, 수출액은 129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수출량은 2.1% 감소하였고, 수출액은 11.2% 증가하였다. 신선과일 수입은 주로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포도 등이며, 2019년 수입량은 772천 톤으로 전년대비 9.8% 감소하였다.

신선과일 총 공급량은 2,976천톤, 국내소비는 2,932천 톤이며, 1인당 소비량은 전년 수준인 56.6kg으로 나타났다.

〈표 1-2-6〉 과실류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 구 분 | 1995년 | 2000년 | 2005년 | 2010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 수요 | 내수 | 2,473 | 2,747 | 3,029 | 2,778 | 2,855 | 2,997 | 3,049 | 3,106 | 3,148 | 2,970 | 2,934 |
| | 수출 | 11 | 20 | 36 | 40 | 35 | 38 | 39 | 41 | 42 | 45 | 44 |
| 공급 | 생산 | 2,300 | 2,429 | 2,593 | 2,216 | 2,207 | 2,347 | 2,364 | 2,387 | 2,358 | 2,160 | 2,206 |
| | 수입 | 184 | 338 | 472 | 602 | 683 | 688 | 724 | 760 | 832 | 855 | 772 |
| 1인당 소비량(kg) | 54.8 | 58.8 | 62.6 | 57.6 | 59.6 | 61.8 | 59.8 | 60.6 | 61.2 | 57.5 | 56.7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화훼류

▮ 원예경영과 사무관 정현주

화훼류 재배농가수 및 재배면적은 2005년 12,859호, 7,950ha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9년은 6,824호, 4,244ha로 2018년 대비 각각 1.4%, 2.5% 감소하였다. 이는 소비 감소와 수출이 줄어들어 화훼농가가 타작목 전환, 폐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화훼류 생산액은 5,174억원으로 2018년 5,385억원에 비해 3.9%, 211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고소득 작물로 전환함에 따라 농가소득이 일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인당 연간 화훼 소비액은 11,616원으로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등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화훼류 수출은 절화의 경우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며, 동·서양란은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된다. 2019년은 17,159천\$를 수출하여 2018년 18,685천\$에 비해 8.2%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 수출국 일본의 내수경기 침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9년 화훼류 수입은 86,515천\$로 2018년 80,799천\$에 비해 7.1% 증가하였다.

〈표 1-2-7〉 화훼산업 현황

| 구 분 | 2000년 | 2005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재배농가 (호) | 13,080 | 12,859 | 11,588 | 10,685 | 10,347 | 10,054 | 9,147 | 8,688 | 8,328 | 7,837 | 7,421 | 6,918 | 6,824 |
| 재배면적 (ha) | 6,047 | 7,950 | 7,073 | 6,639 | 6,829 | 6,833 | 6,430 | 6,222 | 5,831 | 5,365 | 4,936 | 4,353 | 4,244 |
| 생산액 (억 원) | 6,650 | 10,105 | 8,969 | 8,640 | 8,510 | 8,215 | 7,368 | 7,047 | 6,332 | 5,602 | 5,658 | 5,384 | 5,174 |
| 수출액 (천\$) | 28,888 | 52,142 | 76,222 | 77,179 | 103,067 | 90,596 | 61,182 | 40,604 | 28,460 | 26,434 | 23,630 | 18,685 | 17,159 |
| 수입액 (천\$) | 19,472 | 28,845 | 42,757 | 38,107 | 44,744 | 44,427 | 51,103 | 57,213 | 60,769 | 62,971 | 65,361 | 80,799 | 86,51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특용작물

■ 원예산업과 사무관 박태준

참깨는 농가 고령화와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작물의 특성 등으로 생산량이 199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은 재배면적 증가로 생산량은 2018년 대비 2.0% 증가한 12.9천톤이다.

* 생산량 : ('97)33천톤 → ('00)32 → ('05)23.5 → ('10)12.7 → ('11)9.5 → ('12)9.8 → ('13)12.4 → ('14)12.2 → ('15)11.7 → ('16)13.6 → ('17)14.3 → ('18)12.7 → ('19)12.9

참깨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로서 자급률은 13.8% 수준으로, 연간 약 76천톤 물량이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물량의 대부분이 시장접근물량으로 도입되어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2019년 재배면적은 3.2ha로 전년대비 21.4% 감소하였으며, 생산량은 전년대비 25.3% 감소한 8.2천톤이 생산되어, 자급률은 19.8% 수준이다.

* 생산량 : ('00)12.4 → ('05)8.3 → ('10)13.9 → ('11)10.8 → ('12)11.0 → ('13)11.0 → ('14)12.4 → ('15)11.7 → ('16)15.5 → ('17)14.9 → ('18)11.0 → ('19)8.2

〈표 1-2-8〉 특용작물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 구분 | | 참 개 | | | | | | | | | | 땅콩 | | | | | | | | | | |
|--------|-------|-------|-------|------|------|-------|-------|-------|-------|------|-------|------|------|------|------|------|------|------|------|------|------|---|
| | | 2000 | 2005 | 2010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00 | 2005 | 2010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수요 | 계 | 101.6 | 100.6 | 94.0 | 97.6 | 101.5 | 107.5 | 104.2 | 101.6 | 95.0 | 101.4 | 42.9 | 40.8 | 38.9 | 41.8 | 45.8 | 42.3 | 43.6 | 42.8 | 44.1 | 41.5 | |
| | 당년 소비 | 94.6 | 90.7 | 87.0 | 89.3 | 85.7 | 94.8 | 91.9 | 91.4 | 83.3 | 93.3 | 41.0 | 39.9 | 38.4 | 41.8 | 45.8 | 42.3 | 42.9 | 42.8 | 44.1 | 41.5 | |
| | 수출 | - | - | - | - | - | - | - | - | - | - | 0.4 | - | - | - | - | - | - | - | - | - | - |
| | 차년 이월 | 7.0 | 9.9 | 7.0 | 8.3 | 15.8 | 12.7 | 12.3 | 10.2 | 11.7 | 8.1 | 1.5 | 0.9 | 0.5 | - | - | - | 0.7 | - | - | - | - |
| 공급 | 계 | 101.6 | 100.6 | 94.0 | 97.6 | 101.5 | 107.5 | 104.2 | 101.6 | 95.0 | 101.4 | 42.9 | 40.8 | 38.9 | 41.8 | 45.8 | 42.3 | 43.6 | 42.8 | 44.1 | 41.5 | |
| | 전년 이월 | 7.5 | 13.1 | 5.6 | 7.3 | 8.3 | 15.8 | 12.7 | 12.3 | 10.2 | 11.7 | 2.7 | 1.1 | - | 0.7 | - | - | - | - | - | - | - |
| | 생산 | 24.1 | 20.9 | 12.8 | 12.4 | 12.2 | 11.7 | 13.6 | 14.3 | 12.7 | 12.9 | 12.4 | 8.3 | 10.2 | 11.0 | 12.4 | 11.7 | 15.5 | 14.9 | 11.0 | 8.2 | |
| | 수입 | 70.0 | 66.6 | 75.6 | 77.9 | 81.0 | 80.0 | 77.9 | 75.0 | 72.1 | 76.8 | 27.8 | 31.4 | 28.7 | 30.1 | 33.4 | 30.6 | 28.1 | 27.9 | 33.1 | 33.3 | |
| 자급률(%) | | 26 | 23 | 14.7 | 13.9 | 14.2 | 12.4 | 14.9 | 15.7 | 15.3 | 13.8 | 30 | 21 | 27 | 26.3 | 27.0 | 27.9 | 36.1 | 35.0 | 24.9 | 19.8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버섯 생산량은 2014년 이후 재배면적 감소 등에 따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9년 농산 버섯 생산량은 2018년 대비 12.8% 증가한 153천톤이며, 주요 품목은 양송이, 느타리, 팽이, 새송이 버섯으로 4품목의 생산량은 148.8천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97.3%를 차지한다.

* 생산량 : ('97)114천톤 → ('00)117 → ('05)162 → ('10)174 → ('11)165 → ('12)173 → ('13)161.6 → ('14)182.6 → ('15)167.4 → ('16)162.3 → ('17)149.9 → ('18)135.6 → ('19)152.9

〈표 1-2-9〉 버섯류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 | | 2000 | 2005 | 2010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수요 | 계 | 126.8 | 174.2 | 190.2 | 191.4 | 182.8 | 214.4 | 216.4 | 216.2 | 203.9 | 190.7 | 209.4 |
| | 당년 소비 | 126.6 | 173.7 | 169.0 | 176.8 | 166.5 | 199.0 | 201.3 | 200.6 | 186.4 | 170.9 | 187.4 |
| | 수출 | 0.2 | 0.5 | 21.2 | 14.6 | 16.3 | 15.4 | 15.1 | 15.6 | 17.5 | 19.8 | 22.0 |
| | 차년 이월 | - | - | - | - | - | - | - | - | - | - | - |
| 공급 | 계 | 126.8 | 174.2 | 190.2 | 191.4 | 182.8 | 214.4 | 216.4 | 216.2 | 203.9 | 190.7 | 209.4 |
| | 전년 이월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 | 117.6 | 162.1 | 173.6 | 173.4 | 161.6 | 182.6 | 167.4 | 162.3 | 149.9 | 135.6 | 152.9 |
| | 수입 | 9.2 | 12.1 | 13.8 | 18.0 | 21.2 | 31.8 | 49.0 | 53.9 | 54.0 | 55.1 | 56.4 |
| 자급률(%) | | 93 | 93 | 103 | 98.1 | 97.1 | 91.7 | 83.2 | 80.9 | 73.5 | 79.3 | 81.6 |

수출은 팥이, 새송이 버섯의 생산기술 향상으로 가격·품질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수출액은 2018년 대비 9.6% 증가한 54,411천 달러이다.

* 수출액 : ('00)5,562천 달러 → ('09)33,039 → ('10)38,885 → ('11) 38,231 → ('12) 33,501 → ('13) 37,999 → ('14) 36,919 → ('15) 36,606 → ('16) 37,932 → ('17) 42,478 → ('18) 49,644 → ('19) 54,411

〈표 1-2-10〉 버섯종류별 수출액

(단위 : 천 달러)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수출액 (천불) | 23,185 | 33,039 | 38,885 | 38,231 | 33,501 | 37,999 | 36,919 | 36,606 | 37,932 | 42,478 | 49,644 | 54,411 |
| 팽 이 | 11,259 | 21,277 | 26,296 | 22,591 | 16,863 | 19,486 | 18,131 | 16,417 | 16,519 | 18,787 | 21,479 | 22,732 |
| 새송이 | 0 | 6,270 | 8,572 | 11,311 | 12,483 | 14,155 | 14,471 | 15,588 | 17,173 | 19,246 | 23,497 | 26,297 |
| 느타리 | 1,347 | 224 | 312 | 324 | 746 | 1,224 | 1,304 | 1,795 | 1,454 | 1,155 | 1,176 | 1,383 |
| 기 타 | 10,579 | 5,268 | 3,705 | 4,005 | 3,409 | 3,134 | 3,013 | 2,806 | 2,786 | 3,290 | 3,492 | 3,999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3. 축산물과 사료작물

◆ 축산물

■ 축산경영과 사무관 김정수, 안정모, 이상훈, 홍석구

▶ 쇠고기

2019년 쇠고기 소비량은 672천톤으로 전년(654천톤)보다 2.8% 증가하였다. 2019년도 소비량 중 국내산은 245천톤으로 전년대비 3.7%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산은 426천톤이 소비되었다. 한편 2019년 연간 1인당 소비량은 13.0kg로 전년(12.7kg)보다 2.4% 증가하였다.

산지 소값은 2010년이후 지속적인 사육마리수 증가에 따른 출하물량 증가로 2013년 연 평균 가격(평균 600kg기준)이 3,688천원까지 하락하였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19년 암소 5,646천원, 수소 5,476천원)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암소감축 등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2015년 291만두까지 감소하다가 2018년 311만두, 2019년 324만두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한육우 사육가구수는 2018년 97천호, 2019년 95천호로 전년 대비 2.8% 감소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 마리수는 2018년 32.2두, 2019년 34.4두로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다.

〈표 1-2-11〉 쇠고기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 총 소 비 량 | 396 | 431 | 505 | 486 | 519 | 542 | 554 | 594 | 583 | 654 | 672 |
| - 국 내 산 | 198 | 195 | 226 | 245 | 272 | 273 | 267 | 231 | 239 | 237 | 245 |
| - 수 입 산 | 198 | 245 | 289 | 254 | 257 | 282 | 299 | 363 | 344 | 417 | 426 |
| ○ 1인당 소비량(kg) | 8.1 | 8.7 | 10.2 | 9.8 | 10.4 | 10.8 | 11.0 | 11.5 | 11.3 | 12.7 | 13.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 돼지고기

돼지고기의 2019년 총 소비량은 2018년 1,399천톤보다 0.6% 감소한 1,390천톤이며, 1인당 소비량은 2018년 27.0kg에서 2019년 26.8kg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돼지 사육두수는 2018년 1,133만두에서 2019년에는 1,128만두로 감소하였고, 모돈수도 2018년 12월 1,063천두에서 2019년 1,026천두로 감소하였다.

사육농장 수는 2018년 12월 6,188호에서 2019년 6,133호로 0.9% 감소하였으나, 농장당 평균 사육두수가 2018년 12월 1,831두에서 2019년 1,839두로 증가하였다.

연평균 산지 돼지가격은 사육두수 증가로 2018년 362천원/110kg에서 2019년 285천원/110kg으로 하락하였다.

〈표 1-2-12〉 돼지고기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 총 소 비 량 | 932 | 940 | 946 | 1,025 | 1,038 | 1,104 | 1,200 | 1,209 | 1,263 | 1,398 | 1,390 |
| - 국 내 산 | 722 | 761 | 576 | 750 | 853 | 830 | 842 | 891 | 894 | 935 | 969 |
| - 수 입 산 | 210 | 179 | 370 | 275 | 185 | 274 | 358 | 318 | 369 | 463 | 421 |
| ○ 1인당 소비량(kg) | 19.0 | 19.2 | 18.8 | 19.2 | 20.9 | 21.8 | 22.8 | 24.1 | 24.5 | 27.0 | 26.8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 닭고기

닭고기의 2019년 총 소비량은 2018년 735천톤보다 3.9% 증가한 764천톤이며 1인당 소비량은 2018년 14.2kg, 2019년 14.8kg으로 전년대비 0.6kg 증가하였다. 닭고기 산지가격은 2018년 1,468원/kg보다 7.1% 감소하여 2019년 연평균 1,364원/kg이었으며, 2019년 12월 기준 전체 사육 마릿수는 2018년 86백만마리 보다 3.3% 증가한 89백만마리였다.

전체 사육가구 수는 2019년 12월에 1,508호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58,845마리였다. 30,000수 이상 전업가구 수는 1,292호로 규모화·전업화가 가속되고 있다.

〈표 1-2-13〉 닭고기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 총 소 비 량 | 469.1 | 522.3 | 566.2 | 579.4 | 579.9 | 647 | 675.8 | 704.8 | 685.5 | 734.6 | 763.6 |
| - 국 내 산 | 408.5 | 435.5 | 456.5 | 463.7 | 473.4 | 527.9 | 585.3 | 599.4 | 558.3 | 603.8 | 637.1 |
| - 수 입 산 | 10.1 | 16 | 15.3 | 20.9 | 26.1 | 19.3 | 26.4 | 24.7 | 3.5 | 32.6 | 49.5 |
| ○ 1인당 소비량(kg) | 70.6 | 105.8 | 130.9 | 130.4 | 126.7 | 141.4 | 118.6 | 128.3 | 131.9 | 162.8 | 177.8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 계란

계란의 2019년 총 소비량은 731천톤으로 2018년 691천톤 보다 5.8% 증가하였고, 1인당 소비량은 14.1kg으로 2018년 13.3kg 대비 0.8kg 증가하였으며, 산지 계란가격은 2018년 934원 보다 4.0% 증가한 971원 / 10개(특란기준)이었다.

전체 사육가구 수는 2019년 12월에 963호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75,494마리였다. 30,000수 이상 전업가구 수는 583호였으며 5만수 이상 사육 가구의 사육마릿수가 전체 사육 마릿수의 84.3% 수준인 61백만마리로 상당히 규모화 되었다.

〈표 1-2-14〉 계란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 총 소 비 량 | 580.7 | 579.1 | 575.9 | 606.8 | 631 | 660.1 | 679.8 | 702.8 | 638.6 | 690.9 | 731 |
| - 생 산 량 | 579.3 | 577.5 | 573.1 | 604.5 | 629.1 | 657.6 | 677.8 | 700.7 | 621.4 | 686.8 | 727 |
| - 수 출 량 | - | 0.5 | 0.1 | 0.5 | 0.6 | 0.1 | 0.1 | 0.2 | - | 0.1 | 0.3 |
| - 수 입 량 | 1.7 | 2.1 | 2.9 | 2.8 | 2.5 | 2.6 | 2.1 | 2.3 | 17.2 | 4.2 | 4.3 |
| ○ 1인당 소비량(kg) | 11.9 | 11.8 | 11.6 | 12.1 | 12.6 | 13 | 13.4 | 13.7 | 12.4 | 13.4 | 14.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 우유

2019년 원유 총 생산량은 2,049천톤으로 2018년 2,041천톤 대비 0.4%(8천톤) 증가하였다.

유제품 소비량(수출 포함)은 4,347천톤(치즈, 분유 등의 수입 유제품 포함)으로 2018년 4,264천톤보다 1.9% 증가하였으며, 시유 소비량도 2019년 1,560천톤으로 2018년보다 0.7%(11천톤) 감소하였다.

2019년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81.8kg으로 2018년 80.1kg보다 2.1% 증가하였으며, 시유 소비량은 33.2kg으로 2018년 33.0kg보다 0.6% 증가하였다. 유제품 수입량 증가 등으로 유제품 소비량은 증가하였으며, 대체음료시장 성장, 저출산 등으로 음용유 소비는 정체상태에 있다.

2019년도 국산원유 2,049천톤 중 유제품 가공에 직접 투입한 양은 1,917천톤(백색시유 1,387, 가공시유 174, 기타 유제품 356)으로서 전년도 투입량 1,932천톤에 보다 0.8% 감소하였으며, 잉여량(분유가공에 투입된 원유량)은 2018년 108천톤에 비해 22.2% 증가한 132천톤 이었다.

2019년 우유 자급률은 국산원유 생산량 감소와 수입유제품 증가로 인해 2018년에 비해 0.8% 감소한 48.5%를 기록하였으며, 원유 생산비의 경우 사료비, 가축상각비 상승 등 영향으로 2018년 775원/L보다 2.1% 상승한 791원/L로 조사되었다

젖소 사육두수는 2019년 12월 408천두로 지난해(408천두)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며, 젖소 사육 농장수는 2018년 12월 6,360호에서 2019년 6,168호로 3.0% 감소되었다.

〈표 1-2-15〉 우유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 총 소 비 량 | 3,111 | 3,249 | 3,596 | 3,452 | 3,679 | 3,757 | 3,936 | 4,023 | 4,199 | 4,264 | 4,347 |
| - 국 내 산 | 2,110 | 2,073 | 1,889 | 2,111 | 2,093 | 2,214 | 2,168 | 2,070 | 2,058 | 2,041 | 2,049 |
| - 수 입 산 | 1,001 | 1,176 | 1,707 | 1,341 | 1,586 | 1,543 | 1,768 | 1,953 | 2,141 | 2,223 | 2,298 |
| ○ 1인당 소비량(kg) | 61.7 | 64.2 | 70.7 | 67.2 | 71.3 | 72.4 | 75.7 | 76.4 | 79.5 | 80.1 | 81.8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 사료작물

■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홍성현, 서주형, 남기현

2019년도 가축용 사료의 총수급량은 29,699천톤으로 전년(28,687천톤)보다 3.5% 증가하였으며, 이중 농후사료가 23,649천톤, 조사료가 6,050천톤을 차지하였다. 농후사료 중 배합사료의 생산은 20,862천톤으로 전년 20,139천톤보다 3.6% 증가하였다.

〈표 1-2-16〉 사료 수급 추이

(단위 : 천톤, %)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A) | 2019 (B) | 증감률 (B/A) |
|---------------|--------|--------|--------|--------|--------|--------|--------|--------|----------|----------|-----------|
| 합 계 | 25,157 | 24,960 | 26,845 | 27,366 | 26,876 | 27,426 | 28,595 | 27,752 | 28,687 | 29,699 | 3.5 |
| 농 후 사 료 | 20,124 | 19,383 | 21,182 | 21,635 | 21,299 | 21,900 | 23,167 | 21,987 | 22,791 | 23,649 | 3.8 |
| - 배 합 사 료 | 17,710 | 16,815 | 18,640 | 19,086 | 18,870 | 19,295 | 19,593 | 19,204 | 20,139 | 20,862 | 3.6 |
| - 농 가 자 급 사 료 | 2,414 | 2,568 | 2,542 | 2,549 | 2,429 | 2,608 | 3,574 | 2,783 | 2,652 | 2,787 | 5.1 |
| 조 사 료 | 5,033 | 5,624 | 5,676 | 5,814 | 5,659 | 5,526 | 5,428 | 5,765 | 5,896 | 6,050 | 2.6 |
| - 사료작물 및 목초류 | 1,870 | 2,454 | 2,503 | 2,690 | 2,762 | 2,245 | 2,559 | 2,260 | 2,555 | 2,715 | 6.3 |
| - 산야초, 볏짚 등 | 3,163 | 3,170 | 3,173 | 3,124 | 2,897 | 3,281 | 2,869 | 3,505 | 3,341 | 3,335 | △0.18 |

주 : 조사료는 건물(乾物) 상태 기준이며, 배합사료는 배합사료 생산에 투입된 원료사용량 기준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종별로는 양계용 4.1%, 양돈용 4.5%, 한·육우용 3.3%, 기타 2.1% 증가하였으며, 젖소용은 0.7% 감소하였다. 이는 양계용, 양돈용, 한·육우의 사육 두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여 배합사료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젖소의 경우 연중 사육 두수 감소와 조사료 생산증가에 따라 조사료의 배합사료 대체량이 늘어나면서 배합사료 생산량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1-2-17〉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단위 : 천톤, %)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A) | 2019 (B) | 증감률 (B/A) |
|-------|--------|--------|--------|--------|--------|--------|--------|--------|-------------|-------------|--------------|
| 합 계 | 17,710 | 16,815 | 18,640 | 19,086 | 18,870 | 19,295 | 19,593 | 19,204 | 20,139 | 20,862 | 3.6 |
| 양 계 용 | 4,658 | 4,748 | 4,823 | 4,790 | 5,171 | 5,671 | 5,813 | 5,432 | 5,953 | 6,196 | 4.1 |
| 양 돈 용 | 5,535 | 4,482 | 5,685 | 6,136 | 5,962 | 6,094 | 6,256 | 6,365 | 6,554 | 6,850 | 4.5 |
| 젖 소 용 | 1,292 | 1,240 | 1,337 | 1,332 | 1,340 | 1,330 | 1,252 | 1,192 | 1,196 | 1,188 | △0.7 |
| 한육우용 | 4,761 | 4,792 | 5,143 | 5,213 | 4,951 | 4,567 | 4,543 | 4,567 | 4,637 | 4,791 | 3.3 |
| 기 타 | 1,464 | 1,553 | 1,652 | 1,615 | 1,446 | 1,633 | 1,728 | 1,648 | 1,799 | 1,837 | 2.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또한, 국내 초지조성 현황으로써 2019년 현재 초지면적은 32,8천ha이며 230천톤의 목초를 생산하여 전년보다 초지면적과 목초생산량은 각각 1.5%, 1.7% 감소하였다. 이는 환경문제로 인한 규제강화와 지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신규 초지조성이 어려워진 반면, 다른 용도로 전환함에 따라 초지면적이 줄어든 것이다.

〈표 1-2-18〉 초지조성 실적

(단위 : ha, 천톤, %)

| 구 분 | 2006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A) | 2019 (B) | 증감률 (B-A/A) |
|---------|--------|--------|--------|--------|--------|--------|--------|--------|--------|--------|-------------|-------------|----------------|
| 관 리 면 적 | 42,114 | 40,057 | 39,371 | 38,953 | 37,675 | 37,030 | 35,763 | 35,093 | 34,452 | 33,992 | 33,496 | 32,788 | △2.1 |
| 목초 생산량 | 294 | 280 | 273 | 273 | 266 | 277 | 268 | 246 | 241 | 238 | 234 | 230 | △1.7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제2절 식품 수급동향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연아, 연구원 신성용

◆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2008~2018년간 연평균 식료품비 지출액의 증가율은 3.3%로 같은 기간 소비 지출액 증가율(3.2%)과 비슷한 수준이다. 식품류별로는 기타식품(9.0%), 당류 및 과자(5.2%), 빵 및 떡류(4.9%), 육류 및 육류가공품(4.7%)가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기타식품의 높은 증가율은 기타식품에 포함된 즉석·동결식품의 연평균 증가율이 15.1%로 높기 때문이다. 해조 및 해조가공품(-3.2%)은 오히려 지출이 감소하였다. 식료품비 지출의 식품별 비중을 보면 외식비가 2018년 4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육류 및 육류가공품(9.5%), 과일 및 과일가공품(6.4%), 채소 및 채소가공품(5.6%),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5.3%)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유지류(0.4%), 해조 및 해조가공품(0.6%), 조미식품(2.2%)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1-2-19〉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 지출액 추이(전국가구 1인 이상)

(단위 : 천 원, %)

| 연도 | 소비 지출 | 식료품 | 곡물 및 곡물가공품 | 빵 및 떡류 | 육류 및 육류가공품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유제품 및 알 | 유지류 | 과일 및 과일가공품 | 채소 및 채소가공품 | 해조 및 해조가공품 | 당류 및 과자 | 조미 식품 | 기타 식품 | 차, 음료, 주류 | 외식비 |
|----------|---------|------------------|---------------|---------------|----------------|---------------|---------------|--------------|---------------|---------------|--------------|---------------|---------------|---------------|---------------|-----------------|
| 2008 | 1,855.5 | 510.3 (100.0) | 34.5 (6.8) | 14.4 (2.8) | 42.4 (8.3) | 30.8 (6.0) | 22.6 (4.4) | 2.4 (0.5) | 31.2 (6.1) | 29.1 (5.7) | 6.0 (1.2) | 15.8 (3.1) | 10.0 (2.0) | 8.4 (1.6) | 14.5 (2.8) | 248.1 (48.6) |
| 2011 | 2,102.3 | 558.9 (100.0) | 33.6 (6.0) | 18.3 (3.3) | 52.1 (9.3) | 33.5 (6.0) | 26.4 (4.7) | 2.5 (0.4) | 35.3 (6.3) | 34.2 (6.1) | 3.9 (0.7) | 21.2 (3.8) | 13.8 (2.5) | 8.9 (1.6) | 17.3 (3.1) | 258.0 (46.2) |
| 2014 | 2,206.3 | 589.0 (100.0) | 34.5 (5.9) | 19.0 (3.2) | 54.8 (9.3) | 32.3 (5.5) | 27.1 (4.6) | 2.5 (0.4) | 39.2 (6.7) | 32.2 (5.5) | 3.9 (0.7) | 23.8 (4.0) | 11.1 (1.9) | 10.5 (1.8) | 17.6 (3.0) | 280.5 (47.6) |
| 2015 | 2,193.0 | 587.1 (100.0) | 32.2 (5.5) | 19.2 (3.3) | 57.3 (9.8) | 31.5 (5.4) | 25.8 (4.4) | 2.7 (0.5) | 37.6 (6.4) | 33.3 (5.7) | 3.7 (0.6) | 23.9 (4.1) | 11.2 (1.9) | 11.1 (1.9) | 17.4 (3.0) | 280.4 (47.8) |
| 2016 | 2,165.1 | 582.4 (100.0) | 29.7 (5.1) | 18.6 (3.2) | 58.0 (10.0) | 30.4 (5.2) | 24.6 (4.2) | 2.5 (0.4) | 36.9 (6.3) | 34.4 (5.9) | 3.5 (0.6) | 22.5 (3.9) | 10.3 (1.8) | 12.1 (2.1) | 17.2 (3.0) | 281.6 (48.4) |
| 2017 | 2,556.8 | 701.3 (100.0) | 32.6 (4.6) | 22.5 (3.2) | 66.0 (9.4) | 38.8 (5.5) | 27.4 (3.9) | 3.0 (0.4) | 44.3 (6.3) | 40.8 (5.8) | 4.5 (0.6) | 26.1 (3.7) | 14.1 (2.0) | 18.0 (2.6) | 22.2 (3.2) | 48.6 (48.6) |
| 2018 | 2537.6 | 702.8 (100.0) | 36.6 (5.2) | 23.3 (3.3) | 66.9 (9.5) | 37.6 (5.3) | 26.4 (3.8) | 2.9 (0.4) | 45.0 (6.4) | 39.5 (5.6) | 4.3 (0.6) | 26.1 (3.7) | 15.2 (2.2) | 20.0 (2.8) | 22.8 (3.2) | 336.1 (47.8) |
| '08-2018 | 3.2% | 3.3% | 0.6% | 4.9% | 4.7% | 2.0% | 1.6% | 2.0% | 3.7% | 3.1% | -3.2% | 5.2% | 4.3% | 9.0% | 4.6% | 3.1%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

2018년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소비 지출액을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출액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식품류에 따라 증가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간 소득계층(3분위)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큰 다섯 가지 품목은 과일 및 과일가공품, 외식비, 육류 및 육류가공품, 빵 및 떡류, 기타식품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작은 다섯 가지 품목은 해조 및 해조가공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당류 및 과자, 조미식품, 곡물 및 곡물가공품이다.

〈표 1-2-20〉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2018년도 전국가구 평균)

(단위: 천 원, %)

| 구 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
| 소비지출 | 1,156.5 (47.8) | 1,759.7 (72.7) | 2,421.3 (100.0) | 3,066.8 (126.7) | 4,283.3 (176.9) |
| 식료품 | 357.4 (51.3) | 519.6 (74.5) | 697.2 (100.0) | 846.1 (121.3) | 1093.6 (156.8) |
| 곡물 및 곡물가공품 | 29.7 (81.6) | 33.8 (92.9) | 36.4 (100.0) | 39.3 (108.0) | 43.7 (120.0) |
| 빵 및 떡류 | 10.3 (43.9) | 17.2 (73.1) | 23.5 (100.0) | 28.3 (120.2) | 37.3 (158.7) |
| 육류 및 육류가공품 | 34.7 (53.5) | 47.8 (73.7) | 64.9 (100.0) | 78.3 (120.5) | 108.8 (167.5) |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30.0 (80.8) | 32.1 (86.5) | 37.2 (100.0) | 38.9 (104.7) | 49.7 (133.9) |
| 유제품 및 알 | 14.9 (53.8) | 19.1 (69.0) | 27.6 (100.0) | 32.0 (115.8) | 38.3 (138.8) |
| 유지류 | 2.2 (81.6) | 2.6 (97.5) | 2.7 (100.0) | 3.4 (126.9) | 3.8 (141.2) |
| 과일 및 과일가공품 | 24.7 (59.2) | 33.1 (79.2) | 41.8 (100.0) | 50.1 (119.8) | 75.4 (180.4) |
| 채소 및 채소가공품 | 35.0 (94.6) | 33.9 (91.8) | 37.0 (100.0) | 39.8 (107.6) | 51.7 (139.7) |
| 해조 및 해조가공품 | 3.4 (82.6) | 3.7 (87.9) | 4.2 (100.0) | 4.8 (115.7) | 5.6 (134.4) |
| 당류 및 과자 | 12.0 (41.4) | 18.4 (63.7) | 28.9 (100.0) | 33.4 (115.6) | 37.9 (131.0) |
| 조미식품 | 15.7 (115.0) | 14.4 (105.9) | 13.6 (100.0) | 15.3 (112.6) | 17.0 (124.6) |
| 기타식품 | 10.4 (51.9) | 15.4 (76.5) | 20.1 (100.0) | 24.5 (122.1) | 29.4 (146.4) |
| 차·음료·주류 | 12.7 (54.8) | 19.2 (83.0) | 23.1 (100.0) | 27.3 (117.9) | 31.8 (137.6) |
| 외식비 | 121.7 (36.2) | 228.8 (68.1) | 336.2 (100.0) | 430.7 (128.1) | 563.2 (167.5)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식품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식품영양소의 수요구조도 변화한다. 영양소별로 1인 1일당 에너지는 증가추세에 있다가, 최근 다소 감소하고 있다. 지방과 단백질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섭취량은 에너지 1,968kcal, 단백질 71.1g, 지방 46.9g, 철 11.6mg, 비타민C 60.4mg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1〉 1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 연도 | 에너지 kcal | 단백질 g | 지방 g | 칼슘 mg | 철 mg | 비타민A μg (RE/RAE) | 티아민 μg | 리보플라빈 μg | 나이아신 mg | 비타민C mg |
|------|----------|-------|------|-------|------|-----------------------------|-------------------|---------------------|---------|---------|
| 1998 | 1,931 | 72.8 | 40.8 | 501.3 | 12.3 | 606.8 | 1,338 | 1,086 | 15.4 | 122.7 |
| 2001 | 1,881 | 70.1 | 41.6 | 494.6 | 12.1 | 619.4 | 1,271 | 1,145 | 16.6 | 133.2 |
| 2005 | 1,979 | 75.0 | 45.2 | 552.5 | 13.8 | 781.3 | 1,308 | 1,212 | 17.0 | 99.1 |
| 2007 | 1,831 | 65.9 | 37.7 | 468.7 | 13.1 | 736.1 | 1,239 | 1,070 | 14.7 | 93.2 |
| 2009 | 1,885 | 67.5 | 39.9 | 491.5 | 13.5 | 768.5 | 1,260 | 1,189 | 15.5 | 100.4 |
| 2011 | 2,030 | 73.5 | 45.0 | 515.2 | 14.6 | 812.5 | 1,361 | 1,278 | 17.0 | 103.9 |
| 2013 | 2,056 | 71.1 | 46.8 | 494.1 | 17.2 | 707.3 | 2,012 | 1,363 | 15.8 | 91.4 |
| 2015 | 2,086 | 73.2 | 48.9 | 497.5 | 16.9 | 720.1 | 2,015 | 1,405 | 16.6 | 97.2 |
| 2016 | 2,028 | 72.8 | 47.1 | 519.1 | 11.9 | 388.5 | 1,360 | 1,589 | 13.5 | 61.7 |
| 2017 | 1,992 | 71.6 | 46.8 | 520.7 | 11.8 | 372.5 | 1,326 | 1,580 | 13.4 | 62.5 |
| 2018 | 1,968 | 71.1 | 46.9 | 514.1 | 11.6 | 373 | 1,329 | 1,603 | 13.1 | 60.4 |

주 1) 비타민A의 단위는 RE를 사용하였으나 영양소섭취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16년부터 RAE사용

주 2) 비타민C의 큰 감소는 2017년 DB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연도별 비교 시 유의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

평균 영양소 섭취량을 영양섭취기준과 비교한 결과, 대부분 해당 영양소의 권장섭취수준과 유사했으나 칼슘섭취량은 권장량의 68.0%로 낮았다. 에너지는 95.6% 수준이며, 단백질(138.4%), 철(115.9%), 티아민(120.8%), 리보플라빈(124.9%)은 섭취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22〉 영양소별 영양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비율의 변화 추이

(단위 : %)

| 연도 영양소 | 1998 | 2001 | 2005 | 2007 | 2009 | 2011 | 2013 | 2015 | 2016 | 2017 | 2018 |
|-----------|-------|-------|-------|-------|-------|-------|-------|-------|-------|-------|-------|
| 에너지 | 91.9 | 90.2 | 96.5 | 88.5 | 91.1 | 98.2 | 99.9 | 101.2 | 98.1 | 96.8 | 95.6 |
| 단백질 | 115.6 | 123.8 | 166.9 | 144.2 | 146.7 | 159.1 | 154.3 | 157.6 | 141.4 | 139.8 | 138.4 |
| 칼슘 | 71.4 | 70.3 | 75.8 | 64.0 | 67.1 | 71.9 | 69.3 | 69.7 | 68.7 | 68.9 | 68.0 |
| 철 | 90.7 | 94.7 | 127.6 | 121.7 | 125.4 | 142.5 | 170.0 | 168.2 | 118.1 | 117.6 | 115.9 |
| 비타민 A | 92.9 | 94.5 | 121.6 | 112.3 | 118.1 | 124.6 | 109.6 | 111.6 | 59.5 | 57.5 | 57.3 |
| 티아민 | 125.3 | 118.2 | 122.9 | 114.8 | 115.9 | 124.7 | 183.7 | 183.2 | 123.9 | 121.1 | 120.8 |
| 리보플라빈 | 85.8 | 90.6 | 96.8 | 84.0 | 93.2 | 100.2 | 106.4 | 109.1 | 123.9 | 123.6 | 124.9 |
| 나이아신 | 108.6 | 117.2 | 120.6 | 103.1 | 107.8 | 118.5 | 109.9 | 114.9 | 93.5 | 93.2 | 90.5 |
| 비타민 C | 233.0 | 196.9 | 107.7 | 99.8 | 107.4 | 110.8 | 97.2 | 103.4 | 67.3 | 68.2 | 65.6 |

주 1) 영양소 섭취기준 = 제1기(1998) : 한국인 영양권장량 제6차 개정(한국영양학회, 1995)/ 제2기(2001) : 한국인 영양권장량 제7차 개정(한국영양학회, 2000)/ 제3, 4기(2005, 2007-2009) :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05)/ 제5, 6기(2010-2015) :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판(한국영양학회, 2010)/ 제7기 1차년도(2016) :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 에너지, 필요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 나트륨, 칼륨, 총분섭취량; 그 외 영양소, 권장섭취량(또는 영양권장량)

주 2) 비타민A의 단위는 RE를 사용하였으나 영양소섭취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16년부터 RAE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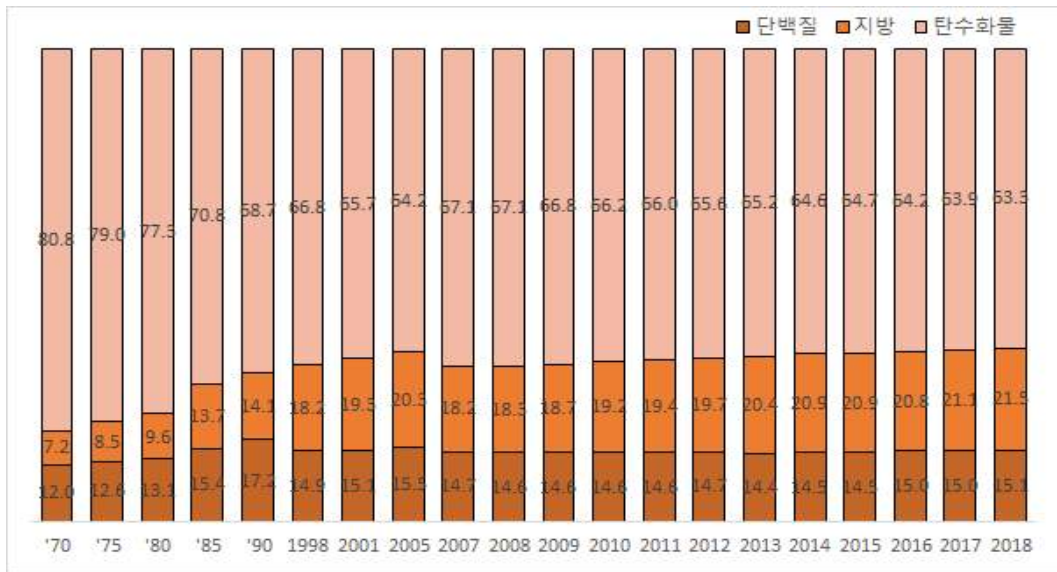
주 3) 비타민C의 큰 감소는 2017년 DB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연도별 비교 시 유의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

섭취에너지의 영양소 구성 비율은 2018년을 기준으로 탄수화물 63.3%, 단백질 15.1%, 지방 21.5%로 나타났다. 탄수화물의 에너지 구성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단백질의 에너지 구성 비율은 2000년대부터 큰 변동이 없다. 반면 지방의 에너지 구성 비율은 1970년대(7.2%)부터 2005년(20.3%)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 18.2%로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2-1〉 영양소별 에너지섭취분율 변화 추이

(단위 : %)



주: 1) 단백질급원 에너지섭취분율 : ((단백질 섭취량)×4)의 ((단백질 섭취량)×4+(지방 섭취량)×9+(탄수화물 섭취량)×4)에 대한 분율, 만1세이상

2) 지방 및 탄수화물급원 에너지섭취분율 : 단백질급원 에너지섭취분율과 같은 정의에 의해 산출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

2. 식품 수요현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연아, 연구원 윤찬미

◆ 1인당 식품공급 현황

2018년 쌀의 1인당 연간 공급량은 0.70% 증가하여 72.3kg을 기록하였다. 한편, 밀과(1.86%), 옥수수(2.44%)는 1인당 연간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채소류는 생산량이 증가하여 식용공급량 또한 증가하였으며(1인당 연간 공급량(4.88%), 과실류는 생산량 및 식용공급량이 감소하였다(7.42%). 육류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식용공급량도 대폭(6.99%) 증가하였다.

2018년도 국민 1인당 연간 쌀 공급량은 72.3kg(1인 1일당 198.0g)으로 전년도보다 0.70% 증가하였다. 연간 보리 공급량은 1.3kg(1인 1일당 3.6g)으로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도 국민 1인당 연간 밀 공급량은 31.6kg(1인 1일당 86.6g)으로 전년도보다 1.86% 감소하였다. 2018도 국민 1인당 연간 옥수수 공급량은 28.0kg(1인 1일당 76.6g)으로 전년도보다 2.44% 감소하였다.

2018년도 국민 1인당 연간 서류 공급량은 11.7kg(1인 1일당 32.1g)으로 전년도보다 5.41% 증가하였다. 감자는 연간 국민 1인당 7.6kg(1인 1일당 20.8g)이 공급되어 전년도보다 11.76%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고구마는 국민 1인당 연간 4.1kg(1인 1일당 11.3g)이 공급되어 전년도보다 크게(6.82%) 감소하였다.

2018년도 국민 1인당 연간 채소류 공급량은 150.5kg(1인 1일당 412.2g)으로 전년도보다 7kg(4.88%) 증가하였다. 2018년도의 국민 1인당 연간 과실류 공급량은 38.7kg(1인 1일당 105.9g)으로 전년도보다 크게(7.42%) 감소하였다.

2018년도의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공급량은 64.3kg(1인 1일당 176.0g)으로 전년도보다 4.2kg(6.99%)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i) 쇠고기는 국민 1인당 연간 12.2kg(1인 1일당 33.5g)이 공급되어 전년도보다 10.91% 증가하였다. (ii) 돼지고기의 국민 1인당 연간 공급량은 26.0kg(1인 1일당 71.1g)으로 전년도보다 5.26% 증가한 수준이다. (iii) 닭고기는 국민 1인당 연간 15.0kg(1인 1일당 41.0g)이 공급되어 전년도보다 8.70% 증가하였다.

〈표 1-2-23〉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단위 : kg, %)

| 품 목 | 2017(확정) | 2018(잠정) | 증가율(%) |
|-------|----------|----------|--------|
| 곡 류 | 137.7 | 136.9 | -0.58 |
| 쌀 | 71.8 | 72.3 | 0.70 |
| 보 리 | 1.3 | 1.3 | 0.00 |
| 밀 | 32.2 | 31.6 | -1.86 |
| 옥 수수 | 28.7 | 28.0 | -2.44 |
| 기 타 | 3.6 | 3.7 | 2.78 |
| 서 류 | 11.1 | 11.7 | 5.41 |
| 감 자 | 6.8 | 7.6 | 11.76 |
| 고 구 마 | 4.4 | 4.1 | -6.82 |
| 설탕 류 | 24.1 | 22.7 | -5.81 |
| 두 류 | 8.5 | 8.4 | -1.18 |
| 콩 | 6.5 | 6.4 | -1.54 |
| 팥 | 0.5 | 0.6 | 20.00 |
| 기 타 | 1.5 | 1.3 | -13.33 |
| 견 과 류 | 1.7 | 1.7 | 0.00 |
| 종 실 류 | 0.9 | 0.7 | -22.22 |
| 참 깨 | 0.3 | 0.3 | 0.00 |
| 기 타 | 0.6 | 0.4 | -33.33 |
| 채 소 류 | 143.5 | 150.5 | 4.88 |
| 과 실 류 | 41.8 | 38.7 | -7.42 |
| 육 류 | 60.1 | 64.3 | 6.99 |
| 쇠 고 기 | 11.0 | 12.2 | 10.91 |
| 돼지고기 | 24.7 | 26.0 | 5.26 |
| 닭 고 기 | 13.8 | 15.0 | 8.70 |
| 부 산 물 | 10.7 | 11.1 | 3.74 |
| 계 란 류 | 9.6 | 10.6 | 10.42 |
| 우 유 류 | 68.6 | 69.0 | 0.58 |
| 우 유 | 67.5 | 67.8 | 0.44 |
| 어 패 류 | 45.0 | 41.5 | -7.78 |
| 어 류 | 29.9 | 24.7 | -17.39 |
| 패 류 | 15.1 | 16.7 | 10.60 |
| 해 조 류 | 27.7 | 26.6 | -3.97 |
| 유 지 류 | 22.9 | 24.5 | 6.99 |
| 식 물 성 | 22.6 | 24.2 | 7.08 |
| 동 물 성 | 0.3 | 0.2 | -33.33 |
| 주 류 | 69.2 | 67.0 | -3.18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식품수급표』, 2019.

2018년도의 국민 1인당 연간 어패류 공급량은 41.5kg(1인 1일당 113.7g)으로 전년보다 3.5kg(7.78%) 감소하였다. 어류의 공급량은 국민 1인당 연간 24.7kg(1인 1일당 67.8g)으로 전년보다 17.39% 감소하였다. 패류의 공급량은 국민 1인당 연간 16.7kg(1인 1일당 45.9g)으로 전년보다 10.6% 증가하였다. 2018년도 국민 1인당 연간 해조류 공급량은 26.6kg(국민 1인 1일당 72.9g)으로 전년보다 3.97% 감소하였다.

2018년도 국민 1인당 연간 유지류 공급량은 24.5kg(1인 1일당 67.0g)으로 전년보다 1.6kg(6.99%) 증가하였다. 식물성 유지류의 공급량은 국민 1인당 연간 24.2kg으로 전체 공급 유지류의 9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7.08% 증가하였다. 동물성 유지의 국민 1인당 연간 공급량은 0.2kg으로 전년보다 크게(33.33%) 감소하였다.

◆ 식품자급률 수준

주요 식품의 2018년 자급률 추이를 보면 곡류, 쌀, 과실류,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류 등 상당수 식품류의 자급률이 대체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두류, 채소류, 닭고기, 계란류, 어패류는 2018년에 각각 7.5%, 87.2%, 89.9%, 99.4%, 51.2%로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는데, 곡류자급률은 1990~2018년간 43.8%에서 21.9%, 채소류는 98.9%에서 87.2%, 과실류는 102.5%에서 75.4%, 육류는 92.9%에서 75.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유류는 92.8%에서 49.8%, 어패류는 121.7%에서 51.2%, 유지류는 8.0%에서 1.2%로 하락하였다.

〈표 1-2-24〉 연도별 자급률 추이

| 구분 | 1990년 | 1995년 | 2000년 | 2005년 | 2010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 공급 영양 자급률 | 칼로리 | 62.6 | 50.6 | 50.6 | 45.4 | 46.8 | 37.0 | 36.6 | 35.1 |
| | 단백질 | 67.8 | 57.2 | 52.8 | 47.0 | 47.6 | 41.9 | 42.4 | 43.2 |
| | 지방 | 30.3 | 26.8 | 21.4 | 18.1 | 16.7 | 23.0 | 21.8 | 21.4 |
| 물량 기준 자급률 | 곡류 | 43.8 | 30.0 | 30.8 | 29.4 | 28.1 | 24.4 | 24.0 | 21.9 |
| | 쌀 | 108.3 | 91.1 | 102.9 | 96.0 | 104.5 | 102.6 | 94.6 | 82.5 |
| | 두류 | 24.5 | 11.7 | 8.2 | 10.7 | 11.0 | 8.2 | 7.0 | 7.5 |
| | 채소류 | 98.9 | 99.2 | 97.7 | 94.5 | 90.1 | 86.6 | 86.4 | 87.2 |
| | 과실류 | 102.5 | 93.2 | 88.7 | 85.6 | 81.0 | 78.9 | 77.0 | 75.4 |
| | 육류 | 92.9 | 89.2 | 83.9 | 81.6 | 78.6 | 73.9 | 76.4 | 75.2 |
| | 쇠고기 | 53.6 | 50.8 | 53.2 | 48.1 | 43.2 | 38.9 | 41.0 | 36.3 |
| | 돼지고기 | 100.3 | 96.6 | 91.6 | 83.7 | 81.0 | 71.8 | 72.5 | 71.6 |
| | 닭고기 | 100.0 | 98.1 | 79.9 | 84.3 | 83.4 | 85.1 | 88.7 | 89.9 |
| | 계란류 | 100.0 | 99.9 | 100.0 | 99.3 | 99.7 | 99.7 | 98.4 | 99.4 |
| | 우유류 | 92.8 | 93.3 | 81.2 | 72.8 | 66.3 | 54.7 | 50.8 | 49.8 |
| | 어패류 | 121.7 | 100.4 | 87.7 | 60.0 | 68.1 | 50.5 | 46.7 | 51.2 |
| 유지류 | 8.0 | 4.8 | 3.2 | 2.8 | 2.6 | 1.8 | 1.5 | 1.2 |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식품수급표』, 2019.

칼로리 자급률¹⁾은 1990년 62.6%, 2000년 50.6%, 2010년 46.8% 수준으로 1990년 이후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35.1% 수준이다. 단백질 자급률은 1990년 67.8%에서 2018년 43.2%로 칼로리 자급률과 비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8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증가한 상황이다. 반면 지방 자급률은 1980년까지만 하더라도 64.2%를 유지하던 것이 1990년 30.3% 수준으로 급속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수입자유화의 영향으로 육류 및 유지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지방 자급률은 2018년 21.4% 수준으로, 2000년대보다는 소폭 증가한 상황이다.

◆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국민 1인 1년당 식품 공급량(조식품 기준)은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곡류(136.9kg), 채소류(150.4kg), 어패류(68.1kg) 등은 비교적 많은 반면, 설탕류(22.7kg), 과실류(38.7kg), 육류(64.3kg), 우유류(69.0kg) 등은 비교적 적다.

곡류 공급량은 136.9kg으로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에 비해서 많은 편이며, 미국 및 유럽 국가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한편 두류의 1인 1년당 공급량은 10.8kg으로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채소류의 연간 공급량은 조식품 기준으로 2018년에 150.4kg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일본, 미국 등의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육류의 공급량은 64.3kg으로 일본보다는 많은 편이지만, 유럽국가와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계란류(10.6kg), 우유류(69.0kg)의 공급량도 미국 및 유럽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이다. 어패류의 공급량은 68.1kg으로 일본에 비해서는 낮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1) 1999년부터 「식품수급표」(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공급영양소 자급률을 발표함. 새로운 산정방식은 1인 1일당 순식용 공급칼로리 중에서 국내산 공급칼로리의 비중으로 계산되며, 사료 자급률을 육류에서 감안한다는 특징이 있음.

〈표 1-2-25〉 주요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단위 : kg)

| 연 도 | 한 국 | 일 본 | 중 국 | 미 국 | 독 일 | 브 라 질 |
|-----|-------|-------|-------|-------|-------|-------|
| | 2018 | 2013 | 2013 | 2013 | 2013 | 2013 |
| 곡 류 | 136.9 | 113.5 | 150.0 | 105.5 | 111.0 | 116.1 |
| 서 류 | 11.7 | 30.7 | 67.5 | 56.2 | 61.3 | 55.8 |
| 설탕류 | 22.7 | 27.0 | 7.3 | 63.9 | 48.5 | 42.7 |
| 두 류 | 10.8 | 12.0 | 12.4 | 14.6 | 11.3 | 34.3 |
| 채소류 | 150.4 | 102.2 | 347.8 | 113.9 | 93.1 | 51.5 |
| 과실류 | 38.7 | 52.9 | 94.2 | 104.4 | 88.3 | 93.1 |
| 육 류 | 64.3 | 49.3 | 61.7 | 115.0 | 85.8 | 97.5 |
| 계란류 | 10.6 | 19.0 | 18.6 | 14.6 | 12.0 | 9.1 |
| 어패류 | 68.1 | 48.5 | 34.7 | 21.5 | 12.4 | 11.0 |
| 우유류 | 69.0 | 71.9 | 33.2 | 254.8 | 258.8 | 149.3 |
| 유지류 | 24.5 | 16.4 | 9.5 | 35.4 | 36.9 | 21.2 |

주 : 1)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단,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임)

2) 두류에는 종실류와 견과류, 어패류에는 해조류가 포함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식품수급표』, 2013.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1980년 2,485kcal에서 2000년에는 3,010kcal로 증가하여 연평균 0.1%씩 증가하였다. 2001년 이후로는 대체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3,000kcal에서 2005년에는 2,938kcal이었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2018년에는 3,010kcal로 집계되었다.

캐나다와 덴마크,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의 유럽국가의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3,100kcal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주로 육류와 우유류 등 축산물과 유지류의 소비량이 많은데 기인한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전분질 식품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은 2018년 현재 에너지원의 45.7%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 비율은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물성식품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의 구성비는 소득 향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도에는 19.0% 수준이다. 이 비율은 유럽 국가와 미국 등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표 1-2-26〉 주요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 연 도 | 한 국 | 일 본 | 중 국 | 미 국 | 독 일 | 브 라 질 |
|------------|--------|--------|-------|--------|--------|--------|
| | 2018 | 2013 | 2013 | 2013 | 2013 | 2013 |
| 에너지(kcal) | 3,010 | 2,551 | 3,127 | 3,358 | 3,118 | 3,157 |
| 전 분 질(%) | 45.7 | 45.3 | 50.5 | 27.8 | 31.8 | 39.3 |
| 설 탕(%) | 8.2 | 10.0 | 2.3 | 17.9 | 15.0 | 13.2 |
| 동 물 성(%) | 19.0 | 20.1 | 25.8 | 22.3 | 21.7 | 24.5 |
| 유 지 류(%) | 20.5 | 15.3 | 7.0 | 23.5 | 23.0 | 15.9 |
| 기 타(%) | 6.6 | 9.4 | 14.4 | 8.6 | 8.5 | 7.1 |
| 1인당GNI(\$) | 33,434 | 48,320 | 6,800 | 53,620 | 47,470 | 12,610 |

주 : 1) 한국,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이며, 기타국은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식품수급표』, 2019.

3. 식품산업 동향

■ 식품산업정책과 서기관 승재원

2018년 식품제조업체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는 5,616로 2008년(4,061개)보다 38.3%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227천명으로 2015년(205천명)보다 5.9% 증가하였다.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출하액은 2018년 92.0조원으로 2008년 55.2조원 대비 66.7% 증가하였다.

2018년 식품제조업 1개 사업체당 출하액(출하액/사업체수)은 163.8억원으로 2008년 136.0억원 보다 20.4% 증가하였다. 한편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부가가치/종사자수)는 1.5억원으로 2008년 (1.28억원) 대비 17.2% 증가하였고, 부가가치율(부가가치/출하액)은 2018년 36.9%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2-27〉 식품제조업 연도별 추이

(단위 : 개, 천명, 10억원, 백만원/개소, 백만원/명, %)

| 구 분 | 2008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 사업체수(A) | 4,061 | 4,360 | 4,423 | 4,616 | 4,983 | 5,124 | 5,274 | 5,481 | 5,616 |
| ○ 종사자수(B) | 161 | 177 | 179 | 184 | 195 | 205 | 212 | 217 | 227 |
| ○ 출하액(C) | 55,212 | 70,208 | 75,150 | 77,320 | 79,925 | 83,937 | 86,611 | 89,718 | 92,013 |
| ※ 업체당 출하액(C/A) | 13,596 | 16,103 | 16,991 | 16,751 | 16,04 | 16,381 | 16,422 | 16,369 | 16,384 |
| ※ 1인당 부가가치 | 128.3 | 136.2 | 145.9 | 149.3 | 148 | 150.6 | 151.5 | 154.8 | 149.67 |
| ※ 부가가치율 | 37.4 | 34.3 | 34.7 | 35.5 | 36.1 | 36.8 | 37.1 | 37.4 | 36.9 |

주 : 1인당 부가가치 = 부가가치 / 종사자수,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출하액 × 100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1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식품제조업 내 세부업종별 현황을 보면, 기타 식품제조업의 출하액이 24.8조원(전체 식품제조업의 29.6%), 사업체수 1,994개(35.5%)로 전체 식품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또한 2018년 음료 제조업 규모는 사업체수 271개(4.8%), 출하액 10.7조원(12.8%) 수준을 보였다.

2018년 품목별 식품제조업체 구분을 보면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도축, 육류 가공·저장처리업(997개), 수산물 가공·저장처리업(989개), 과일 및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594개), 곡물 가공품, 전분·전분제품 제조업(326개) 순서이고, 출하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도축, 육류 가공·저장처리업(13.5조원),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10.3조원), 낙농제품, 식용빙과류 제조업(8.0조원) 순서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구분해 보면 전국 식품제조업체 중 26.4%가 경기지역(1,483개)에 분포되어 있고, 다음으로 충남(518개, 9.2%), 충북(506개, 9.0%) 지역에 사업체가 많이 있었다.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3.7조원), 충북(12.4조원) 순서이며, 업체당 출하액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최고 : 충북 244.9억원, 최저 : 전남 88.7억원), 이는 지역에 분포된 주요 업종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1-2-28〉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2018)

(단위 : 개, 명, 10억원)

|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출하액 | 비중(%) |
|----------------------|-------|---------|--------|--------|
| | | | | |
| □ 식품 제조업 | 5,616 | 226,915 | 83,938 | 100.0% |
| ○ 식료품 제조업 | 5,345 | 210,522 | 73,205 | 87.2% |
| - 도축, 육류 가공·저장처리업 | 997 | 41,902 | 13,483 | 16.1% |
| - 수산물 가공·저장처리업 | 989 | 29,284 | 5,454 | 6.5% |
| -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594 | 18,347 | 2,974 | 3.5% |
|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69 | 1,916 | 2,119 | 2.5% |
| - 낙농제품, 식용빙과류 제조업 | 109 | 10,275 | 8,009 | 9.5% |
| - 곡물 가공품, 전분·전분제품제조업 | 326 | 10,102 | 5,982 | 7.1% |
| - 기타 식품제조업 | 1,994 | 90,050 | 24,837 | 29.6% |
| - 동물성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267 | 8,646 | 10,349 | 12.3% |
| ○ 음료 제조업 | 271 | 16,393 | 10,733 | 12.8% |
| - 알콜 음료 제조업 | 97 | 7,075 | 5,329 | 6.3% |
| - 비알콜 음료, 얼음 제조업 | 174 | 9,318 | 5,403 | 6.4%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2018년 종사자 10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중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수가 전체의 81.9%이고 2002년 이후 계속해서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식품제조업체 중 대기업(종사자 300인 이상)의 비중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2008년 : 42개소 → 2018년 : 62개소). 또한 식품제조업체의

81.9%에 달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전체의 42.5%, 출하액 비중은 31.1%에 불과해 영세한 업체가 많이 있음을 보여준다.

2018년 종사자 10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중 출하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전체의 12.1%이고, 1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의 업체는 84.5%,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3.4%에 그쳤다.

〈표 1-2-29〉 규모별 추이

(단위 : 개, %)

| | 2008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 업체수 | 4,061 | 4,423 | 4,616 | 4,983 | 5,124 | 5,274 | 5,481 | 5,616 |
| ○ 종사자규모별 | | | | | | | | |
| - 50인 미만 | 81.5 | 80.5 | 81.4 | 81.9 | 81.2 | 81.1 | 81.7 | 81.9 |
| - 50~300인 | 17.5 | 18.5 | 17.7 | 17.2 | 17.7 | 17.8 | 17.3 | 17.0 |
| - 300인 이상 | 1.0 | 1.0 | 0.9 | 0.9 | 1.1 | 1.1 | 1.0 | 1.1 |
| ○ 출하액규모별 | | | | | | | | |
| - 10억원 미만 | 22.9 | 15.9 | 17.1 | 16.6 | 13.6 | 13.2 | 13.2 | 12.1 |
| - 10~100억원 | 56.6 | 58.9 | 58.6 | 59.2 | 61.3 | 61.1 | 61.3 | 61.6 |
| - 100~1,000억원 | 17.3 | 21.1 | 20.3 | 20.7 | 21.4 | 22.2 | 22.2 | 22.9 |
| - 1,000억원 이상 | 3.2 | 4.1 | 4.0 | 3.5 | 3.7 | 3.5 | 3.3 | 3.4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종사자 10인이상 사업체 기준)

◆ 외식산업

■ 외식산업진흥과 사무관 류성훈

2018년 외식산업 사업체수는 709천개로 지난 2011년부터 연간 60만개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2,139천명으로 2008년 1,576천명보다 35.7%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138,2조원으로 2008년 64.7조원에 비해 113.6% 증가하여 큰 증가세를 보였다.

외식산업 1개 사업체당 매출액(매출액/사업체수)은 2018년 194.9백만원으로 2008년 112.0백만원에 비해 74.0% 증가하였고, 종사자 1인당 매출액(매출액/종사자수)은 2018년 64.6백만원으로 2008년 41.1백만원에 비해 57.2% 증가하였다.

〈표 1-2-30〉 외식산업 연도별 추이

(단위 : 천개, 천명, 10억원, 백만원/개소, 백만원/명, 천원/㎡)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 사업체수(A) | 578 | 581 | 586 | 607 | 624 | 635 | 650 | 657 | 675 | 692 | 709 |
| ○ 종사자수(B) | 1,576 | 1,603 | 1,609 | 1,683 | 1,751 | 1,823 | 1,894 | 1,945 | 1,988 | 2,037 | 2,139 |
| ○ 매출액(C) | 64,727 | 69,868 | 67,566 | 73,512 | 77,290 | 79,552 | 83,824 | 108,013 | 118,853 | 128,300 | 138,183 |
| ※ 업체당 매출액(C/A) | 112.0 | 120.2 | 115.2 | 121.1 | 123.8 | 125.2 | 128.9 | 164.4 | 176.1 | 185.5 | 194.9 |
| ※ 1인당 매출액(C/B) | 41.1 | 43.6 | 42.0 | 43.7 | 44.1 | 43.6 | 44.3 | 55.5 | 59.8 | 63.0 | 64.6 |

*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10,'15), 통계청 서비스업조사('07~'17)

업종별 내역을 보면 한식당 사업체수가 314천개, 매출액은 63.1조원으로 전체 음식점업 사업체 및 매출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당 매출액은 기관구내식당, 서양식, 일식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식당 사업체수는 2017년 대비 0.9% 증가했으며, 매출액도 4.9%, 업체당 매출액은 4.0% 증가하였다.

〈표 1-2-31〉 업종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

(단위 : 개, 10억원, 백만원/개소)

| 업종 | 2017 | | | 2018 | | |
|---------------------------|----------|---------|---------------|----------|---------|---------------|
| | 사업체수 (A) | 매출액 (B) | 업체당 매출액 (B/A) | 사업체수 (A) | 매출액 (B) | 업체당 매출액 (B/A) |
| 음식점 및 주점업 | 691,751 | 128,300 | 185.5 | 709,014 | 138,183 | 194.9 |
| □ 음식점업 | 496,915 | 107,483 | 216.3 | 506,407 | 114,869 | 226.8 |
| ○ 한식 음식점업 | 310,692 | 60,146 | 193.6 | 313,562 | 63,133 | 201.3 |
| - 한식 일반 음식점업 | 192,124 | 34,152 | 177.8 | 188,565 | 34,573 | 183.3 |
| - 한식 면 요리 전문점 | 21,455 | 3,135 | 146.1 | 22,028 | 3,536 | 160.5 |
| -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 67,733 | 16,155 | 238.5 | 72,878 | 18,134 | 248.8 |
| -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 29,380 | 6,704 | 228.2 | 30,091 | 6,890 | 229.0 |
| ○ 외국식 음식점업 | 52,238 | 14,979 | 286.7 | 55,136 | 16,149 | 292.9 |
| - 중식 음식점업 | 24,839 | 5,273 | 212.3 | 24,546 | 5,803 | 236.4 |
| - 일식 음식점업 | 11,714 | 3,968 | 338.8 | 13,436 | 4,451 | 331.3 |
| - 서양식 음식점업 | 11,831 | 4,754 | 401.8 | 12,607 | 4,783 | 379.4 |
| -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 3,854 | 984 | 255.2 | 4,547 | 1,111 | 244.4 |
| ○ 기관 구내식당업 | 11,178 | 9,509 | 850.7 | 11,325 | 10,113 | 893.0 |
| ○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 598 | 176 | 295.1 | 563 | 160 | 283.8 |
| - 출장 음식 서비스업 | 598 | 176 | 295.1 | 563 | 160 | 283.8 |
| ○ 기타 간이 음식점업 | 122,209 | 22,672 | 185.5 | 125,821 | 25,314 | 201.2 |
| - 제과점업 | 17,075 | 5,382 | 315.2 | 19,390 | 5,936 | 306.2 |
|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 17,785 | 5,685 | 319.6 | 19,017 | 6,168 | 324.3 |
| - 치킨 전문점 | 38,099 | 4,994 | 131.1 | 36,791 | 5,365 | 145.8 |
| -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 41,933 | 4,645 | 110.8 | 43,212 | 5,191 | 120.1 |
| -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 7,317 | 1,967 | 268.8 | 7,411 | 2,653 | 358.0 |
|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 194,836 | 20,817 | 106.8 | 202,607 | 23,314 | 115.1 |
| ○ 주점업 | 121,018 | 11,897 | 98.3 | 119,162 | 12,437 | 104.4 |
| - 일반유희주점업 | 32,319 | 3,341 | 103.4 | 29,905 | 2,997 | 100.2 |
| - 무도유희주점업 | 1,814 | 376 | 207.1 | 1,934 | 412 | 212.9 |
| - 생맥주 전문점 | 7,194 | 824 | 114.5 | 7,562 | 919 | 121.6 |
| - 기타 주점업 | 79,691 | 7,357 | 92.3 | 79,761 | 8,109 | 101.7 |
| ○ 비알콜 음료점업 | 73,818 | 8,920 | 120.8 | 83,445 | 10,877 | 130.4 |
| - 커피 전문점 | 56,928 | 7,850 | 137.9 | 66,231 | 9,687 | 146.3 |
| -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 16,890 | 1,069 | 63.3 | 17,214 | 1,190 | 69.1 |

*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지역별로는 경기(146천개)와 서울(124천개) 지역에 전국 음식점업 사업체 중 38.1%가 분포하고 있고, 종사자수 및 매출액도 서울과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매출액은 서울(2.8억원), 경기(2.2억원), 인천(2.1억원), 세종(2.0억원), 제주(1.8억원) 순으로 전체 지역이 모두 1억원 이상을 보이고 있다.

〈표 1-2-32〉 음식점업 시도별 현황(2018)

(단위 : 천개, 천명, 10억원, 백만원/개소, 백만원/명)

| 구 분 | 사업체수 | 비중 | 종사자수 | 매출액 | 업체당 매출액 | 1인당 매출액 |
|-----|-------|------|-------|----------|---------|---------|
| | | | | | | |
| 서 울 | 123.7 | 17.4 | 458.1 | 34,877.6 | 281.9 | 76.1 |
| 부 산 | 50.0 | 7.1 | 152.1 | 8,638.2 | 172.7 | 56.8 |
| 대 구 | 34.2 | 4.8 | 97.4 | 5,248.0 | 153.3 | 53.9 |
| 인 천 | 33.7 | 4.8 | 103.9 | 7,102.7 | 210.9 | 68.4 |
| 광 주 | 19.2 | 2.7 | 58.8 | 3,408.1 | 177.3 | 57.9 |
| 대 전 | 20.4 | 2.9 | 62.9 | 3,718.6 | 181.9 | 59.1 |
| 울 산 | 17.9 | 2.5 | 50.0 | 3,013.1 | 167.9 | 60.3 |
| 세 종 | 3.4 | 0.5 | 10.8 | 688.6 | 204.9 | 63.9 |
| 경 기 | 146.1 | 20.6 | 477.7 | 32,531.2 | 222.7 | 68.1 |
| 강 원 | 31.7 | 4.5 | 80.4 | 4,623.1 | 145.6 | 57.5 |
| 충 북 | 25.9 | 3.7 | 67.8 | 4,221.9 | 163.0 | 62.2 |
| 충 남 | 32.9 | 4.6 | 88.4 | 5,643.5 | 171.4 | 63.8 |
| 전 북 | 25.2 | 3.6 | 69.2 | 3,835.9 | 152.2 | 55.5 |
| 전 남 | 28.9 | 4.1 | 71.5 | 4,428.3 | 153.4 | 61.9 |
| 경 북 | 45.3 | 6.4 | 107.2 | 5,984.3 | 132.2 | 55.8 |
| 경 남 | 56.0 | 7.9 | 139.1 | 7,608.7 | 136.0 | 54.7 |
| 제 주 | 14.5 | 2.0 | 43.5 | 2,611.2 | 180.6 | 60.0 |

2018년 전국 음식점업체 중 종사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수는 85.2%이며, 종사자 1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2.9% 수준이다. 2018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전체의 47.1%로 2011년 64.3%에 비해 17.2%p 감소하였고, 매출액이 1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인 업체는 전체의 47.7%로 2011년 34.6%에 비해 13.1%p 증가하였다.

〈표 1-2-33〉 사업체수 연도별 추이

(단위 : 천개,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 업체수 | 607 | 624 | 635 | 650 | 657 | 675 | 692 | 709 |
| ○ 종사자규모별 | | | | | | | | |
| - 5인 미만 | 90.5 | 88.6 | 88.0 | 87.4 | 86.5 | 86.4 | 86.4 | 85.2 |
| - 5~10인 | 7.3 | 9.2 | 9.6 | 10.2 | 10.7 | 10.9 | 11.2 | 11.9 |
| - 10인 이상 | 2.2 | 2.2 | 2.4 | 2.5 | 2.7 | 2.7 | 2.4 | 2.9 |
| ○ 매출액규모별 | | | | | | | | |
| - 100백만원 미만 | 64.3 | 63.8 | 71.1 | 70.4 | 61.0 | 46.8 | 41.5 | 47.1 |
| - 100~1,000백만원 | 34.6 | 35.2 | 28.1 | 28.6 | 37.1 | 49.9 | 54.0 | 47.7 |
| - 1,000백만원 이상 | 1.1 | 1.0 | 0.7 | 1.1 | 1.9 | 3.3 | 4.5 | 5.2 |

제3절 농식품 교역동향

1. 농식품 수출입동향

◆ 수출 동향

■ 수출진흥과 사무관 노승호

인삼류, 김치 등 신선 식품 수출이 호조를 기록하였고, 일본·미국·ASEAN 등 주요 국가 수출도 확대되면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7,025.7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부류별 수출 동향을 보면, 신선식품은 2018년 대비 8.2% 증가한 1,381.2백만달러, 가공식품은 △0.1% 감소한 5,644.5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신선식품은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 수요의 지속 확대에 의해 딸기, 포도 등 과채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삼류의 경우 중국(35.6%), 베트남(38.9%) 수출이 큰 폭 증가하며 역대 최초 2억불을 달성하였다.

가공식품 중 떡볶이 등 인기로 쌀가공식품(21.5%) 수출이 확대되었고 매운맛 라면부터 신제품(건면) 출시 등을 통해 한국산 라면(13.0%) 수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소비세 인상 여파 지속으로 인한 OIC지역 쉐련 수출 부진 및 주류 수요 감소 영향 등으로 전체 가공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표 1-2-34〉 농식품 수출 실적

(단위 : 천톤, 백만달러,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 2019년 | | 증감률 (B/A) |
|---------|---------|---------|---------|---------|---------|--------------|
| | | 물 량 | 금액(A) | 물 량 | 금액(B) | |
| 농림축산식품 | 6,826.5 | 4,183.4 | 6,925.7 | 4,052.7 | 7,025.7 | 1.4 |
| (신선농식품) | 1,095.3 | 521.7 | 1,276.0 | 640.6 | 1,381.2 | 8.2 |
| (가공농식품) | 5,731.2 | 3,661.6 | 5,649.7 | 3,412.1 | 5,644.5 | △0.1 |
| - 농 산 물 | 6,046.6 | 3,082.1 | 5,984.6 | 3,236.3 | 6,146.3 | 2.7 |
| - 축 산 물 | 341.4 | 119.4 | 417.5 | 162.2 | 460.7 | 10.4 |
| - 임 산 물 | 438.5 | 981.8 | 523.7 | 654.3 | 418.7 | △20.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aT, 2019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전년에 이어 ASEAN(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 일본(7.8%), 미국(9.0%)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며, 신선 식품 수출이 호조를 보인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14.9%), 태국(7.4%)이 수출 확대를 주도하였다. 한편, 중국(△0.4%), EU(△7.0%)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 주요국 품목별 수출 실적 〉

- ◇ 일 본 : (파프리카) 91.2백만불/△0.6%, (제3맥주) 34.3/△43.3, (김치) 55.2/△1.6
- ◇ 중 국 : (라면) 124.4백만불/33.4% ↑, (맥주) 83.1/△1.3, (조제분유) 73.8/△6.6
- ◇ 미 국 : (음료) 74.6백만불/5.0% ↑, (배) 34.2/△3.9, (인삼) 20.9/△11.7
- ◇ 베트남 : (음료) 34.4백만불/16.6% ↑, (닭고기) 46.1/70.1 ↑, (배) 16.1/△2.4
- ◇ 인 니 : (커피조제품) 37.6백만불/△11.2%, (음료) 9.7/△58.7, (라면) 21.9/20.6 ↑

〈표 1-2-35〉 국가별 농식품 수출 실적

(단위 : 천톤, 백만달러, %)

| 구 분 | 2018년(A) | | 2019년(B) | | 증감률(B/A) | |
|-------|----------|---------|----------|---------|----------|-------|
| | 물 량 | 금 액 | 물 량 | 금 액 | 물 량 | 금 액 |
| 합 계 | 4,183.4 | 6,925.7 | 4,052.7 | 7,025.7 | △3.1 | 1.4 |
| 일본 | 771.4 | 1,323.8 | 784.9 | 1,426.9 | 1.8 | 7.8 |
| 중국 | 1,015.4 | 1,110.9 | 840.6 | 1,106.0 | △17.2 | △0.4 |
| 미국 | 306.3 | 802.0 | 331.0 | 874.2 | 8.1 | 9.0 |
| 홍콩 | 209.9 | 371.4 | 202.8 | 352.9 | △3.4 | △5.0 |
| 대만 | 155.5 | 312.1 | 160.3 | 309.7 | 3.1 | △0.8 |
| ASEAN | 897.6 | 1,306.7 | 877.2 | 1,372.4 | △2.3 | 5.0 |
| EU | 226.4 | 414.1 | 219.1 | 385.1 | △3.2 | △7.0 |
| OIC | 518.7 | 813.3 | 413.7 | 683.9 | △20.2 | △15.9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aT, 2019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2.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농업정책과 사무관 김동일

◆ 교역규모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남북 간의 유의미한 교역은 중단된 상황이며 2019년 말 기준 총 교역액은 687만 달러로 전년도 3,127만 달러에 비해 78.0% 감소했다. 교역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2018년의 경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2018. 9월),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2018. 8월) 등으로 교역이 증가했다가 2019년 이후 다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됨에 따라 물자 반출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표 1-2-36〉 남북교역동향

(단위 : 천 달러)

| 구분 | 연도 | 연도별 교역실적 | | |
|-------|----|----------|-------|--------|
| | | 2018 | 2019 | 증감률(%) |
| 전체 | | 31,272 | 6,874 | △78.0 |
| 농림수산물 | | 1,319 | 460 | △65.1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농식품 교역동향

▶ 농림수산물 교역현황

2019년 농림수산물 총 교역액은 46만 달러로 전년도 132만달러와 비교하면 65.1% 감소한 금액이다. 반입액은 없었으며 반출액은 46만달러로 전년도보다 63.9% 감소했다.

〈표 1-2-37〉 농림수산물 교역 현황

(단위 : 천 달러)

| 구분 | 연도 | 연도별 교역 실적(금액) | |
|-----------|----|---------------|------|
| | | 2018 | 2019 |
| 농림수산물교역총액 | | 1,319 | 460 |
| 반입액 | | 43 | - |
| 농산물 | | 3 | - |
| 임산물 | | 40 | - |
| 수산물 | | - | - |
| 반출액 | | 1,276 | 460 |
| 농산물 | | 987 | 255 |
| 축산물 | | 160 | 13 |
| 임산물 | | 110 | 189 |
| 수산물 | | 20 | 3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제3장 국제 곡물수급 및 농식품 산업 동향

제1절 국제곡물 수급과 가격동향

1. 국제곡물 수급동향

▮ 식량정책과 사무관 이한병

국제 곡물시장은 생산국에서 소비 후 남는 양을 해외에 수출하는 원시적인 시장(primitive market) 구조를 갖고 있으며, 교역량 또한 세계 총 생산량의 약 16%에 불과한 ‘얇은 시장(thin market)’의 특성을 띠고 있다. 또한, 주요 곡물의 수출이 특정국에 편중되어 있는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에 따라, 세계 곡물의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 등 수급 상황은 주요 생산국의 기후여건, 농업정책, 대체에너지 정책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농업 전망분석 공동 연구를 통해 2029년까지 곡물 생산 및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곡물 생산은 생산단수 증가로 인해 2029년 30억 5,400만톤으로 '17~'19년 대비 3억 7,500만톤 증가하고, 소비는 중국의 사료 수요 및 바이오 연료 곡물 사용량에 대한 증가세가 둔화함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아시아의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2019/20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26억 2,519만톤) 대비 1.7% 증가한 26억 7,099만톤이었으며, 소비량은 전년(26억 4,027만톤) 대비 1.1% 증가한 26억 6,955만톤을 기록하여 생산과 소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기말재고량은 전년(8억 749만톤)보다 0.2% 증가한 8억 893만톤을 기록하였다.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쌀의 경우 2019/20년도 세계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0.2% 감소한 4억 9,578만톤이었으며, 소비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억 9,525만톤을 기록하였다.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0.3% 증가한 1억 7,711만톤이었고, 이를 소비량으로 산출한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7%p 감소한 35.8%를 기록했다.

2019/20년도 세계 밀 생산량은 전년보다 4.6% 증가한 7억 6,449만톤, 소비량은 전년보다 1.9% 증가한 7억 4,910만톤을 각각 기록하였다. 기말재고량은 2억 9,940만톤으로 전년보다 5.4% 증가하였고, 기말재고율도 전년 대비 1.4%p 증가한 40.0%를 보임에 따라, 전년 대비 생산, 소비 및 기말재고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2019/20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11억 1,634만톤, 소비량은 전년보다 1.1% 감소한 11억 3,192만톤을 각각 기록하였다.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4.9% 감소한 3억 424만톤이었으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1.1%p 감소한 26.9%를 기록하였다.

2019/20년도 세계 콩 생산량은 3억 3,659만톤으로 전년대비 6.8% 감소하였다. 소비량은 전년보다 3.1% 증가한 3억 5,426만톤을 기록하였다. 기말재고량은 9,375만톤으로 전년 대비 17.1% 감소하였으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6.4%p 감소한 26.5%를 기록하였다.

〈표 1-3-1〉 국제 주요 곡물 수급동향

(단위 : 백만톤)

| 구분 | | '18/'19 | '19/'20(A) | '20/'21(전망) | | 변동률(% , 10월 기준) | |
|------|----------|----------|------------|-------------|-------------|-----------------|--------------|
| | | | | '20, 9월(B) | '20, 10월(C) | 전년대비(C/A) | 전월대비(C/B) |
| 전체곡물 | 생산량 | 2,625.19 | 2,670.99 | 2,730.33 | 2,733.40 | 2.3 | 0.1 |
| | 공급량 | 3,447.76 | 3,478.48 | 3,549.42 | 3,542.33 | 1.8 | -0.2 |
| | 소비량 | 2,640.27 | 2,669.55 | 2,707.98 | 2,711.14 | 1.6 | 0.1 |
| | 교역량 | 429.35 | 440.85 | 458.02 | 457.11 | 3.7 | -0.2 |
| | 기말재고량 | 807.49 | 808.93 | 841.45 | 831.19 | 2.8 | -1.2 |
| | 기말재고율(%) | 30.6 | 30.3 | 31.1 | 30.7 | (C-A) 0.4%p | (C-B) -0.4%p |
| 쌀 | 생산량 | 496.71 | 495.78 | 499.58 | 501.47 | 1.1 | 0.4 |
| | 공급량 | 660.88 | 672.36 | 681.25 | 678.59 | 0.9 | -0.4 |
| | 소비량 | 484.30 | 495.25 | 496.42 | 499.44 | 0.8 | 0.6 |
| | 교역량 | 43.72 | 42.30 | 44.50 | 44.32 | 4.8 | -0.4 |
| | 기말재고량 | 176.58 | 177.11 | 184.83 | 179.15 | 1.2 | -3.1 |
| | 기말재고율(%) | 36.5 | 35.8 | 37.2 | 35.9 | 0.1%p | -1.3%p |
| 밀 | 생산량 | 730.93 | 764.49 | 770.49 | 773.08 | 1.1 | 0.3 |
| | 공급량 | 1,019.24 | 1,048.49 | 1,070.27 | 1,072.48 | 2.3 | 0.2 |
| | 소비량 | 735.24 | 749.10 | 750.90 | 751.03 | 0.3 | - |
| | 교역량 | 173.61 | 191.54 | 189.44 | 189.92 | -0.8 | 0.3 |
| | 기말재고량 | 284.01 | 299.40 | 319.37 | 321.45 | 7.4 | 0.7 |
| | 기말재고율(%) | 38.6 | 40.0 | 42.5 | 42.8 | 2.8%p | 0.3%p |
| 옥수수 | 생산량 | 1,123.37 | 1,116.34 | 1,162.38 | 1,158.82 | 3.8 | -0.3 |
| | 공급량 | 1,463.97 | 1,436.16 | 1,471.53 | 1,463.05 | 1.9 | -0.6 |
| | 소비량 | 1,144.16 | 1,131.92 | 1,164.74 | 1,162.60 | 2.7 | -0.2 |
| | 교역량 | 181.06 | 170.56 | 186.03 | 184.47 | 8.2 | -0.8 |
| | 기말재고량 | 319.81 | 304.24 | 306.79 | 300.45 | -1.2 | -2.1 |
| | 기말재고율(%) | 28.0 | 26.9 | 26.3 | 25.8 | -1.1%p | -0.5%p |
| 콩 | 생산량 | 361.06 | 336.59 | 369.74 | 368.47 | 9.5 | 9.8 |
| | 공급량 | 456.49 | 448.01 | 462.66 | 459.29 | 2.5 | -0.7 |
| | 소비량 | 343.45 | 354.26 | 369.07 | 370.59 | 4.6 | 0.4 |
| | 교역량 | 148.42 | 164.58 | 166.34 | 167.88 | 2.0 | 0.9 |
| | 기말재고량 | 113.04 | 93.75 | 93.59 | 88.70 | -5.4 | -5.2 |
| | 기말재고율(%) | 32.9 | 26.5 | 25.4 | 23.9 | -2.6%p | -1.5%p |

* USDA, '20.10.9 기준, '19/'20 추정치는 '21년 초 확정 예정

* 전체곡물 = 쌀 + 밀 + 잡곡(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호밀, 기장, 혼합곡), 콩은 유지류(oil seed)로 분류

2. 국제곡물 가격동향

▮ 식량정책과 사무관 이한병

국제 곡물가격은 2000년대 들어와서 변동폭이 점차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6~08년, 2010년, 2012년에는 급등세를 나타내었다. 곡물가격 급등 주기도 과거에는 7~8년 또는 10년 정도의 주기로 변동을 보였으나 2000년 후반 이후에는 변동 주기가 짧아지고 변동폭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3-1〉 국제 곡물 가격 변동 주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매월 발표하는 식량가격지수는 2008년 6월 애그플레이션 당시 132.5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 2월에 137.6포인트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였다. 이는 2010년 하반기부터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밀, 콩, 옥수수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2019년 식량가격지수는 전년에 비해 0.9포인트 감소한 95.0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식량가격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곡물가격지수는 2011년 142.2포인트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서서히 하락하여 2016년 88.3포인트를 보였다. 2017년에는 전년에 비해 2.7포인트 증가한 91.0포인트, 2018년에는 전년에 비해 9.6포인트 증가한 100.6포인트, 2019년에는 전년에 비해 4.2포인트 감소한 96.4포인트를 기록하였다.

◆ 쌀 가격 동향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의 평균 가격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하향안정 추세였으나 2014년 캘리포니아 지역 가뭄으로 인해 1,014달러/톤 수준까지 급등하였다. 이후 575달러/톤까지 서서히 하락하였다가 2017년 캘리포니아 지역 홍수에 따른 생산량 및 기말 재고량 감소로 2018년 7월 기준 948달러/톤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2019년은 전년대비 48달러/톤 하락한 848달러/톤을 기록하였다. 한편, 태국산 장립종 쌀의 평균 가격은 2008년 671달러/톤으로 급등한 이래 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은 전년대비 8달러/톤 하락한 406달러/톤을 기록하였다.

◆ 콩 가격 동향

콩 연평균 가격은 2010년 이래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며, 2012년의 경우 미국 곡창지대 가뭄으로 인해 평균 가격은 537달러/톤으로 전년 대비 10.7%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3년 이후 다시 하락하였으며, 2019년 대두 평균 가격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미국의 수출량 감소 영향으로 전년대비 15달러/톤 하락한 328달러/톤을 기록하였다.

◆ 밀 가격 동향(경질밀(hard wheat) 기준)

밀 연평균 가격은 2011년 이래 하락하여 2016년에는 최근 10년 이내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018년에는 전년대비 23달러/톤 상승한 186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유럽 및 흑해 지역 주요 재배지의 기상악화가 주요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9년 밀 평균가격은 양호한 작황으로 전년대비 25달러/톤 하락한 161달러/톤을 기록하였다.

◆ 옥수수 가격 동향

2019년 옥수수 평균가격은 152달러/톤으로 전년대비 6달러/톤 상승하였다. 옥수수 연평균 가격은 2012년 이래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며, 2016년 밀과 함께 최근 10년 이내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한 뒤 2017년부터 매년 소폭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 1-3-2〉 국제 곡물 가격 동향

(단위 : US\$/톤)

| 구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연평균 |
|-----------|-----|-----|-----|-----|------|------|-----|-----|-----|-----|-----|-----|-----|-----|
| 쌀 (중립) | '10 | 772 | 772 | 732 | 728 | 719 | 739 | 728 | 675 | 705 | 750 | 811 | 827 | 747 |
| | '11 | 827 | 827 | 827 | 827 | 827 | 827 | 827 | 822 | 816 | 816 | 763 | 720 | 811 |
| | '12 | 772 | 772 | 744 | 728 | 736 | 739 | 744 | 755 | 750 | 741 | 739 | 728 | 746 |
| | '13 | 705 | 705 | 705 | 705 | 691 | 661 | 661 | 661 | 661 | 656 | 639 | 632 | 674 |
| | '14 | 686 | 843 | 987 | 1058 | 1014 | 992 | 966 | 940 | 935 | 948 | 893 | 893 | 930 |
| | '15 | 865 | 843 | 831 | 827 | 849 | 849 | 849 | 849 | 849 | 794 | 788 | 750 | 829 |
| | '16 | 750 | 750 | 739 | 719 | 685 | 650 | 650 | 622 | 618 | 621 | 618 | 597 | 668 |
| | '17 | 575 | 575 | 575 | 591 | 603 | 613 | 725 | 725 | 748 | 818 | 848 | 848 | 687 |
| | '18 | 868 | 885 | 903 | 932 | 948 | 948 | 948 | 936 | 913 | 855 | 810 | 800 | 896 |
| | '19 | 900 | 900 | 900 | 882 | 848 | 825 | 825 | 825 | 825 | 814 | 810 | 818 | 848 |
| 쌀 (장립) | '10 | 596 | 576 | 538 | 502 | 478 | 463 | 465 | 472 | 494 | 501 | 534 | 550 | 514 |
| | '11 | 534 | 538 | 509 | 500 | 498 | 531 | 557 | 576 | 614 | 615 | 629 | 608 | 559 |
| | '12 | 557 | 552 | 563 | 554 | 614 | 612 | 587 | 579 | 579 | 571 | 573 | 569 | 576 |
| | '13 | 575 | 575 | 573 | 571 | 558 | 536 | 519 | 493 | 461 | 445 | 433 | 428 | 514 |
| | '14 | 418 | 423 | 416 | 401 | 399 | 405 | 421 | 447 | 449 | 446 | 434 | 424 | 424 |
| | '15 | 423 | 421 | 413 | 408 | 393 | 383 | 396 | 382 | 366 | 373 | 371 | 365 | 391 |
| | '16 | 371 | 381 | 379 | 385 | 410 | 418 | 431 | 409 | 388 | 373 | 367 | 380 | 391 |
| | '17 | 382 | 376 | 377 | 384 | 414 | 455 | 424 | 406 | 413 | 403 | 404 | 410 | 404 |
| | '18 | 433 | 422 | 420 | 442 | 448 | 426 | 393 | 398 | 395 | 401 | 392 | 393 | 414 |
| | '19 | 403 | 394 | 392 | 405 | 400 | 405 | 405 | 422 | 418 | 407 | 405 | 412 | 406 |
| 대두 | '10 | 361 | 345 | 349 | 358 | 351 | 349 | 367 | 376 | 391 | 427 | 462 | 484 | 385 |
| | '11 | 513 | 512 | 500 | 501 | 499 | 500 | 500 | 501 | 492 | 446 | 430 | 420 | 485 |
| | '12 | 443 | 462 | 497 | 529 | 521 | 522 | 602 | 618 | 616 | 566 | 532 | 535 | 537 |
| | '13 | 521 | 536 | 531 | 518 | 529 | 560 | 527 | 478 | 494 | 473 | 475 | 489 | 511 |
| | '14 | 472 | 497 | 522 | 547 | 544 | 528 | 450 | 405 | 357 | 355 | 379 | 379 | 453 |
| | '15 | 368 | 365 | 360 | 357 | 351 | 355 | 371 | 341 | 322 | 327 | 318 | 323 | 347 |
| | '16 | 321 | 320 | 328 | 354 | 390 | 421 | 389 | 368 | 353 | 358 | 370 | 375 | 362 |
| | '17 | 381 | 381 | 368 | 348 | 352 | 340 | 366 | 346 | 355 | 358 | 363 | 357 | 360 |
| | '18 | 358 | 371 | 380 | 378 | 376 | 340 | 313 | 317 | 308 | 316 | 324 | 330 | 343 |
| | '19 | 336 | 335 | 331 | 324 | 307 | 327 | 326 | 315 | 326 | 340 | 335 | 335 | 328 |
| 밀 | '10 | 193 | 183 | 181 | 181 | 184 | 176 | 215 | 260 | 274 | 268 | 271 | 305 | 224 |
| | '11 | 324 | 343 | 315 | 336 | 333 | 301 | 278 | 299 | 290 | 262 | 253 | 246 | 298 |
| | '12 | 253 | 255 | 254 | 238 | 241 | 248 | 320 | 325 | 336 | 330 | 331 | 318 | 287 |
| | '13 | 302 | 285 | 275 | 273 | 278 | 265 | 257 | 258 | 258 | 278 | 260 | 246 | 270 |
| | '14 | 230 | 246 | 276 | 276 | 290 | 264 | 236 | 230 | 217 | 217 | 219 | 238 | 245 |
| | '15 | 213 | 201 | 201 | 194 | 191 | 195 | 200 | 176 | 179 | 181 | 172 | 175 | 190 |
| | '16 | 172 | 166 | 174 | 171 | 166 | 165 | 152 | 149 | 153 | 152 | 151 | 151 | 160 |
| | '17 | 161 | 166 | 164 | 154 | 162 | 169 | 189 | 157 | 164 | 158 | 155 | 155 | 163 |
| | '18 | 161 | 174 | 185 | 183 | 198 | 186 | 186 | 200 | 191 | 204 | 178 | 186 | 186 |
| | '19 | 185 | 175 | 161 | 154 | 155 | 170 | 162 | 146 | 148 | 153 | 157 | 166 | 161 |
| 옥수수 | '10 | 152 | 143 | 145 | 139 | 145 | 137 | 149 | 161 | 193 | 215 | 217 | 233 | 169 |
| | '11 | 250 | 272 | 270 | 296 | 285 | 284 | 263 | 281 | 273 | 249 | 247 | 239 | 267 |
| | '12 | 248 | 252 | 255 | 250 | 237 | 237 | 299 | 316 | 301 | 295 | 291 | 284 | 272 |
| | '13 | 281 | 278 | 282 | 255 | 256 | 261 | 208 | 190 | 181 | 173 | 167 | 169 | 225 |
| | '14 | 168 | 176 | 191 | 198 | 193 | 176 | 149 | 141 | 133 | 138 | 147 | 158 | 164 |
| | '15 | 153 | 151 | 152 | 148 | 142 | 143 | 161 | 145 | 149 | 151 | 144 | 146 | 149 |
| | '16 | 143 | 143 | 143 | 147 | 154 | 161 | 136 | 127 | 131 | 137 | 136 | 139 | 141 |
| | '17 | 142 | 145 | 144 | 143 | 146 | 147 | 150 | 139 | 139 | 138 | 135 | 138 | 142 |
| | '18 | 139 | 144 | 151 | 152 | 158 | 144 | 139 | 141 | 141 | 145 | 144 | 150 | 146 |
| | '19 | 149 | 147 | 146 | 141 | 151 | 171 | 169 | 148 | 145 | 153 | 147 | 151 | 152 |

* 자료 : USDA Rice Outlook('20.9), USDA ERS('20.9)

주) 쌀(중립종) : 미국산(California medium grain milled No.1) FOB(25kg 포장 기준), 쌀(장립종) : 태국산(100% B) FOB, (USDA 예측가) / 대두·밀(HRW)·옥수수 : 선물거래가

제2절 주요 국가 농업·농촌 동향 및 양자간 통상 협력

1. 주요 국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 미국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강현수

▶ 농업경제동향²⁾

미국은 세계 유수의 농업국으로 옥수수, 대두의 생산량이 세계 1위이며 밀이나 면화의 생산량도 많다. 축산 분야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생산이 왕성하다. 2018년 기준 미국 국내총생산액 20조 4,941억 달러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1%로 2,254억 달러이다.

미국의 전체 토지면적(914,742천 ha, 2017)의 44.4%인 405,862 천 ha가 농경지이며, 이 중 154,607천 ha가 경작 적합지로, 2,600천 ha는 영구경작지로, 251,000천 ha는 초지면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 농무부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체 농가 호수는 202만호로 2015년 203만호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농장에 고용된 종업원(Hired farmworkers)의 수는 2014년 877천명에 비해 약 10%증가한 964천명(2017)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의 연령을 살펴보면 25-34세가 221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5-19세가 74천명으로 가장 적은 수를 나타냈다. 종업원의 성별은 남자가 776천명, 여자가 189천 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2012년 58.3세로 2007년 57.1세에 비해 높아졌으며, 특히 2007년 대비 65-74세 이상의 농장주는 7.6% 증가, 25세 이하 농장주는 10% 감소하였다.³⁾ 농가당 평균 농지규모는 2015년 178ha로 2006년 179ha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표한 2018년 미국의 농촌인구는 58,052천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8%라고 한다.

미 농가의 소득을 보면, 2013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농업 경영 농가 소득의 중간값(Median household income of farm operators)으로 보면, 2016년 농가 소득이 76,250달러로 2013년 73,219달러에 비해 4.1% 증가하였으며, 농업 경영 농가 소득의 평균값(Average household income of farm operators)으로 보면 2016년 117,918달러로 2013년 121,120달러에 비해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전체 농장 중 연 매출액 25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농장 비중이 12.6%(약 26만개)이며, 연 매출액 1만 달러 이하 소규모 농장은 50.1%(약 104만개)로 대부분 취미농 형태이다.

2017년 전체 농가 평균 소득(Total gross farm income)은 430천 달러이며, 이 중 농업소득은 14%(61.5천 달러 내외)를 차지하고 농업외소득(off-farm income)이 77%로서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다. 1만 달러 이하 매출 소규모 농장의 농업순소득은 미미한 반면, 25만 달러 이상 매출

2) USDA, 2016 Agricultural Statistics Annual(FARM RESOURCES, INCOME AND EXPENSES)

3) USDA, 2012 Census of agriculture highlights, Farm Demographics

대규모 농장의 농업소득은 20만 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농외소득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주요 농산물로는 밀, 옥수수, 콩,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가 있다.

〈표 1-3-3〉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단위 : 천 톤)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 밀 | 60,062 | 54,413 | 61,677 | 58,105 | 55,147 | 55,840 | 62,859 | 47,371 | 51,287 |
| 옥수수 | 316,165 | 313,949 | 273,820 | 351,272 | 361,091 | 345,486 | 384,778 | 370,960 | 392,451 |
| 콩 | 90,605 | 84,192 | 82,791 | 91,389 | 106,878 | 106,954 | 117,208 | 119,518 | 123,664 |
| □ 우유 | 87,474 | 88,979 | 91,010 | 91,277 | 93,461 | 94,618 | 96,359 | 97,735 | 98,690 |
| 쇠고기 | 12,046 | 11,921 | 11,811 | 11,719 | 11,453 | 10,777 | 11,470 | 11,907 | 12,219 |
| 돼지고기 | 10,186 | 10,331 | 10,554 | 10,525 | 10,368 | 11,121 | 11,320 | 11,611 | 11,943 |
| 닭고기 | 16,971 | 17,111 | 17,035 | 17,397 | 17,722 | 18,403 | 18,708 | 19,141 | 19,568 |

자료 : FAOSTAT

미국은 곡물, 대두, 과일 및 견과류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곡물은 2018년 기준 대 세계 수출액 1위를 기록하고 있다. (Global trade atlas, 2018)

〈표 1-3-4〉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상위 5개 국가('18)

| 수 출 | 수출액(억 달러) | 점유율(%) | 수 입 | 수입액(억 달러) | 점유율(%) |
|-------|-----------|--------|-------|-----------|--------|
| □ 캐나다 | 23 | 28.8 | □ 멕시코 | 25 | 21.5 |
| 멕시코 | 14 | 11.6 | 캐나다 | 19 | 16.0 |
| 일본 | 9 | 7.3 | 프랑스 | 6 | 5.0 |
| 중국 | 7 | 6.2 | 이탈리아 | 5 | 4.0 |
| 한국 | 5 | 4.5 | 중국 | 4 | 3.6 |
| □ 총액 | 120 | 100 | □ 총액 | 118 | 100 |

자료 : Global trade atlas

〈표 1-3-5〉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 수 출 | 수출액(억 달러) | 점유율(%) | 수 입 | 수입액(억 달러) | 점유율(%) |
|-------------------------|-----------|--------|------------------------------------|-----------|--------|
| □ 곡물 | 21 | 17.5 | □ 음료·주류·식초 | 25 | 21.2 |
| 대두 | 17 | 14.3 | 식용 과일, 견과류 김귤류·멜론의껍질 | 17 | 14.8 |
| 식용 과일, 견과류 김귤류·멜론의껍질 | 15 | 12.2 | 식용 채소·뿌리·괴경 | 10 | 8.7 |
| 조제식품 | 9 | 7.4 |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부분 조제품 | 9 | 7.4 |
| 음료·주류·식초 | 9 | 7.2 | 곡물·고운가루·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 8 | 6.7 |
| □ 총액 | 120 | 100 | □ 총액 | 118 | 100 |

자료 : Global trade atlas

〈표 1-3-6〉 對 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9)

(단위 : 천불)

| 순 위 | 수 출 | | 수 입 | |
|-----|---------|--------|---------|-----------|
| | 품목 | 금액 | 품목 | 금액 |
| 1 | 혼합조제식료품 | 78,280 | 쇠고기 | 1,825,765 |
| 2 | 기타음료 | 69,256 | 혼합조제식료품 | 991,536 |
| 3 | 커피 | 65,406 | 옥수수 | 581,490 |
| 4 | 라면 | 53,543 | 돼지고기 | 571,466 |
| 5 | 기타석제품 | 48,095 | 대두 | 453,419 |
| 6 | 배 | 34,222 | 밀 | 338,220 |
| 7 | 비스킷 | 28,425 | 사료용근채류 | 277,699 |
| 8 | 기타소스제품 | 27,235 | 치즈 | 252,839 |
| 9 | 비스킷 | 24,428 | 양조박 | 250,912 |
| 10 | 기타파스타 | 23,790 | 대두유 | 228,277 |

▶ 농업정책동향

미국의 농업정책 및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주요 농업정책은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단가, 연도별 예산 등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농업법(Farm Bill)으로 법제화하여 집행하고 있다. 향후 5년(2019년~2023년)간 미국의 농업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될 농업법(Farm Bill)은 2018년 1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최종 서명됨으로써 발효되었다.

2018년 미 농업법 개정에 따라 향후 5년(2019년~2023년) 동안 예상되는 농업분야 법정 의무 재정지출 규모는 약 4,283억불(연평균 857억불)로 예측되며, 이는 기존 2014년 농업법이 지속될 경우에 비해 향후 5년간 약 1,820백만불이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농업분야 재정지출액에서 차지하는 주요 정책 분야별 비중은 대체적으로 기존 2014년 농업법과 유사한데, 2018년 농업법이 시행되는 향후 5년간 전체 재정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영양지원(76.1%), 작물보험(8.9%), 품목별농가지원(7.3%), 보전프로그램(6.8%)의 순으로 예산지출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2014년 농업법에 비해 2018년 농업법에서 재정 지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보전(555백만불), 연구 및 지도(365백만불), 원예 농업(250백만불), 무역(235백만불), 에너지(109백만불), 품목별 농가지원정책(101백만불), 영양(98백만불) 등의 순이다.

둘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됨에 따라 국내·외산 농산물 및 식품의 위생검사기준과 통관절차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발생 이후 대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제정을 추진하였고 2011년 1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i) 안전한 생산·수확 기준 제시, 식품업체의 예방적 관리의무 부여 등을 통한 예방적 통제 강화, ii) FDA의 검사권한 강화와 생산·가공업자 기준 준수 강조, iii) 공급자증명제도 도입, 제3자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한 수입식품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이다.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의 후속조치로서 신선 농산물 생산·수확·포장 및 보관 기준, 식품과 사료의 우수제조 공정 및 위해분석 기반 예방적 관리, 해외공급업자 검증프로그램 등 관련 하위규정들에 대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최종 규정이 마련되면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셋째, 미국 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농산물시장 확대 및 수출 증대를 위해 WTO, APEC, FTA 등 각종 국제기구 및 양자간·다자간 지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6년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를 시작으로 출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은 2010년 미국, 2013년 일본이 합류하면서 12개 전체 회원국의 GDP 규모가 세계 GDP의 40% 수준이고 교역규모가 세계 교역의 1/4를 차지하는 거대규모의 협상이 되었다. 농업분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2015년 10월 5일 극적으로 타결된 TPP는 미국 의회를 통과되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탈퇴하였다. 이외에도 미국은 2013년 2월 시작된 유럽연합(EU)과의 범대서양무역동반자 협정(TTIP)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농업경제동향

중국의 농촌인구는 총인구의 39.4%인 551,620천명이며, 경지면적은 국토 전체 면적 942백만ha의 14.3%인 134,881천ha이다. 농산물(수산물 포함) 수입액은 1,509.7억달러이며, 수출액은 791억 달러로 718.7억달러의 농산물 무역 적자를 기록하였다. 농촌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6,020.7위안으로, 전년도 대비 9.6% 증가하였다. 중국의 농림축수산업 GDP는 73,567억 위안으로 국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이다.

〈표 1-3-7〉 2019년 중국의 주요 농업지표

| 구 분 | 단 위 | | 구 분 | 단 위 | |
|----------------------------|-----------|--------------------|--------------------------------|--------------|-----------------|
| ○ 농촌인구 - 총인구 대비 | 천명 % | 551,620 39.4 | ○ 농촌가구 1인당순수입 ○ 농촌가구 1인당가계비 | 위안/인 위안/인 | 12,363 9,679 |
| ○ 농촌취업인구 - 총 취업인구 대비 | 천명 % | 332,240 42.9 | ○ 1차산업 취업자 - 총 취업자 대비 | 천명 % | 194,450 25.1 |
| ○ 농림축어업GDP - 국가 총GDP 대비 | 억 위안 % | 73,567 7.4 | ○ 농림축수산물 수출 | 백만 달러 | 79,100 |
| ○ 경지면적 - 농작물재배면적 | 천ha | 134,881 165,931 | ○ 농림축수산물 수입 | 백만 달러 | 150,970 |

※ 자료 : 중국통계연감(2020), 중국농산물무역발전보고(中國農產品貿易發展報告)(2020)

▶ 농업정책동향

중국 정부(국무원과 공산당)는 2004년부터 매년 주요 국정방향과 과제를 담은 '중양 1호 문건'의 주제로 삼농(三農 :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채택해 왔다. 2019년에도 농촌 빈곤 탈피, 농민 소득증대 등 삼농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였다. 2019년 3월 개최된 양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 중 농업정책의 6대 핵심 과제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안정적인 식량 생산(신규 고품질 농경지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농업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신형 경영주체 육성, 1·2·3차산업 융합 추진), (2)맞춤형 빈곤 탈출(교육·의료·주택 보장, 절대빈곤지역의 특색·우위산업 발전 지원, 특수빈곤 인구에 대한 보장 조치 강화) (3)농촌 건설 추진(과학적인 농촌 건설 계획 수립, 6천만 농촌인구에 대한 식수 공급 보장, 농촌 전력 인프라 확충, 쓰레기·오수 관리 강화) (4)농촌 개혁(토지제도를 개선하여 시범 성과 보급, 재산권·산림소유권·농지개간 등 분야 개혁) (5)안정적인 소비 성장(농촌 유통망 개선, 전자상거래 및 택배업 발전 지원) (6)신형 도시화(농민공의 도시 정착 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 농업경제동향

일본의 2018년 농가인구는 총인구의 3.3%인 4,186천 명이며, 농가호수는 총가구수의 4.0%인 2,155천 명이다. 2019년 경지면적은 국토 37,797천 ha의 약 11.6%인 4,397천 ha이고, 호당 경지면적은 2.54ha이다. 2019년 농업 총생산액은 5.7조 엔으로 전체 GDP의 약 1%를 차지한다. 2019년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6,248억 엔이며, 수입액은 77,794억 엔으로 수출액의 12.5배에 해당한다. 농업소득(2018년 기준)은 174만엔으로 농가총소득의 34%를 차지한다. 일본의 식량자급률(2018년 기준)은 열량 기준으로 37%이며, 생산액 기준으로 66%이다. 이 중 쌀의 자급률은 97%이다.

〈표 1-3-8〉 일본의 주요 농업지표

| 구 분 | 단 위 | | 구 분 | 단 위 | |
|-----------------------------|----------|---------------|---------------------------------|----------|------------|
| ○ 농가인구(2018) - 총인구 대비 | 천명 % | 4,186 3.3 | ○ 주요농가총소득(2018) - 농업소득(2018) | 만엔 만엔 | 511 174 |
| ○ 농가호수(2015) - 총가구수 대비 | 천호 % | 2,155 4.0 | ○ 농업 취업자(2018) | 천명 | 1,757 |
| ○ 농업 총생산액(2019) - GDP 대비 | 조엔 % | 5.7 1.0 | ○ 농림축산물 수출(2019) | 억엔 | 6,248 |
| ○ 경지면적(2019) - 전체면적 대비 | 천ha % | 4,397 11.6 | ○ 농림축산물 수입(2019) | 억엔 | 77,794 |

자료 : 일본 농림수산통계(2019),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2019)

▶ 농업정책동향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8년 식량·농업·농촌 동향 및 시책을 정리한 「2018년도 식료·농업·농촌 백서」를 2019년 5월 공표하였다. 백서는 제1장 식료의 안정 공급 확보, 제2장 강한 농업의 창조, 제3장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 진흥, 제4장 동일본 대지진·쿠마모토 지진에 따른 복구 및 부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농업 추진현황을 특집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99년에 제정한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왔으며, 2020년 3월에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은 직전과 유사하나, 공격적인 수출 목표를 제시하고 국내 농업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 농업경제 동향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2016년 현재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정치적 연합체로서 1인당 GDP 30,946유로(2018), 인구 512,379천명(2018), 면적 4,463천km²의 거대 경제권이다.

EU 28개 회원국의 경지면적은 173,341천ha(2016), 농업 분야 취업자 수는 8,946천명(2016)이며, 농업 총 생산액은 365,488백만 유로(2018)이다.

2018년 농산물 생산액은 우유가 3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채소 및 원예제품이 25.6%, 곡물류 21.3%, 돼지고기 21.0%, 쇠고기 19.8%, 과일 13.4%, 가금육 13.0%, 와인 12.5% 순으로 나타났다.⁴⁾

농업생산에서 회원국들의 비중(2018)을 보면 프랑스(17.7%), 스페인(13.6%), 독일(12.0%), 이탈리아(11.8%), 영국(6.6%), 네덜란드(6.4%), 폴란드(6.3%), 루마니아(4.0%), 그리스(2.9%), 덴마크(2.3%), 헝가리(2.0%), 아일랜드(2.0%), 벨기에(1.9%), 포르투갈(1.8%), 오스트리아(1.6%), 스웨덴(1.3%), 체코(1.2%), 핀란드(0.9%), 불가리아(0.9%), 리투아니아(0.6%), 크로아티아(0.5%), 슬로바키아(0.5%), 슬로베니아(0.3%), 라트비아(0.3%), 사이프러스(0.2%), 에스토니아(0.2%), 룩셈부르크(0.1%), 몰타(0.0%)의 순이었다.

EU 국가별 농수산업 종사자(2016)를 보면 벨기에(0.6%), 리투아니아(1.7%), 네덜란드(1.6%), 영국(1.8%) 등은 그 비중이 낮은 반면, 폴란드(18.4%), 루마니아(18.3%), 이탈리아(10.0%), 스페인(9.2%), 프랑스(7.9%), 독일(5.6%) 등은 높은 편이다. 농업이 전체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2015)은 룩셈부르크(0.8%), 영국(1.1%), 스웨덴(1.4%), 몰타(1.5%), 독일(1.7%)은 낮은 편이며, 루마니아(9.6%), 불가리아(8.5%), 리투아니아(7.2%), 헝가리(6.9%)는 회원국 중 높은 편에 속한다.

EU의 농산물 무역에서 농산물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2016)은 수출이 7.5%이며, 수입은 6.6%이다. 농산물 역외 수출의 주요 대상국(2015)은 미국(18,207백만 달러), 스위스(6,673백만 달러), 중국(5,558백만 달러), 러시아(5,112백만 달러), 노르웨이(3,851백만 달러) 등이며, 포도주, 조제식료품, 위스키, 유아용 조제식료품, 맥주 등이 수출품목이다. 농산물 역외 수입의 주요 대상국(2015)은 브라질(10,060백만 달러), 미국(8,939백만 달러), 터키(5,132백만 달러), 아르헨티나(4,995백만 달러), 인도네시아(4,840백만 달러) 순이고, 볶은 커피, 대두 껍묵 및 고체 잔류, 코코아두, 팜유 및 조유, 담배, 옥수수 등이다.⁵⁾

EU의 농산물 교역은 역내 무역이 역외 무역에 비하여 비중이 크다. EU의 역외 농산물 무역은 2007년 이후 계속된 적자에서 벗어나 2010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자료출처: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2019)

4) 출처 : EUROPEAN UNION Statistical Factsheet, http://ec.europa.eu/agriculture/statistics/factsheets/index_en.htm

5) 출처 : Global Trade Atlas에서 EU28개국 기준으로 농산물 수출 순위 데이터 추출

〈표 1-3-9〉 EU의 주요 농업지표

| 국 가 (28개국) | 경지면적 (천ha) | 농장수 (천개) | 농장당 경지면적 (ha) | 농업분야고용 | | 농업 생산액 (백만 유로) | 농업 부가 가치 (백만 유로) | GDP 대비 (%) | 농산물 무역 | | | 가계 비중 식품비 (%) |
|---------------|---------------|-------------|---------------------|--------------------|-----------------|-------------------------|------------------------------|------------------|-----------------|-----------------|------------------------|------------------------|
| | | | | 취업자 (천 명) ** | 전체 대비 (%) | | | | 수입 비중 (%) | 수출 비중 (%) | 무역 수지 (백만 유로) | |
| | 2016 | 2016 | 2016 | 2016 | 2016 | 2018 | 2018 | 2018 | 2018 | 2018 | 2018 | 2011 |
| EU_28 | | | | 8,946 | 100.0 | 365,488 | 168,048 | 3.4 | 5.9 | 7.0 | 21,155 | 16.5 |
| 벨기에 | 1,354 | 37 | 36.7 | 55 | 0.6 | 7,021 | 1,682 | 1.9 | 8.9 | 10.1 | 6,103 | 16.9 |
| 불가리아 | 4,469 | 203 | 22.0 | 250 | 2.8 | 3,175 | 1,462 | 5.8 | 10.1 | 15.4 | 1,092.1 | 26.6 |
| 체코 | 3,455 | 27 | 130.2 | 103 | 1.2 | 4,531 | 1,480 | 2.9 | 5.7 | 4.2 | -1,717.9 | 23.9 |
| 덴마크 | 2,615 | 35 | 74.6 | 49 | 0.5 | 8,586 | 1,832 | 3.5 | 12.1 | 168 | 5,045.1 | 14.9 |
| 독일 | 16,715 | 276 | 60.5 | 503 | 5.6 | 43,799 | 14,747 | 1.7 | 8.2 | 5.6 | -15,165.4 | 14.7 |
| 에스토니아 | 995 | 17 | 59.6 | 20 | 0.2 | 594 | 199 | 3.1 | 8.9 | 7.0 | -420.9 | 28.3 |
| 아일랜드 | 4,884 | 138 | 35.5 | 161 | 1.8 | 7,296 | 2,344 | 3.0 | 10.1 | 9.1 | 3,596.6 | 15.8 |
| 그리스 | 4,554 | 685 | 6.6 | 457 | 5.1 | 10,426 | 5,564 | 8.6 | 11.9 | 17.6 | -657.4 | 20.6 |
| 스페인 | 23,230 | 945 | 24.6 | 822 | 9.2 | 49,772 | 29,102 | 6.5 | 9.4 | 15.7 | 14,990.6 | 16.9 |
| 프랑스 | 27,814 | 457 | 60.9 | 708 | 7.9 | 64,626 | 30,139 | 4.0 | 9.0 | 12.9 | 12,025.7 | 16.6 |
| 크로아티아 | 1,563 | 134 | 11.6 | 160 | 1.8 | 2,007 | 965 | 5.7 | 12.4 | 13.8 | -921 | |
| 이탈리아 | 12,598 | 1,146 | 11.0 | 897 | 10.0 | 43,125 | 29,520 | 4.1 | 9.3 | 9.1 | 2,538.4 | 17.0 |
| 사이프러스 | 112 | 35 | 3.2 | 19 | 0.2 | 669 | 342 | 4.9 | 12.2 | 9.1 | -731.1 | 17.3 |
| 라트비아 | 1,931 | 70 | 27.6 | 77 | 0.9 | 942 | 246 | 4.1 | 16.3 | 18.6 | -195.8 | 27.3 |
| 리투아니아 | 2,925 | 150 | 19.5 | 148 | 1.7 | 2,084 | 762 | 6.4 | 11.0 | 15.6 | 1,033.5 | - |
| 룩셈부르크 | 131 | 2 | 66.3 | 4 | 0.04 | 333 | 101 | 0.7 | 11.6 | 8.7 | -1,161.8 | 16.9 |
| 헝가리 | 4,671 | 430 | 10.9 | 394 | 4.4 | 7,390 | 3,318 | 8.2 | 5.7 | 8.2 | 2,864.2 | 24.7 |
| 몰타 | 11 | 9 | 1.2 | 5 | 0.1 | 96 | 48 | 1.2 | 10.3 | 4.7 | -429 | 18.2 |
| 네덜란드 | 1,796 | 56 | 32.3 | 147 | 1.6 | 23,321 | 10,208 | 4.3 | 11.1 | 14.7 | 28,987.2 | 14.8 |
| 오스트리아 | 2,670 | 133 | 20.1 | 3 | 0.03 | 5,818 | 2,755 | 2.2 | 7.7 | 7.9 | -289.1 | 13.4 |
| 폴란드 | 14,406 | 1,411 | 10.2 | 1,649 | 18.4 | 23,206 | 9,082 | 6.5 | 8.0 | 12.5 | 9,380.2 | 25.3 |
| 포르투갈 | 3,642 | 259 | 14.1 | 314 | 3.5 | 6,488 | 2,660 | 4.5 | 12.0 | 10.5 | -2,876.7 | 20.3 |
| 루마니아 | 12,503 | 3,422 | 3.7 | 1,640 | 18.3 | 14,786 | 6,785 | 10.6 | 9.2 | 9.7 | -1,118 | - |
| 슬로베니아 | 488 | 70 | 7.0 | 82 | 0.9 | 1,170 | 502 | 3.6 | 8.0 | 5.4 | -815.8 | 20.4 |
| 슬로바키아 | 1,890 | 26 | 73.6 | 47 | 0.5 | 1,974 | 556 | 2.8 | 5.7 | 3.5 | -1,750.8 | 22.3 |
| 핀란드 | 2,233 | 50 | 44.9 | 35 | 0.4 | 3,201 | 920 | 1.8 | 7.8 | 3.0 | -3,258.7 | 17.2 |
| 스웨덴 | 3,013 | - | 47.9 | 31 | 0.3 | 4,903 | 1,127 | 1.3 | 8.1 | 3.7 | -6,379.6 | 15.6 |
| 영국 | 16,673 | - | 90.1 | 163 | 1.8 | 24,148 | 9,601 | 1.4 | 9.6 | 6.2 | -28,974.3 | 12.7 |

주 : 1) 농장수(agricultural holdings):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단일 관리단위로 농지, 건물, 산림 등을 포함

자료 : Farm structure survey 2013(eurostat), statistical factsheet(EU 및 회원국) http://ec.europa.eu/agriculture/statistics/factsheets/index_en.htm

*GDP 대비(%): 벨기에 2014년 수치

**Total farm labour force(annual working units, AWUs)

***EU 전체: World Bank 2014년 수치

♀EU의 농업분야 고용 전체 대비 비중: 2012년 수치

▶ 농업정책동향

EU는 1957년 3월 로마조약에 의거하여 회원국 공통의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 CAP)을 실행하고 있다. 이 조약 내용을 살펴보면 EU농정은 단일시장(Single Market), EU 생산농산물 우선(Community Preference), 공동재정부담(Common Financial Responsibility)을 기본운용 원칙으로 삼고 공동농업정책(CAP)의 목표를 농업생산성 향상, 농민의 소득 향상,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적절한 소비자 가격 유지에 두고 있다.

이러한 CAP도 1988, 1992, 1999년(Agenda 2000), 2003년 7월(MTR) 및 2008년 건전성 평가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수차례의 개혁을 겪었다. 1차 개혁(1988) 때는 농산물 과잉생산문제가 그 배경이 되었고, 2차 개혁(1992) 때는 UR 협상에 대비 가격지지 축소 및 직접지불제 도입, 제3차 개혁(1999, Agenda 2000) 때에는 CAP 재정지출억제 등을 목표로 가격지지 축소, 직접지불 강화, 농촌개발정책 확대, 제4차 개혁(2003. 7)은 단일농가직접지불 제도의 도입, 가격지지 축소, 환경과 농촌개발 강화, 제5차 개혁(2013.6)은 기초직불제 도입, 회원국내 농가간 직불금 형평성 제고, 젊은 창업농 직불금 단가 상향, 소농에 대한 별도 직불제 도입, 직불금 30%는 환경보전의무 준수 조건으로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림 1-3-2〉 유럽연합(EU) 공동농업정책(CAP)의 변천 동향



공동농업정책은 5~6년간 지속되며, 2007~2013년 CAP 종료에 따라 2014년 EU 중기예산 편성을 기점으로 새로운 CAP 채택을 추진 하였다. EU 집행위는 2013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입법제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표하였다('12.10.21).

유럽의회·EU이사회·집행위는 '13.4월부터 40여 차례의 3개 기관 협의를 거쳐 '13.6월 차기 CAP 개혁안을 타결 하였다. 차기('14~'20) CAP 개혁안은 직불제 형평성 제고, 농업의 공익성·환경성 강화, 농가의 경영안정 강화, 공동농업정책의 효율성·투명성 강화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

신규 CAP은 '13년 9월 30일 최종타결 되었으며 개혁내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참고〉 차기 CAP 주요내용

| 정책방향 | 주요 내용 |
|---|--|
| ① 고용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소득 보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직불금의 형평성, 목표지향성 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 Basic Payment Scheme*을 도입하여 농가 간, 지역 간, 회원국 간 분배의 형평성 제고 * 실제 활동 농가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액 체감기준(연간 15만유로) 및 상한액 설정(30만유로) |
| ②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시장관리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가격변동성 확대 문제 대응을 위해, 현행 공적 개입과 민간 보유 지원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 - 모든 작물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새로운 시장관리정책 도입으로 광범위한 시장 교란 위기 시 EU집행위의 시장개입 허용 - 농산물 관련 보험과 뮤추얼 펀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 ③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녹색' 직불금 도입 (greening 의무 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농가 직불금의 30%에 대해서는 자연자원을 최적화 사용토록 하는 부대조건* 부여 * 재배작물 다양화, 영구적 초지 유지, 생태학적 목적의 경지면적(7%) 유보 등 |
| ④ 연구 및 혁신 관련 투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의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한 연구/혁신 예산 증액 및 농업계와 과학계 간의 파트너십으로 연구결과의 농촌현장 활용도 제고 |
| ⑤ 경쟁력 있고, 균형 잡힌 식품 체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분야의 거래 교섭력 제고를 위해서, 생산자 단체 및 분야 간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 - 현재 EU의 유일한 쿼터제도인 설탕 쿼터제도를 '15.9.30 이후 폐지키로 함 - 학교 급식(과일 및 우유 지원) 제도 확산 |
| ⑥ 농업/환경정책의 지역 자율성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가별, 지역별 차원의 농업/환경정책 활성화 추진*에 우선 순위 부여 * 생태계 보존/회복,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 |
| ⑦ 젊은 농업인 창업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세 이하 농업인에 대해, 창업 초기 5년간 Basic Payment를 25% 추가 지원 (단, 회원국별 중소농에 한함) |
| ⑧ 농촌의 고용과 기업 활동 촉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rter kit" 프로그램* 등 다양한 농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신설 및 LEADER 프로그램의 지역활동그룹의 역할 더욱 강화 * 농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5년간 7만유로까지 지원 |
| ⑨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막화 방지 및 비옥한 영토 보존을 위해, 자연조건 불리지역 농업인들에 대한 회원국 차원의 지원액 증액*(현행 회원국 예산의 5% 범위 내) · 이를 위해 EU의 회원국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및 기존 농촌지역개발정책 차원의 예산 이외에 추가예산 지원 |
| ⑩ CAP 단순화 및 효율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최소화를 위해, CAP 집행과정 단순화 · 예를 들어, 환경보존 의무 등 cross-compliance 의무이행 항목 감소 - Small Farmers Scheme 제도 도입으로 중소농 지원책 단순화 · 2014.10.15까지 등 제도수혜 신청 중소농에 대해서 500~1000유로의 직불금을 연간 지급, Cross-compliance 의무 경감 및 녹색 직불금 의무 면제 등 - 경영이양 중소농의 농지 매매 활성화로 농업 구조조정 촉진 |

2. 주요 국가 통상 협력

◆ 미국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강현수

미국은 우리의 최대 농식품 수입 상대국으로서 2019년에 쇠고기, 혼합조제식료품, 옥수수, 돼지고기, 대두, 밀, 사료용근채류, 치즈, 양조박, 대두유 등 거의 모든 농식품에 걸쳐 90억 달러를 수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미 수출 상위 10개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 기타음료, 켈런, 라면, 기타석제품, 배, 비스킷, 기타소스제품, 비스킷, 기타 파스타 등으로 9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5년 대비 28.3% 증가하였으며,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농축수산물 수출 비중에서 12.4%를 차지하여 일본, 중국에 이어 3대 수출시장에 속한다.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양국간 농업분야 교역을 보다 활발해 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농식품 교역과정에서 크고 작은 통상현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양국 간 농식품 통상현안은 동·식물 검역 문제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다자 및 양자 간의 관세인하 약속의 이행 등이 있다. WTO/SPS 관련, 협정상의 기존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SPS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SPS 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미 FTA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농산물무역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개최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교역 상대국들은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협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014년 7월 한·미 양국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상호 동등성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 유기제품으로 인증된 가공식품은 수입국 내 별도 인증 과정을 다시 거치지 않고도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미국에 열처리 가금육제품 수출 가능 국가 등재를 통해 삼계탕 대미 수출허용을 촉구하였고, 한라봉·천혜향 등 식물분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대미 수출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 결과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FSIS)은 2014년 3월 26일 우리나라 삼계탕의 대미 수출을 허용하는 연방규정 개정내용을 공포(5월 27일 시행)하였고, 동식물위생검사청(APHIS)은 2015년 1월 30일 한국산 한라봉·천혜향 수입을 허용하는 연방규정 개정내용을 발표·시행하였다.

미국은 2016년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통해 2014년 12월 워싱턴 및 오리건 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한국의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가금류 수입 금지, 2012년 8월 PNW지역(아이다호·오리건·워싱턴 주)에서 감자 제브라칩 발생 이후 해당

지역산 식용 감자 수입 금지, 농업 생명공학 승인 과정에서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문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미간의 농식품 통상현안은 WTO/SPS 회의, 한미 FTA 농업/SPS위원회, 한·미간 동·식물 검역 전문가회의 등 정기적 협의절차 이외에 주미 한국대사관 농무관 및 수의검역관의 외교 활동과 주한 미국대사관 농무관 등과의 공식·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일상적인 통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3-10〉 한·미간 농림축산식품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19/'18(%) |
|-----|-------|-------|-------|-------|-------|-------|------------|
| 수 출 | 합 계 | 627 | 715 | 745 | 800 | 874 | 109% |
| | - 농산물 | 558 | 632 | 640 | 673 | 739 | 110% |
| | - 축산물 | 35 | 35 | 37 | 42 | 58 | 138% |
| | - 임산물 | 34 | 48 | 68 | 85 | 77 | 91% |
| 수 입 | 합 계 | 6,999 | 6,851 | 7,828 | 9,373 | 8,953 | 96% |
| | - 농산물 | 4,408 | 4,349 | 4,887 | 5,849 | 5,313 | 91% |
| | - 축산물 | 1,761 | 1,824 | 2,181 | 2,736 | 2,946 | 108% |
| | - 임산물 | 830 | 678 | 760 | 788 | 695 | 88% |

자료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표 1-3-11〉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천 톤, 백만 달러)

| 2015년 | | | 2016년 | | | 2017년 | | | 2018년 | | | 2019년 | | |
|--------|------|------|---------|------|-------|---------|------|------|----------|------|----|---------|------|----|
| 품목명 | 물량 | 금액 | 품목명 | 물량 | 금액 | 품목명 | 물량 | 금액 | 품목명 | 물량 | 금액 | 품목명 | 물량 | 금액 |
| 곶감 | 3.1 | 91.5 | 곶감 | 3.0 | 103.9 | 곶감 | 2.9 | 94.9 | 혼합조제식품 | 16.9 | 70 | 혼합조제식품 | 21.1 | 78 |
| 김 | 4.8 | 71.5 | 혼합조제식품 | 13.7 | 71.4 | 김 | 4.1 | 86.6 | 기타음료 | 93.0 | 66 | 기타음료 | 96.6 | 69 |
| 혼합조제식품 | 13.8 | 65.2 | 김 | 3.7 | 70.3 | 기타어류 | 3.7 | 71.4 | 곶감 | 2.7 | 60 | 곶감 | 4.0 | 65 |
| 기타음료 | 76.5 | 57.2 | 기타음료 | 86.3 | 62.9 | 혼합조제식품 | 15.8 | 71.1 | 기타석제품 | 4.5 | 58 | 라면 | 14.9 | 54 |
| 기타어류 | 2.9 | 45.6 | 기타어류 | 3.1 | 52.6 | 기타음료 | 90.1 | 60.9 | 라면 | 13.9 | 50 | 기타석제품 | 5.1 | 48 |
| 라면 | 7.8 | 29.6 | 라면 | 9.9 | 35.6 | 기타석제품 | 3.6 | 46.3 | 배 | 12.1 | 36 | 배 | 11.2 | 34 |
| 배 | 9.3 | 26.0 | 배 | 10.4 | 29.5 | 라면 | 11.8 | 41.1 | 비스킷 | 5.6 | 31 | 비스킷 | 6.7 | 28 |
| 비스킷 | 4.0 | 21.5 | 비스킷 | 5.4 | 26.6 | 배 | 10.6 | 30.4 | 기타소오스제품 | 6.0 | 24 | 기타소오스제품 | 5.3 | 27 |
| 젤라틴 | 1.5 | 18.5 | 기타석제품 | 4.8 | 26.4 | 비스킷 | 4.7 | 25.9 | 기타베이커리제품 | 5.2 | 23 | 비스킷 | 5.2 | 24 |
| 굴 | 2.8 | 18.1 | 기타소오스제품 | 5.4 | 18.6 | 기타소오스제품 | 5.3 | 20.3 | 기타파스타 | 7.3 | 20 | 기타파스타 | 8.3 | 24 |

자료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표 1-3-12〉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천톤, 백만달러)

| 2015년 | | | 2016년 | | | 2017년 | | | 2018년 | | | 2019년 | | |
|--------|---------|-------|--------|---------|---------|--------|---------|---------|--------|---------|-------|--------|---------|-------|
| 품목명 | 물량 | 금액 | 품목명 | 물량 | 금액 | 품목명 | 물량 | 금액 | 품목명 | 물량 | 금액 | 품목명 | 물량 | 금액 |
| 쇠고기 | 115.4 | 802.0 | 쇠고기 | 168.6 | 1,035.0 | 쇠고기 | 189.9 | 1,255.9 | 쇠고기 | 224.2 | 1,635 | 쇠고기 | 247.6 | 1,826 |
| 옥수수 | 3,538.5 | 764.9 | 옥수수 | 4,232.6 | 832.5 | 옥수수 | 4,429.7 | 853.2 | 옥수수 | 6,744.5 | 1,414 | 혼합조제식품 | 22.0 | 992 |
| 혼합조제식품 | 19.3 | 541.0 | 혼합조제식품 | 21.8 | 651.9 | 혼합조제식품 | 21.6 | 681.3 | 혼합조제식품 | 20.7 | 779 | 옥수수 | 2,726.6 | 581 |
| 돼지고기 | 150.7 | 455.4 | 돼지고기 | 149.0 | 393.4 | 돼지고기 | 169.5 | 455.0 | 돼지고기 | 224.9 | 601 | 돼지고기 | 210.4 | 571 |
| 밀 | 1,164.8 | 363.1 | 밀 | 1,116.8 | 291.2 | 밀 | 1,388.6 | 330.1 | 밀 | 1,367.1 | 369 | 대두 | 1,075.5 | 453 |
| 대두 | 531.6 | 287.1 | 대두 | 622.1 | 290.1 | 사료용근채류 | 1,061.0 | 311.2 | 대두 | 695.7 | 316 | 밀 | 1,238.9 | 338 |
| 면 | 165.3 | 281.4 | 사료용근채류 | 864.6 | 230.6 | 대두 | 586.3 | 280.7 | 사료용근채류 | 818.4 | 264 | 사료용근채류 | 857.0 | 278 |
| 사료용근채류 | 794.9 | 254.8 | 오렌지 | 152.8 | 225.6 | 면 | 144.3 | 275.0 | 면 | 125.4 | 256 | 치즈 | 61.4 | 253 |
| 치즈 | 54.8 | 250.7 | 양조박 | 862.5 | 184.7 | 오렌지 | 141.0 | 242.0 | 오렌지 | 134.6 | 251 | 양조박 | 1,147.3 | 251 |
| 아몬드 | 22.4 | 230.6 | 판지 | 822.0 | 180.4 | 치즈 | 49.0 | 209.1 | 양조박 | 1,096.3 | 245 | 대두유 | 307.3 | 228 |

자료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 중국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서지에

한국과 중국의 농식품 교역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래 급격히 증가되어 왔으나,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감소하다가 반한 감정 완화,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 확대 등으로 2019년 회복세로 돌아왔다. 2019년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1,106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4,411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다.

양국 간 통상현안 협의는 매년 개최되는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와 한·중 무역실무회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농식품의 한국 수출 증대에 관심이 매우 크며,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정관세 폐지 및 세율 인하, 수입입찰제도 개선 등 경제·통상 분야의 관심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요청사항에 대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동식물 검역제도 및 수입절차를 설명하고 상호 간 협력을 통하여 무역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한편 양국 간 농업의 상호보완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6년 한·중 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제18차 한·중 농업협력위원회가 2018년 6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함에 따라 APEC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 제7차 회의 시 한·중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종전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위주의 협력을 농업정책 및 통상 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일본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서지에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 농수산물식품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2019년 기준 對일본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427백만 달러로 전체 농림축산식품 수출액 7,028백만 달러의 20.3%를 차지한다.

일본은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하고 농업통상 분야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FAO, OECD, APEC 등 국제기구에서 상호 정보교류와 공조체제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고, 양국 주재공관 등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8년 10월 한·일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양국을 둘러싼 새로운 경제정세를 기초로 포괄적인 경제통상 분야의 협의를 위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16년 1월 제14차 회의가 동경에서 개최되어 다자 및 지역 차원의 협력, 양국 통상 분야 협력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은 상호보완적 농업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1968년부터 한·일 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를 매년 개최하여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를 추진하여 왔으며, 제51차 회의를 2018년 10월 일본에서 개최하였다.

한편 일본은 2003년 5월 식품위생법을 개정, 농림축산물의 생산·가공 단계 등에서 사용되어 식품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농약,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 첨가물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5월 29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제도 시행 전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29개 종류에 대하여 우리 기준을 반영시켰으며, 관심품목에 대한 우리 측 잔류기준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일본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동시에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캐나다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강현수

캐나다산 농림축산식품은 2019년 996백만 달러 수입되었으며, 주요 품목은 펄프, 돼지고기, 밀, 유채유, 혼합조제식료품, 침엽수원목, 침엽수제재목, 쇠고기, 감자, 개 사료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은 라면, 커피조제품, 아이스크림, 기타 음료, 혼합조제식료품, 인스턴트 면, 기타베이커리제품, 비스킷,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등이 수출되고 있으며, 2019년 수출액은

95백만 달러로 전체 농림축산식품 수출(70억달러) 대비 1.4%를 기록하였다. 캐나다와의 한·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은 2015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캐나다 측은 2003년 5월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이후 금지된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2007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미국과 동일한 소해면상뇌증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 받은 것을 근거로 미국과의 차별 없는 수입조건 설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우리 측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양국간 전문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으로 대응한 바 있다. 캐나다 측은 2009년 4월 9일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여 8월 31일 분쟁패널이 구성되는 등 WTO 분쟁절차가 진행되었다. 2011년 6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합의를 이루었고, 같은 해 12월 국회심의 절차도 마무리되었다. WTO 분쟁절차는 양자 간 합의에 따라 2012년 6월 공식 종료되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대해 자국산 블루베리의 수입 허용을 촉구하고 있으며, 2009년 8월 제정된 북미식물검역보호기구(NAPPO) 지역위생기준을 통해 캐나다에 출입 또는 수출되는 선박과 화물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AGM) 무감염 증명 규정을 201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 통해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예찰 및 방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 및 주한 캐나다대사관과의 공식·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통상현안 및 협력문제를 풀어 가고 있다.

〈표 1-3-1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수출 (A) | 합계 | 81.8 | 109.2 | 138.1 | 98.5 | 105.1 | 87 | 95 |
| | 농산물 | 58.1 | 79.9 | 107.8 | 66.1 | 67.3 | 83 | 89 |
| | 축산물 | 2.0 | 1.7 | 1.2 | 2.1 | 2.3 | 3 | 5 |
| | 임산물 | 0.7 | 1.3 | 1.1 | 0.6 | 1.3 | 0.9 | 1 |
| 수입 (B) | 합계 | 1,022.7 | 946.7 | 842.1 | 911.2 | 1,105.6 | 1,045 | 996 |
| | 농산물 | 289.3 | 358.1 | 292.1 | 337.6 | 377.4 | 362 | 448 |
| | 축산물 | 128.2 | 131.2 | 121.6 | 129.1 | 154.9 | 161 | 178 |
| | 임산물 | 528.2 | 403.1 | 367.4 | 362.3 | 473.3 | 522 | 370 |
| 무역수지(A-B) | | -940.9 | -837.5 | -704.1 | -812.7 | -1,000.5 | -958 | -901 |

자료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KATI)

〈표 1-3-14〉 대 캐나다 주요 수출입 농림축산식품('19)

(단위 : 백만달러)

| 순 위 | 수 출 | | 수 입 | |
|-----|----------|----|---------|-----|
| 1 | 라면 | 10 | 펄프 | 260 |
| 2 | 커피조제품 | 8 | 돼지고기 | 131 |
| 3 | 아이스크림 | 6 | 밀 | 120 |
| 4 | 기타음료 | 4 | 유채유 | 111 |
| 5 | 혼합조제식료품 | 4 | 혼합조제식료품 | 80 |
| 6 | 인스탄트면 | 4 | 침엽수원목 | 46 |
| 7 | 기타베이커리제품 | 4 | 침엽수제재목 | 37 |
| 8 | 비스킷 | 4 | 쇠고기 | 34 |
| 9 | 새송이버섯 | 3 | 감자 | 30 |
| 10 | 팽이버섯 | 3 | 개 사료 | 19 |

자료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KATI)

◆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강현수

2019년 유럽연합(EU, 27개국)과 우리나라 간 농림축수산물 총 교역액은 49.7억 달러로 FTA 발효 및 타결국 기준 미국, 아세안, 중국에 이어 4번째 규모이다. EU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약 3.9억 달러('19)로 아세안,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세계 5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다. 수입액은 45.9억 달러('19)로 미국, 아세안에 이어 3번째로 큰 수입국이다.⁶⁾

이와 같이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EU로부터 수입이 수출보다 월등히 많은 교역 구조이며, 한국과 EU 간에는 주로 EU에서 한국으로의 농림축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위생 및 검역 문제가 양측 간 통상현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현안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한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EU 회원국산 동물·동물성산물 및 식물·식물성산물의 수입문제이다. 이들 현안은 주로 한국과 EU 개별 회원국의 관련 당국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해진 수입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 이미 수입이 허용된 품목의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하여도 개별 회원국과 기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EU 집행위 차원에서는 2001년 4월 1일에 발효된 한·EU 기본협력 협정하에 설치된 한·EU 공동위원회에서 농수산 분야 의제도 포함하여 논의해 오고 있다. 특히 동 공동위원회 산하에 농업 실무 작업단을 구성하여 양자 간 농업통상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통상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왔으나, 2011년 7월 1일자로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동식물 검역 관련 통상현안 문제는 FTA 협정하에 설치된 SPS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EU 측의 관심사항인 EU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EU 측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확보 및 다른 국가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사례 등을 들어 EU산 쇠고기에 대하여도 위험평가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우리 측은 EU 지역에서 발생하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EU와의 검역현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검역협정(WTO/SPS) 및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WTO/TBT), 세계동물기구(OIE)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틀 안에서 협의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 양자 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의 동구권 국가에서 우리나라와의 농업 분야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농업생산, 농산물 가공 및 식품안전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 교환, 기술 및 경험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중남미 국가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강현수

중남미 국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농작물 및 가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중해과실파리나 구제역 등이 발생하고 있어 농산물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농산물 교역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일부 국가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동식물 검역상의 문제가 해소될 경우에는

6) Kati(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수출입통계

농산물 교역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브라질은 세계 제2위의 농업국가로서 생산량과 수출량에 있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옥수수, 대두박, 커피, 오렌지 등 검역문제가 해소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대두유, 옥수수, 대두박의 수출이 많은 편이다. 칠레와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로 포도, 포도주, 키위, 돼지고기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교역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남미 국가는 동식물 위생 및 검역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ABC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 주요 국가 및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의 레몬·쇠고기 및 가금육, 브라질의 감귤류·쇠고기 및 돼지고기, 칠레의 자몽·양고기, 멕시코의 페르시안라임 및 가금육, 페루의 멕시칸라임·아보카도, 우루과이의 감귤류 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지역에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채소종자와 사과·배 등 과일류를 수출하기 위해 식물검역상의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등의 열대과일 및 육류의 시장개방 요청에 대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SPS)」과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대국의 위생상황에 따라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며, 그 외 농산물의 경우 UR 협상에서 양허한 범위에서 수입관리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며 대응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식량 및 유전자원의 확보 등 자원 외교적 측면과 농업 분야 국제협상에서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들 간의 농업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005년 5월에는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브라질과 「한·브라질 농업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후 2년마다 농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06년 2월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1차 한·브라질 농업협력위원회를 시작으로 하여 2차 농업협력위원회는 2008년 8월에 서울에서, 3차는 2010년 11월 브라질에서, 4차는 2012년 11월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양국의 농업부문 협력을 위한 정보 및 전문가 교환, 공동 연구 등 농업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서지에, 박다음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 등을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우리나라와 농업 분야 교역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국의 농업혁신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벤치마킹 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등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농업국가로서 미작 위주의 농업 구조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많아 이들 국가에서 우리나라와의 농식품 분야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의 전통적인 농업국가들은 매년 무역 불균형 해소를 내세워 개별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검역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열대과일 등 농축산물 수입 허용, 검역협정 체결 등 자국산 농산물의 對한국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양국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농업장관회의, 경제공동위원회, 주한주재관 면담 등 다각적인 협의 통로를 통해 UR 등 국제적 협상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관리 제도의 이해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 검역 현안에 대하여는 WTO SPS 규정,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국제식물보호협약), OIE 등 관련 국제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입허용절차가 운용되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아세안 회원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검역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검역시스템을 소개하고, 참가국 간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는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연수, 축산물안전관리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수입허용절차 등 동식물 검역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 각국과의 주요한 통상 협력채널로서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정례적인 경제공동위원회 및 무역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농업장관회담, 외무장관회담 등을 통하여 양국 농업교류 및 기술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2편

2019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I. 총론

II.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확충

제1장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 안정

제2장 농식품 유통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

III.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제3장 핵심인력 양성 및 전문경영체 육성

제4장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

제5장 농식품 안전성·품질관리 강화

제6장 식품산업 선진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IV.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농촌 조성

제7장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활력 증진

V. 농식품산업 국제협력

제8장 체계적인 대외 협상 및 해외 농업 자원 개발

I. 총론

■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황수지

◆ 농가 소득 향상

쌀값 안정, 재해보장 정책 등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년 평균 농가소득 4,118만원으로서, 농가소득 4,000만원 이상 수준을 2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수확기에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벼 재배면적을 5만 6천ha 감축하여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19년 189,964/80kg)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캠페인, '초등학생 아침급식' 지원, 쌀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쌀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식량원조(7개국, 쌀 11.3만톤)를 통해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하여 쌀 수급을 안정화하였다. 아울러 2019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율 검증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쌀 관세율 513%를 확정하였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지원도 확대하였다. 재해 피해 농가의 신속한 영농 복구를 위해 농약대·대파대 등의 지원단가를 '18년 66%에서 '19년 72%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재해복구비 지원 항목에 블루베리·체리·식용곤충 등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였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38.9%로 증가하였고, 금년 재해 피해 농가 18만 5천호가 1조 832억원의 재해보험 수혜를 받았다. 또한, 안전사고가 잦은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료 산정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보험 수준 보험 상품(2종)을 개발하여 안전보험 가입 농가가 지난해보다 5만명 증가한 85만명에 이르렀다.

◆ 가축질병 대응

가축질병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처로 질병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가축전염병으로부터 농가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축산물 소비를 보장하였다. 최초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총력대응하여 타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구제역의 경우 역대 최단기간에 추가확산을 차단하였다. 또한 오리 사육제한, 거점소독시설 조기 운영, 방역취약분야 중점관리 등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여 조류 인플루엔자(AI)는 '19년 동절기에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농산물 수급안정 제고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이 불안할 때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고,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받는 '채소가격안정제'를 정착하여 대상품목을 늘리고('16년 2개 → '17년 4개 → '18,19년 6개), 평년 생산량의 5% 수준에서 12%로 물량을 확대하였다. 중소농의 시장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 선별·출하 조직인 '기초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생산자가 마케팅과 수급 조절 역할을 수행하는 '의무자조금' 품목을 9개 늘려 총 19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이 운영된다.

또한,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쇼핑몰, 공영홈쇼핑 등 신유통경로를 활성화하여 직거래 규모가 전년 대비 12.8% 증가하였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로컬푸드 중심의 공공 급식 지원 표준 조례'를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지역 농산물이 지역에서 우선 소비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공익직불제 제도 정비

공익증진직불법을 제정('19.12.27)하여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확보하였다. 친환경농업 직불 단가 인상 및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19년 5개소)으로 생태·환경 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였다. 또한, 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를 ha당 5만원 인상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였다.

◆ 농업 신규인력 유입 및 농촌 삶의 질 제고

2018년 도입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성장 가능성이 크고 농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선발하여 농업 분야의 창업과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까지 만 40세 이하,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 3,200명을 선발하여 초기 생활안정자금(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창업자금 저리 대출 및 농지 임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성장 단계에 따른 영농기술·경영 교육도 실시하였다. 선발된 청년들 중 창업 예정자 및 영농 경력 1년 이하 청년이 2,747명으로 신규 농업인이 전체 지원 대상의 85.9%였으며, 귀농 청년은 2,273명(전체의 71.0%)으로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100원 택시와 같은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전체 군지역으로 확대했고, 택시형과 함께 버스형까지 추가 운영('18년 76개군 → '19년 81개군)하였다. 또한, 취약농가 인력지원 단가 인상 및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실시 등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액을 '18년 40,950원에서 '19년 43,650원으로 인상하였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11개 시·도의 사회적 농장('18년 9개소 → '19년 18개소) 및 협력기관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또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42,356호의 농촌주택을 정비하였으며, 철거된 공간은 주민 공동주차장, 마을 광장, 텃밭 등으로 활용하였다.

◆ 친환경 고품질 먹거리 공급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위해 친환경농업지구('17~'19년 47개소)와 광역 산지유통 조직 등 생산·유통 기반을 확충하여 유기 재배면적이 '17년 대비 43.7%('17년 20,673ha → '19년 29,711ha) 증가하였다. 또한, 축산 분야에 있어서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 밀도를 유럽연합의 기준(0.05m²/마리 → 0.075m²)으로 강화하였고, '계란 사육환경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였다. 동물복지형 축사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강화하였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2,610호)으로 축산환경 개선과 축산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 확대하였으며, 작물별 농약제품 안내서와 농약안전사용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다.

연간 24만명의 전국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과채로 만든 과일간식을 공급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에게 공급·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하였다.

◆ 스마트팜 혁신거점 확충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지원을 통해 스마트 온실을 5,383ha, 스마트 축사를 2,390호까지 확대하였다. 청년 인력 육성, 기술혁신, 전후방 산업 성장, 규모화·집적화로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선정(상주·김제·고흥·밀양)하였다. 또한, 스마트팜 확산에 필요한 시설원에 기자재 구동기·센서 22종에 대해 KS 국가표준으로 등록하는 등 스마트팜 전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중동,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관심으로 스마트팜 설비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가속화 하고 있다.

Ⅱ.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확충

제1장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 안정

제1절 농식품산업의 지원 기반 강화

1. 경영체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사무관 최상만

◆ 추진배경 및 개요

2007년 이후, 칠레를 필두로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대외개방이 확대되고,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경영여건의 불안정이 가중되었다. 이에 대응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 정부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제를 도입하였으며, 동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농정현안 대응, 농업정책의 효과성 검증 및 정책방향 정립, 농립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 중이다.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본격 도입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09년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을 통합 접수하는 등, 농업인 편의와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지속하여 추진 중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9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지급 신청 접수를 위해 농관원과 지자체에서는 4,861개소 통합접수 센터를 설치하였고, 동 결과를 토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지조사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169만호의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8년 대비 28,821호(1.7%) 증가한 것이다.

〈표 2-1-1〉 농업경영체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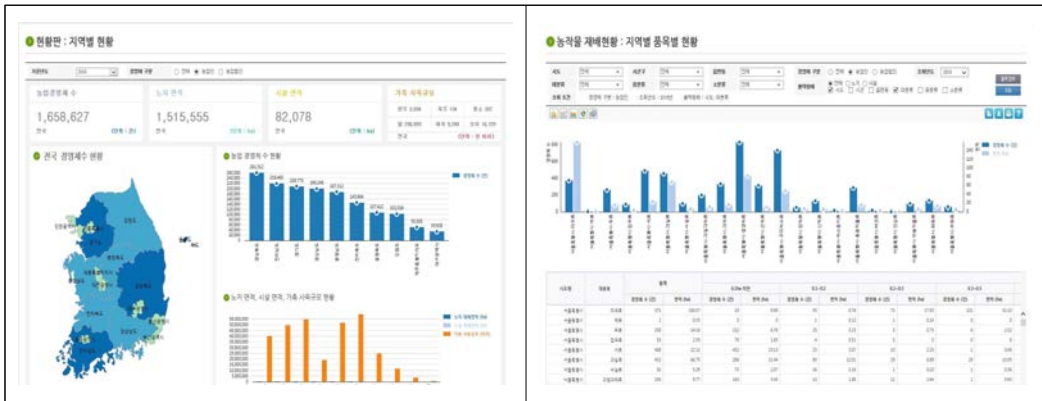
(단위 : 호)

| 구분 | 2018 | | | 2019 | | | 대비 |
|-------|-----------|-----------|--------|-----------|-----------|--------|------|
| | 합계 | 농업인 | 법인 | 합계 | 농업인 | 법인 | |
| 경영체 수 | 1,670,227 | 1,658,627 | 11,600 | 1,699,048 | 1,686,068 | 12,980 | 1.7% |

등록·관리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정책 등에 관한 정부의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농업인 자격증명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확인 하는 등 그 활용범위는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시스템을(www.agrix.go.kr)을 통해 손쉽게 경영체 일반현황, 품목별 재배현황 등 집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은 성별, 연령, 전겸업 등으로 세분화된 정보를 볼 수 있고, 품목은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단계로 선택할 수 있고, 지역별 정보는 시도-시군구-읍면동 지역까지 서비스 가능하다.

〈그림 2-1-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품질향상을 위해 미갱신 경영체를 현지조사하고, 토지대장 등 타 공공데이터와 교차점검을 통해 등록정보를 갱신하는 등 다양한 관리·검증수단을 활용해 등록정보의 품질관리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켰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9년은 농업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등록항목 조정 등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서식 등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공공데이터 교차점검 등을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타부처, 지자체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활용도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농업정책 활용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등록정보 수집 및 신뢰도가 낮은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자료의 정확성 향상 등 등록정보 항목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확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강화하면서 등록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단계별 오류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2.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 식량산업과 사무관 진필식

◆ 추진 배경 및 개요

'70년대 중·후반까지 쌀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부족분은 수입으로 충당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수입에 소요되는 외화를 절약하기 위해 쌀 생산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력을 도입하고 수요를 통제하여 수급균형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94년 UR협상 타결 이후 국제질서에 부합한 시장 지향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고품질 쌀 생산, 영농 규모화, 농가소득 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며, 산업기반의 개선에 노력이 필요한 쌀 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했다.

또한,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농업의 영세화·고령화에 대응하여 규모의 경제창출을 통한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09년부터 50ha이상 들녘에서 육묘에서 수확까지 생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으로 쌀 산업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정부는 '20년까지 논 타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식량산업의 핵심 경영주체로서 들녘경영체 500개소 육성을 목표로 '19년까지 407개소를 선정·지원하였다. '19년 현재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경영체는 383개소로 들녘경영체의 공동경작면적은 88,052ha, 전국 논 면적 829,778ha의 10.6%를 차지하며, 평균적으로 경영체당 185ha를 공동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작물공동경영체는 집단화된 농지 내 크고 작은 다수의 농가들이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식량작물 생산 및 생산비 절감 등으로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는 공동영농시스템으로 농업 경영구조 개선, 농지 이용률 제고에 효율적인 대안인 동시에 지역공동체 유지, 쌀 과잉문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2-1-2〉 연도별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신규 선정·지원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계 |
|-----|------|------|------|------|------|------|------|------|------|------|------|-----|
| 지 원 | 12 | 18 | 69 | 19 | 14 | 26 | 66 | 47 | 53 | 56 | 27 | 407 |
| 예 산 | 15 | 23 | 10 | 10 | 10 | 25 | 45 | 108 | 111 | 112 | 137 | 606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은 3가지 지원 사업으로, '09년부터 규모화에 수반되는 개별농가의 조직화 촉진을 위해 조직관리, 공동영농계획 수립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과 논에서 타작물 생산 및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6년부터는 공동경영 활성화를 통해 비용절감, 생산·판매 규모화로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보이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를 대상으로 생산 및 생산 이후에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다각화 지원을 통해 논 타작물 재배확대, 생산물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운영효과 관련 조사 및 연구에 따르면 들녘경영체 참여 후 직접생산비 절감율은 일반 논벼 재배농가와 비교했을 때 노동력 절감, 대량구입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직접적인 비용절감 효과 중심으로 17.2%의 직접생산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3〉 들녘경영체 직접생산비 절감을 조사결과

(단위 : 원/10a, %)

| 생산비 항목별 | 종묘비 | 비료비 | 농약비 | 기타 재료비 | 농구비 ¹⁾ | 노동비 | 위탁 영농비 | 기타 ²⁾ | 계 | 비용 절감효과 |
|------------------|--------|--------|--------|--------|-------------------|---------|---------|------------------|---------|---------|
| 통계청 10a당 전국평균(A) | 20,208 | 54,634 | 31,350 | 15,779 | 47,143 | 186,134 | 131,200 | 34,790 | 521,238 | |
| 들녘경영체 10a당 평균(B) | 16,095 | 43,838 | 27,804 | 12,761 | 39,912 | 157,854 | 105,919 | 27,578 | 431,761 | -17.2% |

주 : 1) 농구비 : 자동차비, 수도광열비, 영농시설비 포함, 기타 : 생산관리비 등
 자료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들녘경영체 실태조사, 2019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는 품종·재배방법 단일화, 적정시비로 질소질 비료 투입량 감소 등으로 균일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공동영농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잉여 노동력을 활용한 타작물 재배, 경축순환형 농법 등을 도입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기계의 공동이용을 통해 과잉 보유를 방지하여 농기계 이용 효율화 및 농가 부채 개선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공동농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계획·내부규약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시에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 농업경영정보 등록, 사후관리 등을 법제화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46호, '17.3.21.)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지원체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의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규모화로 발생한 농지·노동 등 유휴 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벼 중심 생산에 집중하였지만, 향후 과잉된 쌀 생산을 억제하고 논에서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이를 통해 경영체의 소득구조를 다원화하고 참여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생산 농산물 가공·유통, 체험·관광 연계 등으로 들녘 단위의 사업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들녘경영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년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 도입과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다양한 소득 증대형 지역 공동농업경영체로의 발전을 유도하고, 공동영농으로 절감된 잉여자원(농지, 노동력 등)을 활용하여 논타작물, 식량작물 생산 등의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이를 통해 농촌 일자리 창출 및 성공사례도 적극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농가 소득 안정

1. 쌀소득보전직불제 운영

■ 공익직불정책과 서기관 김동환

◆ 추진배경 및 개요

2004년 WTO 쌀 재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 확대와 쌀값 하락,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처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적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쌀소득보전기금법을 전면 개정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005년 이전에 논농업직불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WTO규정상 환경보전직불제로 분류되어 허용보조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환경농법과 일반농법과의 생산비 차액만큼만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단가를 지속적으로 또는 대폭 인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2004년에 일시 시행한 쌀소득보전금은 WTO가 규정한 감축대상보조로 5개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함에 따라,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신속하게 보전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여건변화에 부응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이하 쌀 직불제)를 도입하여 논농업직불제는 생산중립적보조(decoupled income support)인 고정형직불제로 전환하고, 쌀소득보전제는 쌀값하락에 따른 쌀 농가의 소득감소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쌀값 하락폭과 연동하는 변동형직불제로 개편하여 통합 시행(2005년 7월 1일)하였다.

쌀 직불제는 정부가 쌀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수확기(10월~익년1월) 산지 평균 쌀값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변경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5년산부터 적용되는 목표가격은 2001~2003년도 평균 수확기 산지 쌀값과 추곡수매제로 인한 쌀값지지와 쌀농가 소득에 기여한 직접소득효과, 2003년도 논농업직불제 소득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쌀 80kg당 170,083원으로 설정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 직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이하 고정직불금)과 변동직접 지불금(이하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고정직불금은 논·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농지에 대하여 벼 재배 여부나 쌀값하락에 관계없이 ha당 일정금액을 매년 말에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수확기 쌀값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다음 연도 초에 지급한다.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우량농지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와 밖의 농지를 구분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 더 높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고정직불금의 평균단가는 2005년 제도 도입시 ha당 60만원이었고, 이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ha당 70만원을 유지하다가 2013년 이후 매년 ha당 10만원씩 인상하였다. 2015년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는 ha당 100만원(농업진흥지역 안 1,076천원, 농업 진흥지역 밖 807천원)으로, 이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지급단가를 인상한 결과이다. 이후 현재까지 ha당 10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변동직불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목표가격도 인상하였다. 2005년산~2012년산 쌀에 적용된 목표가격 170,083원/80kg은 2013년 188,000원/80kg으로 인상되어 2017년산까지 적용되었고, 2018년산~2019년산 쌀에는 목표가격 214,000원/80kg 적용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1조 1,373억원을 지급하였고, 80kg 기준으로 쌀값에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더한 조수입이 목표가격의 95% 이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최근 10년간의 쌀 직불금 지급현황은 <표 2-1-4>과 같다.

<표 2-1-4> 연도별 직불금 지급현황

| 구 분 | 고정직불금 | | | 변동직불금 | | | 총지급액 |
|---------------|-------------|-------------|--------------|-------------|-------------|--------------|---------------|
| | 농가수 (천호) | 면적 (천ha) | 금액 (억원) | 농가수 (천호) | 면적 (천ha) | 금액 (억원) | 고정+변동 (억원) |
| 2019년산 | 787 | 803 | 8,028 | 641 | 636 | 2,336 | 10,364 |
| 2018년산 | 810 | 818 | 8,187 | 650 | 654 | 1,114 | 9,301 |
| 2017년산 | 804 | 829 | 8,315 | 675 | 684 | 5,393 | 13,708 |
| 2016년산 | 794 | 837 | 8,383 | 685 | 706 | 14,898 | 23,281 |
| 2015년산 | 779 | 844 | 8,427 | 685 | 726 | 7,262 | 15,689 |
| 2014년산 | 740 | 835 | 7,560 | 669 | 729 | 1,941 | 9,501 |
| 2013년산 | 770 | 855 | 6,866 | 697 | 735 | - | 6,866 |
| 2012년산 | 791 | 866 | 6,101 | 719 | 747 | - | 6,101 |
| 2011년산 | 812 | 875 | 6,174 | 740 | 754 | - | 6,174 |
| 2010년산 | 838 | 883 | 6,223 | 781 | 789 | 7,501 | 13,724 |

* '19.9월 기준, 차기 목표가격 미설정으로 '18년산 변동직불금 미지급

한편, 2008년도 하반기에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일부 사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회는 “쌀소득보전직접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였고, 정부에서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2008년 10월부터 추진하였으며, 2009년에 쌀 직불금 제도를 개선하였다.

제도개선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하여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05년부터 ’08년까지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 한정하면서 그동안은 신규진입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쌀 직불금 신규진입자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다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그동안 쌀 직불금을 1회 정당하게 받았을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만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부채지주들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또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둘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조정하였다. 대규모 농업경영체에 쌀 직불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은 30ha, 법인은 50ha까지만 쌀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급 상한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아울러 지급까지는 부당수령한 사람만 등록제한하던 것을 2009년도 부터는 부당수령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도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셋째,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경작 여부 확인체계를 강화하였다. 우선 쌀 직불금 등록신청 기관을 주소지 읍·면·동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으로 변경하고, 경작사실 확인서 및 영농기록 제출을 의무화 하였으며, 아울러 쌀 직불금 등록신청자들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농업인단체, 이·통장 등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부채지주들의 부당 수령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넷째,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민간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쌀 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을 연중 공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부당하게 신청한 자 또는 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다. 부당하게 등록 또는 수령한 자와 허위로 경작사실을 증명해 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과 그 금액의 2배를 부당 이득금으로 징수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9/100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부당 등록자 또는 수령자는 종전에 3년간 등록제한 하던 것을 5년간 등록제한 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종전 행정안전부의 쌀 직불금 농촌행정전산시스템을 농림수산물부로 이관 받아 새로운 Agrix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시·도 또는 시·군간 중복 신청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관련 자료와 일괄 대조함으로써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소지를 시스템적으로 방지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러한 부당수령에 대한 관리는 2014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쌀 직불제를 통합 관리하고, 2015년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시행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직접 직불금 수령자 및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지와 등록 농지로 한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및 국토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전산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격요건 검증을 지속 강화하였다. 특히, 2015년부터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국·공유지 무단점유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정보와의 대량 검증을 추가하여 적정 대상자에게 직접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으로 부당 수령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확대(건당 10만원 → 50만원, 1인 연간 100만원 한도 → 200만원)하여 부당 수령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농업소득보전법의 시행으로 2009년 이후에 쌀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는 귀농인 등 신규농에 대한 직불금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대상자 승계요건이 합리화 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다.

2016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던 논·농지의 기능과 형상유지 확인을 위한 이행점검 업무가 농업경영체 DB를 관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되었고, 스마트팜맵 및 첨단 점검장비를 통해 이행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16년 약 206억원 상당의 직불금 부당지급 방지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2017년에는 직불금 부당수령 예방대책을 마련('17.9월)하여 부당수령 사전 예방 등을 도모하였으며, 2018년에는 농업인의 수확기 영농활동 및 명절준비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불금 지급시기를 2개월 앞당겨 추석 전 9월에 조기 지급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쌀 직불금은 WTO 쌀 재협상 이후 수매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쌀 생산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쌀 생산 농가의 80kg 기준 조수입이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8년도 하반기부터 불기진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된 쌀소득직불제 특별조사가 2009년에 마무리되었고, 이후 개선된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쌀직불제도는 농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2013년부터 지역간 교차 점검 실시, 2014년 농업경영체 등록과의 연계 및 검증 강화 등을 통해 부당수령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쌀 직불금의 이행점검 기관을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여 이행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2017년에는 부당수령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 대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앞으로도 쌀 직불금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운영

■ 공익직불정책과 서기관 김동환

◆ 추진 배경 및 개요

시장개방의 확대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 및 고령화 등으로 농업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농업·농촌은 농가소득의 저위, 영농 곤란에 의한 농지 휴경화,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적정한 농어촌 인구의 확보 없이는 농어촌 지역 정주에 필요한 기초서비스 공급은 물론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 창출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의 인구과소화 및 지역사회 활력 저하는 많은 농어촌 문제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영농여건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지원대상이 되는 조건불리지역은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 이상인 경지면적이 50% 이상인 지역으로서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있다. 직불금은 조건불리 보조금 지급 대상 마을이 속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법정리에 연접하는 읍·면에 실거주하며 농지 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2004년~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 2,777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본사업을 실시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2기('12년~'16년) 3,550개 법정리를 선정

하여 지원하였고, 2016년에 제3기('17년~'21년) 3,509개 법정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 지원실적은 <표 2-1-7>과 같다.

<표 2-1-5>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급실적

(단위: 개, 호, ha, 백만원)

| 연 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 대상법정리 | 3,185 | 3,185 | 3,144 | 3,137 | 3,137 | 3,550 | 3,550 | 3,551 | 3,550 | 3,550 | 3,509 | 3,510 | 3,511 | |
| 지 급 실 적 | 농가 | 164,286 | 165,517 | 162,106 | 156,755 | 152,251 | 155,871 | 148,744 | 166,128 | 165,399 | 161,514 | 142,830 | 140,495 | 137,128 |
| | 면적 | 109,266 | 109,789 | 107,903 | 103,249 | 99,939 | 102,525 | 98,142 | 106,854 | 106,529 | 104,931 | 95,018 | 92,394 | 88,579 |
| | 금액 | 31,071 | 31,138 | 30,651 | 36,477 | 35,936 | 41,438 | 39,339 | 42,960 | 42,918 | 41,896 | 52,663 | 55,412 | 56,942 |

주 : 지급금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

한편, 2010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단가를 농지 50만원/ha('09년, 40만원), 초지 25만원/ha('09년, 20만원)으로 지급단가를 각각 25%씩 인상하였고, 여야정합의('15.11.30)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ha 당 5만원씩 지원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며, 2018년 지원단가는 농지 60만원/ha, 초지 35만원/ha이다.

아울러, 2012년부터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원면적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재정 형편이 열악한 점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였고, 2013년에는 마을공동기금 의무조성 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였다. 2015년에는 대규모 농업경영체에 조건불리직불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은 밭 4ha, 논·초지 30ha, 법인은 밭 10ha, 논·초지 50ha까지만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급상한규정을 도입하였으며, 밭농업직불금 단가인상에 따른 단가역전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2018년에는 마을공동기금의 조성의무를 폐지하고 자율화하였다. 다만, 기존 적립된 기금은 마을별 관리협약 대로 마을 공동체 활력 증진, 마을 공동시설 개보수, 농지 보전활동 및 마을환경 개선, 지역마케팅 활동 등 공공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연 평균 140천명의 농업인에게 345억원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영농여건이 불리한 토지의 지속적 경작·관리를 통한 토양유실 예방 및 농지보전, 마을경관보전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에는 마을공동기금의 마을별 운용실태를 조사·점검하는 등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의 내실화 및 성과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3. 발농업직접지불제 운영

■ 공익직불정책과 서기관 김동환

◆ 추진 배경 및 개요

발농업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발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통해 발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FTA 관련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여·야 합의('11.10.31)에 따라 도입되었다.

도입 첫 해 19개 발작물을 대상으로 40만원/ha의 발농업직불금을 지급하였으며, 매년 제도개선을 통해 논이모작발농업보조금, 밭고정직불금을 신설하여 발농업직불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를 인상함으로써 농가소득과 자급률 제고라는 당초 도입 목적과 취지대로 추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2년도에는 19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3년부터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감자, 고구마 등 7개 품목을 추가하여 26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쌀관세화 대책의 일환으로 단위면적당 소득이 낮고 자급률 제고가 필요한 겨울철 논이모작 사료·식량 작물로 대상을 확대하여 논이모작발농업 직불제를 도입하였다.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또한 2015년부터는 지목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휴경면적까지 지원하는 밭고정 직불제를 신설하였고, 2016년에는 26개 품목 직불을 밭고정 직불제로 포함하여 일원화하였다.

도입 초기 ha당 40만원이었던 단가는 점차 인상되었으며, 2015년 도입된 논이모작발농업 직불제의 단가도 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도입당시 25만원이었던 밭고정 직불제는 2016년 품목 직불제와 일원화되면서 40만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여야정합의('15.11.30)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ha당 5만원씩 인상하여 60만원/ha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발농업직불금은 2012년에는 19개 품목 182천 농가에 228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년에는 26개 품목 220천 농가에 291억원을 지급하였다. 2014년부터는 논이모작 직불금이 도입되어 326천 농가에 770억원이 지급되었고, 2015년부터는 품목제한이 없는 밭고정 직불금이 도입되어 546천 농가에 1,294억원의 직불금의 지급되었다. 2016년에는 품목 직불과 밭고정 직불금을 밭고정 직불금으로 일원화하여 614천 농가에 1,61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년과 2019년 각각 단가를 5만원/ha 인상하고 1,922억원, 2,078억원을 지급하여 발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였다.

〈표 2-1-6〉 발농업 직불제 지급실적

(단위: 호, ha, 백만원)

| 구 분 | 2012 | 2013 | 2015 | | | 2016 | | | | 2018 | | | 2019 | | |
|-----|---------|---------|----------------------|---------|---------|--------|----------------------|---------|--------|----------------------|---------|---------|----------------------|---------|--------|
| | 19품목 | 26품목 | 소계 (중복제외) | 26품목 | 발고정 | 이모작 | 소계 (중복제외) | 발고정 | 이모작 | 소계 (중복제외) | 발고정 | 이모작 | 소계 (중복제외) | 발고정 | 이모작 |
| 농가 | 181,573 | 219,777 | 932,873 (545,804) | 365,681 | 517,094 | 50,098 | 613,535 (613,523) | 558,385 | 55,138 | 642,034 (612,699) | 582,704 | 59,330 | 635,417 (592,613) | 579,903 | 55,514 |
| 면적 | 56,929 | 72,686 | 464,228 (361,940) | 105,460 | 266,596 | 92,173 | 378,728 | 282,428 | 96,304 | 380,222 | 278,264 | 101,958 | 367,827 | 272,912 | 94,915 |
| 금액 | 22,772 | 29,075 | 129,353 | 15,819 | 66,649 | 46,086 | 161,133 | 112,929 | 48,204 | 192,172 | 141,718 | 50,454 | 207,790 | 159,201 | 48,589 |

◆ 평가 및 향후계획

발농업직불제는 2012년 도입 이후, 발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 확대를 위해 매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수혜자와 지급단가를 확대한 결과, 2012년 182천호에 228억원을 지급한 발농업직불금이 '19년에는 593천호에 2,078억원으로 증가되었다.

4.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 공익직불정책과 사무관 최규일

◆ 추진배경 및 개요

2019년 전체 농가인구 2,245천명 중 65세 이상이 약 46.6%(1,046천명)로 전년 대비 1.1%p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농가 1,007천호 가운데 70.0%(705천호)는 경지 규모가 1.0ha 미만으로 영세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고령농의 소득안정과 농지를 규모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WTO/DDA 협상이나 FTA 협정으로 인한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여건 하에서 고령농업인들이 전업 농업인 등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도록 하는 대신 일정 금액의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통해 농업구조개선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1997년부터 경영이양직불제도를 추진해오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한 농업인으로서 연령이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농업인이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매도·임대하는 경우 75세가 될 때까지 연령에 따라 최장 10년간 ha당 매도는 연 330만원, 임대는 250만원('17년까지는 매도·임대 동일하게 ha당 300만원 지급)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상한은 매도 및 임대 합산 4ha까지로 되어 있다. 사업의 효과적 홍보, 약정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초기부터 한국농어촌공사를 위탁사업자로 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부분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1월부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확대·개편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진흥지역 논에 한정하던 것을 진흥지역내 논·밭·과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연령을 63~69세에서 65~70세로 조정하였으며, 지급기간을 75세까지 최장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임대하는 경우에도 매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75세까지 분할지급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다. 이렇듯 한·미 FTA 차결에 대비한 제도 개선으로 인해 경영이양직불 사업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한미 FTA 비준 지연, 농기계 사용 등으로 인한 영농 편리성, 고령 농업인의 강한 농지 소유욕 등으로 사업참여자가 예상보다 적어 일부 예산이 불용되기도 하였다.

2011년에는 고령농업인의 비중이 높아 적정 양수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지의 양수대상자 범위를 농업경영 3년 이상인 45세 이하의 농업인까지 확대하였다.

2015년에는 농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양수대상자(전업농업인 60세 이하 → 64세 이하, 일반 농업인 45세 이하 → 50세 이하) 및 이양대상자(65~70세 이하 → 65~74세 이하) 연령을 확대하여 향후 농업구조개선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에는 매도 이양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매도이양은 연간 ha당 330만원, 임대이양은 ha당 250만원으로 단가를 차등화하였다

사업 활성화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1,209회)하였으며, 홍보포스터 1만매, 안내문 2만매, 리플릿 4만매, 현수막 설치 1,476개, 지역신문(시·군단위) 20회, 좌담회 개최 300회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1997년부터 2019년까지 경영이양 농업인 107.2천명에게 직불금 6,992억원(1인당 연간 6,52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영이양 농지 80.3천ha를 전업농 75.9천명에게 이양하여 전업농 1인당 1.06ha로 영농규모를 확대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에게 고정적인 보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귀농인, 후계농업인 등의 젊은 농업인들에게 농촌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향후 사업에 참여했던 고령 농업인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여 정책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 등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다각적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5. FTA 피해보전직불제 운영

▮ 농업정책과 사무관 정성수

◆ 추진배경 및 개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의 일부분을 보전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한·칠레 FTA 대책으로 200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도입당시 제도의 이름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지불제”였으며, 2004년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를 규정하였다. 한·칠레 FTA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를 대상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하도록 하였다. 지급요건은 지급대상품목의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고, 해당 품목의 국내 생산량과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였다. 기준가격 및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의 비율은 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당시 기준가격은 해당품목의 직전 5개년도 평균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가격의 80%였고, 보전비율도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 차액의 80%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 간 요건을 충족한 품목이 없어 지급 실적은 전무했다.

이후 정부는 한EU 및 한미 FTA 대책을 마련하면서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이 까다로운 한 번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우선, 대상품목을 FTA 체결로 관세가 감축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시행령에서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발동요건과 보전비율을 모두 법률에 규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보전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한·EU FTA 여·야·정 합의문에 따라 2011년도에 보전비율이 90%로 상향되고, 발동요건이 85%로 완화되었으며, 제도의 명칭 또한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도”로 개정하여 제도의 취지가 FTA 이행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전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2012년에는 한·미 FTA 여·야 합의문을 존중하여 발표한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보완 대책」에 따라 발동요건이 90%로 추가적으로 완화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른 피해보전직불제의 지급 요건을 정리하면 <표 2-1-7>과 같으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된다. 지급액은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단위면적 당 전국평균생산량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 조정계수로 정해져 있고, 당시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의 90%이었다.

2016년도에는 한·중FTA여야정 합의결과('15.11.30.)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5%로 상향하였고, 시행기간을 한·중 FTA발효일로부터 10년간 시행토록 연장('25년)하였다.

<표 2-1-7> 피해보전직불제의 지급요건 (법 제7조제1항 각 호)

| | |
|-----------|---|
| 가 격 요 건 |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
| 총수입량요건 |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초과 |
| 수 입 량 요 건 |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양)을 초과 |

한편, FTA 체결로 인한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피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2013년 1월 21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지속적인 지급기준 완화로 피해보전직불제 도입 이후, 2013년 처음으로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4.29)되었으며, 이후 추진절차를 거쳐 총 187천 농가에 253억원을 지급하였다.

2014년도에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 농업인이 신청한 7개 품목(모니터링 품목과 중복)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지급기준 충족여부를 조사·분석한 결과 수수, 감자, 고구마, 한우송아지가 지급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수 등 4개 품목이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고시(6.25)되었다. 이후 농업인등 신청, 신청내용에 대한 지자체 현지조사 및 자체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총 117천 농가에 324억원을 지급하였다.

2015년도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지급기준 충족여부를 조사·분석한 결과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메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이 지급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고시(6.18)되었다. 이후 농업인등 신청, 신청내용에 대한 지자체 현지조사 및 자체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총 76천 농가에 471억원을 지급하였다.

2016년도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등 신청 34개 품목 등 총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지급기준 충족여부를 조사·분석한 결과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가 지급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5월 26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 품목을 2016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5.26)·고시(5.27)하였다. 이후 농업인등 신청, 신청내용에 대한 지자체 현지조사 및 자체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총 28천 농가에 385억원을 지급하였다.

2017년도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등 신청 41개 품목 등 총 83개 품목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지급기준 충족여부를 조사·분석한 결과 도라지가 지급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5월 26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라지를 2017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5.26)·고시(5.29)하였다. 이후 농업인등 신청, 신청내용에 대한 지자체 현지조사 및 자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총 1,480 농가에 14.5억원을 지급하였다.

2018년도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등 신청 66개 품목 등 총 108개 품목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지급기준 충족여부를 조사·분석한 결과,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가 지급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6월 1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품목을 2018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6.1)·고시(6.5)하였다. 이후 농업인등 신청, 신청내용에 대한 지자체 현지조사 및 자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총 3,728 농가에 32.4억원을 지급하였다.

2019년도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등 신청 73개 품목 등 총 1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지급기준 충족여부를 조사·분석한 결과, 귀리 목이버섯이 지급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6월 5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 품목을 2019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6.5)·고시(6.12)하였다. 이후 농업인등 신청, 신청내용에 대한 지자체 현지조사 및 자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총 176 농가에 4.8억원을 지급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9년에는 귀리 등 2개 품목에 대한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농가에 차질 없이 지급하였다.

향후, 한·EU/한·미/한·중FTA의 본격화 및 관세율 감축 가속화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농축산물이 확대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보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대상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 지급기준 충족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6.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 농촌산업과 사무관 허창각·정명화·김방연

◆ 추진배경 및 개요

6차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특산품 제조·가공 등의 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 등의 3차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넓지 않고, 농업소득이 불안정적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중 상당수가 고령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가속화 되고 있는 시장개방으로 농업소득의 정체와 농촌지역의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제조·관광 등 가치사슬의 연계를 강화하는 6차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업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6차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경영능력, 자본 등이 부족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하는 방법을 몰라서 추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동안, 농가소득원의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업무 중 하나로 6차 산업화를 선정하고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밀착 지원을 강화하여 6차 산업화를 발전시키며 농촌관광 등 농촌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그 밖에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 및 매출액, 관련 일자리 증가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 다수의 영세 경영체 역량이 미흡하고 창업자는 3~4년차 성장절벽에 직면함에 따라 외형적 성장에서 내실화를 통한 도약을 위해 6차산업 소비기반 강화, 경영체 맞춤형 지원 등 내실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촌 특화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9년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 및 관련 일자리 증가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갱신인증, 디딤돌 멘토링, 비온드팜(전용 매장) 등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내실화 및 소규모경영체와 인증경영체의 판로를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다. 우선 '18년 1,524개소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 수는 '19년 6.6% 상승한 1,624개소로 증가하였고, 더불어 '19년말 현재 사업이 완료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16개소)의 경우 사업시작 직전년도 대비 6개의 정량적 성과 항목(총매출액, 방문객, 일자리, 계약재배농가, 농가소득, 인증사업자)에서 대부분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됐다. 6개 항목 모두 증가한 지구는 5개소로 강릉·평창 고랭지배추, 서천한산 소곡주, 장수 레드푸드, 영광 찰보리, 의성마늘이었고, 특히 함양 산양삼의 경우는 매출액이 9배, 문경 오미자는 방문객이 10배, 장수레드푸드도 일자리가 9배, 의성마늘은 계약재배농가가 2배 늘어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 330개소 경영체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16~'18년)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성장률 등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갱신인증을 실시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내실화를 추구하였다.

다음으로 소규모이면서 청년·여성 경영체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유통업체 입점을 목표로 무상으로 '디딤돌 멘토링'을 추진하여 30개 경영체의 제품이 스타필드 코엑스몰,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등), 온라인몰(지마켓, 11번가, 쿠팡 등), 롯데홈쇼핑 등 전국 유통업체에 입점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잠실)에 농촌융복합산업 전용매장 '비온드팜 1호점'을 개장하여 69개 경영체의 440개 품목을 판매하여 '18년 135백만원에 비해 '19년 230% 상승한 311백만원을 달성하는 등 인증경영체의 판로 확대를 위한 수도권 전용매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20년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에게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및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설치 확대('19년 86개소→'20년 90개소) 등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공한 경영체의 벤치마킹 기회 제공 및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산업기반 현황, 매출액·일자리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격년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시도 및 시군 단위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자원을 조사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계속되어 왔던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 확대 및 홍보 등은 상설체험관 상시 운영, 전문매장 비온드팜 확대, 11번가, 편의점, 리조트, 무인판매대 활용 홍보·판매 등 판로를 다변화할 계획이며,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에 농촌융복합산업 가공제품을 포함하는 등 기존 온오프라인 매출증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특화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사업 추진방식을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농업인 간 계약재배(수매), 협력방식 등 연계정도를 평가하여 지구를 지정하고, R&D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사업방식을 개편하였고, 청년·고령농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이 농촌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7. 직불제 통합·개편 추진

■ 공익직불정책과 서기관 정미영

◆ 추진 배경 및 개요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 도입 이후 9개의 농업직불제(쌀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농업, 경영이양, FTA피해보전, FTA폐업지원)를 도입하여 운영중이며, '18년 전체 농업직불금 예산(24,390억원) 중 쌀직불금 비중이 77.4%를 차지하였다. 쌀직불제는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및 시장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 시 쌀 농가의 피해보전을 위해 도입되어 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에도 농가 수익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목표가격 대비 95% 이상), 쌀전업농 육성 목표를 달성하는 등 규모화, 생산구조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직불금이 쌀에 집중되어 쌀의 공급과잉, 타작목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및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쌀 농가 수취가격의 안정적 유지 및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이 지급됨에 따라 쌀 생산유발 및 수급 불균형을 유지·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보호, 생태보전, 먹거리 안전, 공동체 활성화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공익직불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및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 마련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차기 쌀 목표가격 변경을 위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직불제의 근본적인 개편 논의를 제안하여 당정 협의를 통해 쌀 목표가격 인상과 함께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방향을 발표하였다.

2019년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인·소비자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과 개편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 등에 대하여 지속 논의할 수 있도록 직불제 개편 협의회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한 농업인 등과의 의견수렴도 지속하는 한편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 및 근거 법률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12월 '19년 대비 약 1조가 증가한 규모인 2.4조의 예산이 확정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표 2-1-8〉 직불제 개편 전·후 비교

| 개 편 전 | | 개 편 후 | |
|----------------------------|---|-------------|----------------------------|
|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 ⇒ | 선택형 공익직불 |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 |
| 조건불리지역직불 | | | 면적직불금 |
| 쌀소득보전직불 : 고정, 변동 | | 기본형 공익직불 | 소농직불금 |
| 발농업직불 : 고정, 논이모작 | | |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
|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 | 공익직불제 | |

◆ 평가 및 향후계획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논·밭 작물간 균형생산과 중소농 소득안정강화를 기대한다. 또한, 농업인 준수사항 확대 이행을 통해 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 안전 등 공익창출차로서 농업인의 역할 확대 및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2020년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농업인단체, 학계,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법령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직불금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3절 농가 경영 안정

1. 농지은행 활성화

■ 농지과 사무관 최경철(맞춤형농지지원, 임대수탁, 경영회생)·복옥규(농지연금)

◆ 추진 배경 및 개요

고령화, 시장개방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농지이용, 농업구조개선 촉진 등을 위해 「농지법」 개정('05.7.21.)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05.12.29.)을 통해 2005년에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존 농지규모화(1990년)를 농지은행사업에 편입하고, 이후 농지임대수탁(2005년),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2006년), 농지매입비축(2010년), 농지연금(2011년), 맞춤형 농지지원사업(2018년, 농지규모화와 농지매입비축을 통합)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1) 농지매매·임차임대·교환분합(前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임차임대·교환분합사업은 경영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비농업인, 이농·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전업농 육성대상자, 2030세대, 영농복귀자, 농업법인 등에 매도 또는 임대하고, 농업인(농업법인)간 농지의 교환·분합을 장기 저리로 용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 농지규모화 사업의 농업인 매도(임대) 시 용자조건

- 농지매매 : 금리 1%, 11~30년간 분할상환
- 장기임대차 : 무이자, 5~10년 임대기간 동안 분할상환
- 교환분합 : 금리 1%, 10년 분할상환

2019년에는 총 1,188ha 756억원을 1,501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지원내역은 농지매매 464ha 512억원, 임차임대 723ha, 242억원, 농지교환·분합 1ha 2.5억원이다. 이로써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총 7조 5,782억원을 지원하여 179,876ha의 농지를 규모화시켰다.

〈표 2-1-9〉 前 농지규모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ha, 억원)

| 구 분 | 합 계 | 1990~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면 적 | 179,876 | 154,587 | 4,282 | 2,787 | 2,711 | 2,609 | 2,543 | 2,913 | 2,477 | 2,302 | 1,477 | 1,188 |
| 금 액 | 75,782 | 61,295 | 2,118 | 1,611 | 1,621 | 1,584 | 1,372 | 1,791 | 1,508 | 1,266 | 860 | 756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이를 통해, 쌀전업농의 호당 평균 경영규모는 1995년 2.5ha에서 '19년 6.4ha 수준으로 확대되어 2.6배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전체 벼 재배면적 대비 쌀전업농의 경영면적 비중을 2004년 28%에서 2019년 55%까지 확대하였다.

※ 쌀전업농 호당 평균 경영규모 : ('95) 2.5ha → ('05) 4.2 → ('10) 5.2 → ('13) 5.9 → ('17) 6.3 → ('18) 6.4 → ('19) 6.4

또한, 쌀 생산조정을 위해 '17년부터 농지매매의 경우 논에 벼 외 타작물 재배희망자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여 '19년까지 농지매매 지원 농지 1,859ha가 타작물 재배에 이용되었다.

2) 공공임대용 농지매입(前 농지매입비축사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급속한 고령화 및 FTA확산 등 농업개방 확대에 따른 농지수급 불안 증가 및 농지가격 하락 등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령·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업진흥지역안 우량농지를 감정가격으로 매입하여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 확보, 원활한 은퇴 지원 및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매입비축한 농지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함으로써 농업경영주의 연령 하향(19년, 매도자 68세 → 임대자 39세 「29세↓」)에 따른 농업구조개선, 농촌활력화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16년부터 쌀 생산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논외의 경우 벼 이외 타작물 재배(휴경포함)를 조건으로 임대를 실시하고 벼 이외 타작물 재배 시 임대료의 80%, 휴경시 100%를 감면하였다. 그 결과 비축농지의 타작물 재배 면적은 '16년 1,259ha에서 '17년 1,491ha, '18년 1,608ha, '19년 3,277ha 등 '19년까지 총 7,635ha의 비축농지가 타작물 재배(휴경포함)에 이용됨으로써 쌀 생산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3,735억원을 투입하여 2,148농가의 농지 1,165ha를 매입함에 따라, 2010년부터 2019년말까지 7,181ha를 매입하여 수용, 경지정리 등 29ha를 제외한 7,152ha를 비축한 후 이중 6,839ha를 임대(95.6%) 하였다.

〈표 2-1-10〉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前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실적

(단위 : ha, 호, 억원)

| 구 분 | 매 입 | | | | | | | | | | | 임 대 | | | | | | | | | | |
|-----|--------|------|-------|-------|-------|-------|-------|-------|-------|-------|-------|-------|------|------|------|------|------|------|------|------|------|-------|
| | 합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합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면 적 | 7,181 | 495 | 711 | 715 | 730 | 541 | 624 | 580 | 703 | 917 | 1,165 | 6,973 | 21 | 725 | 844 | 784 | 592 | 804 | 523 | 675 | 666 | 1,339 |
| 농 가 | 12,100 | 829 | 1,175 | 1,236 | 1,204 | 888 | 993 | 900 | 1,110 | 1,617 | 2,148 | 7,974 | 25 | 804 | 995 | 839 | 691 | 937 | 597 | 685 | 800 | 1,601 |
| 금 액 | 18,016 | 750 | 1,573 | 1,599 | 1,665 | 1,277 | 1,525 | 1,486 | 1,799 | 2,606 | 3,735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하고, 매입농지는 해당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임대 기간 중에는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회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2,9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61ha의 농지를 매입, 859농가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162농가에 3조 605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19년에 경매로 처분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848억원(농가당 99백만원) 수준의 자산손실을 방지하고, 고율의 연체이자 대신 저렴한 임대료를 통한 이자비용 338억원을 절감(농가당 22백만원 수준) 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어 해당농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자산손실 방지 8,982억원(농가당 80백만원), 이자비용 절감은 3,365억원(농가당 30백만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표 2-1-1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실적

(단위 : 호, ha, 억원)

| 구 분 | 합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1) 농가수 | 11,162 | 185 | 444 | 493 | 639 | 1,149 | 978 | 1,009 | 1,021 | 928 | 898 | 814 | 896 | 849 | 859 |
| 2) 면 적 | 14,476 | 311 | 629 | 705 | 880 | 1,369 | 1,312 | 1,302 | 1,249 | 1,227 | 1,202 | 1,141 | 1,161 | 1,027 | 961 |
| 3) 금 액 | 30,605 | 422 | 953 | 1,195 | 1,700 | 2,400 | 2,400 | 2,600 | 2,564 | 2,600 | 2,596 | 2,584 | 2,838 | 2,820 | 2,933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19년까지 총 지원 농가(11,162) 중 환매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06년 지원 농가(185) 중 139농가(75%), '07년 지원 농가(444) 중 369농가(83%), '08년 지원 농가(493) 중 403농가(81.5%), '09년 지원 농가(639) 중 536농가(83.9%)가 환매하였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임대수탁사업은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 형태의 다양화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의 이용을 최대한 효율화하고 농업구조 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996년에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질병·징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를 금지함에 따라, 탈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개인간 임대차 등을 공식적인 법적 제도 내로 유인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전업농 등에게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도에는 21,346농가에 11,327ha를 임대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9년까지 240,747농가에 133,977ha를 임대하여 농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표 2-1-12〉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지임대 추진실적

(단위: 호, ha)

| 구 분 | 합계 | 2005~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농가수 | 240,747 | 24,566 | 27,237 | 14,948 | 15,923 | 16,638 | 16,487 | 17,899 | 20,272 | 22,019 | 20,432 | 22,980 | 21,346 |
| 면 적 | 133,977 | 12,922 | 15,956 | 8,118 | 10,837 | 10,059 | 9,706 | 9,928 | 9,721 | 11,357 | 12,093 | 11,953 | 11,327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 평가 및 향후 계획

경자유전 원칙의 실천적 구현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농지의 규모화·집단화 성과를 유지하는 한편, 고령화 및 후계인력 부족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농가 및 귀농인까지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을 위해 농지규모화사업과 매입비축사업을 통합해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으로

개편('18)하고, '19년에는 비축농지 매입하한면적 완화(1,983㎡에서 1,000㎡) 및 매입상한단가를 상향(논과 밭 공통으로 28~50천원/㎡에서 논은 28~92천원/㎡, 밭은 28~105천원/㎡)하였고, 향후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년창업농, 2030세대 젊은 인력, 귀농인 등 예비 농업인들의 영농 진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2016년부터 본격적인 환매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가의 환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분환매제도 도입, 분할납부 기간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환매대금 선납제 등을 제도개선하여 환매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고령 농업인의 원활한 은퇴지원 및 젊은 농업인에 대한 농지 지원 확대 등으로 농업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비축농지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 유도를 통한 쌀 수급 안정기여 등 비축 농지의 정책적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 재해농가 지원 확충

▮ 재해보험정책과 서기관 강승규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업은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산업이며, 실제로 매년 많은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재해를 피하기 위한 여러 예방사업 및 예방대책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농업인 개개인이 대응하기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자연재해 피해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재개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7년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작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 등의 피해복구 지원과 농가별 피해정도에 따른 생계비 지원, 학자금 면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간접지원의 두 형태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9년에는 이상저온, 태풍 등 14건의 자연재난으로 농작물 97,941ha, 가축 71천마리, 농업 시설 304ha, 수리시설 161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농식품부 국비 약 628억원(보조 566억원, 융자 62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하였다.

특히, 9~10월 연이은 태풍(링링, 타파, 미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농작물 74천ha, 가축 27천수, 농경지 718ha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3~4월에는 이상저온으로 과수 6,553ha 등 농작물 7,378ha가 저온 피해를 입었으며, 5월에는 서리·저온으로 꽃눈이 열고 농작물이 고사하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등의 지원을 실시하였고 추가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영농재개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한 해 또는 수 해 피담 흘려 노력한 결과물이 물거품이 되는 금전적 피해와 함께 삶의 의지가 꺾이는 등 정신적 피해도 크게 받는다. 재난지원금은 농작물 등 손실액에 대한 피해보상의 개념은 아니며 재난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단가 또한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다소 부족하나, 재난지원금은 농업인의 영농재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신속한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또한 지원기준 단가가 없거나 현실보다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해 산정기준 단가의 신설 및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대규모 피해발생 시 신속한 재해농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아갈 계획이다.

3.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 유정연

◆ 추진 배경 및 개요

최근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 태풍과 같은 거대재해 발생빈도 증가 및 폭염·가뭄·홍수 등 예측불허의 자연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에는 “볼라벤·덴빈·산바”와 같은 연이은 태풍과 호우·대설 등 22회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16명의 인명피해와 약 2조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기상재해로 매우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재해 발생 시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정책자금 이자상환 연기, 대파대·농약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많은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그 지원수준이 부족

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해지원과는 별도로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을 지난 2001년부터 도입하여 지원 규모와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농업인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위해 거대재해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표 2-1-13〉 농작물재해보험 성장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 대상품목 | 20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추가) | 25 (대추, 시설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추가) | 30 (시설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 추가) | 35 (시설 멜론·파프리카, 인삼, 오디, 차 추가) | 40 (표고·느타리 버섯, 시설상추·부추·시금치 추가) | 43 (시설배추·가지·파 추가) | 46 (시설 카네이션·백합·무 추가) | 50 (양배추, 밀, 오미자, 시설 미나리 추가) | 53 (시설속갓, 무화과, 유자 추가) | 57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 추가) | 62 (배추, 무, 파, 당근, 단호박 추가) | |
| 가입 실적 | 가입농가(호) | 45,882 | 52,738 | 67,653 | 74,983 | 95,102 | 89,038 | 122,054 | 180,899 | 195,804 | 277,112 | 341,225 |
| | 가입면적(ha) | 48,331 | 53,452 | 86,604 | 108,373 | 160,203 | 134,264 | 185,239 | 297,494 | 321,331 | 378,714 | 457,231 |
| | 가입률(%) | 12.5 | 13.6 | 15.0 | 13.6 | 19.1 | 16.1 | 21.7 | 27.5 | 30.1 | 33.1 | 38.9 |
| 지원 규모 | 순보험료(%) | 50 | 50 | 50 | 50 | 40~50 | 40~50 | 40~60 | 40~60 | 40~60 | 40~60 | 50~60 |
| | 운영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예산액 | 61,752 | 67,732 | 97,221 | 114,007 | 159,396 | 217,233 | 215,862 | 215,978 | 216,176 | 232,836 | 241,740 |
| 지급 보험금 | 지급농가(호) | 8,681 | 14,343 | 19,611 | 46,337 | 8,600 | 10,769 | 6,386 | 19,749 | 28,435 | 80,201 | 174,500 |
| | 보험금 | 66,176 | 90,330 | 132,628 | 490,978 | 45,088 | 144,978 | 52,851 | 111,464 | 287,349 | 584,213 | 908,960 |
| | 손해율(%) | 105.8 | 104.6 | 119.4 | 357.1 | 21.9 | 66.9 | 18.0 | 34.0 | 84.9 | 111.4 | 186.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NH농협손해보험(주)

◆ 추진내용 및 성과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은 짧은 기간에 규모면에서 급성장하여, 대상품목의 경우 2001년 사과, 배 2개 품목에서 벼, 복숭아 등 주요작물을 추가하여 2019년 현재 62개 품목을 운영하였다. '19년 총채벼, 봄감자, 만감류 등 품목별 인수범위 확대,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 확대, 방재시설 할인 등 다양한 상품개선을 추진하였으며, 품목별 현장설명회, 지자체 공무원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 341천농가, 457천ha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태풍, 이상저온 등 피해를 입은 175천농가가 보험금 9,090억원을 수령하여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받았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작물재해보험은 그간 2019년까지 56만여 농가에 3조 1천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장범위를 지속 확대하는 등 실질적 경영 안정제도로 정착해나가고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요구 등 보험수요가 있는 작물을 발굴하여 2020년도에는 보험대상 농작물을 67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시범사업 운용 품목의 경우 2~3년간 주산지 위주로 운영하면서 상품을 개선·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전국사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상품설계를 통해 농가의 보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절한 보상수준 설정으로 보험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4. 가축재해보험 운영 내실화

■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 김동수

◆ 추진 배경 및 개요

가축은 사육 중 자연재해, 질병 등 상시 위협에 노출되어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특징이 있으며, 축산농가는 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자연재해 및 화재 등에 대비하여 농가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안정적인 축산경영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 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회생을 도모하고자 1997년부터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가축재해보험사업은 1997년 “소” 1개 축종으로 시작하여 2012년에는 16개 축종(소, 돼지, 닭, 말, 오리, 메추리, 꿩, 사슴, 칠면조, 거위, 타조,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으로 대상 축종을 확대하여 운영 중이며, 축산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폭염,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증가하면서 농가의 보험가입 수요 및 인식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2019년은 과거 풍수해·화재 등 통계기반으로 설정된 지역별 차등요율제 폐지, 축사시설의 자율적 개선을 위한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가입률은 전년 93.0% 대비 0.3% 증가한 93.3% 달성하였으며, 21천농가에서 284,785천두가 보험에 가입하였고, 폭염·화재 등 피해를 입은 11천농가가 보험금 1,743억원을 수령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국고지원 자격을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해당 축종 농업 경영정보 등록 및 축산업(허가) 등록된 자로 제한하여 보험료 지원기준을 강화하고, 대규모 축산농업인에 대한 편중지원 개선을 위해 국고지원 한도를 설정하여 많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국고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 임차농의 보험가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기부담금 선택 폭 확대를 통해 손해율을 관리 강화하는 등 축산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상품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14〉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단위: %)

|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소 | 7.8 | 6.7 | 6.1 | 7.6 | 7.6 | 6.1 | 6.8 | 7.9 | 9.8 | 10.3 | 12.2 |
| 돼지 | 77.0 | 74.8 | 82.7 | 85.1 | 100 | 86.7 | 86.5 | 92.9 | 96.4 | 95.9 | 97.7 |
| 말 | 8.6 | 6.3 | 5.2 | 4.9 | 3.3 | 2.5 | 3.5 | 4.1 | 6.0 | 5.7 | 8.3 |
| 가금 | 46.9 | 51.6 | 54.8 | 73.1 | 78.2 | 91.2 | 93.1 | 94.3 | 94.6 | 94.9 | 95.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NH농협손해보험(주), (주)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주), DB손해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5. 농업부문 세제 지원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최수연

◆ 추진배경 및 개요

조세제도는 법과 제도, 공공인프라, 재정·금융지원과 더불어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핵심적 정책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분야에 다양한 조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여 농업생산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기능별 예산분류기준(16개 부문)에 따라 조세감면 실적을 분류했을 때,

2019년 농림수산 분야 조세지출 실적은 전체(495,700억)의 11.53%(57,156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조세지원 실적이 높은 편이며, 직접적 재정지출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농업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 관련 조세 특례는 소득세(이자·배당·양도소득 등), 재산세, 부가세, 거래세(취·등록세) 등 과세 전반에 걸쳐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직접세의 경우, 작물재배소득·농가 부업소득·전답 임대소득세 감면, 농업인 배당·이자 소득세 감면, 자경농지·대토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 혜택이 제공된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농협 등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 각종 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간접세에 대해 살펴보면, 농축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감면되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예금·융자 관련 인지세 역시 면제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는 농어촌 특별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업부문의 조세감면 항목(국세 43여개, 지방세 32여개) 중 조세감면 실적 추정이 가능한 주요 항목으로는 농업용 석유류 면세(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농업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이 있다.

이들 감면 항목에 대한 연도별 조세감면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1-15〉 연도별 조세감면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 면세유 | 7,961 | 6,072 | 6,427 | 6,765 | 6,714 |
| •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 11,760 | 11,172 | 11,225 | 11,164 | 11,497 |
| •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 1,340 | 1,437 | 1,513 | 1,459 | 1,566 |
|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 9,712 | 12,045 | 12,401 | 14,324 | 12,727 |
| • 농지 대토시 양도세 면제 | 315 | 572 | 557 | 550 | 561 |
| •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면제 | 1,303 | 1,504 | 679 | 751 | 825 |

석유류 면세가 농기계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6년 3월부터이다. 2019년 말 현재 면세유 공급대상은 농업기계 42개 기종이고, 면세유류 공급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농업용 면세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1-16〉 농업용 면세유 현황

(단위 : 천kl, 억원)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공급물량 (천kl) | 1,645 | 1,539 | 1,336 | 1,369 | 1,432 | 1,406 |
| 공급액 (억원) | 16,682 | 11,016 | 7,808 | 9,249 | 11,210 | 10,885 |
| 감면세액 (억원) | 10,296 | 7,961 | 6,072 | 6,427 | 6,765 | 6,714 |

농업·축산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1989년도에 최초 도입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19년말 기준 현행 적용품목으로는 농업기계 33종, 축산업용 기자재 39종, 임업용 기자재 15종,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50종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2001년도에 최초 도입되어 농업용 필름 등 60종에 적용되고 있다.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 조세감면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2-1-17〉 농업부문 영세율 세부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억원)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비 료 | 1,675 | 1,840 | 1,612 | 1,612 | 1,493 | 1,454 |
| 농 약 | 1,380 | 1,423 | 1,461 | 1,462 | 1,462 | 1,504 |
| 농기계 | 950 | 1,017 | 917 | 907 | 996 | 920 |
| 사 료 | 9,748 | 7,451 | 7,173 | 7,232 | 7,210 | 7,600 |
| 축산기자재 등 | 22 | 29 | 9 | 12 | 3 | 19 |
| 계 | 13,775 | 11,760 | 11,172 | 11,225 | 11,164 | 11,497 |

〈표 2-1-18〉 농업부문 부가세환급 세부내역

(단위 : 억원)

| 사후환급적용자재 | 연간환급세액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농업용 필름 | 298 | 293 | 274 | 262 | 270 | 290 |
| 농업용 파이프 | 240 | 224 | 235 | 248 | 225 | 240 |
| 농업용 포장상자 | 381 | 383 | 381 | 423 | 423 | 430 |
| 농업용 PP포대 | 33 | 33 | 18 | 15 | 13 | 18 |
| 과일봉지 | 34 | 24 | 35 | 32 | 31 | 35 |
| 인삼재배용 지주목 차광망 | 26 | 29 | 29 | 25 | 18 | 28 |
| 차광망(연초건조용, 과수, 화훼재배용) | 7 | 7 | 7 | 7 | 7 | 9 |
| 농업용 부직포 | 52 | 53 | 50 | 44 | 42 | 55 |
| 농업용 배지 | 61 | 54 | 57 | 51 | 51 | 78 |
|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 1 | 2 | 3 | 1 | 1 | 1 |
| 축산자재 | - | | 134 | 130 | 128 | 131 |
| 기타 | - | 238 | 214 | 275 | 250 | 251 |
| 계 | 1,133 | 1,340 | 1,437 | 1,513 | 1,459 | 1,566 |

◆ 평가 및 향후계획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원유·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 변동성 증대와 FTA의 확대에 의한 농산물 수입 증가 등으로 농가 경영 불안과 농업분야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영농 환경 개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특례 유지를 통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6. 농가 부채 경감 대책 추진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임선영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가부채 규모는 영농 규모가 확대되는 등 상업농화가 진전되면서 시설투자 증가, 경영비 상승 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다 2008년 이후 정체상태이며, 농가 자산의 상승에 힘입어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부채/자산비율)은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과의 FTA 진전,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경제는 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농가의 경우 자력만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고리채 사금융을 이용하는 등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6차례의 농가부채경감 대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기상이변·시장개방 등에 따라 각종 재해나 농축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인해 건실하게 영농을 영위하다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법인 포함)의 경영회생을 돕기 위해 2004년부터 농어업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상시적인 경영회생지원프로그램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상환조건)을 지원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14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중장기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자금 등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부채경감 대책을 추진하였다. 2018년까지 부채대책(2001·2004 정책자금 상환연기, 2004·2006·2009 상호금융자금 저리대체지원 및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등) 추진으로 32,992억원의 재정이 지원(이차보전)되었고, 이는 농가당 평균 3,231천원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농가의 부채를 줄이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회생프로그램(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조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14년까지 6차례에 걸쳐 총 25.0조원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 3.4조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였다. 이러한 부채경감대책자금 지원으로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 효과는 발생하였으나, 만기연장에 따른 상환지연과 저리지원에 따른 조기상환 유인부족 등으로 부채경감대책 실시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가들 간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보다는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재무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농업경영회생자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유통체계 개편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재해보험·수입보장보험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7.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운영

■ 농기자재정책팀 사무관 김남진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어용 면세유류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하게 할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류제도는 수차례의 법 개정과 관리체계 개선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으며, 농업용 면세유 공급은 농업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생산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 한·중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농촌 경제의 어려움 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을 살펴보면 트랙터, 콤팩트 및 농업용화물자동차 등 42개 기종, 대상유종은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중유, 윤활유, LPG 등이다.

농업용 면세유류는 현행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감면내역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리터당 각각 529원, 375원,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판매가격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9년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은 141만kl로 2018년 대비 1.8% 감소하였으며, 2019년 농업용 면세유 감면세액도 6,715억원으로 2018년 대비 0.8% 감소하였다.

〈표 2-1-19〉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 및 감면세액

(단위 : 만kl, 억원)

| 구분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사용량 | 153 | 134 | 137 | 143 | 141 |
| 감면세액 | 8,557 | 6,073 | 6,428 | 6,766 | 6,715 |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는 농업의 기계화 및 대형화를 촉진하여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액을 크게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비 부담이 큰 시설 농업을 촉진하여 신선채소의 연중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인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통해 국내 물가 안정과 국민가계 부담의 완충역할을 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수혜자는 농업인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농기계를 가진 농업인은 농업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농산물을 소비하는 도 시민은 농산물을 보다 싸게 안정적으로 구입하여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미국, 일본,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도 취약한 농업의 경영 안정화, 환경보호 측면, 도로 비주행 등의 이유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면세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효과는 면세유류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부정유통 근절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시킴으로써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 사용량을 전량 공급하고, 신규 개발되거나 농작업 사용이 증가하는 농기계는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에 소요되는 유류는 충분히 공급하되 부정유통은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적극 방지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농업용 면세유 공급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8. 농기계 임대 활성화

■ 농기자재정책팀 사무관 김남진

◆ 추진 배경 및 개요

1990년 이후 부족한 농촌노동력을 대체하고 과학영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기계 공급을 늘려 나갔다. 2000년대 이후에는 노후한 소형 농기계를 대체하면서 중대형 농기계의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농업인의 부채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대형 농기계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농작업의 계절적 특성 등에 따른 농기계의 이용 효율은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특히 밭작물 농기계의 경우 영세한 영농규모, 짧은 사용기간, 밭농업의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기계화율이 60.2%로 미흡하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의 농업인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도 농업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빌려 주거나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기계 임대사업은 1990년대 초부터 일부 지역농업이 영농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농작업을 대행하던 것을 2000년대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2004년부터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와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하면서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는 농협이 신용사업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농가부채 탕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논농업 중심의 농기계 은행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의 영농관리센터를 두 축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에는 국고 290억원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499개소 설치를 지원하였고, 농기계 이용률은 12.8일/대로 전국 평균 작업일수 1.5일 대비 8.5배 높은 성과를 거두어 농기계 이용률 및 밭농사 기계화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역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 확대를 통해 734개소의 농기계사업단을 운영하여 벼 재배면적의 약 35%인 296천ha에 농작업 대행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벼 직파재배 사업도 확대하여 147개 지역농협에서 11천ha에 직파재배를 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역 농업인에 대한 수요 및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과 고령·영세농의 농작업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신형 발작물 농기계로 대체를 지원하여 임대농기계 사용을 활성화 하고 임대사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외부전문기관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 효율적 임대사업소 운영방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임대사업소 운영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신규 임대용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령·영세농과 조건불리지역의 농작업 대행을 위해 지역농협이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직영농협을 확대할 것이며, 농작업 범위도 논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까지 확대하고, 재배에서 방제, 수확 및 그 이후의 영농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9. FTA 폐업 지원

농업정책과 사무관 정성수

◆ 추진배경 및 개요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특정 품목의 재배·사육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4년 한·칠레 FTA 대책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법적 근거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며, 도입 당시 시행기간은 2008년까지, 지급대상은 FTA 이행에 따른 피해예상 품목 중 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포도·키위·복숭아로 사전 지정되었다.

시설포도·키위·복숭아에 대한 폐업 지원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377억 원이 지급되었다. 이후 검역문제로 수입되지 않은 복숭아에 지급되는 등 사전지정제도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한미 FTA 대책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한 사후 지정제로 개선하였으며,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에서 ① 재배·사육하기 위한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하면 투자비용 회수가 곤란하거나, ②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렵거나, ③ 그 밖에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도 시행기간도 한·중 FTA 대책의 일환으로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사후지정제로 개선된 후 최초로 2013년도에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 중 투자비용이 큰 한우를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총 소요금액(1,965억원)이 예산 편성액(30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예산 및 FTA기금 여유자금 등을 이용하여 지급하였다.

2014년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5월 29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중 투자비용이 큰 한우송아지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6월 25일 품목고시 후 8월 25일까지 두 달간 대상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각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는 신청 내용에 대한 현지(서면)조사 및 자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총 3,010농가에 196억원을 지급하였다.

2015년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5월 19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중 투자비용이 비교적 크고 단기에 회수하기 어려운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6월18일 품목고시 후 8월17일까지 두 달간 대상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신청내용에 대한 현지(서면)조사 및 자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정하여 총 4,610농가에 1,150억원을 지급하였다.

2016년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5월 26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중 투자비용이 비교적 크고 단기에 회수하기 어려운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다. 5월 27일 품목고시 후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두 달간 대상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각 읍 신청내용에 대한 현지(서면)조사 및 자체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총 5,860농가에 1,967억원을 지급하였다.

2017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도라지 1품목이었고, 이는 투자비용이 비교적 크고 단기에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은 없었다.

2018년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5월 26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중 투자비용이 비교적 크고 단기에 회수하기 어려운 호두, 양송이 버섯, 염소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다. 6월 5일 품목고시 후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두 달간 대상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각 읍 신청내용에 대한 현지(서면)조사 및 자체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총 1,680농가에 368억원을 지급하였다.

2019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귀리, 목이버섯 2품목이었고, 2품목 모두 투자비용이 비교적 크고 단기에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은 없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8년도 폐업지원 품목 중 염소의 경우, 동시 폐업에 따른 염소고기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업 기한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하였고, 이를 차질 없이 집행하였다.

앞으로도 조사대상 품목에 대해 폐업지원제 지급대상품목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폐업지원금 수령 농업인은 5년간 동일 품목의 재배·사육이 금지되므로, 이를 위반 시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제2장 농식품 유통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

제1절 농산물 유통 효율화

1. 산지유통 주체의 역량강화

▮ 유통정책과 사무관 한태희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와 디지털 기술발달, 대형유통업체의 성장 등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가 구매자 중심(buyer's market)으로 변화하는 한편,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수입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의 지속적인 경쟁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농산물 산지유통은 농협조직, 농업법인, 개별농업인 등 다양한 주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의 생산구조는 영세하고 산지유통 조직 또한 상당수가 소규모 판매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품질경쟁력 확보, 소비자 유통주체와의 동등한 거래교섭력 유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산지의 경쟁력은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소득 창출과 직결되며 이는 지속가능한 건전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산구조의 영세성에서 비롯되는 거래교섭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산지의 조직화, 규모화, 전문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산지유통주체를 규모화,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을 조직화하고 산지유통의 거점이 되는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다.

1992년부터 산지유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저장 및 상품화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하였다. 2019년까지 전국에 총 402개를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산지조직이 농산물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원물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산지조직이 유통을 위한 농산물을 농가로부터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확기에 일시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농산물이 판매된 이후에야 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 자금이 부족하면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확보할 수 없어 산지조직이 우선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산지조직이 유통하지 못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업인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소비자에서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융자지원을 통하여 산지조직의 일시적 자금수요를 해소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원활화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2005년부터는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조직의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해 왔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조건을 차등하는 등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사업들을 기반으로 2003년부터 산지조직을 소형(일반조직), 중형(전문조직), 대형(공동마케팅조직)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발전을 유도하여 왔으며, 2010년까지 일반조직 110개소, 전문조직 282개소, 공동마케팅조직 31개소를 육성하였다. 일반조직은 취급액 10억원 이상의 기초조직, 전문조직은 취급액 30억원 이상의 중견조직, 공동마케팅조직은 취급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적 경영체를 의미한다.

2011년부터는 시장개방 확대 및 소비지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개별 경영체 위주의 정책에서 통합 경영체 위주의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통합 경영체는 기본적으로 통합마케팅조직과 이에 참여하는 참여조직으로 구성된다. 통합마케팅조직은 주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 등이며, 참여조직은 지역조합, 농업법인 등이다.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조직에 일정수준 이상(농협조직 5억원, 농업법인 2억원 이상)을 출하여야 하며, 사업실적 평가결과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정부지원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통합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에서 출하한 물량을 모아서 소비지에 마케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원물확보 자금 등 정책지원은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합마케팅 조직은 참여조직의 자금소요를 파악하여 배분하고 있다.

통합마케팅은 일정한 기준에 따른 공동선별을 통하여 품질을 균일화하고, 산지유통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하여 소비자와의 거래교섭력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통합마케팅조직 107개소, 참여조직 416개소를 선정 및 육성하였다.

통합마케팅 체계에서는 통합마케팅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차별화된 상품화, 전략적 마케팅 등을 통하여 좋은 거래조건에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진하는 한편, 참여조직 및 농업인이 통합마케팅에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 조직화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통합마케팅조직이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농산물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의 공동선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선별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산지유통 인재양성을 위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에 산지유통 현장전문가 과정(11기 452명)을 편성·운영하는 등 전문인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그간의 지원과 노력을 바탕으로 산지의 규모화 및 조직체계 정비 등 산지유통은 규모화 측면에서 성과를 이루었다. 취급액 100억원 이상의 대형조직은 2005년 6개소에서 2019년 70개소로 늘었으며, 공동(통합) 마케팅조직 평균 취급액도 같은 기간 120억원에서 363억원으로 증가하는 등이 그 사례이다.

앞으로는 산지유통주체가 전속출하, 품목 전문화 및 자율적 수급관리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고 생산과 유통 관련 정책지원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조직화, 전문화 등 질적인 성과를 보다 가시화 할 것이다.

2. 생산자, 소비자의 자율적 농산물 수급관리체계 구축

▮ 원예산업과 사무관 손경문

◆ 추진배경 및 개요

과거, 정부 주도의 농산물 수급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초래한 측면이 있었다. 생산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시 TRQ 증량, 할당관세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생산자 측에서,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시 수매 등을 통한 가격지지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비자 측에서 불만 제기가 있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단방향식 수급안정 대책은 시장 참여자의 공감대 형성 및 정책 효과가 미흡하였고, 종종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낮춰 정책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였다. 이에 2013년부터는 농정신뢰 회복 및 수급안정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가 하향식으로 주도하던 수급안정정책을 시장 참여자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산물 수급정책의 거버넌스로 수급정책의 이해당사자인 소비자·생산자·유통인·학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가 2013년 4월 발족하였다. 수급조절위원회의 주목적은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에 의한 안정화가 불가능하거나 큰 사회적 비용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차원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같은 해 수급관리정책의 시스템화를 위해 시장 참여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급 위기 판단기준을 설정한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도 마련되었다. 수급조절매뉴얼은 '13년 배추, 양파를 시작으로 무, 건고추, 마늘까지 주요 채소류 5개 품목 위주에서 '18년 매뉴얼 개정을 통해 겨울대파, 풋고추, 배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급조절매뉴얼은 실제 가격이 출현하는 확률분포, 농가 비용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기단계를 설정하고, 실질적 가격변동과 농가 경영여건을 반영하여 가격안정대와 위기단계(주의, 경계, 심각)를 설정하여 단계별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위기단계 및 대응 매뉴얼 〉

| | |
|-------------|--|
| 심 각 | 심각한 공급부족, 소비자 후생 위협: 해외물량 도입, 관세인하 등 |
| 경 계 | 상당한 공급부족, 소비자 후생 지장: 비축, 계약물량 공급, TRQ 증량 |
| 주 의 | 다소간의 공급 불균형: 산지동향 점검, 수입 가능성 조사 |
| 중심가격 | |
| 주 의 | 다소간의 수급 불균형: 산지동향 점검, 수출 가능성 조사 |
| 경 계 | 농가소득 손실 일부 발생: 유통협약, TRQ수입 연기, 가공용 공급확대 등 |
| 심 각 | 공급과잉, 소득손실 심각: 유통명령, 과잉물량 가공업체 공급·저장, 소비확대 |

특히, '18년 매뉴얼 개정시 사전적으로 파종이나 정식이 되기 전에 면적을 조절하여 수급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면적조절 매뉴얼을 보강하였으며, 품목별로 각 수급기관별 월별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평시에도 품목별 수급상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와 수급조절매뉴얼 운용 등을 통해 수급불안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자, 소비자 등의 수급안정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수급매뉴얼에 따른 선제적 수급안정대책으로 가격의 진폭이 줄어들고, 가격 불안시 안정대로 회복되는 기간도 단축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 위원회 운영 전후 5대 채소 가격변동률 : ('08~'12 평균) 16.1% → ('13~'19 평균) 13.4%

또한, 2016년부터는 무·배추 등 가격 등락이 심한 품목에 대한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대파를 시범사업으로 추가하고 사업 물량을 12%로 확대하였다. 이 사업은 농업인에게 일정 약정금액(도매시장 평년가격 80%이내)을 보장해주고 사전 면적조절 등 강화된 수급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계약재배를 통한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다. 아울러,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이 강화되도록 생산자 중심으로 생산前 단계부터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추, 무, 마늘, 양파 등 4개 품목에 대해 중앙주산지협의회를 구성하였다.

*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 ('18)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 ('19) 대파(시범)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물량 : ('18) 품목 평년 생산량의 10% → ('19) 12%

2018년부터는 농산물 수급관리에 4차산업 ICT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기관별로 분산되어 활용이 어려웠던 농산물 수급관련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15개 기관 72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9년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자, 소비자 등 수요자별 자율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생산·유통·소비 관련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와 수급조절매뉴얼의 운용 등 자율적 수급안정정책의 추진으로 가격 변동률이 완화되는 등의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와 수급조절매뉴얼 운용은 생산 이후 수급문제 해결 측면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생산 및 생산단계 이전의 수급조절에는 취약한 면이 있다. 이에 이상기상 발생에 따른 피해를 분석하여 생산단계부터 기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상기상 대응 수급안정매뉴얼 운영을 통해 사전적 대응기능을 제고하고, 사전 면적조절매뉴얼을 통해 적정 재배면적을 사전에 예시할 계획이다.

또한,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수급조절 대상품목을 주요 채소 이외의 품목까지 확대('20년 7개 품목으로 감자 시범 추진)하고, 사업물량을 품목 평년 생산량의 15%까지 운용할 계획이다.

수급정보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증장기 계획에 따른 연차별 고도화를 통해 빅데이터의 융·복합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장하고, 생산자·유통인 등 시장참여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3. 소비자와 산지 간 직접 거래 활성화

■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서기관 박재화

◆ 추진배경 및 개요

도농교류 확대, 농산물 유통경로 다원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직거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단축으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직거래장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소비자 유통·식품·외식업체와 산지조직 간의 직거래(B2B)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여 전자방식의 직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직거래는 크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형태의 직거래와 중간 유통경로를 생략하고 생산자 조직과 대량 수요처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광의의 직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주체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거래장터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과천 경마공원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을 개장하여 2009년에는 방문객 수 29만명에 5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9년엔 146만명에 136억원의 매출을 올려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물가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이 밖에도 전국 농협 지역본부에 직거래장터를 설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정례 운영되는 직거래 장터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명절 등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지역별로 임시 장터를 열어 농산물 공급망을 늘리고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3년 32개소에서 2019년 전국 469개소로 확대되어 로컬푸드와 직거래의 대표모델로 성장하였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이외에도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업체 간의 직접 거래를 확대하여 대규모로 직거래의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소비자 유통·식품·외식업체에 직거래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조직과의 직거래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비자와 산지가 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내에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여 온라인상으로 판매조직과 구매조직이 회원사로 가입하여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정산소를 갖추어 대금결제 등 거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에는 3조 1,698억원으로 성장하여 농수산 분야 B2B 거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직거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2015년 6월 22일 제정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소비자·생산자 간 직거래 확대로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국내산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On-line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수요 맞춤형 농가 D/B’를 구축하여 온라인 사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활성화를 통해 학교급식 확대 등

온라인을 활용한 B2B 직거래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로컬푸드직매장에 레스토랑, 로컬요리교실, 먹거리교육문화시설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추가하여 단순 지역농산물 판매처에서 나아가 도농상생·교류의 공간 및 로컬푸드 식문화 공유·확산의 중요한 공간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4.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 유통정책과 사무관 박병배

◆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5년 가락동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2004년 강서도매시장까지 32개의 공영도매시장(청과부류) 건설을 완료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을 통해 농산물의 수집, 분산 등 도매유통이 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유통 단계의 축소, 출하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농안법을 개정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2004년 6월부터 개장, 현재 60개의 시장도매인을 운영 중에 있다.

최근 산지유통센터의 등장과 출하자 규모화, 대형유통업체·종합유통센터의 등장, 저온저장 및 콜드시스템의 발달 등 농수산물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매시장은 노후화된 시설과 유희공간과 물류시설 부족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신속한 공급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고자 낙후된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여 물류와 유통을 개선하고, 도매시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출하농산물의 안전성 문제, 물류 효율화 등)을 개선하고 공정성·투명성 중심의 도매시장 운영에서 나아가 거래 안정성·유통 효율성을 고려한 도매시장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1〉 연도별 공영도매시장 거래실적(청과부류)

(단위: 만톤, 조원)

| 구 분 | 2008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2019 |
|-----|------|------|------|------|------|------|------|
| 물량 | 659 | 623 | 650 | 722 | 703 | 684 | 694 |
| 금액 | 7.3 | 9.6 | 10.6 | 10.1 | 11.8 | 11.7 | 11.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 추진내용 및 성과

▶ 시설현대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고품질·신선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물류·경매장 구조개선, 저온저장 시설, 가공·포장 등 상품화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9년 공영도매시장(32개소)을 대상으로 시설노후화가 심하고, 유통물량 과다로 시설이 부족한 공영도매시장(서울가락시장, 대전오정시장, 광주각화시장, 충남천안시장, 경기수원시장, 경북안동시장, 경기구리시장)을 선정하여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40%, 지방비 30%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전오정도매시장은 '09년에서 '13년까지 연면적 42,933㎡ 3층의 규모로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하였고, 충남천안도매시장은 '12년에서 '16년까지 연면적 30,456㎡,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사업을 실시하였다. 서울가락도매시장의 경우, '09년에서 '31년까지 연면적 513,159㎡,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도·소매권역을 분리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경기수원도매시장은 '17년에서 '22년까지 연면적 49,828㎡,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광주각화도매시장의 경우 당초 '09년부터 '13년까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도매시장 유통인들이 사업기간 영업손해를 이유로 시설현대화를 반대하여 개설자(지자체)가 사업을 포기하였다. 경북안동도매시장은 '18년부터 '20년까지 연면적 28,931㎡,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구북부시장은 '20~'23년, 충북 청주시장은 '21~'25년까지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다 효율적으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통, 건축, 물류 전문가로 구성된 시설정비위원회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신규 사업대상자를 공모·선정하고, 사업 집행점검 등을 통해 도매시장 물류체계 개선 및 유통효율화 기반 확충을 위한 기반을 충실히 구축하였다.

▶ 운영효율화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관계자 등 도매시장 유통인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및 도매시장 평가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도매시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경매제도도 인한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 및 비상장품목 거래안전성 제고를 위해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하고,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2012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도매시장이 투명성·공정성 중심에서 효율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정가·수의매매 확대,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을 통한 규제완화로 유통주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발전협의회 구성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정가·수의매매 예약 거래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및 도매시장법인 등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도매시장 물류 효율화를 위해 최소출하단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안법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과징금 납부 방식을 변경하고 경매사 행정처분 사유 구체화, 과밀부담금 면제 등을 통해 유통종사자의 권익보호 강화 및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과징금 체납처분에 따른 행정력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도매시장 가격결정을 경매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로 다양화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거래 안정성이 낮은 가락시장의 비상장 품목에 대해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여 정산조직을 통한 대금 결제 실시로 출하자를 보호하기도 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규제완화를 통한 도매시장 유통주체 경쟁력 강화 및 출하자 거래대금 정산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금정산조직 설립·자금지원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 및 농산물 유통 효율화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도매시장 유통주체 간 경쟁촉진, 상물분리 거래제도(농산물 온라인 경매) 마련, 정가·수의매매 추진 등 유통 및 물류효율화를 위한 각종 대책 및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유통정책과 서기관 김세진

◆ 추진 배경 및 개요

2010년 가을 이상기후로 인한 배추 생산량 감소는 배추의 소비자 가격을 평년에 비해 최고 3.5배까지 올리면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세계 유수의 언론사인 TIME 지는 2010년 10월 7일자 기사(Cabbage Crisis : South Korea Runs Out of Kimchi)를 통해 김치 종주국인 한국에서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 부족이 국가적 위기(national crisis)를 야기하였다고 표현하였다. 배추가격 폭등을 계기로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락하는 것을 막고 유통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채소류에 중점을 둔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을 마련(11.1)하고 2012년까지 이를 추진하였다.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유통비용절감’ 및 ‘가격변동성 완화’를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13.5월)’을 수립하여 발표하였고, 2014년 5월에는 보완대책을 수립하였다. 대책의 핵심적인 사항은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유통주체들의 유통효율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거래 확대,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및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에 따라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의 농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 내 공공급식 등을 중심으로 우선 소비되는 먹거리 공급체계인 지역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17.12)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수립 이후 다양한 농산물 유통정책들이 많이 추진되었는데, 주요 추진 과제는 로컬푸드 직매장 등 신유통 확대,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 농산물 직거래·B2B 및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등 신유통 확대

2013년부터 ‘소비자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 사업, 직거래장터 및 직거래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완주군 용진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직매장 사업자에 대해서 인테리어·시설 및 교육·홍보 등을 지원한 결과, 2012년 3개소에 불과했던 로컬푸드 직매장이 2019년말에는 469개소까지 증가하였다. 직거래 장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철 농산물을 한데 모아 가정으로 배송하는 형태의 직거래인 ‘꾸러미사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였고, ‘09년부터 농수산물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였고,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농산물은 '19년 기준 3조 1,698억원에 달한다.

또한, 직거래의 장점 및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직거래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직거래 유형별 우수사례에 대한 마케팅 지원 및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직거래 페스티벌을 개최(3회)하여 직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였다.

아울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거래소’를 거래액은 2019년 2조 6,278억원(수산/가공제외)을 기록하였다.

직거래, 사이버거래소,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등의 신유통경로가 확산된 결과, 2019년 신유통을 통한 거래액은 약 12조 6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2.4% 증가하였다.

〈표 2-2-2〉 2017~2019년 농축산물 신유통경로 거래액

(단위: 억원)

| 구분 | 직거래 | 공영홈쇼핑 | aT 사이버거래소 | 농협 직접도매사업 | 협동조합형 축산물패커 | 합 계 |
|-------|--------|-------|--------------|--------------|----------------|---------|
| 2017년 | 42,785 | 1,882 | 22,117 | 12,283 | 23,535 | 102,602 |
| 2018년 | 49,037 | 2,186 | 22,022 | 12,454 | 25,059 | 111,758 |
| 2019년 | 55,309 | 2,715 | 26,278 | 13,259 | 28,055 | 125,616 |

한편, '15년 6월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7월에는 공영 홈쇼핑을 개국하고 이를 통한 농식품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년 2,715억원에 달하는 등 농산물의 새로운 유통경로로서의 자리매김 하고 있다.

▶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

국내 농산물 유통체계는 가락시장으로 대표되는 도매시장, 대형마트와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 등 주요 채널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되고 있으며, 높은 가격변동성 등 비효율성과 중소농의 판로부족 현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순환되는 유통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다. 정부는 2018년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농식품부·지자체·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추진 TF와 민간 전문 자문단을 구성('18.7.)하고,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나주 혁신도시 14개 공공기관과 화천·포천 2개 접경지역 군 급식에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추진하였다. 더불어 지자체의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로컬푸드 중심의 공공급식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배포하고, 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연계한 농림사업(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7개)의 패키지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18.12.)하여 지자체 중심의 로컬푸드 공급확대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19년에는 로컬푸드 확산 3개년 추진계획을 세워 로컬푸드 소비체계의 장기적 비전 및 목표를 명확히 하고 추진 과제를 정비하였다.

▶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농업 선진국과 같이 산지(產地)가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될수록 도매시장의 역할은 축소되고 소매시장이 중계 기구로서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지역농협을 비롯한 산지가 제대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도매시장⁷⁾이 농산물 유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례로 채소를 보면 전체 생산량의 40% 내외가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생산량 중 자가소비, 감모 등을 제외하고 실제 유통물량을 생산량의 82% 정도로 가정한다면 절반 가까이의 채소가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고 볼 수 있다.

도매시장은 소규모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효율적인 집하·분산·중계라는 유통의 순기능 외에 정매라는 일일(一日) 수요공급량에 의한 가격결정이라는 불합리한 측면도 크다. 이러한 도매시장의 가격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2년 2월에 농안법을 개정하여 '정가·수의매매'를 정매와 동등하게 규정하였고, 같은 해 8월에 시행하였다.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하여 2013년 8월에는 정가·수의매매 지침을 마련하였고, 농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4년 10월부터는 중도매인간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또한, 정가·수의매매 관련 정책자금 지원,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출하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 등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중이 '12년 8.9%에서 '18년 18.8%⁸⁾로 증가하였다.

또한 산지에서 도매시장까지 이동하는 물류거리 단축 등 비용 절감을 위해 '19년 온라인경매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한 송품장 등 정보등록, 선거래 후물류 경매방법 등 온라인경매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였다.

7) 현재 우리나라에는 32개의 공영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을 통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8)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시 수입농산물을 제외한 국산 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 실적에 한하도록 한 감사원 지적('17.1)에 따라 정가수의매매 비중 산출 기준을 국산 농산물 거래비중으로 재정비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13.5월)’ 및 보완대책(‘14.5월)’을 추진한 결과,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 비중이 2014년 14%에서 2015년 16%로 증가, 2016년 17.4%, 2017년 20.6%, 2018년 22.6%, 2019년 25.4%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유통비용절감액 추정치도 2016년 8,702억원, 2017년 9,860억원, 2018년 1조 1042억원, 2019년 1조 3,386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⁹⁾

향후에도 유통비용 절감 및 수급안정을 위하여 직거래 확대 등 신유통 경로 확산을 통해 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 농산물이 지역의 공공급식 등을 중심으로 우선 소비되는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구축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 농업관측정보 활용 강화

▮ 원예산업과 사무관 손경문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관측사업은 1999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업관측센터(현 농업관측본부)」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동 센터를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고, 2007년 1월 3일, 동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농업관측사업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동 사업은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재배(의향), 작황, 생산, 출하, 재고, 수출입 등 국내외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측·분석하여,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 및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생산계획 단계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인 영농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유통·가공업 종사자 및 소비자에게는 종합적인 수급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농산물 거래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1999년 9개 품목으로 출발한 농업관측사업은 이후 지속적인 관측수요 증대에 따라 관측 대상 품목이 확대되어 2019년 총 35개 품목에 대한 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부류별로는 채소 9개, 과일 6개, 과채 7개, 축산물 6개, 국내곡물 3개, 국제곡물 4개 품목이다.

해외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급변하는 해외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칠레, 베트남 등 국가에 총 24명의 해외모니터 요원을 두고 주재국의 생산, 유통, 가격 정보 등을 수집해서 집중적인 분석을 거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9) 온라인쇼핑 등 일부 경로에 대한 조사방법이 변경되어 신유통경로 거래액 및 유통비용절감액 재정비

특히, 농산물 교역량이 급증하는 중국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에 중국농업부 정보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2005년 9월부터 중국 도매시장 주요 농산물의 가격 및 도매시장 반입량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다. 2006년 12월에는 중국 농업부 정보센터와의 MOU를 갱신하여 곡물류 품목 추가 및 관련 중국통계 정보를 제공받았고, 3년마다 자동 갱신되도록 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업관측본부는 매년 주요 농축산물의 단기, 중장기 수급 및 가격 예측정보를 사전 제공하여 농업인의 합리적인 영농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율적인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관측사업 운영체계를 정비 보완하여 왔다.

2019년 단기관측 월보는 총 120회 발행하였으며, 농업·농촌경제동향(계간지)를 4회 발표하여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및 전망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였다. 농업관측 속보는 17회를 발행하여 주요 농축산물 수급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농정포커스 및 현안분석을 발표하여 관련 현안에 대한 분석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표 2-2-3〉 2019년 주요 농축산물 부류별 관측정보 발표시기

| 구 분 | | 발표시기 | | |
|--------------|-------------------|--------------|----------------------------|--------|
| 채소 (9개) | 엽근채소 (4개) | 배추·무·당근·양배추 | | |
| | 양념채소 (4개) | 건고추·마늘·양파·대파 | | |
| | 버섯(1개) | | | |
| | | 매월(1~2월 제외) | 1일 | |
| | | 매월(1~2월 제외) | | |
| | | 9, 12월 | 21일 | |
| 과일 (6개) | 사과·배·포도·감귤 | | 매월(1~4월 제외) | 5일 |
| | 복숭아 | | 5, 6, 7, 8, 9, 12월 | |
| | 단감 | | 6, 8, 9, 10, 11, 12월 | |
| 과채 (7개) | 오이·애호박·토마토·풋고추·수박 | | 매월(1~2월 제외) | 5일 |
| | 참외 | | 3, 4, 5, 6, 7, 8, 12월 | |
| | 딸기 | | 3, 4, 5, 8, 9, 10, 11, 12월 | |
| 축산 (6개) | 한육우·돼지·육계 | | 매월(1월 제외) | 25일 |
| | 젓소 | | 2, 5, 8, 11월 | |
| | 산란계 | | 2, 3, 5, 7, 8, 9, 10, 11월 | |
| | 오리 | | 2, 5, 6, 8, 10, 11월 | |
| 곡물 (3개) | 쌀 | | 3, 5, 9, 10, 11월 | 해당월 하순 |
| | 콩 | | 3, 5, 10, 11월 | |
| | 감자 | | 매월(1월, 12월 제외) | |
| 국제곡물 (4개) | 밀·옥수수·대두·국제쌀 | | 매월(1월, 12월 제외) | 말일 |

매년 초(1월말)에는 농업전망대회 개최를 통해 농업인, 관련단체, 학계, 관련 유통업체 등이 참석하는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19년 1월 22회를 맞은 농업전망 서울대회에는 농업인, 정책담당자, 학계,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 등 총 1,787명이 참석하였다. 농업전망대회에서는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전망, 품목별 수급동향 및 전망, 주요 정책이슈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품목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집중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농업인의 관측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산지 미니전망대회를 총 2회 실시하였으며, 참석자 440명에게 주요 농산물의 수급동향 및 정식(파종)면적의향을 사전에 제공하였다.

2016년부터 관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시작된 농업관측 고도화사업은 2019년에도 관측모형 개선, 관측정보 활용도 제고 및 확산체계 개선, 관측정보 수집체계 개선 등의 주요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정확도 제고를 위해 2015년 실시된 농업총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농업관측 표본농가를 재정비하였다.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재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한 표본농가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표본 재정비를 통해 신규 표본농가 추가로 위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가보완을 하고 있다. 아울러, 표본농가 재정비와는 별도로 관측정확도 향상을 위해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실제 재배지역의 면적을 실측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마늘·양파 표본농가 재배면적 실측 시범조사를 통한 표본농가의 전화조사에 대한 정확도를 검증하였으며, 이후 주요 채소류 중심으로 실측조사를 지속적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품목별 농산물의 증장기 수급 및 가격 전망과 농업총량지표인 농업생산액, 부가가치, 경지면적(논, 밭), 전체 재배면적 및 사육마릿수, 무역수지, 농가인구의 전망치와 농가경제지표인 농업구입가격지수, 판매가격지수, 교역조건지수, 농가소득(농업소득, 비농업소득, 이전소득 등), 경영비의 전망치를 산출하는 KREI-KASMO 모형을 매년 개선 및 보완하였다. 2019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열대과일 세분화, 과일과채 수요함수·수입수요함수 재구성 및 추정으로 FTA 파급영향 분석 모듈 정교화하였으며, 둘째, Stochastic 모형 개발 및 모형 검증·개선을 위한 FAPRI-KREI 공동연구실시. 셋째, 미나리, 부추 수급모형 구축 및 추가로 양적 확대하였으며, 넷째, 콩 시도별 패널을 기반으로 기온·강수량·일조량 등을 반영한 단수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관측 품목의 수급예측모형도 보완하였다. 생육·기상·모형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7차례)으로 관측모형 개선 방향을 정립하였으며, 정량적 기상예측정보 협조, 민감 채소의 생육정보 협조, 기개발된 예측모형 공유를 타진하였다.

관측정보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는 관측정보와 농업인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관측정보를 확산시켰으며, 블로그 기자단, 카카오톡스토리 운영을 통해 관측정보에 대한 설명 및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또한, 감자를 분기보에서 월보로 전환시키고, 산란계, 오리의 경우 발행횟수를 증가시켜 수요자에게 최신 관측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측정보 수집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ICT를 활용한 관측고도화를 추진하여 관측정보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고랭지배추 주산지(강원도 안반덕, 귀네미, 매봉산지역)에 출하관측용 CCTV 3기를 고랭지배추 주산지에 설치·운영함으로써 매일 출하되는 고랭지배추의 물동량을 파악하여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광범위한 지역의 산지 정보를 단시간에 수집하는 등 정보 수집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랭지배추(강원 정선)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관측정보 수집사업을 실시하여 배추 주산지의 재배면적, 작황, 출하량 파악 등에 활용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기후변화에 따라 농산물 수급이 크게 변동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업관측 산지기동반」을 운영함으로써 재배면적, 작황, 생산, 출하 동향의 정보를 상시 수집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다. 고랭지배추는 전작형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산지기동반 인원을 확충하여 주요채소류(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였다. 산지기동반은 주산지별 설정한 관측 포전에 대해 정기적으로 동향을 조사하여 매주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선제적인 수급 대책 시행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매년 농업관측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해 관측정보를 제공받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농업관측 수요자 평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성과지표인 이용률은 92.0%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 81.0%, 만족도 82.0%, 도움도 74.9%, 정보 이해 용이도 83.3% 등 다양한 지표들도 70% 이상으로 나타나 관측정보 수요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예측 정보인 농업관측정보와 통계청 농업통계(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발표시기 간극 등으로 관측 전망치와 통계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보간 격차는 불필요한 혼선과 사회적 비용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그 격차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0년부터 농업관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재배포전 현장 실측조사, 산지기동반 확대 운영 등 산지정보 수집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주요 수급관리 품목인 5대 노지채소 중심으로 주산지 표본농가의 재배포전을 실측조사하고, 품목과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관측정보를 토대로 농산물 수급에 대한 상황분석·계획수립·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현장 분석과 관측조사·분석시스템 개선 등 농업관측 고도화 사업을 지속하여 더욱 정밀하고 유용한 농업관측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2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1. 공공비축 제도 운영

▮ 식량정책과 사무관 서정우

◆ 추진배경 및 개요

쌀이 부족한 '90년대까지는 통일벼 등 다수확 품종의 육성, 생산기반 조성 등 증산위주의 쌀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중곡가제도인 추곡수매제를 통해 식량안보 확보, 농가소득 보장(쌀의 고가 매입), 서민생활 안정(쌀의 저가 판매)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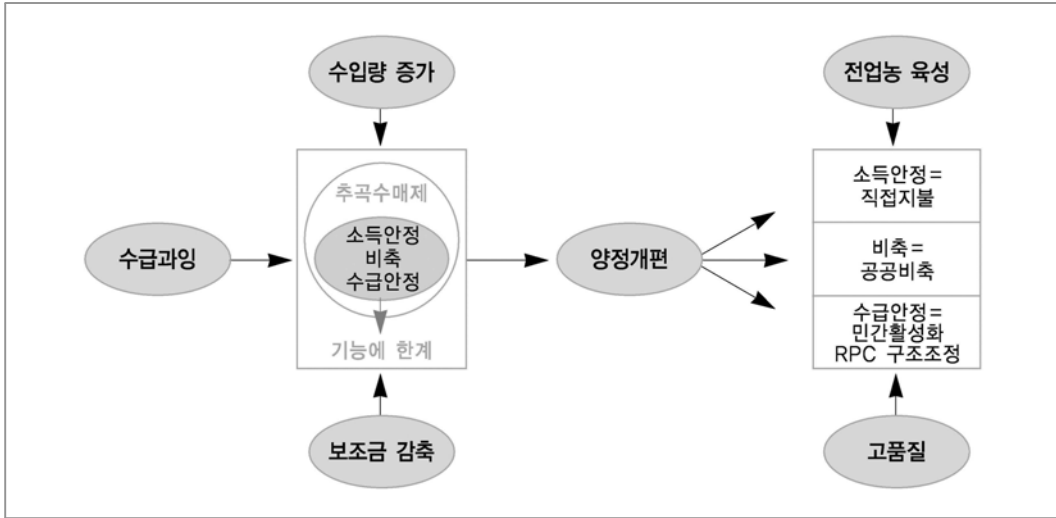
WTO보조금 범위 내에서 운용되던 추곡수매제도는 '95년 WTO체제 출범이후 지속적인 보조금 감축으로 국내생산량의 30% 수준에 달했던 정부수매량이 '04년도에는 생산량의 15% 수준까지 줄어들게 되어 추곡수매제 본래의 소득지지 기능과 물량흡수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값은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그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문제는 재정지원(직불금)으로 보전한다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표 2-2-4〉 추곡수매와 공공비축 비교

| 구 분 | 추곡수매제 | 공공비축제 |
|-------|--------------------------|------------------|
| 매입 목적 | ①농가소득안정, ②쌀수급조절, ③안보용 비축 | ①안보용 비축 |
| 매입 물량 | ○ 국회동의 | ○ 국무회의 의결 |
| 매입 가격 | ○ 행정가격(생산비 감안) | ○ 시장가격(통계청 조사가격) |

〈그림 2-2-1〉 양곡관리 시스템



그에 따라, 현행 쌀 정책은 소득보전직불제도를 통한 소득안정, 시가 매입·판매방식의 공공 비축제 운영, 민간유통 기능 활성화와 쌀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품질 고급화·브랜드화 및 친환경농업 육성 등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공공비축제는 WTO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보조금 감축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급변하는 국내외적 시장상황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제도이다. 공공비축제가 WTO 협정상 허용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식량안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방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비축제는 재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일정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되며 비축물량은 FAO 권고량(연간 소비량의 17%)을 기준으로 정하고 연간 매입물량은 비축물량의 1/2수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표 2-2-5〉 양곡연도말 공공비축미곡 재고량 목표 및 매입물량

| |
|---|
| ○ '05~'07년(1차) : 864천톤('05년 576천톤, '06년 504, '07년 432) |
| ○ '08~'10년(2차) : 720천톤('08년 400천톤, '09년 370, '10년 340) |
| ○ '11~'13년(3차) : 720천톤('11년 340천톤, '12년 370, '13년 370) |
| ○ '14년~ : 재고는 총 쌀 소비량의 17~18% 수준('14년 370천톤, '15년 360, '16년 360, '17~19년 340) |

공공비축제 도입과 함께 수확기 홍수출하물량 흡수를 위해 산물벼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는 등 산지 RPC를 중심으로 민간유통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품질 좋은 쌀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생산·유통 측면에서도 시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품질 고급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에도 참여하여 아시아 국가간 식량안보 협력체계를 강화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ASEAN+3 국가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국에서 비축해 둔 쌀을 재해가 발생한 나라에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식량안보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2011년 9월에는 제4차 협정문이사회에서 이 프로그램의 협정문이 최종 타결되어 제11차 AMAF+3 농림장관회의(2011.10.7, 인도네시아)에서 협정문이 승인되었고, '12.6.12 협정발효요건이 성립되어 '12.7.12부터 발효되었으며, '13.6.25 국회비준 동의에 따라 '14년부터 APTERR용 쌀을 비축('14년 3만톤, '15년 3만톤, '16년 3만톤, '17년 1만톤, '18년 1만톤 '19년 1만톤)하였다.

〈표 2-2-6〉 국가별 쌀 약정 현황

| 구 분 | 한 국 | 중 국 | 일 본 | 아 세 안 | 합 계 |
|--------------|-------|-------|-------|-------|-------|
| 약정물량(천톤) | 150 | 300 | 250 | 87 | 787 |
| 출연기금분담액(천불) | 1,000 | 1,000 | 1,000 | 1,002 | 4,002 |
| 운영비용기부금(5년간) | 75 | 75 | 75 | 74 | 299 |

공공비축제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적정 재고(쌀 소비량의 17~18%)를 확보할 뿐 아니라, 쌀 이외 밀, 콩에 대해서도 공공비축을 시행하도록 법률(양곡관리법)이 개정('13) 되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9 양곡연도 쌀 생산량은 3,868천톤으로 생산량 증가와 공공비축제를 포함한 쌀 수급정책을 통해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제곡물시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잦은 기상 이변으로 곡물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있으며,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따른 곡물 수요 증대와 신흥국의 식량 및 사료 수요 증가로 수급 불균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공비축제는 이러한 불안정한 식량 수급 여건 속에서 식량 무기화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민이 신뢰할 만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 특히 주곡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DDA/WTO 등 양곡정책의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비축제 도입은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쌀의 유통과 수급은 시장의 기능에 맡기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정책을 가능케 하였다.

향후 공공비축제의 운영 내실화 및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축규모 및 정부 양곡관리의 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APTERR용 약정물량의 확보를 위해 약정 물량의 일부를 매년 별도 비축할 계획이다.

2. 쌀 적정생산

▮ 식량산업과 사무관 이수일

◆ 추진 배경 및 개요

지난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같은 쌀 생산 감축 노력 등의 영향으로 벼 재배면적은 감소(벼 재배면적 : '17. 755천ha → '18. 738 → '19. 729)했으나, 쌀 생산량은 최근 6년 연속 풍작을 기록하면서 지속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90년 이후 매년 2% 내외로 지속 감소('17. 61.8 → '18. 61.0)하는 한편 '18년 양곡연도말 기준 재고량이 144만톤(적정 재고 80만톤)에 달하여 쌀 과잉재고 해소를 위해서는 '19년 강력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이 필요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19년 쌀 적정생산 추진 전략으로 '적정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 면적 확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농업인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쌀 생산조정 추진단」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그 중에서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의 '19년 목표를 5.5만ha로 확대('18. 5만ha)하고 중점 추진하였다.

'19년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쌀값 상승을 감안한 품목군별 지원단가를 인상(ha당 두류 45만원/ha ↑, 조사료 30 ↑)하였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휴경제도를 신규도입하는 한편, 농기계 지원 확대(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18년 50개소 → '19년 220), '18년도 사업 참여 농지 배수로 정비, 논 타작물 사일리지 제조운송비(126억원)·기계장비(24억원) 지원, '19년 사료용벼·

사료용 옥수수 보험상품 신규 도입 등 유관기관·단체의 유관 사업을 연계지원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농가참여 확대를 위해 시·도 부단체장 회의(3.28., 4.26.), 시·도 순회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4.10.~18., 2.20.~3.7.), 지역담당관 시·군 현장점검(2.22.~3.19., 38개소 / 4.30.~5.15., 34개소), 매주 쌀 생산조정 추진단 점검회의 개최(1.21.~, 20회) 등을 통해 촘촘한 현장관리를 추진하였다.

또한, 권역별 사업 설명회(1.15.~29.), 농협 조합장 결의대회(4.2.), 관계기관·단체 결의대회(3.21.), 홍보 전단지(30만부)·리플렛(4만부) 장관님 서한문 제작·배부, 농업전문지(26개, 4.15.~5.1.) 및 KBS1 6시 내고향(4.18., 보성 유채) 홍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실시하였다.

그 밖에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공공비축미 배정, 논콩 전량수매 및 수매가 인상, 농협 무이자 자금 및 농기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보완대책도 시달(3.20.)하였다.

그 결과, 신청 면적은 전년과 비슷('18. 30,962ha → '19. 31,000)하였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7~10월)을 실시한 결과 총 28,610ha(신청 대비 92.3%)가 약정을 이행, 7.7%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약정 불이행 사유로는 지속적인 쌀값 상승과 파종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반 벼를 재배(79%)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 제외작물 재배(8%), 폐경(6%)등으로 파악되었다.

각 지자체별 사업 실적을 보면 전남 7,790ha(목표 대비 66.8%), 전북 7,138(83.1), 경남 3,478(70.7), 충남 2,923(29.6), 경북 2,897(39.8), 충북 1,444(57.1), 경기 1,191(20.6), 강원 1,139(52.6) 순이었으며, 특·광역시 별로는 인천 262ha(34.5%), 울산 138(45.9), 세종 95(32.4), 광주 74(20.0), 부산 16(9.1), 대전 14(17.8), 대구 12(5.8) 순 이었다.

품목군별 이행실적은 두류 9,639ha(목표 대비 48.2%), 일반·꽃거름 9,220(61.5), 조사료 7,410(74.1) 순 이었다. 또한, 타작물 재배 정책사업과 유사 사업으로 농진청의 '신기술보급사업(866ha)', 농어촌공사의 '농지매입사업(4,081ha)' 및 '국가관리 간척지 임대(4,022ha)' 등을 통해 약 9천ha의 타작물 재배 유도 성과를 내었다.

또한 농식품부는 식량산업과 중심으로 농진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가뭄·집중호우·태풍 등 재해발생 시 '재해대책 상황실'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한편, 쌀 적정생산을 위해 공헌한 우수 지자체 및 농업인·법인 등을 선정하여 정부 포상을 수여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17년 이후 급격한 쌀값 상승, 열악한 타작물 생산기반 등으로 인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29천ha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약 15만톤의 쌀 생산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효과로 쌀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에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년 사업은 '18~'19년 사업 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 품목 수급안정, 작부체계 보급, 종자 확보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사업 목표 물량을 달성할 계획이다.

3. 발식량작물 안정생산

■ 식량산업과 사무관 박정수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발식량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인도 등 인구가 많은 나라들의 경제성장으로 식용, 사료용 등 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국은 자국의 식량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우리의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품목별로 보리, 밀, 옥수수, 콩의 경우 각각 46.1%, 0.5%, 0.7%, 6.6%로 미국 124.7%, 캐나다 177.4%, 호주 251.7% 등 선진국(2016/17~2018/19 기준, KREI)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렇듯 밭 식량작물 생산이 저조한 원인은 호당 평균 재배면적이 0.14ha로 과수 0.49ha, 노지채소 0.16ha 등 타 작물에 비해 적고(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다품목을 소량 생산하는 구조로, 소득 또한 쌀보리 243천원/10a, 콩 576천원/10a, 봄감자 687천원/10a 등으로 쌀 667천원/10a, 미늘 1,291천원/10a, 양파 1,108천원/10a 등 타 작물 대비 높지 않기(2019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 때문이다.

특히, 65세 이상 경영주의 비율이 2010년 46.4%에서 2018년 60.3%까지 증가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집약적 생산 및 수입산과의 가격 경쟁력 등에 밀리는 등 밭 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경지 이용률은 102% 수준으로 활용도 제고 등의 여지가 높은 상황으로, 향후 밭식량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서는 밭식량작물 산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그동안 밭식량작물의 생산·유통체계 구축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밭작물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 맥류 건조·저장 시설 및 콩 유통종합처리장 지원 사업을 추진(2016년까지 84 개소 지원)한 바 있으며,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비축사업 및 수매자금 지원,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밭 직불제 운용, 밭 기반정비,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재해 보험제도 운용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 쌀 생산조정제를 통한 논콩 생산으로 쌀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김제 죽산면의 사례를 비롯하여 우리밀과 국산 팥 등을 이용한 부안의 찰떡, 국산 팥을 사용하는 경주의 황남떡, 정읍의 국산 귀리제품(선식, 쿠키 등) 등이 지역의 특산품과 다이어트식 등으로 인기를 끌면서 우리 밭식량작물의 재배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판로확보, 농가소득 향상, 먹거리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밭식량작물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자급률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은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나 대상도 타 지원사업에 비해 소규모로 지원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6년부터 신규 추진하고 있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통해 기존의 건조, 저장 등 시설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통합마케팅 조직과 계열화를 촉진하여 시장 교섭력 확보 및 수급조절에 역점을 두어 고품질 밭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유통토록 함으로써 재배확대는 물론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에도 연계할 계획이다.

밭식량작물 산업이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 지자체, 가공업계, 소비자, 연구기관 등 모든 기관의 힘을 합쳐 위기의 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탈바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산지생태축산의 활성화

■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남기현

◆ 추진 배경 및 개요

그동안 국내 축산업은 규모화, 전업화 등 생산성 위주의 양적 성장에 집중함으로써 부적절한 분뇨처리로 인한 수질 오염과 약취 발생, 질병 문제 등을 유발시키고, 민가와 가까운 농장은 약취에 의한 민원이 빈발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와 함께 축산업의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이르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영의 불안정성도 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2-7〉 축산비 중 사료비 비중(2019)

| 구 분 | 한우비육우 | 한우번식우 | 육우 | 젖소 | 비육돈 |
|-----------|-------|-------|------|------|------|
| 사료비 비중(%) | 35.8 | 45.6 | 52.5 | 54.1 | 52.0 |

이러한 국내 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정책을 2013년 도입하였으며, 산지생태축산은 국토면적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산지(2018년 국토면적의 63.1%)를 활용하여 사료의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과 동물복지를 고려하고, 관광과 체험을 연계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어 2014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조성사업(2014~2016)을 거쳐 2017년에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을 본 사업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전국 33개소의 농장을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하였고, 2018년에는 39개소(누계)의 농장을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하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패키지(초지조성, 컨설팅, 기계·장비, 기반조성, 축사시설현대화 등)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2개 농장을 추가 지정하고, 사업 포기 등 5개 농장을 제외하여 누계 36개소의 산지생태축산농장을 유지하였다.

〈표 2-2-8〉 산지생태축산농장 현황(2019)

| 지역별 | 합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
| 개소수 | 36 | 1 | 13 | 6 | 3 | 2 | 3 | 5 | 3 |
| 주요 축종 | - | 한우, 젓소 | 젓소, 한우 염소, 닭 등 | 젓소, 한우, 염소, 닭 등 | 젓소, 한우, 유산양 | 젓소, 한우 | 젓소, 한우, 염소 | 한우, 염소, 유산양 등 | 염소, 한우, 닭 |

또한,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지원체제 구축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문단(2017년 25명, 2018년 22명, 2019년 22명)을 구성, 자문단회의, 신규농장 지정 심사 및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산지생태축산 정책을 지원하였다.

〈표 2-2-9〉 산지생태축산 자문단 구성 현황(2019)

| 계 | 산림청 | 지자체 | 연구기관 및 전문가 | 공공기관 | 학계 | 축산단체 | 기타 |
|----|-----|-----|---------------|------|----|------|----|
| 22 | 1 | 1 | 6 | 4 | 8 | 1 | 1 |

산지생태축산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컨설팅과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컨설팅으로는 산지생태축산 자문단이 신규 산지생태축산 지정농장 등의 산지초지 조성, 축종별 사양관리, 6차 산업 등 기본사항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자문단 컨설팅과 컨설팅 용역업체가 산지생태축산 지정목장의 경쟁력을 진단·분석하여 농장 운영 기술 등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Biz-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파워블로거 대상 목장 현장체험부터 산지생태축산 홍보 동영상 제작 및 광고까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폭넓은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정책은 유휴 산지를 활용하여 친환경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을 경영하고 조사료 자급률을 높임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경관보전은 물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에는 기존의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지정 사업을 본 사업으로 추진하여 산지생태축산을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초지조성 및 가축 방목사육에 따른 산지생태축산 농가의 초기투자 부담 및 사양관리에로를 해소하기 위해 초지조성 최소면적을 3ha에서 1ha로 완화하고, 방목초지 조성에 필수적인 울타리 설치비를 국고보조 지원항목에 포함하며, 신규농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2020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을 개선하여 농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홍보사업을 통해 자문단 현장 컨설팅, 전문가 Biz-컨설팅, 온라인 매체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지생태축산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여 그 동안의 홍보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고, 농장별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농장 및 생산 제품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산지생태축산 길라잡이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귀농인 등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5. 도시농업 활성화

▮ 과학기술정책과 사무관 우미옥

◆ 추진 배경 및 개요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문화, 예술, 스포츠 등과 함께 취미·여가 활동으로서 농사체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도시농업은 이러한 대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서순화, 지역공동체 회복, 대기·수질정화 등 다양한 순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도시농업이 전 국민의 90%가 넘는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농정추진의 밑바탕이 되는 점에 착안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기반 조성 추진에 역점을 두었다.

〈표 2-2-10〉 연도별 도시농업 현황

| 구 분 | 2011 | 2017 | 2018 (A) | 2019 (B) | 2018대비 | |
|-----------|-------|---------|-------------|-------------|--------|--------|
| | | | | | 증감 | 증감률(%) |
| 참여자수(천명) | 378 | 1,894 | 2,121 | 2,418 | 297 | 14.0 |
| 텃밭 면적(ha) | 486 | 1,106 | 1,300 | 1,323 | 23 | 1.8 |
| 텃밭 수(개소) | 4,093 | 121,605 | 99,808 | 96,986 | -2,822 | -2.8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 현황조사

◆ 추진내용 및 성과

일부 도시민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시작된 도시농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시행한 이래, 지자체에서도 2019년 기준 110개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도시농업 관련 해설·지도·교육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가 2017년에 도입되었고, 2019년 12월말을 기준으로 4,027명을 배출하였다. 체계적인 도시농업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시농업 종합상담센터(1855-1411)를 2018년 6월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협업 하에 도시농업 계층·유형별 맞춤형 기술 개발, 지속가능한 생태형 텃밭 관리기술 개발 등 생활밀착형 연구개발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아울러 교육부와의 협업하여 중학교 자유학기 교과과정으로 학교텃밭 활동 프로그램을 2018년 10개교에서 2019년 30개교로 확대하여 운영하였으며, 학교에 도시농업관리사를 파견하여 텃밭관리의 전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서 순화에 도움을 주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국회텃밭 운영으로 도시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려 전방위적인 실천기반을 확충하였으며, 도시민들이 텃밭분양, 병충해, 농자재 등 관련 정보를 폭넓게 얻을 수 있도록 2015년도에 구축한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을 지속 개편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도시농업관리사들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일자리 채용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2011년 378천명, 486ha이던 도시농업의 참여자 수와 텃밭면적이 2019년 2,418천명, 1,323ha로 확대되는 등 도시농업이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은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도·농상생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정부·지자체의 제도마련 및 도시농업단체가 주도한 시민운동 등의 성과물로서 학교텃밭, 주말농장 등 체험공간이 확대되었고, 농업인단체가 가지고 있던 도시농업과 일반농업의 생산활동 경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부분 개선되는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왔다. 하지만 단순 텃밭활동만으로는 도시농업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건강·교육·환경·복지 등 새로운 영역과 도시농업을 결합한 신서비스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홍보 인프라 확충, 개발된 연구성과 보급 및 실천모델 확산, 도·농상생을 위한 사업 발굴 등은 향후 도시농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의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고,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는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18~’22)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도농상생사업기반 구축 및 타분야와의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주요 사업목표로 하고, 22년까지 도시텃밭면적 2,000ha, 도시농업 참여자 수 4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련 R&D성과를 다양한 분야와 접목하여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육성하고, 도시농업 일자리 채용안내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여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도농 간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도시농업을 통해 농업·농촌에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농상생사업도 적극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Ⅲ.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제3장 핵심 인력 양성 및 전문경영체 육성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경영인력과 사무관 김준현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집약적 생산방식에서 기술·자본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다양한 농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자본을 갖추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된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981년도부터 영농종사를 희망하는 청장년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농업 창업자금(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경영·기술교육 등을 통해 영농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규모화할 수 있도록 추가 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창업과 조기 경영안정화를 통한 농업·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농지·기술교육 등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후계농업경영인은 연령, 영농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시·군·구 및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 심사와 전문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선정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에는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1인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2019년도에는 998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였다. 이 중 남성이 798명(80.1%), 여성이 200명(19.9%)이며,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17명(31.8%), 30대가 240명(24.0%), 40대가 441명(44.2%)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186명, 전북 177명, 경기 136명, 전남 131명 등의 순이다.

〈표 2-3-1〉 2019년 지역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 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광역시 |
|------|------|-----|-----|-----|------|------|------|------|-----|-----|
| 998명 | 136 | 44 | 50 | 90 | 177 | 131 | 186 | 103 | 38 | 43 |
| 100% | 13.6 | 4.4 | 5.0 | 9.0 | 17.7 | 13.1 | 18.6 | 10.3 | 3.8 | 4.3 |

또한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비율이 0.7%(18. 농림어업조사 결과) 밖에 되지 않아 2018년부터는 정부차원에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제도를 개편하여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 3,200명('18년 1,600명, '19년 1,600명)을 선발하여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 있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제도 〉

| 후계농업경영인 | |
|---|--|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
|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후계농업경영인 (연령)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 </div> |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연령)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div> 후계농업경영인 </div>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육성자금 지원 ◆ 후계농 교육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업농: 농지, 자금(후계농자금 등), 교육 패키지 지원 ◆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정착지원금 + 농지 + 자금 + 교육 ◆ 후계농은 기존 대로 후계농 육성자금 등 지원 |

이들에게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영농창업 활성화 및 조기 경영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농지·기술교육 등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표 2-3-2〉 2019년 지역별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 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광역시 |
|--------|------|-----|-----|-----|------|------|------|------|-----|-----|
| 1,600명 | 160 | 80 | 82 | 144 | 270 | 258 | 292 | 187 | 53 | 74 |
| 100% | 10.0 | 5.0 | 5.1 | 9.0 | 16.9 | 16.1 | 18.3 | 11.7 | 3.3 | 4.6 |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이후 5년 이상 된 사람 중 영농경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 까지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여 영농기반 확대를 통한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다. 2019년에는 경영 성과, 발전가능성, 생산기술 등을 평가하여 255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에게 금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사업비가 지원된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1981년부터 2019년까지 15만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이 확보되었으며 이들은 우리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제도를 추진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영농의지를 갖춘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농지·기술교육 등을 종합지원함으로써 농업·농촌에 청년층의 유입을 제고하였다.

앞으로도 후계농업경영인이 영농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문경영체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업법인 활성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이종희

◆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WTO·DDA 출범 등 대외개방의 확대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자 '90년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농업법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농업법인 활성화에 주력해왔다.

자금 및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종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있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관련 규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제정, '09.4.1)하였고,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유치 및 경영효율화를 추구하는 한편,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특히, 건실한 영농조합법인이 기업적 경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농조합법인의 책임범위를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으로 전환하였으며, 합명·합자회사 형태 뿐 아니라 유한·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농업분야의 농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90%까지 확대하였고, 2012년에는 총 출자액이 8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억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부터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까지 확대함으로써 6차산업 활성화 주체로서 농업법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한편, 농업법인이 설립·변경 등기 후 해당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 설립요건이 미비하거나 사업범위를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리 측면도 강화 보완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법인 설립·운영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농업 법인에 대한 투자 확대, 경영규모화 및 경영효율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업법인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처음 2016년도 실시 후, 2019년에 5월부터 12월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설립요건 미비, 사업범위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업법인 대상으로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농업농촌의 주체로 육성을 지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업법인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 등 정책 기초자료를 위해 통계청에서 매년 생산하였던 농업법인 통계조사 업무를 2016년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관 받아 금년도 2018년 기준 농업법인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농업법인은 2000년 5,208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21,780개이며 그 중 영농조합법인은 10,163개, 농업회사법인은 11,617개로 조사되었다. 농업법인 종사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49천명으로 나타나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3-3〉 농업법인 연차별 운영 추이

(단위 : 개)

| 구 분 | 2000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농업법인 수 | 5,208 | 9,740 | 10,867 | 12,981 | 14,552 | 16,482 | 18,757 | 19,413 | 21,659 | 21,780 |
| 영농조합법인 | 3,852 | 8,107 | 8,724 | 10,023 | 10,792 | 11,599 | 12,979 | 12,768 | 13,363 | 10,163 |
| 농업회사법인 | 1,356 | 1,633 | 2,143 | 2,958 | 3,760 | 4,883 | 5,778 | 6,645 | 8,296 | 11,317 |

자료 : 통계청('00-'14년 기준 농업법인 조사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15-'18년 기준 농업법인 조사 보고서, 단 '18년기준 조사모집단 기준 변경)

농업법인의 법인당 종사자 수는 7명, 상시종사자 4인 이하 법인은 전체의 70% 수준이며, 주된 사업유형으로는 농업생산을 하는 농업법인이 32.9%, 유통업 30.9%, 가공업 20.7%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당 판매액은 평균 18.1억원이고, 전체 판매액 중 유통업은 47.6%, 가공업 25.4%, 농업생산 20.8%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한편, 법인 당 자산은 16.4억 원, 부채는 10.5억 원이고,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178.8%로 나타났다.

〈표 2-3-4〉 농업법인당 주요 경영지표

(단위 : 개, 백만원, %)

| 구 분 | 유 형 | 2017년 | 2018년 | 증감 | 증감률 |
|-------------|--------|--------|--------|----|-----|
| 전 체 | 결산 법인수 | 15,954 | 20,689 | | |
| | 자산 | 1,539 | 1,638 | | |
| | 부채 | 939 | 1,051 | | |
| | 매출액 | 1,792 | 1,814 | | |
| | 영업이익 | 64 | 36 | | |
| 영농조합 법 인 | 결산 법인수 | 8,969 | 9,688 | | |
| | 자산 | 990 | 1,183 | | |
| | 부채 | 556 | 703 | | |
| | 매출액 | 1,122 | 1,198 | | |
| | 영업이익 | 35 | 23 | | |
| 농업회사 법 인 | 결산 법인수 | 6,985 | 11,001 | | |
| | 자산 | 2,244 | 2,039 | | |
| | 부채 | 1,431 | 1,357 | | |
| | 매출액 | 2,652 | 2,356 | | |
| | 영업이익 | 101 | 47 | | |

'18년기준 농업법인 조사 모집단
기준 변경으로 전년도 대비 단순
비교(증감 및 증감률) 불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년 기준 농업법인조사보고서)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및 법인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농업법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법인의 양적확대 뿐 아니라 농업·농촌 중소기업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 및 6차산업화를 이끌 핵심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창업·투자유치 활성화, 전문화된 경영 컨설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경영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인의 경영컨설팅 및 법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농업법인 경영혁신 역량강화 교육(경영·조직, 인사·회계) 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2020년에는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된 법인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법률 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내실있는 농업법인 제도의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3. 농업 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김화태

◆ 추진 배경 및 개요

FTA, 고령화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선진국 수준의 농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 농업을 선도할 창조적인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농업인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농업·농촌 핵심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미래 후계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계 학생, 후계농 등을 대상으로 농산업현장과 연계한 실용중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장실습교육(WPL), 농업마이스터대학, 품목특화교육과정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추진 성과

신규 미래인력 확보를 위한 농고, 농대의 전문 교육을 지원 중으로, 지원학교는 우수 교육과정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였다. 농고는 15개교를 선정하였는데, 농업에 흥미를 유발하고 농산업과 연계하여 취·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습/현장실습, 전공별 창업동아리, 교사 직무연수, 농산업분야 자격증 취득, 승계농/후계농 양성 교육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농고생이 농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직업을 구체화하고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취·창업 캠프 운영, 선도농업인과의 소통, FFK 전진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농업계 대학은 15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농업경영체 현장실습교육, 전공별 창업동아리, 선도농업인과의 교류, 영농승계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및 실습 중심의 국외연수 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농대 융복합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였다.

'19년도에는 농업인·농대생·농고생 및 귀농인 등이 영농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선진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교육(WPL)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실습교육장을 총 7개소 추가 지정하였으며, ICT 등 선진기술 실습교육기반 마련을 위하여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농업마이스터대학은 현장중심의 실습형 기술·경영 장기교육과정(2년)으로 '19년도부터 제6기가 운영되었다. 제6기('19 ~ '20년)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전국 9개 대학, 31개 캠퍼스 100개 품목 전공이 개설되었으며, 교육생들이 고급기술, 지식 및 경영능력을 갖춘 지역농업의 핵심리더로 육성할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농정목표에 부합하고 현장의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모교육을 진행하였다. 공모 교육은 여성농업인, 사회적 경제, RPC 종사인력, 약용작물 등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교육과정을 지원하였다. 공모과정과 더불어 10개 과정의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FTA 등 국제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였다.

'19년에는 농업인들이 선진국 기술 수준의 첨단농업시설 운영능력 배양을 할 수 있도록 ICT 첨단 기술을 적용한 품목특화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15년 토마토를 시작으로, '16년에는 딸기, 양돈, 버섯 등 3개 품목, 17년은 장미, 파프리카, 낙농, '19년은 오이를 추가하여 총 7개 품목으로 선진국 수준의 농업 기술을 갖춘 우수 농업 인력들을 양성하였다.

'19년도 농업마이스터대학, 영농창업특성화사업, 농업계학교 교육지원, 국외훈련, 공모과정, 현장실습교육, 첨단품목특화전문교육, 첨단기술공동실습교육 등 8개 교육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 역량진단, 교육 만족도 및 현업적용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의 교육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첨단품목특화전문교육과 첨단기술공동실습교육을 제외한 6개 농업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유형별 평가위원을 통해 교육운영평가를 실시하였다. 수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으며 평가결과는 익년도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 시 환류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최고의 생산기술과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농업·농촌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을 발굴하고자 '12년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13년 제1회 농업마이스터 102명, '15년 제2회 45명, '17년 제3회 33명, '19년 제4회 44명의 농업마이스터가 신규로 지정되었다. 지정된 농업마이스터들이 현장실습교수, 후계농업인력에 대한 멘토, 컨설턴트 등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수교육 실시 등 사후관리도 함께 이루어졌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계 학교지원, 현장실습교육(WPL), 농업마이스터대학, 품목특화교육과정 등의 농업교육은 농업·농촌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전문생산기술 및 경영관리 등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고·농대에 영농실습 및 기술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농고교사의 교육역량과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직무학점 연계과정을 지속 운영하며, 현장실습교육 내실화를 위해 장기 교육과정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농정현안 및 농정수요에 대응하여 현장 중심의 농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끌어갈 핵심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4. 농업경영체 컨설팅 활성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이중희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업시장 확대개방으로 인한 다양한 농축산물의 유입, 친환경농산물 선호 등 소비성향의 변화, 농업의 6차 산업화 등과 같은 국내외 농업환경의 다변화로 농업경영체는 단순한 생산기술력 외 경영역량의 향상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생산 중심의 기술지도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농업경영체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경영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1999년부터 민간 컨설팅 업체와 컨설턴트를 활용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인증 받은 농업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기술 또는 경영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획일적이고 일방향적인 관주도의 기술지도와는 달리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력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업경영컨설팅 평가점검단(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지정하고 컨설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절차 및 성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즉, 컨설팅 성과에 대한 저해 요소와 부실컨설팅 방지를 위해 컨설팅업체 및 컨설턴트에 대한 인증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컨설턴트 1인당 사업량의 제한, 컨설팅 수행단계(계획, 중간, 완료)별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점검하고 있다.

컨설팅업체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심사를 통한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인증기준 준수 및 부합을 확인하여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경영체 수요에 맞는 양질의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 인증업체 Pool을 구축하고 있다.

2017년에는 법인 선정 시 서면평가에서 현장평가로 대폭 강화하여 우수경영체 확보에 주력하였고, 경영체의 사전·사후혁신역량진단을 컨설팅업체를 통해 실시하여 컨설팅 품질을 제고하였다. 또한, 자부담을 2회까지 분할납부 하도록 하여 경영체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2018년에는 농업경영체의 컨설팅 전·후 혁신역량진단 및 수행계획평가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경영컨설팅의 체계적인 관리와 컨설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 컨설팅 수행단계별 평가점검

컨설팅 추진성과 및 핵심성과지표(KPI) 설정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평가점검단을 통해 '19년도 지원대상 137개 경영체별(개인 88, 법인 49) 사업수행 계획서를 심사·승인하였으며, '13년 종료사업을 포함하여 총 1,783건('13년 578, '14년 267, '15년 261, '16년 204, '17년 184, '18년 152, '19년 137)의 사업완료 실적을 점검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전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사업수행 여부 및 사업성과를 사전 관리함으로써 사업성과 및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표 2-3-5〉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단위: 천 명)

| 연도 | 199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사업량(개소) | 156 | 994 | 934 | 649 | 578 | 267 | 261 | 204 | 184 | 152 | 137 |
| 사업비(백만원) | 1,197 | 10,080 | 9,720 | 5,200 | 5,200 | 4,800 | 4,800 | 3,840 | 3,840 | 3,420 | 2,613 |
| 국고 | 357 | 4,888 | 2,916 | 1,560 | 1,560 | 1,560 | 1,440 | 1,152 | 1,152 | 1,032 | 96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컨설팅 인프라 구축·강화

다양하고 우수한 컨설팅업체의 발굴 및 사업참여를 유도하여 양질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농업경영컨설팅 참여업체 인증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9년 총 19개의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를 추가 확보하여 총 34개의 인증업체로 지정 및 운영하였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를 발굴하여 농산업분야의 컨설턴트 Pool을 확대하고자 컨설턴트 등록 심사를 실시하고 컨설턴트별 역량검증을 통해 수임단가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18~'19년 기준 총371명(2년간 활동)의 컨설턴트가 농업경영컨설턴트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평균 수임단가는 61만원이었다.

▶ 컨설팅 성과관리 및 확산

컨설팅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및 검증의 일환으로 '17년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181개 중 샘플링(50% 이상)하여 컨설팅 전후 매출액, 소득증가율, 부채 등 재무적 관점과 고객관계방법 변화, 상품개발 여부, 생산성 변화, 마케팅 추진, 업무추진 변화 등 학습 및 성장관점에서 컨설팅 성과를 조사·분석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경영컨설팅은 경영체 역량진단에 기반한 수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영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였다. 2019년 평가점검단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컨설팅 전후 매출액이 평균 29.5% 증가하였으며, 수익(소득)은 2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컨설팅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개선 노력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컨설팅 지원 경영체 선정 및 수행계획서 심사 시 계량 및 비계량(적·부) 심사를 병행하고 컨설팅 본격 개시 전 경영현황을 분석하는 등 사전 기초컨설팅을 도입하는 등 농업경영컨설팅의 체계적인 관리와 컨설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5. 귀농·귀촌 활성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정성문

◆ 추진배경 및 개요

복잡한 도시 생활을 떠나 농촌 생활을 희망하는 은퇴 베이비붐 세대에서부터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젊은 세대까지 귀농귀촌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다양한 이유들로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귀농귀촌 교육, 정보제공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2016년 ‘귀농·귀촌 지원 종합 5개년(2017~2021)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육·정보제공·임시주거·지역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청년·귀촌인 농업창업 교육 확대

영농경험 및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10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청년귀농 장기교육 이수자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지침을 개선하였다.

또한, 귀촌인의 농업창업 장려를 위해 농산물 가공, 유통, 체험서비스 등 농산업분야 실무중심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귀촌인 농산업 창업지원 교육을 신설하여 200명이 수료하였다.

▶ 귀농귀촌인의 지역 융화 정책 강화

귀농·귀촌인과 기존 지역민 간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여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적응하기 위한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19년 신규)을 실시하여 232개 마을에 융화교육, 우수 사례 방문 교육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역융화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교육에 융화 과목 편성시간을 기존 2시간 이내에서 2시간 이상 의무로 변경하였다.

▶ 귀농·귀촌 정보제공 확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와 상담창구를 통해 귀농귀촌 교육, 창업자금, 지자체 지원정책 등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19년 한해 207만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으며, 해피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상담희망자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상담에서 기 상담자 및 교육 수료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하는 적극적인 상담으로 전환하여 32,951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기존 귀농귀촌 박람회를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와 통합 개최하여 박람회 규모 확대 및 콘텐츠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였으며, 귀농귀촌 종합센터, 유관기관 및 52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귀농귀촌 홍보관의 운영을 통해 20,095명의 관람객 유치와 2,193건의 상담 진행이 이루어졌다.

또한, 귀농귀촌인들이 품목전문가, 선배귀농인 등 전문가를 통해 농촌생활, 영농활동 등에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귀농닥터 제도를 운영하여 367명에게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가공·유통, 곤충 전문가 35명을 발굴하여 신규 수요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였다.

▶ 귀농·귀촌 희망자 주거 지원 확대

귀농귀촌인이 영농기반, 주거공간 등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추가 조성(70개소)하고 이용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귀농귀촌인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추가 연장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 귀농 농업창업 기반 조성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

귀농인의 소득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농기계, 시설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창업자금

(3억원 한도, 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의 방지, 내실있는 사업 대상자의 선발 등을 목표로 자금지원 방식의 기존 절대평가·선착순 대출 방식에서 상대평가·용자 규모 내에서 선발의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기획부동산, 애견분양형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침에 피해사례를 안내하였으며,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피해사례 고지를 의무화하고 사업대상자심사기준에 사업지침 의무조항 습득 항목을 추가하였다.

▶ 정책 사각지대 해소

귀농어귀촌법 제7조에 재촌 비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18.12.7일, 국회통과)됨에 따라 귀농어귀촌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을 신설('19.6.11일)하여 재촌 비농업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대상자 범위를 재촌비농업인까지 확대하였다

▶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활성화 지원

시·군별 지원 차등화를 통해 신규 시·군의 참여 확대를 독려했던 결과 지속적인 신규 참여 시·군의 증가('18년 58개 시·군 → '19, 72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융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의 소프트웨어 사업비 비중을 50%까지 확대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사전준비와 실행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력이 농업농촌으로 유입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 이후 지역사회의 융화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촌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베이비붐 세대의 관심 증가, 일과 삶의 균형 추구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제4장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

제1절 농식품 혁신성장 역량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1. ICT 융복합 촉진 및 확산

▮ 농산업정책과 사무관 박찬우

◆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 농업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 농업인구의 고령화,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우리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농업에 첨단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이 주목 받고 있다.

스마트 팜은 온실·축사·노지 등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 등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생산성을 향상 할 수 있는 농장이다. 스마트팜에서는 작물별 데이터에 기반한 환경 조절로 노동력, 양분 등을 적절히 투입할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팜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네덜란드,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스마트팜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04년부터 농업에 ICT를 융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왔다. 초기 시험모델 운영단계를 거쳐 2010년부터는 ICT 융복합 모델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2014년부터는 본격적인 스마트팜 확산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식품부는 2015년 1월부터 스마트팜 추진체계를 농업생명정책관실로 일원화하고 원예, 축산 등 관련부서의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스마트팜의 신속한 현장보급을 지원했다. 또한 2016년 3월 ‘스마트 팜 확산 가속화대책’과 2018년 4월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확정·발표하여 정부의 스마트팜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속화대책은 농업생산 전반의 스마트화를 목표로, 4대 추진과제 및 17개 세부 실천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확산방안은 3대 추진과제 및 8대 세부 실천과제로 이루어져있다.

〈표 2-4-1〉 스마트 팜 확산 가속화 대책

| 4대 추진과제 | 세부전략 |
|------------------------|---|
| 농업혁신 거점으로서 스마트 팜 확대 | ① 스마트 팜 개념 재정립 및 외연 확대, ② 수출 거점이 되는 첨단농업단지 확충, ③ 소요 예산 확보 및 모태펀드 등 민간 자본 유치 촉진, ④ 스마트 팜 중심으로 유통·수출 지원 |
| 교육 및 농가 지원체계 강화 | ① 다양한 유형의 선도모델 발굴 및 전략적 홍보 ② 선도농가 생육관리 벤치마킹 서비스 제공 ③ A/S 지원 체계 다양화 ④ 농가 수준별 맞춤형 교육 체계화 ⑤ 현장 전문가 육성 등 스마트 팜 농가 밀착 지원 강화 ⑥ 농협을 통한 전문교육·홍보 강화, 중앙회 계통구매 실시 |
| 스마트 팜 산업 생태계 육성 | ① 한국형 모델 개발 및 기자재 표준화 ② 스마트 기기 제품 검정 및 품질보증제 도입 ③ 스마트 팜 기업의 정보·평판 공유 ④ 스마트 팜 해외 진출 기반 조성 |
| R&D를 통한 스마트 팜 산업 성장 지원 | ① R&D 지원체계 정비 ② 스마트 기기 표준화 단계 고도화 ③ 스마트 팜 핵심기술 개발 연구센터(ARC) 지정 |

〈표 2-4-2〉 스마트 팜 확산방안

| 3대 추진과제 | 세부전략 |
|-----------------------|--|
| 스마트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 ①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 및 임대형 스마트팜 도입, ② 창업 자금과 농지 지원 및 실패에 대한 안전망 강화 |
| 스마트팜 산업인프라 구축 | ① 스마트팜 실증단지 구축 및 R&D 체계화 ② 빅데이터 수집·활용 체계화 및 기자재·통신 표준화 ③ 전문인력 양성 ④ 시장·품목 다변화 |
| 확산 거점으로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①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계획 공모·선정 ②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 추진 |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급 확대를 추진하여 2019년까지 전체 보급실적은 시설원예 5,383ha, 축산 2,390농가로 2018년 대비 각 1.09배, 1.68배 증가하였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2022년까지 4개소(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를 조성할 계획이다.

〈표 2-4-3〉 스마트팜 연도별 보급실적

| 구 분 | '14년(누계) | '15년(누계) | '16년(누계) | '17년(누계) | '18년(누계) | '19년(누계) |
|----------|----------|----------|----------|----------|----------|----------|
| 시설원예(ha) | 405 | 769 | 1,912 | 4,010 | 4,900 | 5,383 |
| 축산(호) | 23 | 181 | 430 | 801 | 1,425 | 2,390 |

스마트팜의 확산은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된 도입 성과의 영향이 크다. '19년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스마트팜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원예의 경우 스마트팜 도입 전 대비 평균 생산량은 32.1% 증가하였고, 자가노동시간은 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팜을 통해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균일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 향상으로 규모화나 지역 단위 조직화가 진전되고 있어 농산물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및 수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장기교육과정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1기 교육생 49명을 대상으로 경영형 실습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차로 18명이 수료하였다. 또한 2기 교육생 104명을 선발하여 경북 상주(경상북도농업기술원), 전북 김제(전라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의 2개 교육기관에서 각 52명씩 입문교육(2개월) 과정 운영을 완료하고 교육형 실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팜 도입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 단계별(설치 전→설치→설치 후) 컨설팅을 함으로써 스마트팜이 효과적으로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도입희망 농가나 도입초기 농가들이 선도농가를 벤치마킹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도농가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그리고 도입 이후 활용단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A/S 등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현장지원센터(12개소)와 통합 콜센터(1522-2911)를 운영하고, 소통 채널인 불만제로 밴드(SNS)를 적극 활용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확산시킴으로써 빠르게 스마트팜 수요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과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청년층의 농업분야 유입과 전후방 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스마트팜 확산 방안(18.4)」을 수립하여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시설원에 중심의 스마트팜 보급·확산에서 노지, 축산 등 농업 전 분야로 확장하여 추진하고,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의 성장을 위해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표준화된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여 빅데이터 서비스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빅데이터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작목별 최적 생육 모델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현장 실증형 R&D 과제를 추진하는 등 스마트팜 관련 R&D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며, 스마트 팜 기자재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 팜 기자재의 표준 범위 확대 및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 농림축산식품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과학기술정책과 사무관 박연주

◆ 추진 배경 및 개요

세계농업은 FTA 확대와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농식품 분야의 최근 환경에서 기술경쟁력을 갖춘 농림축산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글로벌화,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의 급속한 대내외 여건변화 속에서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부응하는 기술혁신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2009년에는 농림수산식품 R&D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한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10~2014)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에는 제1차 종합계획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매년 추진 실적 분석을 통해 적절한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3년에는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개편을 위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2013~2022)’을 마련하고, 기존 산업 육성 중심의 R&D투자체계에서 정부 주요 정책과 R&D목표가 연계된 ‘4대 중점분야’(글로벌 경쟁력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안정적 식량공급, 국민행복 제고)와 ‘50대 핵심기술’로 체계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부터는 7대 산업(생산시스템, 자원·환경·생태기반, 생산·가공, 유통·식품, 바이오, IBT 융합, 문화)육성 중심의 R&D에서 농정 목표와 R&D목표가 연계된 4대 중점분야로 추진전략을 전환하였다.

2019년도에는 농림식품 R&D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7대 농정과제’(농업의 첨단산업화,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시장개방 대응, 농생명자원 가치제고, 기후변화 대응, 현장문제 해결, 농촌가치제고)에 대한 투자를 확대(‘18년 50.2%→’19년 52.0%)하였다.

2019년 농식품분야 R&D에는 농촌진흥청 6,504억원(65.5%), 농식품부 2,239억원(22.5%), 산림청 1,187억원(12.0%) 등 총 9,930억원이 투자되어 국가 R&D 예산(20조 5,328억원)에 대한 농림식품 R&D(농진청·산림청 포함)의 비중은 약 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19년도에 종료되는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15~2019)’의 성과 및 투자동향 분석을 통해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 개방형 협력연구 확대, 민간 농식품 R&D 촉진 및 기술의 사업화 지원 강화 등 향후 5년의 농식품분야 R&D 정책 추진방향과 중점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2-4-4〉 농림식품 R&D 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 농식품부·양청 R&D 예산(A) | 9,450 | 9,531 | 9,500 | 9,824 | 9,930 |
| 국가연구개발비(B) | 188,900 | 190,942 | 194,615 | 196,681 | 205,328 |
| A/B(%) | 5.0 | 5.0 | 4.9 | 5.0 | 4.8 |

◆ 추진내용 및 성과

▶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운영 고도화

농식품부는 2009년 4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농식품 분야 R&D의 효율적인 총괄 조정·관리를 위해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 예산투자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2019년은 총 3번(제37차~제39차)의 본회의를 개최하였고,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4), 2019년 부·청 시행계획,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사업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농림식품분야 R&D 신규사업 기획방향 등 농식품 분야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해 농과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다.

또한, 10개 전문위원회(농산, 축산, 식품, 가축질병, 환경생태, 기계시스템, 융복합, 기술사업화, 인프라, 산림) 전문위원장을 중심으로 소속 위원들의 전문성을 담아 농림식품 R&D의 미래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농과위 위원들의 참여를 통해 다부처 사업 공동기획, 정책제안, 농정 현안문제 해결 등을 추진하였다.

〈표 2-4-5〉 전문위원회별 기획보고서 주제

| 유형 | 전문위원회 | 주제 |
|------------------|--------|--|
| 이슈 보고서 (9) | 농산 | ■ 4차혁명 기술을 이용한 정밀농업 현장 구현 기술개발 |
| | 축산 | ■ 축산분야 빅데이터 기술동향 및 활용방안 |
| | 식품 | ■ O2O 커머스 platform에서의 냉장유통 가정간편식 미래전망 및 이슈 |
| | 환경생태 | ■ 농작물 생육촉진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
| | 가축질병 | ■ 국가재난형질병 조기 방제시스템 및 첨단 제어기술 개발 |
| | 기계시스템 | ■ 사람-동물-환경의 행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반려동물 서비스 R&D |
| | 신소재융복합 | ■ 저품질 농산물 및 부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소재화 기술 개발 |
| | 농식품인프라 | ■ 푸드플랜과 가공-유통정보 R&D 활성화 |
| | 기술사업화 |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청년 창업농 기술사업화 지원방안 |
| 기획제안 (3) | 농식품인프라 | ■ 지역단위 먹거리·식생활 통합정보 플랫폼 개발 R&D |
| | | ■ 중소농 중심 로컬푸드 생산·유통·소비 종합지원시스템 개발 |
| | | ■ 지역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체계 구축을 위한 농식품 소규모 유연가공시스템 R&D |
| 정책제안 (16) | 축산 | ■ 빅데이터 스마트 축산기술 통합 플랫폼 개발 운영 |
| | | ■ O2O (Online to Offline) 커머스 플랫폼에서의 신선식품 유통체계 확립 및 안전성 확보 |
| | 식품 | ■ O2O (Online to Offline) 플랫폼에서의 국내외 밀키트 산업 가치사슬 비교 분석 |
| | | ■ 생대추 안전 생산 저장 유통 및 가공 기술 확립 및 보급 |
| | | ■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을 위한 산업 및 방역 정책 개선안 |
| | 가축질병 | ■ 양돈장 ASF항원 모니터링을 위한 정밀진단방법 개선안 |
| | | ■ 미세프라스틱 문제점 해결을 위한 생물소재 대체물 개발 |
| | 농식품인프라 | ■ 푸드플랜 R&D 전담기관 선정 및 관련 사업 추진 |
| | | ■ 스마트 로컬푸드 가공센터 구축을 위한 기초 전략 설계 자문 |
| | | ■ 푸드플랜에서의 로컬 가공식품 공급 기반 구축 |
| | |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HMR형 헬스케어푸드 개발 및 산업화 |
| | | ■ 지역단위 푸드플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 | | ■ 식품로스 측정 및 관리 시스템 개발 |
| | | ■ 지역단위 푸드마일리지 측정시스템 개발 |
| | | ■ 먹거리 선순환 통합 플랫폼 구축 |
| | 기술사업화 | ■ 청년 창업농 지원의 기술사업화 교육 강화 및 교육기반 확충 |

아울러 농림식품산업의 과학기술적 논의의 장인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을 통해 농림식품 분야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R&D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하였다. 올해는 미래 유망기술의 현황을 진단해 보고, 신규 사업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획의 자리로서 4차 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농생명바이오 소재’와 관련된 세미나를 총 2회 개최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한·중·일 농업혁신시스템 현황과 농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3개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관계부처 담당자와, 농식품분야 연구자,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미래 농업혁신 시스템 전환을 위한 의견을 교류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농식품 R&D 현안 해결과 미래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냉각된 아시아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한중일 3개국이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외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2-4-6〉 2019년 농림식품 과학기술 세미나 및 심포지엄

| 구분 | 주제 |
|---------|---|
| 세미나 | ◆ 주제 : 농식품분야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의 현재와 미래 1. 농식품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현황 및 미래전망(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 실장) 2. 미래 식품안전망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 추진방안(식품안전정보원 정윤희 원장) 3. 수출입 물류 블록체인 사례 및 농업분야의 활용방안(케이엘넷 최경식 팀장) 4. 블록체인을 활용한 식품이력 추적관리(㈜NDS 차재열 소장) |
| | ◆ 주제 : 농생명 소재의 현재와 미래가치 1. 국내 농생명 바이오산업 동향 및 육성방안(한국과학기술연구원, 판철호) 2.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제동향 및 국내 대응 방안(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민호) 3. 농생명자원 유래 고부가가치 화장품 및 식의약 소재 R&D 사례(㈜유셀, 차재영) 4. 농생명소재 기술개발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농림축산식품부 박치형) |
| 국제 심포지엄 | ◆ 주제 : 한·중·일 농업혁신시스템 현황과 농업의 미래 (기조강연)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중심의 국정운영방안(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선) 1. 일본의 차세대 농업을 향한 스마트 농업의 추진(일본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 안동혁) 2. 중국의 스마트 농업정책과 혁신 사례(중국농업대 경제관리대학 천리밍) 3. 대한민국 농업기술혁신 정책의 현재와 미래(서울대학교 이인복) |

▶ 현장 수요와 정책목표를 반영한 R&D 기획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은 현장의 기술수요를 파악하여 연구 과제로 기획하기 위해 매년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에는 특히 농업 현장의 의견수렴을 확대하기 위해 후계 농업인 대상 아이디어 조사를 실시하고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수요를 발굴했다.

후계 농업인 대상 아이디어 조사는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였으며, 향후 농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참신한 기술수요 발굴을 위해 추진되었다. 농업분야 R&D 4개 기관(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은 수도권 등 5개 권역에서 진행한 연구자 대상 설명회 뿐만 아니라 농업인, 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 연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R&D 접근성이 어렵거나 이해도가 부족한 농산업체의 기술 수요조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실시 중인 패널 수요조사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 패널의 수를 259명까지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19년 기술수요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391건을 발굴하였다.

첨단기술을 접목한 식량 안보와 농업 혁신 지원, 건강 먹거리 지원 등 사회적 현안에 대응한 정부의 농식품분야 R&D 투자 방향에 따라 국민 안전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규 사업 기획 및

예산 확대를 추진하였다. 스마트팜 현장 보급 확산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21년부터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고위험성 동물감염병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예산 증액을 통해 안전 생산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 농업현장 애로 신속 해결

농업현장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현장 맞춤형 R&D 추진을 위해 2014년 6월부터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SNS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SNS를 통해 전문가와 농업인이 실시간으로 소통하여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방성, 신속성, 전문성 등 SNS컨설팅으로 인한 고객편의성이 증가되면서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부내 정책부서의 수요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 '14년 6개 품목을 시작으로 '15년 23개 품목, '16년 30개 품목, '17년 33개 품목, '18년 40개 품목(원예 22개, 식량 6개, 축산 8개, 기타 4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누적 회원 수 56,200명(전년 대비 19.3% 증가), 누적 SNS 컨설팅 수 89,709건(전년 대비 38% 증가)을 돌파하였다.

또한 SNS 컨설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현장기술컨설팅과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였으며('19년 13개 분야, 총 52회), 농·축산 분야 품목별 밴드 최상위 농가의 영농기법을 전파하기 위한 ‘Best Farmer 영농기법 모델화 과제’를 기획하여 현재 원예 분야 8개, 축산 분야 1개 등 9개의 과제가 추진 중이다.

우수 컨설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수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밴드 운영사례집 (들깨, 사과, 인삼, 참깨, 한우 등 5개 분야)을 발간하여 공유·전파하는 등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다.

〈표 2-4-7〉 SNS 활용 기술 컨설팅 추진 건수

| 계시물 분야 | 재배관리 | 병해관리 | 수확후 관리 | 사료관리 | 사양관리 | 번식육종 | 유용정보 | 기타 | 총계 |
|--------|-------|-------|--------|------|-------|------|--------|--------|--------|
| 컨설팅 건수 | 8,106 | 9,368 | 861 | 925 | 5,283 | 319 | 52,076 | 12,771 | 89,709 |

* SNS 누적 회원 수 : ('18년) 47,106명 → ('19년) 56,200명/ * SNS 누적 컨설팅 수 : ('18년) 64,970건 → ('19년) 89,709건

〈표 2-4-8〉 'Best Farmer 영농기법 모델화 과제' 추진 현황

| 수행년도 | 과제명 | 연구기관 |
|---------|---|-----------|
| '17~'19 | 파프리카 하계작형에서 Best Farmer의 영농기법 분석 및 모델화 연구 | 강원대학교 |
| | 버섯(표고, 느타리) Best Farmer 영농기법 모델화 | 농수산대학교 |
| | 한우 번식암소 및 송아지 최적 사양관리(Best Farming) 영농기법 모델화에 관한 연구 | 한경대학교 |
| '18~'20 | 일반 소득작물의 Best Farmer 영농기법 모델화 연구(오이)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
| | 국화의 Best Farmer 영농기법 모델화 연구 | 목포대학교 |
| | 일반 소득작물의 Best Farmer 영농기법 모델화 연구(참외) | 성주과채류시험장 |
| | 일반 소득작물의 Best Farmer 영농기법 모델화 연구(배) | 전남대학교 |
| | 일반 소득작물의 Best Farmer 영농기법 모델화 연구(장미) | 서울시립대학교 |

▶ 농식품 벤처창업 등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

2019년에는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18: 5,880백만원 → '19: 9,480)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였다. 우선,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상담·안내를 하는 '농식품 벤처창업센터' 운영을 2개소 확충하였다. 전국 권역별(7개소: 서울, 부산, 세종,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상담·안내망을 갖춘 벤처창업센터는 창업상담 2,043건 및 투·융자, 판로개척, 기술이전 등 총 595건의 창업 연계지원 성과를 달성하였다.

'농촌현장 창업보육'을 통해서선 선정된 업체(200개소)에게 사업화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밀착 관리로 전년 대비 469억원의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231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그 외에도 '기술평가지원'을 통해 농식품 분야 특허기술 및 품종보호권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의 기술금융 접근성을 제고(약 78억원의 투융자 유치 달성)하였다.

또한, 제품 품질은 좋으나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판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초기 창업 기업을 위해 농식품 벤처·창업 제품 오프라인 마켓인 '마켓영농하계'를 운영하였으며, 총 205개 벤처·창업 기업의 제품을 홍보·판매하여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다.

관련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을 발굴하는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를 5회째 개최하였으며, 요즘 트렌드에 맞추어 다양한 온라인 매체(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홍보하였다. 이를 통해 농식품 분야 다양한 아이디어 및 아이템들이 전국적으로 홍보되었으며, 농식품 분야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아울러, 농식품 벤처·창업 관련 맞춤형 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해 '농식품 창업 정보망'(www.a-startups.or.kr),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전용관'(www.agrocrowd.kr) 운영하여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다양한 창업지원을 통해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농식품 R&D 효율화 방안 이행

농식품 R&D는 1962년 농진청 설립 이후 1994년에 농식품부 R&D사업을 도입하는 등 정부 주도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오다가 국내외 환경 및 농업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추진 내용과 방식 등에서 많은 변화 과정을 거쳤다.

특히, 2019년에는 농업 현장의 체감도 및 실용도 높은 R&D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분야 R&D 4개 기관(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은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 운영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4개 기관 이해관계자들은 농림식품 R&D 지원기관 간 서로 상이한 사업 운영, 평가 방식 등은 현장 연구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에 공감하며, 제도 통일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관련 방안에 따라 2019년 11월 4개 기관 최초 R&D 합동설명회 및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뿐만 아니라 기획, 공고, 평가, 성과확산 및 관련 규정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일원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R&D 코디네이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2019년에는 지원 대상 및 코디네이터 인원을 확대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지침 마련 등 전년도 운영사항을 보완하여 추진하였다. 지원업체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지속적으로 제도가 운영되어 지원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식품 R&D 투자는 최근 5년간(‘15~’19) 연평균 2.1%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농림식품 R&D 예산은 9,930억원으로 정부 전체 R&D예산의 5% 수준을 차지하는 등 농정과제 및 현장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15~’19)에 따라 2018년 추진실적 분석 및 2019년 투자전략·방안이 담긴 201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7대 농정과제(농업의 첨단산업화,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 시장개방 대응, 농생명자원 가치제고, 기후변화 대응, 현장문제해결, 농촌가치제고)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제2차 종합계획이 2019년에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우리나라 농림식품 R&D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4) 수립을 추진하였다.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4)이 수립(‘19.12.)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개방형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농림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타 분야,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형 협력연구 확대, 민간 농식품 R&D를 촉진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강화, 부청 및 소속기관의 R&D 협업, 정책부서 R&D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농정과제 이행을 위한 5대 중점 연구분야(ICT 융복합 스마트 농업, 농생명 바이오산업, 국민 삶의 질, 고품질 농식품, 기후변화/재난/질병 대응 농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3.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 농촌재생에너지팀 사무관 김성만

◆ 추진 배경 및 개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홍수, 가뭄, 폭염 등 기상재해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 지구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후협약 체결 및 글로벌 차원의 대응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통해 신기후체제 출범에 합의하고 다보스 포럼, APEC 정상회담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지구 온난화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1911~2010년) 평균기온이 1.8℃ 상승하여 세계 평균 상승치(0.75℃)를 2배 이상을 상회하고, 집중호우, 폭설 등 이상 기상이 증가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가속화 및 잦은 이상기상 등으로 우리 농업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재배적지의 변화, 기상재해 및 병충해 등의 증가에 따른 농업 생산량 감소와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 및 농가 소득 감소, 물가변동 확대, 식량안보 위협 등 농업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등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6년 12월에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17~2036)'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또한 '18년에는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을 반영하여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올해에는 수정된 로드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20~2040)'을 수립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온실가스를 2030년 예상배출량(BAU) 대비 37% 감축,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로 2°C 온도상승에 대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핵심전략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기반 강화 등의 핵심전략을 수립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 5월에는 농식품산업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중 최초로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12월에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세부추진계획(11~’20)’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적응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농업, 축산, 산림, 식품·유통 등 6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업체를 목표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수단 발굴, EnMS 및 설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식품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식품기업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에는 17개 식품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관리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12.5천t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는 농업부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유도를 위하여 농가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인센티브(1만원/tCO₂)를 지원하고 농가·기업 간 상생체계를 마련하는 등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농가의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으로 이어지도록 농축산물 탄소배출 정보를 인증·표시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다양한 홍보 및 유통 지원을 통해 참여 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12. 60농가 → ’19. 3,976)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를 통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후변화 실태조사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실태조사는 2020년까지 농업·농촌분야(농촌진흥청), 임업분야(산림청),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분야(한국농어촌공사)로 각 분야별로 위임·위탁하여 각 분야별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2020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및 공표를 통해 조사 결과를 농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대비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10년 11월에 ‘가축분뇨 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2019년 현재 86개소 지원), 에너지화시설(2019년 현재 6개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비료, 전기 생산)와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정부에서는 2018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림어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제2차 농식품산업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2020년말까지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및 공표를 통해 조사 결과를 농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농장 단위의 맞춤형 조기정보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 등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기후변화 취약 계층인 농업인의 적응력을 높이는 한편,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4. 시설원에 과학화 및 에너지 절감

▮ 원예경영과 사무관 최은철

◆ 추진 배경 및 개요

2008년도 이후 세계경기 회복 기대감, 중동지역 정정불안, 부존자원의 한계 인식 등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하는 등 고유가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국가 간 에너지 확보 경쟁이 강화되었다.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은 10% 수준이며, 석유는 40년, 천연가스는 60년 이후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유가 시대에 대응하여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90%를 넘는 시설원에 산업의 유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냉난방시설과 에너지 절감형 시설·장비 지원이 필요하다.

〈표 2-4-9〉 연도별 농림어업 에너지소비량

(단위 : 천TOE)

| 구 분 | '05 | '10 | '12 | '15 | '16 | '17 | '18 |
|---------|------------|------------|------------|------------|------------|------------|------------|
| 총에너지소비량 | 171,176 | 194,971 | 206,530 | 214,974 | 221,396 | 230,019 | 232,740 |
| 농림어업 | 3,399(2.0) | 3,201(1.6) | 3,172(1.5) | 2,729(1.3) | 2,719(1.2) | 2,676(1.2) | 2,712(1.2) |

* ()안은 국가총소비량 대비 비중, 2019 에너지통계연보(에너지경제연구원)

* TOE :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물리적 단위

이에 따라 2009년부터 경영비 중 광열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에 분야에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절감시설과 지열·지중열·공기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지원하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감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은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자동보온덮개 등의 시설·장비를 시설원에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목재펠릿난방기, 지열냉난방시설, 2012년에는 공기 열냉난방시설, 2015년에는 폐열 재이용시설과 지중열냉난방시설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농업용 에너지 사용 감축과 시설원에 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시설·장비를 보급하고 있다.

〈표 2-4-10〉 연도별 에너지절감시설 지원현황

(단위 : ha)

| 구 분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계 |
|------------|-------|--------|--------|--------|------|-----|-----|----------|
| 합 계 | 5,257 | 1617,5 | 1810,4 | 1341,7 | 1228 | 967 | 825 | 13,046,9 |
| - 다겹보온커튼 | 2394 | 602 | 828 | 782 | 803 | 617 | 624 | 6,650 |
| - 자동보온덮개 | 2178 | 992 | 935 | 494 | 322 | 312 | 138 | 5,371 |
| - 순환식수막시설 | 183 | 4 | 1 | 0,7 | 5 | 1 | 1 | 196 |
| - 공기열냉난방시설 | 4 | 0,5 | 0,4 | - | 1 | - | 1 | 6,9 |
| - 기타* | 498 | 19 | 46 | 65 | 97 | 37 | 61 | 823 |

* 기타 : 열회수형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 등

▶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확대

농업분야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시설원에 산업의 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열냉난방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에너지 절감률 약 80%)을 보급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폐열 재이용시설, 지중열 냉난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을 추가하는 등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시설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농업에너지절감모델개발사업단을 출범하여 지역별·품목별·시설유형별 다양한 에너지절감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8년 한국전력, 농어촌공사와 함께 지열·공기열시설 공동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에 따른 농가부담을 상당부분 경감하였다.

〈표 2-4-11〉 연도별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현황

(단위 : ha)

| 구 분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계 |
|-------------|------|-----|-----|-----|-----|-----|-----|-------|
| 합 계 | 927 | 125 | 68 | 57 | 44 | 42 | 26 | 1,286 |
| - 지열냉난방시설 등 | 357 | 15 | 18 | 19 | 18 | 19 | 21 | 467 |
| - 목재펠릿난방기 | 570 | 110 | 50 | 35 | 26 | 23 | 5 | 819 |

◆ 평가 및 향후 계획

최근 국제유가는 다소 안정돼 있는 상황이나 화석에너지의 유한성과 심화되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업 분야의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추진, 농가의 냉난방비 절감을 통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 유관기관과 함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협력사업의 범위를 보다 다양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농가의 에너지비용과 농사용 전기의 사용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5.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시설 확충

■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정창남

◆ 추진 배경 및 개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부담을 줄이고 수질·토양 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농가 및 농업법인, 농축협 등에 가축분뇨를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 등에 필요한 처리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1991년부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시작하여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시설·기계·장비 및 자연순환농업 추진 전문경영체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금지 이후,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자원화시설 확대 및 퇴액비 유통기반을 구축이 필요하였다. 이에 가축분뇨처리지원 자금을 지속확보하여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833억원을 지원하였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경우 크게 생산기반 시설지원(축산악취개선, 공동자원화, 친환경퇴비시설현대화사업), 유통지원(평가를 통해 액비살포비지원), 품질관리(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지원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퇴·액비 유통활성화 및 품질관리 지원 등으로 2011년 이후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근절(260만톤 → 0)하였고, 양질의 퇴액비를 경종농가에 공급하는데 기여하였다.

축산악취개선의 경우 축산농가에 대한 분뇨처리시설 및 액비저장조 지원과 액비를 수집하여 토양에 살포하는 액비유통센터 지원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공동자원화사업은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 신규 시설 지원과 기존 시설 개보수를 자원화조직체 223개소(공동자원화시설 84개소, 액비유통센터 139개소)에 지원하여 연간 발생하는 돼지분뇨 22.5%(2,072만톤 중 467만톤)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퇴·액비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성분분석기('19년까지 203개소), 부숙도판정기를 ('19년까지 208개소)보급하였고, 퇴액비 품질향상을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의 비료생산업 '19년 100%(84/84개소) 등록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18년 91.2%에서 '19년 91.4%로 끌어 올렸으며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분뇨를 원료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아울러, '17년부터는 축산농가가 스스로 깨끗한 농장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추진('19년 누계 2,611호 지정) 중이다. 이 대책은 일정 기준 이상의 악취관리, 경관개선을 시행하는 농장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정부지원 등을 집중하는 사업으로 지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농식품부,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축산악취 등 축산환경문제를 전담으로 해결하기 위해 '15년도 가축분뇨법의 근거로 설치된 재단법인),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축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악취를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해 축산단지 중심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 등을 일관 지원하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16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이사업의 성과를 계량하고 개선방안 및 사후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ICT활용 축산악취 모니터링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축산악취 모니터링 사업은 축산농장에 악취 감지 센서를 설치('19년 누계 128개소)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시 농가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통보 및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축산법 개정(2020.1.1.시행)을 통해 축산환경 정의 및 축산환경전담기관 지정 등을 제도화하여 지속적인 축산환경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기반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귀농·귀촌 증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축산악취 민원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님비 현상 등의 여러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지원 및 축산환경관리원 등 전문기관을 활용한 농가 컨설팅·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농장 자가 점검표, 분뇨처리 및 악취관리 매뉴얼 제공 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과 함께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등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분뇨·악취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환경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축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사업의 개편 및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축분뇨가 축산업의 폐기물이 아닌 양분과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경축순환농업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6. 종자산업의 육성

■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 박영완

◆ 추진 배경 및 개요

정부는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인식하여 2009년 10월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2013년부터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육종 인프라 확충,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 우수종자 생산 유통, 민간역량강화 및 사업화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글로벌 종자강국 도약과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적 R&D인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2년 3월 농림수산물기술평가원 내에 “GSP 운영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13년에 상세계획을 통하여 국내외 시장 현황조사·분석 및 품목별 세부 연구 추진계획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같은 해 2월에는 5개 분야 사업단장을 선정하였으며, 7월에는 사업단 품목별 프로젝트 연구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종자개발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민간업체의 종자 육종에 필요한 첨단시설·장비 및 육종포장 등 연구 인프라 지원을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2011년 전북 김제시를 사업지로 선정하였으며, 정상 추진에 따라 2016년 10월 완공되었다.

한편, ‘묘’도 농산물의 품질과 수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대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육묘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묘도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육묘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제1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13~’17)에 따른 종자산업 기반구축이 마무리됨에 따라 종자산업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종자산업의 정책방향으로서 제2차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하여 종자 수출 등 산업화, 해외진출 및 수출 확대 기반 조성 등 국내 종자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 및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 등에 따라 골든시드프로젝트, 종자산업 기초인프라 확충, 해외 종자시장 개척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2009년 22백만 달러에서 2019년 59백만 달러로 종자수출액이 확대되었다. 다만, 수출종자 품목이 채소작물 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 품목 다변화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플든시드 프로젝트는 지난 7년간('13~'19) 690개 품종을 개발하여 144백만 달러를 수출하고 766억원의 국내판매(수입대체)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밖에 품종개발 기초 마련을 위한 유전자원 등록, 분자마커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해외 육종기지 및 시범·전시포 30개국 281개소를 확보하는 등 수출 기반 구축을 통해 정상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민간육종연구단지는 단지내 입주할 20개 기업을 선정('13.9월),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14.12월 착공하였고, '16.10월 완공 이후 기업 입주를 완료하였다.

또한, 종자수출협의회('10년 설립, 24개 회원사)를 통해 국제 종자관련 총회 참석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지원, 해외 잡지 광고 게재 등 종자업체의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등 5개국에 품종 전시포를 설치·운영하여 국내 육성품종의 현지적응성 및 시장성을 조사하고 국산 품종의 우수성을 소개·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신품종 육성 의욕을 고취하고자 우리나라에서 1998년부터 시행된 품종보호제도는 '18년말 기준 품종보호출원 누적건수가 세계 8위(①유럽연합 ②미국 ③네덜란드 ④일본 ⑤중국 ⑥우크라이나 ⑦러시아 ⑧한국 ⑨캐나다 ⑩호주) 수준일 만큼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19년 12월 말 현재 품종보호등록은 누적 8,166건으로 작물별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4-12〉 작물별 품종보호등록 현황

(2019. 12. 31. 현재)

| 구분 작물 | 국 내 | | | | | | 외 국 | | | | 총 계 | | | | | |
|----------|--------------|--------------|--------------|--------------|--------------|------------|--------------|-----------|--------------|----------|--------------|--------------|--------------|--------------|--------------|------------|
| | 계 | 개인 | 종자 업체 | 지자 체 | 국가 | 기타 | 계 | 개인 | 종자 업체 | 국가 | 계 | 개인 | 종자 업체 | 지자 체 | 국가 | 기타 |
| 화훼류 | 2,731 | 719 | 132 | 1,011 | 730 | 139 | 1,534 | 80 | 1,454 | 0 | 4,265 | 799 | 1,586 | 1,011 | 730 | 139 |
| 채소류 | 1,619 | 129 | 1,137 | 137 | 192 | 24 | 39 | 1 | 38 | 0 | 1,658 | 130 | 1,175 | 137 | 192 | 24 |
| 식량작물 | 1,137 | 31 | 34 | 135 | 835 | 102 | 6 | 1 | 5 | 0 | 1,143 | 32 | 39 | 135 | 835 | 102 |
| 과수류 | 441 | 183 | 11 | 67 | 176 | 4 | 38 | 2 | 36 | 0 | 479 | 185 | 47 | 67 | 176 | 4 |
| 특용작물 | 320 | 22 | 47 | 41 | 193 | 17 | 1 | 0 | 1 | 0 | 321 | 22 | 48 | 41 | 193 | 17 |
| 버섯류 | 198 | 31 | 37 | 72 | 57 | 1 | 5 | 3 | 2 | 0 | 203 | 34 | 39 | 72 | 57 | 1 |
| 사료작물 | 50 | 9 | 2 | 1 | 37 | 1 | 1 | 0 | 1 | 0 | 51 | 9 | 3 | 1 | 37 | 1 |
| 산림조경수 | 25 | 23 | 0 | 1 | 1 | 0 | 0 | 0 | 0 | 0 | 25 | 23 | 0 | 1 | 1 | 0 |
| 수산식물 | 19 | 0 | 2 | 5 | 12 | 0 | 0 | 0 | 0 | 0 | 19 | 0 | 2 | 5 | 12 | 0 |
| 산림기타 | 2 | 0 | 0 | 0 | 2 | 0 | 0 | 0 | 0 | 0 | 2 | 0 | 0 | 0 | 2 | 0 |
| 계 | 6,542 | 1,147 | 1,402 | 1,470 | 2,235 | 288 | 1,624 | 87 | 1,537 | 0 | 8,166 | 1,234 | 2,939 | 1,470 | 2,235 | 288 |

또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18~'22)」을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은 「종자산업의 글로벌 성장산업화」라는 비전 하에 「종자산업 체질개선 및 수출산업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성과중심 연구개발 체계 구축, 선진적 생산·유통 체제구축 및 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역량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이에 대한 13대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2019년도에는 2차 5개년 계획의 연차별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자산업육성 대책을 통해, 2019년 기준 국내의 종자업 등록업체 수는 최근 10년간 3배 이상 증가(09년, 819개→19, 2,751)하였으며, 기타 품목을 제외하고 과수가 26%로 가장 많고, 채소(15), 화훼(11), 버섯(9), 식량(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4-13〉 연도별 종자업 등록현황

(2019. 12. 31. 현재)

| 연도 | 계 | 식량 | 채소 | 과수 | 화훼 | 버섯 | 빵 | 기타 |
|-----|-----------------|------------|-------------|-------------|-------------|------------|-----------|-------------|
| '08 | 871 | 33 | 189 | 257 | 139 | 126 | 28 | 99 |
| '09 | 819 | 37 | 173 | 250 | 121 | 110 | 30 | 98 |
| '10 | 924 | 32 | 181 | 283 | 149 | 121 | 29 | 129 |
| '11 | 932 | 39 | 185 | 300 | 139 | 112 | 30 | 127 |
| '12 | 1,073 | 39 | 202 | 328 | 160 | 118 | 33 | 193 |
| '13 | 1,279 | 49 | 224 | 393 | 195 | 108 | 46 | 264 |
| '14 | 1,491 | 58 | 255 | 445 | 214 | 125 | 47 | 347 |
| '15 | 1,699 | 69 | 277 | 494 | 231 | 130 | 35 | 463 |
| '16 | 2,019 | 78 | 341 | 587 | 253 | 161 | 43 | 556 |
| '17 | 2,217 | 99 | 368 | 615 | 251 | 176 | 36 | 672 |
| '18 | 2,466 (100%) | 104 (4) | 381 (15) | 665 (27) | 294 (12) | 220 (9) | 39 (2) | 763 (31) |
| '19 | 2,751 (100%) | 139 (5) | 405 (15) | 708 (26) | 312 (11) | 244 (9) | 44 (2) | 899 (32) |

한편, 종자와 달리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있는 육묘산업을 종자산업처럼 농업부문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불량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육묘업등록제, 묘 품질표시제, 육묘 분쟁해결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종자산업법('16. 12. 27.)과 그 하위법령을 개정('17. 6. 28.)하여 시행('17. 12. 27.)하였다. 육묘업 등록제 시행 이후, '19년도까지 총 4,021명이 육묘업 등록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총 1,885개 업체가 육묘업을 등록하였다. 작물별로는 채소가 52%로 가장 많고, 식량(36), 화훼(1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육묘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한 육묘업실태조사 결과 육묘관련 판매액 규모는 2018년 기준 연간 1,632억원으로 파악되었다.

〈표 2-4-14〉 연도별 육묘업 등록현황

(2019. 12. 31. 현재)

| 연도 | 계 | 채소 | 식량작물 | 화훼 |
|-----|-----------------|-------------|-------------|-------------|
| '18 | 1,506 (100%) | 716 (48) | 622 (41) | 168 (11) |
| '19 | 1,885 (100%) | 983 (52) | 677 (36) | 225 (12) |

* 육묘업 등록 교육 이수 현황 : 4,021명('18년 7회 1,722명, '19년 6회 732명)

◆ 평가 및 향후 계획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Golden Seed 프로젝트 2단계('17~'21)는 기업·시장 중심의 과제 개편을 통해 수출성고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종자산업진흥 센터를 주축으로 한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정읍 방사선육종센터, 전주 농진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종자기업의 육종 및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18~'22)」의 4대 추진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및 기관별 핵심 추진목표 등을 포함한 2020년도 종자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7. 곤충산업 육성

■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 한병윤

◆ 추진 배경 및 개요

곤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동물의 70% 이상(약 130만종)을 차지하는 미개발 생물자원으로 평가되면서, 이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곤충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예전에는 곤충이 친환경 농업 및 시설원예의 확산으로 해충방제를 위한 천적 곤충과 꽃의 수정을 돕는 화분매개 곤충으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학습·애완·축재용 및 식품, 사료, 환경정화, 기능성 바이오 소재 등에 곤충산업화가 확산되는 추세로 새로운 농업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 추진 성과

곤충생산·유통·소비 단계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대량수요가 견인하는 미래 소득농업으로 도약할 기반 마련을 위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제2차 곤충산업 육성 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2016. 3월)하였다. 중점 추진할 과제는 소비·유통체계 고도화, 新시장 개척, 생산기반조성, 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수요확대·유통·생산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 본격 산업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곤충 생산·가공·유통업으로 신고된 농가 또는 법인은 총 2,535개소(생산업 2,368, 가공업 525, 유통업 1,338, 일부 중복)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으며, 곤충산업 종사자는 3,609명으로 전년대비 8.0% 증가했다.

〈표 2-4-15〉 국내 곤충산업 현황

| 구 분 | 2018(A) | 2019(B) | 증감(B-A) | 증감률(%) |
|------------------------|---------|---------|---------|--------|
| 곤충 사육·가공·유통업 신고 수(개소) | 2,318 | 2,535 | 217 | 9.4 |
| - 생산업 | 2,180 | 2,368 | 188 | 8.6 |
| - 가공업 | 499 | 525 | 26 | 5.2 |
| - 유통업 | 1,209 | 1,338 | 129 | 10.7 |
| 곤충 사육·가공·유통업 종사자 수(명) | 3,341 | 3,609 | 268 | 8.0 |
| 곤충 판매액(*꿀벌, 누에 제외)(억원) | 375 | 405 | 30 | 8.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

▶ 곤충산업 新시장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갈색거저리 애벌레(2016. 3월)와 쌍별귀뚜라미(2016. 3월)에 이어,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2016. 12월), 장수풍뎅이 애벌레(2016. 12월)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과 협업하여 일반식품 원료(동물성 원료 중 곤충 관련 총 7종)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용곤충의 사육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32호)을 제정(2016. 10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2018년 주요 규제 개선 성과로는 곤충 사육농가도 농수산업자 신용 보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 범위를 확대(농수산업자신용보증법 개정, 2018.12.31.)하고 곤충 생산·가공·유통업 신고처리와 관련하여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처리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가공업 등록 시 곤충 가공업도 신고한 것으로 보는 등 신고 간주제 도입(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18. 12. 31)이 있다. 2019년에는 축산법 고시개정(‘가축으로 정하는는 기타동물’)을 통해서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를 포함한 곤충 14종이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포함되었고(2019.7.25.), 사료용 곤충 사육기준 마련을 위해 「곤충의 사육기준」 고시개정(2019.11.25.)을 추진하였다. 추가적으로 관련분야 곤충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산물 비료 중 동애등에분 염분 기준을 완화(0.5%이하 → 2.0%)(2019.3.28.)하였고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통해 단미사료에 “곤충유(오일)”을 추가하여 비료 및 사료분야의 규제개선을 진행하였다.

▶ 곤충자원의 R&D 강화

곤충자원을 활용하여 식품·사료 외에도 기능성의약품 소재개발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R&D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2019년에는 곤충자원의 신속한 산업화를 위한 핵심모델 개발(2016~2020), 식·약용 곤충/발효미생물 복합소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간기능 개선 물질의 발굴 및 식품산업화(2017~2020), 산업화 유망 곤충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개발(2018~2020), 식용곤충을 활용한 프리미엄(휴먼그레이드) 반려동물 간식 수출사업단

(2017~2021), 생물적 발효과정을 이용한 곤충 키틴발효 사료첨가제 생산기술개발 및 산업화 (2019~2021), 곤충 오일의 기능성 탐색 및 고부가가치 제품개발(2019~2021), 식용곤충과 유산균을 활용한 고단백 노인식 퓨레 상품화 기술 개발(2019~2020) 연구를 진행하였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식용곤충 먹이원 개발 및 차세대 산업곤충 개발, 화분매개곤충 현장적용 및 스마트 관리 기술 개발, 산업곤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질병 관리 및 기준 설정, 곤충활용 소재 개발 R&D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진행하였다.

▶ 곤충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대외협력 강화

곤충식품페스티벌 및 심포지엄(6.5), 제1회 곤충의 날 행사(기념식, 곤충 제품전시 및 국제심포지엄)(9.6), 곤충체험·홍보전(10.5), 농업박람회 연계 곤충산업 전시회(11.22~24), 곤충관련 행사 후원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안전 사육관리 교육 및 성공사례 확산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곤충 및 곤충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곤충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곤충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을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주)휴먼인섹트 등 3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총 20개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화 기반 조성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의 곤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경기(2016년)는 천적, 대전(2016년)은 학습·애완, 경북(2015년)은 화분매개, 경남(2015년)은 식·약·사료용 소재 및 제품화 개발을 특화하기 위하여 총 4개소의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였으며, 각 센터는 곤충농가 교육 및 품질관리, 제품화 및 산업화 연구 개발 및 기술보급 등 지역 곤충산업의 종합지원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곤충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용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무병·우량 곤충종자를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충청북도농업기술원(청주)에 곤충종자보급센터를 건립(총 사업비 50억원, 2017년부터 3개년)하였다. 추가로 사료곤충산업의 규모화 및 체계화를 위한 사료용곤충산업화사업(총 사업비 10억원, 국비30%, 지방비40%, 자담 30%)을 통해 2개소 사업대상자 선정, 사료용곤충의 생산 및 가공시설·설비를 지원하였다.

▶ 곤충자원 조사 및 유용곤충 발굴

산림곤충의 표본 확보와 동정체계 구축 및 곤충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조사미비지역에 대해서 곤충상 조사를 통한 곤충자원 분포를 조사했고(강원도 북부 DMZ 접경지역 조사) 산림곤충 표본

(7,635점) 및 이미지(7,172점)를 확보하였다. 그 외에도 산림곤충 분류군별 DNA 바코드(1,263건) 및 관련 정보(1,193건)를 확보하고 산림서식 나무종류 및 바구미류 도해검색표 작성(114종) 등을 진행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곤충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제2차 곤충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매년 초 전년도 곤충산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을 보완하여 ‘곤충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에는 곤충자원 유통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2017~2018년 시범적으로 지원하였던 곤충유통사업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조직화·품질관리·마케팅을 위한 사업지원(총사업비 260백만원, 국비50%)을 추진할 계획이며, 곤충사육농가도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 및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농진청과 HACCP인증원 협력을 통해 HACCP 수준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곤충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위해 전문가포럼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곤충산업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 담당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법정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2절 농업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1. 농협 사업구조 개편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허정은

◆ 추진 배경 및 개요

1990년대 중반부터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농축산물 판매 등 농업인이 원하는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과 함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 및 신용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이 마련(2007.3.29)되어 추진 중이었으나, 농협중앙회의 신용 부문 수익이 농협의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감소하게 되어 사업구조 개편의 시급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농협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협 운영구조 개선」 및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등 2단계에 걸쳐 농협개혁을 추진하였다.

우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이사회의 실질적 의결기구화 등 농협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을 2009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농협중앙회를 3개의 별도 법인(중앙회, 농업경제지주, 농업금융지주)으로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 농협법 개정안이 2011년 3월에 공포되었다.

정부는 실질적인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각계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였으며,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1·2차 개혁안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농민단체 주관의 전국 순회토론회,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였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도 포함하였으며,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강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그동안 정부의 개혁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여전히 경제사업에 소홀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경쟁력 있고 실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농협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1단계로,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 촉진과 조합의 운영구조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법을 개정·공포(2009.6.9)하였다.

1단계 농협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규제완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자산규모 2천 5백억원 이상인 조합의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 중앙회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사 수를 감축(현 : 21명 이상→ 30명 이내)하고, 인사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가 아닌 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켰으며,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농협개혁 2단계로,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건의(2009.3.31)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잠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권역별 설명회(2009.7) 등을 통해 농업인(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정부안을 확정(2009. 12)하여, 국회에 제출(2009.12.16)하였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식품위 상정(2010.2)을 거쳐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으며, 국회 공청회(2.11) 및 법안상정 대체 토론(2.22)을 개최하고, 사업분리 방식, 경제사업 활성화, 부족 자본금 지원, 조세·보험 특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총 6차례의 심사소위('10.2.24, 4.14, 4.19, 4.22, 12.6, '11.3.3)와 2차례의 농식품위 전체회의(4.16, 6.21)를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의결하였으며, 2011년 3월 31일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2단계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회원 조합에 대한 지도·지원,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병행하던 농협중앙회를 지도 및 농정활동을 수행하는 중앙회,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경제지주, 금융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금융지주로 분리하였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협연합회의 사업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이전 장치 마련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농협법 개정과 별도로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분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토록 하고,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현행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 농협법 개정안 공포 이후 후속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사사업구조개편지원단을 구성(2011.3.31)하여 농업협동조합법 하위법령 개정, 농협 사업구조 개편 부족자본금 지원계획서 마련에 박차를 가하였고,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경제사업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농협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회의 신용사업 이관에 따라 기존의 신용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신설했으며, 전무이사 및 각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중앙회 근무요건 이외에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까지 포함,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해 주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함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새롭게 설립되는 농협은행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권을 구체화했다.

이 밖에 중앙회의 자기자본 개념 신설, 농협은행의 농업금융채권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농협중앙회에 일부 위탁하였다. 동 농협법시행령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2012년 1월 6일 공포되었다.

개정 농업협동조합법(2011.3.31 공포) 부칙 제3조(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대한 지원)에 따라 정부는 자본지원계획서를 마련하여 2011년 9월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에서 요청한 6조원 중 4조원을 반영하였고, 지원형식은 3조원은 이자보전 방식으로 1조원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물출자를 2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이자보전 4조원과 현물출자 1조원 지원방안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국회에도 보고되었다.

다만, 현물출자 1조원 중 산은지주 주식 0.5조원은 국회 IPO 부결 등으로 인해 현물출자가 진행되지 못하여 2013년 6월부터 이자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0.5조원도 농식품부·금융위 간 협의를 완료(15.6월)하여 현물출자 계약당사자인 농협중앙회와 통합산은 간에 실무협의 중 현물출자 과정의 비용부담 문제 등이 발생하여 2017년 10월부터 이자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근본 취지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 분야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농협경제사업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1년 8월까지 추진하였다. 동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중앙회는 2012년 9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2012~2020년까지 4.96조원의 경제사업 신규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협법 제135조의3에 따라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협경제사업 평가협의회를 통해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상황을 평가·점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농협 사업전담대표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개정 농협법에 따라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설립되었으며,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동일자로 농협금융지주회사에 완전 이관되었고, 중앙회의 경제사업은 농협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6조)에 따라 2015년 2월 유통·판매 관련 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1차 이관되었고, 2016년 12월 나머지 경제사업 모두가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되며, 완료되었다.

특히, 2014년도에는 경제사업의 이관과정에 있어 경제지주의 조합 자금지원, 계통거래 시 공정거래법 저축 우려 문제와 중앙회의 외부출자한도 제한 등 법적·세무적 쟁점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이관 제약해소를 위한 T/F를 농식품부와 농협 공동으로 운영하여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경제사업 이관 시 법·세무적 제약사항을 모두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농협법을 2014년 12월 31일자로 추가적으로 개정하여 사업구조개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6년도에는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된 이후의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운영방향의 정립을 위한 농협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농식품부·농협 합동 T/F를 구성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 법안 작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중앙회는 조합 지도·지원 기능에 적합토록 운영규정을 보완하였고, 경제지주는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와

조합 경제사업 조성·협력, 중앙회·조합과의 연결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농협 중앙회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개선이 있었다. 이에 따른 농협법은 2016년 12월 27일 공포되어, 중앙회의 나머지 경제사업이 모두 이관된 2017년 1월 1일 이후의 농협 중앙회·농협경제지주의 지배구조 재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지주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으로써 경제지주 경영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경제지주가 자회사를 지도·감독하는 세부기준을 정하여 농협 경제지주의 책임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 체제 전환은 농협이 농·축산물의 판매와 유통 등 경제사업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경제지주가 일선조합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책임 판매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지속적인 경제사업 투자 증가에 힘입어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 근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사업구조 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하여 사업구조 개편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08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농협개혁은 1단계 농협법 개정 에 이어 즉시 2단계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농협개혁의 효율성을 높인 바 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은 농업계의 숙원사항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농협, 농민단체,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농협법 개정 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사업구조 개편 관련 홍보 계획을 수립, 언론 기고, 방송 인터뷰 및 기자단 설명회 등 체계적인 언론 홍보를 실시하여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자본금·조세 등의 정부 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농협의 경제사업 투자증가와 경제지주의 책임 판매비중 증가 등 일부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은 판매농협 실현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출발점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협이 당초 사업구조 개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 활성화 이행 과정을 점점·평가해 나갈 것이며, 사업이관 후 중앙회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협으로 거듭날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내실화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임선영

◆ 추진 배경 및 개요

전통적 농업 금융인 투융자를 보완·대체할 수 있는 제3섹터형 정책금융으로 도입된 농식품모태펀드는 2010년에 펀드 결성·운용의 근거법령을 제정하고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지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1년부터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을 개시하여 펀드운용을 본격화하였다. 그동안 농식품 분야의 투자는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자본에 의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민관합작투자 형태의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하여 농식품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정부 재정으로 조성된 농식품모태펀드는 민간과의 매칭펀딩으로 결성된 농식품투자펀드(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성장 가능성 있는 다양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함으로써 투융자 등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지출을 감소시키고 농식품 분야에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게 된다. 농식품모태펀드는 시장개방,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과 열악한 농식품 투자환경을 고려할 때 일반 펀드와는 차별화된 운용전략이 필요하여 투자관리 외에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교육·지도 및 경영컨설팅 등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운용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0년 9월 농식품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이 결성되었으며 2019년까지 정부에서 매년 100~6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누적규모 3,578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하였다. 또한 투자관리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5,512억원을 출자하여 총 61개(일반펀드 29, 특수목적펀드 32) 자조합(농식품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을 결성하였다. 농식품모태펀드에서 출자를 받은 자조합의 총 결성규모는 9,911억원으로 이 중 4,398억원의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말 기준 350개 경영체에 6,955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농식품분야의 투자가 6,043억원(433건)으로 농식품분야에 전체투자액의 86.9%가 투자되었다.

또한 '19년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정부재원 500억원을 투입하여 981억원 규모 6개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였다. '19년도에는 5억 이내 소액투자를 희망하는 창업초기 소규모 농식품경영체를 지원하는 「마이크로 펀드」를 신규로 조성, 5억원 이내의 소액 자본 투자를 받고자 하는 소규모의 창업초기 농식품 경영체에 집중 투자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동안 농식품펀드 투자가

통상 10억원 이상의 규모로 이루어짐에 따라 설립 초기 기업의 소규모 투자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마이크로 펀드 운용사가 기존에 투자받은 이력이 없는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신규 투자대상 기업 발굴을 적극 장려하였다. 신규펀드 조성과 함께 '19년도에는 4개의 자펀드가 청산완료 되었고, 모두 수익배수(회수금액/투자금액) 1을 초과하여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표 2-4-16〉 농식품투자조합 결성('10~'19) 현황

(단위 : 억원)

| 연 도 | 펀드명 | 출자금액(억원) | | | 운용기관 |
|------|----------------------|----------|-----|-----|-----------------------------|
| | | 모태 | 민간 | 총액 | |
| 2010 | 그린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 90 | 110 | 200 | MG인베스트먼트(주) |
| | 아주아그리젠토1호투자조합 | 100 | 100 | 200 | 아주아이비투자(주) |
| | 미시간글로벌식품산업투자조합 | 100 | 150 | 250 | 미시간벤처캐피탈(주) |
| | 현대-동양 농식품사모투자전문회사 | 157 | 163 | 320 | 현대증권(주) 유안타인베스트먼트(주) |
| 2011 | 나눔농축산전문투자조합1호 | 100 | 100 | 200 | (주)에스비인베스트먼트 |
| | 컴퍼니케이파트너스농림축산투자조합 | 100 | 100 | 200 | 컴퍼니케이파트너스(주) |
| | 나우농식품투자펀드1호 | 80 | 120 | 200 | 나우아이비캐피탈(주) |
| | 솔리더스글로벌농식품바이오투자펀드1호 | 80 | 90 | 170 | (주)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
| | 미래에셋애그로프로젝트투자조합 | 100 | 100 | 200 | 미래에셋벤처투자(주) |
| 2012 | 노루-미래에셋애그로스타프로젝트투자조합 | 80 | 80 | 160 | 미래에셋벤처투자(주) |
| | AKGI애그로상생경제투자조합1호 | 80 | 80 | 160 | (주)안강벤처투자 |
| | KDBC식품산업투자조합1호 | 80 | 80 | 160 | KDB캐피탈(주) |
| | 나우농식품투자펀드2호 | 80 | 80 | 160 | 나우아이비캐피탈(주) |
| | 유큐아이피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제1호 | 70 | 30 | 100 | 유큐아이파트너스(주) |
| | 이앤농식품프로젝트투자조합 | 70 | 30 | 100 | (주)이앤인베스트먼트 |
| 2013 | 메가농식품투자조합1호 | 75 | 75 | 150 | 메가인베스트먼트(주) |
| | 동양농식품2호투자조합 | 75 | 75 | 150 | 유안타인베스트먼트(주) |
| | 세종농식품바이오투자조합1호 | 75 | 75 | 150 | (주)세종벤처파트너스 |
| | 솔리더스-고창 농식품프로젝트투자조합 | 70 | 30 | 100 | (주)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
| | 미시간글로벌식품산업투자조합2호 | 70 | 30 | 100 | 미시간벤처캐피탈(주) |
| | 엘앤에스농식품6차산업화투자조합 | 70 | 30 | 100 | 엘앤에스벤처캐피탈(주) |
| 2014 | 이앤에이비에프투자조합 | 140 | 150 | 290 | (주)이앤인베스트먼트 |
| | 현대 Agro-Bio펀드 1호 | 50 | 50 | 100 | 현대기술투자(주) |
| | 나우농식품투자펀드3호 | 60 | 60 | 120 | 나우아이비캐피탈(주) |
| | SJ-농림축산식품투자조합1호 | 50 | 50 | 100 | (주)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
| | 메가농축산성장투자조합2호 | 70 | 30 | 100 | 메가인베스트먼트(주) |
| | 세종 농식품R&D사업화투자조합 | 70 | 30 | 100 | (주)세종벤처파트너스 |
| | 센트럴생거진천농식품투자조합 | 70 | 30 | 100 | (주)센트럴투자파트너스 |
| | AJ-세종농식품수출육성펀드 | 90 | 40 | 130 | (주)세종벤처파트너스 AJ캐피탈파트너스(주) |
| | 컴퍼니케이파트너스애그로씨드투자조합 | 90 | 10 | 100 | 컴퍼니케이파트너스(주) |

| 연 도 | 펀드명 | 출자금액(억원) | | | 운용기관 |
|------|---------------------------|----------|---------|---------|------------------------------|
| | | 모태 | 민간 | 총액 | |
| 2015 | TWI농식품상생투자조합 | 100 | 100 | 200 | (주)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
| | 유티씨그린바이오투자조합 | 120 | 120 | 240 | 유티씨인베스트먼트(주) |
| | SB프로젝트투자조합 | 70 | 30 | 100 | (주)에스비인베스트먼트 |
| | ECO-MGI 6차산업화전문투자조합 | 70 | 30 | 100 | (주)에코캐피탈 |
| | AJ농식품수출육성펀드2호 | 70 | 30 | 100 | AJ캐피탈파트너스(주) |
| | DTNI-AGRITECH투자조합 | 70 | 50 | 120 | (주)디티앤인베스트먼트 |
| | 엔에이치에그리비즈밸류크리에이티브1호 | 100 | 100 | 200 | 농협은행(주) NH투자증권(주) |
| 2016 | A&F미래성장투자조합 | 180 | 245 | 425 | 이후인베스트먼트 지앤텍벤처투자 |
| | GMB-MD농식품투자펀드 | 180 | 150 | 330 | 지엠비인베스트먼트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 |
| | 스마일게이트농식품1호펀드 | 160 | 40 | 200 |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
| | 유큐아이피농식품투자조합제2호 | 120 | 30 | 150 | 유큐아이파트너스(주) |
| | CKD Smart Farm 1호 농식품투자조합 | 120 | 30 | 150 | CKD창업투자 |
| | 블루6차산업화투자조합1호 | 70 | 30 | 100 | (주)블루그린인베스트먼트 |
| | 포스코농식품수출투자조합 | 70 | 30 | 100 | 포스코기술투자(주) |
| 2017 | 나우농식품투자펀드 4호 | 100 | 100 | 200 | 나우아이비캐피탈(주) |
| | KB 신농사직설 투자조합 | 100 | 100 | 200 | KB증권(주) & KB인베스트먼트(주) |
| | 시너지 농식품 밸류크리에이티브투자조합 | 50 | 50 | 100 | 시너지아이비투자(주) |
| | NHC-DTNI 농식품 ABC 투자조합1호 | 140 | 80 | 220 | (주)디티앤인베스트먼트 & NH농협캐피탈(주) |
| | 마그나 ABC펀드 | 140 | 60 | 200 | 마그나인베스트먼트(주) |
| | 패스파인더 6차산업화 투자조합 | 70 | 30 | 100 | (주)패스파인더에이치 |
| 2018 | NHC-DTNI 농식품일반투자조합 | 90 | 110 | 200 | (주)디티앤인베스트먼트 & NH농협캐피탈(주) |
| | 미시간글로벌식품산업투자조합 | 100 | 25 | 125 | 미시간벤처캐피탈(주) |
| | AJ-ISU경기도애그리푸드투자조합 | 40 | 60 | 100 | AJ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이수창업투자 |
| | 킹고 멀티플6 농식품 제1호 투자조합 | 70 | 30 | 100 | (주)킹고투자파트너스 |
| | 나우농식품 세컨더리투자펀드 1호 | 120 | 80 | 200 | 나우아이비캐피탈(주) |
| 2019 | 빙그레 농식품 투자조합 | 50 | 12.5 | 62.5 | (유)동문파트너즈 |
| | 동훈 농식품 벤처스타 1호 투자조합 | 50 | 13 | 63 | 동훈인베스트먼트 |
| | 현대Agro-Bio펀드2호 | 70 | 30 | 100 | 현대기술투자 |
| | 타임와이즈 농식품벤처 펀드 | 100 | 25 | 125 |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
| | UN그린시너지 투자조합 | 115 | 115 | 230 | 유티씨인베스트먼트 |
| | NH나우농식품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5 | 285 | 400 | 나우아이비캐피탈(주) |
| 합계 | | 5,512 | 4,398.5 | 9,910.5 | |

◆ 평가 및 향후 계획

'20년도에는 농축산 1차 생산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에 투자하는 「영파머스 펀드」와 기존 농식품펀드 투자 경영체에 후속 투자를 제공하여 성장단계로 도약시키는 「징검다리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소규모 창업초기 농식품 경영체에 집중 투자하는 마이크로 펀드, 청년·창업초기 농식품경영체를 위한 농식품 벤처펀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재원을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 내에 우선 투자하는 지역특성화 펀드, 농식품경영체 전반에 지원되는 농식품 일반펀드를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펀드에 처음 도입되는 영파머스 펀드는 청년 창업농, 후계농 선발자, 대표자가 청년농인 7년 미만 창업초기 농업법인 등에 투자하고, 징검다리 펀드는 기존 농식품 펀드 투자업체 중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경영체에 후속 투자하여 창업부터 성장까지 균형있는 투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펀드 조성이 완료된 후 농식품경영체에 되도록 신속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펀드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의 관리보수와 투자실적 연계를 강화해 투자운용사의 초기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3. 농업금융시스템 개편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임선영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업 분야의 낮은 수익률 등으로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정책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정책금융은 농업 분야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을 통해서만 지원됨에 따라 시장기능과 경쟁의 원리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로 농협 등을 통해 지원하여 오던 농업정책자금의 공급방식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중은행에서도 농업 분야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대상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정책자금 지원현황 및 취급 금융기관 확대

농식품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리스크 부담이 커 민간자본의 진입이 어려워 대부분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농업분야 지출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1997년 농업종합자금 등을 이차보전(금융기관이 자체자금으로 정책자금을 대출하고 금리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으로 확대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2019년말 기준, 정책자금 대출잔액은 28.8조원(재정융자 11.6조원, 이차보전 17.2조원) 수준으로 전년(27.2조원) 대비 5.9%증가하였다. 이차보전액의 경우 4,221억원(예산대비 집행률 100.0%)이 집행되었다.

아울러,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지원루트를 다양화하여 농업금융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04년 8월부터 촉발기금으로 지원되는 일부 사업자금의 취급을 일반시중은행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06년에는 촉발기금의 모든 융자사업과 농특자금으로 지원되는 융자사업 중 농기계구입자금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금을, 2008년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과 농기계사후관리자금 및 신규후계농 및 창업농·후계농추가지원 자금을, 2010년에는 농촌주택정비사업, 재해복구자금, 농축산 경영자금 및 농업종합자금 등을 시중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4-17〉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취급기관(2019년말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 계 | 농 협 | 산림조합 | 유통공사 | 농어촌공사 | 시중은행 |
|----------------|----------|---------|---------|--------|--------|--------|
| 정부자금 | 농특회계 | 4,916 | 1,029 | 3,887 | - | - |
| | 에특회계 | 228 | 228 | - | - | - |
| | 재특회계 | - | - | - | - | - |
| | 소 계(a) | 5,144 | 1,257 | 3,887 | - | - |
| | 농안기금 | 29,058 | 17,186 | - | 11,872 | - |
| | 농지기금 | 59,276 | - | - | - | 59,276 |
| | 축발기금 | 9,210 | 8,898 | - | - | - |
| | FTA기금 | 13,740 | 11,549 | - | - | 2,191 |
| | 소 계(b) | 111,284 | 37,633 | - | 11,872 | 61,467 |
| | 계(A=a+b) | 116,428 | 38,890 | 3,887 | 11,872 | 61,467 |
| 민간자금 (이차보전) | 정책자금 | 165,775 | 162,403 | 2,818 | - | - |
| | 부채대책 | 6,286 | 6,201 | 85 | - | - |
| | 계(C) | 172,061 | 168,604 | 2,903 | - | - |
| 합 계(A+B+C) | 288,489 | 207,494 | 6,790 | 11,872 | 61,467 | 866 |

* 자료 출처 : 농협 대출 :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산림조합 대출 : 산림조합중앙회, 농안기금 중 유통공사 대출액 : 유통정책과(유통공사), 농지기금 : 농지과(농어촌공사), 축발기금 중 시중은행 대출액 : 축산정책과, FTA 기금 중 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대출액 : 농업정책과, 이차보전 시중은행 대출액 : 농업금융정책과

▶ 정책자금 관리체계 확립

2004년 5월에는 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신설하여 농특회계 용자금의 관리 및 상시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2005년 4월에는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2008년 1월에는 부채대책 등 이차보전 자금을 관리토록 함과 아울러 6월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기금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2010년 6월부터는 모태펀드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2012년 국정감사시 정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3년부터 농안기금·축발기금 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되는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사후관리를 위탁하여 정책자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원활한 경영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2년 설립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2019년 말 현재 약 140조원(누계)에 달하는 보증지원을 통해 농어가 생산증대 및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만, 주로 생산자(농가) 지원에 치중함으로써,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금융위·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014년

1월 16일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창업지원 및 기술·투자 우대를 통해 창조 농어업 기반을 강화하고, 법인 및 가공·유통분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부가 가치를 제고하며, 농신보 운영 개선을 통해 기금 적정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또한 농업 경영체 규모화·첨단화 등 농어촌 여건 변화에 맞춰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법인, 도시가공업자, 귀농·창업인 등에 대한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19년말 기준 농신보 운용배수는 보증잔액 161,117억원, 기본재산 10,449억원으로 15.4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업의 규모화, 첨단화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준의 운용배수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앞으로 농업정책자금의 공급방식을 완전 시장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등 시장 지향적 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대출편익과 금융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에 따라 시중 은행에서도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책자금 취급을 시중 은행에 개방하였음에도 기준금리의 차이, 회계검사 의무화, 대손보전 제외 등으로 인해 취급 확대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다만, '18년의 경우, 농업정책자금 중 가장 규모가 큰 농업종합자금의 사업구조 정비, 시설·토지구입자금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지원단가 현실화 및 사업 이해도를 제고하였으며,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 지역 농축협의 대출심사 규모 확대를 통해 자금이 적재적소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생애 최초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도입하였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고, 농업정책자금(융자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검사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제5장 농식품 안전성·품질관리 강화

제1절 농축산물 안전성관리 강화

1.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실효성 강화

▮ 유통정책과 사무관 장영달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1994년도에 도입되었다. 특히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외식문화가 크게 증가하면서 식품소비 중 외식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외식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져 2008년 7월부터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던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2010년 2월 4일 제정·공포하고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하였다. 제정된 법령에서는 원산지에 대한 높은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적용하는 한편,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표시 대상을 농산물에서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수입원료 사용비중이 높은 소금과 막걸리를 포함한 주류에도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였다.

2011년 10월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수산물 6품목을 신규 도입하고, 찌개용·탕용 배추김치

까지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와 동시에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도 일반적인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등을 원산지표시 단속기관 및 한국소비자원, 주요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2014년 6월에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해 악의적인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대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시행일 2015. 6월)하였으며 2년이 경과한 '17년 하반기부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7년 12월에는 위반자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형량하한제를 통해 재범자 처벌을 강화하였다.

2012년 12월에는 김치류에 사용된 고춧가루와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및 판매를 위해 보관·진열하는 살아 있는 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여 기존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수입 증가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와 갈치, 고등어, 명태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음식점 표시대상품목 추가(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음식점에서의 표시대상 품목을 모든 조리용도로 확대, 음식점의 원산지표시판 크기확대 및 게시위치 명확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표시 확대(2→3순위) 등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였다.

2019년에는 '원산지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업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단속기관간 단속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을 강화하였으며,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음식점에서 가공품의 주원료 표시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으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우리나라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폭넓고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FTA체결 등 자유무역 확대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면서 농식품 원산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 알권리 제공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과 대상 품목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량하한제, 과징금부과, 위반자 의무교육의 철저한 시행을 통해 원산지표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대상 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원산지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속기관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며,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업계·단체에 원산지 제도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의 원산지확인 생활화를 위하여 교육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지사의 원산지표시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법령 개정을 통하여 단속인력 확충 및 지자체 원산지관리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향후 비대면 거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통신판매 등 유통경로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농축산물품질위생관리팀 사무관 박춘규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유통·판매 단계에서 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초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생산, 유통·판매되는 농산물과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농지·용수·자재 등을 수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부적합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해서는 객토, 정화, 유해물질 제거, 비식용작물 재배 등의 방법으로 개량하거나 일정기간 이용·사용을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 안전관리에 대해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 조사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사전예방관리(생산단계), 재배환경관리, 정책 지원관리로 구분하여 국내 농산물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9년에는 농산물 276개 품목을 대상으로 60,988건을 조사하여 계획(60,000건) 대비 101.6%를 달성하였다. 유해물질별 조사실적은 농산물의 경우 50,050건을 조사하였으며, 그 중 잔류농약 43,446건, 중금속 4,557건, 곰팡이독소 708건, 식중독균 848건, 방사능핵종 390건, 항생물질 40건, 이산화황 31건, 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 30건 등을 조사하였고, 농지·용수·자재에 대해서도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오염여부를 7,078건이 조사되었으며, 작물체 3,634건(잔류농약), 기타 품목 관리를 226건을 조사하였다. 안전성 조사결과, 761건(1.2%)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발 0건, 폐기 366건, 출하연기 190건, 기타(관계기관 통보 등) 205건을 조치하였다.

로컬푸드 등 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여 새로운 유통경로로 정착·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2015년부터 새롭게 시작하였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중앙회 간 업무협약('15.3.30.)도 체결하였다. 이와 함께 농협의 연합마케팅조직에서 생산하는 공동브랜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 선도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15.12.9.)도 체결하여 시료수거부터 부적합품 조치, 농업인 지도·교육 등을 농협과 함께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 텐진항 유독물질 폭발사고('15.8.12.), 경북 영천시 폐산 누출사고('15.9.2.), 살충제 계란 파동('17.8.13) 등 국내 농산물 안전관리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사고 발생이나 PLS 전면시행('19.1.1) 등의 제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였다.

〈표 2-5-1〉 연도별 농산물 등 안전성 검사실적

(단위: 품목, 건, %)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품목수 | 268 | 279 | 280 | 286 | 296 | 296 | 312 | 235 | 276 |
| 조사건수 | 76,589 | 79,753 | 87,052 | 91,211 | 90,097 | 77,515 | 82,328 | 73,371 | 60,988 |
| 부적합건수 | 1,348 | 1,217 | 1,202 | 1,209 | 1,232 | 1,182 | 1,535 | 928 | 761 |
| 부적합률 | 1.8 | 1.5 | 1.4 | 1.3 | 1.4 | 1.5 | 1.9 | 1.3 | 1.2 |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매년 검사물량을 확대하여 왔으나, 2012년 이후 안전성 검사 부적합률이 답보 상태에 있어 단순히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농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품('19년 761건)의 시장출하를 사전 차단하고, 로컬푸드, 수출농산물 확대 등 정책과 연계한 안전성조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책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특히, PLS 전면시행('19.1.1)에 대비하여 농약안전사용 교육·홍보에 집중한 결과 전년대비 부적합률이 0.1% 감소('18년 1.3% → '19년 1.2%)하였다.

'20년 조사물량은 6만건으로 계획하고, 농가 교육·홍보를 통해 생산자가 주체적으로 예방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농약안전사용 지도 등을 강화하고 있다.

부적합품 유통 사전차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 이력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상시 관리하고, 전년도 부적합 발생농가나 외부 조사기관에서 부적합 통보된 농가를 우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사무관 김종수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는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소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와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 및 토양과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 미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소비기반을 구축하고 국민들의 농식품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제도의 목표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06년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시행 이후 안전농산물에 대한 생산자·소비자의 관심 증대와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매년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표1).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농산물의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GAP 시설보완사업을 통해 GAP 지정을 받았거나 희망하는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GAP 인증에 대한 농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4년에 GAP 인증 절차를 간소화(구비서류: 12종→3, 인증기간단축: 최대126일→42)하였으며, '15년~'19년에는 대형마트·급식업체와 협업을 통해 GAP 농산물 판촉전 및 홍보캠페인 등 추진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마트 자체 품질관리 기준(QC)에 GAP 기준을 반영하는 등 생산·유통 부분 전반에 걸친 정책 지원과 민관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GAP 홍보와 교육 목적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전문강사 육성, 유통·급식업체MD·학교 영양사·도매시장 관계자 교육 실시, TV·라디오·KTX 방송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생산·유통·소비 전 분야에서 GAP 제도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표 2-5-2〉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추진 실적

|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1) 인증기관(개소) | 49 | 51 | 48 | 44 | 44 | 46 | 52 | 55 | 62 |
| 2) GAP관리시설(개소) | 606 | 718 | 756 | 681 | 717 | 802 | 799 | 805 | 817 |
| 3) 인증 농가수(호) | 37,146 | 40,200 | 46,000 | 46,323 | 53,583 | 74,973 | 86,091 | 86,789 | 99,050 |
| 4) 인증 면적(m ²) | 46,701 | 55,000 | 58,703 | 58,763 | 65,410 | 88,859 | 103,270 | 101,815 | 112,106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평가 및 향후계획

유통의 국제화와 무역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농가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존 정책사업과의 연계하여 GAP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마트, 급식업체 등 소비접점에서 GAP 농산물 취급 확대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GAP 인증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GAP 인증 농가의 안정적인 수요처도 발굴·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GAP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 관계기관, 농협, 유통·급식업체 MD 등 대상별 맞춤형 GAP 훈련·교육을 강화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내 GAP 농산물 전용 매대 설치, 온라인 광고 등을 활용한 GAP 캠페인 및 판촉전 개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GAP 인증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질적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단체인증 농가의 ‘내부심사자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관리

■ 검역정책과 사무관 황진원

◆ 추진 배경 및 개요

2008년 1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수입 및 생산되는 모든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 LMO)의 안전관리를 위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림축산환경 유지를 위한 농림축산업용 LMO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림축산업용 LMO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검역본부, 농관원, 종자원)과 농촌진흥청의 소관업무 특성에 따라 LMO 안전관리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입·생산, 국경검사 및 국내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농진청은 연구개발 및 환경위해성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농림축산업 관련 연구시설 설치·운영 및 연구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예방 등 해당 연구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하여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책임자 및 취급관리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환경위해성심사는 농림축산업용 LMO를 국내 수입 또는 생산할 때 환경에 방출되거나 방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LMO 개발회사가 제출한 위해성평가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심사하는 절차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3-1조에 따라 환경에 대한 위해성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며, '19년 12월 기준 콩 29종, 옥수수 87종 등 총 5작물 168종에 대해 사료용으로 위해성심사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위해성 심사기관에서는 위해성심사에 따른 위탁 포장시험의 수행과 위해성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위해 분야별·품목별로 환경위해성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환경위해성 평가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경검사를 통해 국내에 수입되는 농림축산업용 LMO가 수입 승인된 품목 인지 여부와 미승인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2019년 1년간 7,108건, 9,720천톤(2018년은 6,372건, 9,332천톤)에 대해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15건 243,218kg(6건, 6,696kg)불합격 처분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생산된 사료용 LMO의 국내유통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 및 수시 유통조사를 통해 승인용도 외 사용 및 환경방출 여부 등을 조사·관리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 첫 해인 2008년부터 매년 민·관 합동으로 사료용 LMO 수입·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실태를 자체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부터는 LMO 안전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NGO, 소비자단체 등 참여단체를 확대하여 취급업체 주변 낙곡 및 자생체 등 합동 모니터링('19년 186지점 중 9지점 LMO 발견·제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관원 자체 상시 조사·점검을 통해 관리소홀 등 LMO법 위반업체를 고발조치('19년 3건)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LMO 혼입 우려가 있는 작물에 대하여 유통종자 검정('19년 콩 10건 등 6작물 53건을 조사한 결과, LMO 미검출)과 전국 재배지 조사('19년 유채 520개소, 면화 49개소 총 569개소를 점검한 결과, LMO 미발견)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배농가 대상으로 파종 전 LMO 무상검사('19년 면화 4건을 조사한 결과, LMO 미검출)도 지원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GM작물 재배가 증가하고 있어 LMO의 국제교역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사료용 농산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LMO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향후 변화를 반영한 제3차 LMO 안전관리계획(2018~2022)에 따라 국경검사·국내 유통관리 및 LMO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안전관리체계의 강화, 농림축산업용 LMO에 대한 새로운 수요 등에 대응하는 한편, 관련 법령정비와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들과 소통강화 등 LMO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5.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사업 및 소비정보망(웹) 활성화

■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서기관 신지영

◆ 추진 배경 및 개요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확대되고 농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식품이 과거 양적인 부족시대에서 질적인 성장단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가 농식품 정책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생산이 곧 소비로 직결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농식품만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경쟁시장에서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고, 소비자는 소비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산·유통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등 그 역할이 강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서 ‘농식품 소비정보망(웹) 활성화’ 및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지역·현장 중심의 합리적 소비문화 조성 및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위해 중앙·지역간 역할을 분담하여 소비자 역량강화를 도모하였다.

중앙에서는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직불) 기능과 가치확산 교육 및 원산지인증제 활성화 홍보’, ‘GAP 소비자 리더 육성’, ‘꽃 생활화 및 신화환 보급 확산 홍보’ 등 13개 과제를 추진하였고, 지자체에서는 농식품 스마트소비 사업을 통해 지역의 소비자단체와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원산지표시제도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단체와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농식품 및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소비자 교육강사(농사랑알리미)를 136명 육성하여 총 262회에 걸쳐 7,062명의 소비자 교육(로컬푸드, 원산지표시, GAP제도 등)을 실시하였다.

올바른 농식품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농산물의 영양, 효능, 선택법, 대표적 요리법을 알리는 '제철 농산물 포스터'를 월별로 제작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지자체, 쌀 중심 식습관 교육학교 등 713개소에 배포하고 있고, 농식품 주요 소비정책을 안내하는 영상제작, 소비자 인식 확산을 위한 소비자 참여 독자후기, 퀴즈이벤트 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농식품 소비자 정책포럼, 발전방안 워크숍, 소비자단체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비자단체와 농식품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농정 현안 공유 등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농업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하였다.

▶ 농식품 소비정보망(웹) 활성화

'농식품 소비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 www.foodnuri.go.kr)'을 구축·운영하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 영양, 가격, 활용법 등의 농식품소비·식생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를 확산에 기여하였다.

농식품 소비정보망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농식품 안전성, 영양, 활용, 농식품 인증 및 원산지 정보 등 다양한 농식품 정보를 체계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엄선된 농식품·식생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자발적 유입을 촉진시켰다. 또한 민원처리 프로그램(챗봇) 도입 및 홈페이지 메인화면 UI/UX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였다.

분기별(연4회) 제작·배포하고 있는 농식품 전문매거진 '농식품 소비공감'은 농식품 소비트렌드,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농촌문화유산 소개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 활동을 돕고 농업·농촌 가치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제16회 국제 비즈니스 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3개 부분 금상('19.10)과 제29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전자사보(웹진)부분 기획 대상 국회 스마트컨버전스연구회장상('19.12.)을 수상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사업 과제를 기존 식생활소비 한 영역에서 농식품 전 영역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농식품 정책 전반에 대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였고, 제철 농산물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여 국산 농산물 정보 제공과 소비촉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소비자 수요 및 편의를 고려하여

농식품 정보누리 웹사이트를 개편함으로써 농식품 정보망 운영 및 소비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이에, 201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상 총 181개 과제에서 총 5등급 중 최고 등급인 '매우우수' 12개 과제에 농림축산식품부 5개 과제 중 '농식품 소비·식생활 정보 제공' 과제가 유일하게 포함되었다.

향후에도 소비자단체 협력과제 및 농식품 스마트 소비 사업을 통한 소비자 교육·홍보를 활성화 하고, 제철 농산물 포스터 및 농식품 소비공감 배포처 확대와 농식품 정보누리 웹사이트 활성화를 통해 농식품 소비·식생활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등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6. 축산물 이력제 추진

■ 축산경영과 사무관 도재규

◆ 추진배경 및 개요

유럽,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국내산 쇠고기를 시작으로 수입산 쇠고기, 국내산·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까지 순차적으로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08년 12월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국내산 쇠고기이력제의 기반 마련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수입산 쇠고기이력제를 시행하였고, 2013년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변경하면서 국내산 돼지고기이력제를 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수입산 돼지고기까지 이력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AI 및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한 안전성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2017년에 가금이력제 도입 타당성 및 적용방법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2018년 전국 가금농장 11,056곳을 조사하여 7,408개소에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닭 10개소, 산란계 7개소 등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8.12.)을 통해 가금이력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유통·판매단계까지 시범사업을 확대·실시하여 도축장 31개소, 포장처리업소 35개소, 식용란선별포장업체 52개소 등 총 171개소에 이력번호 표시장비를 지원하였으며, 포장처리 결과 등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시범사업자의 ERP 연계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공포('19.12.31)하여 닭·오리의 사육현황·이동 등의 신고절차와 도축·포장처리·판매 단계에서의 이력번호 표시 및 포장처리 신고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축산물이력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가축거래상인이 이력 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에 신고토록 의무화하였다.

〈표 2-5-3〉 축산물이력제 단계별 운영현황('19.12월 기준)

| 구 분 | 농 장 | | 도축장 | | 전산신고 등록 유통업소 | | |
|-------|--------|-------|-----|----|--------------|-------|-------|
| | 소 | 돼지 | 소 | 돼지 | 계 | 포장처리 | 판매 |
| 2017년 | 99,168 | 6,562 | 64 | 71 | 3,430 | 1,434 | 1,996 |
| 2018년 | 95,916 | 6,176 | 61 | 71 | 3,574 | 1,496 | 2,078 |
| 2019년 | 94,525 | 6,327 | 62 | 72 | 3,990 | 1,824 | 2,166 |

자료 : 이력관리시스템

◆ 평가 및 향후 계획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수입에서부터 도축·포장·판매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둔갑 판매 등을 방지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0년에도 가금·농가, 식육판매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등 신규 의무이행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선별포장처리업체 등에 이력번호 표시장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가금이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2-5-1〉 축산물 이력정보 조회방법



제2절 가축방역 및 동식물 검역검사 강화

1. 가축질병 방역강화

■ 구제역방역과 서기관 정승교, 사무관 이용진, 사무관 신만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서기관 황성철

◆ 추진 배경 및 개요

국내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 및 관련 산업에 피해가 커짐에 따라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질병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구제역 >

구제역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11차례 발생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발생기간과 살처분 가축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에는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경기 안성 및 충북 충주에서 O형 구제역이 3건 발생하였다.

<표 2-5-4> 연도별 구제역 발생현황

| 구 분 | 발생 건수(건) | 발생기간(일) | 살처분 가축수(천마리) |
|----------|----------|---------|--------------|
| '10~'11년 | 153 | 145 | 3,480 |
| '14~'15년 | 188 | 162 | 170 |
| '16년 | 21 | 45 | 33 |
| '17년 | 9 | 9 | 1.4 |
| '18년 | 2 | 7 | 11.7 |
| '19년 | 3 | 4 | 2.2 |

1.28일 안성 젓소 농장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인접지역인 충청남·북도, 세종·대전 지역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1.28~1.29, 24시간) 하고 안성 지역의 우체류 가축 및 생산물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1.29일 안성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여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였으며, 1.31일 충북

충주에서 세 번째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가축과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1.31~2.2, 48시간)하고, 가축시장 폐쇄조치 및 축산농장 모임금지(2.1~2.21, 3주간), 전국 소, 돼지 1,383만두에 대한 긴급백신접종(1.28~2.3)을 실시하였으며, 방역기관 소독차량뿐만 아니라 군 제독차량, 농약살포차량, 드론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여 매일 일제소독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국 포유류 도축장(83개소)에 시군 소속 소독전담관(도축장당 1명)을 배치하여 소독 적정여부를 관리하였으며, 설 연휴 이후 개장 전에는 일제소독(2.6~2.7)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4일간 추가 발생이 없어 이동제한 범위를 당초 발생 시군 전 지역에서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로 조정하였으며(안성 2.14, 충주 2.15), 이동제한 해제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2.25일부터 안성시와 충주시의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위기단계도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되었다.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행안부, 국방부, 경찰청)에서도 소독 등 방역조치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민간부분(수의사, 농협 등)에서 백신접종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발생초기부터 SOP와 위기단계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강력한 방역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2019년 구제역이 초기에 적은 피해로 마무리 된 것으로 평가된다.

성공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19.6월) 하였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백신접종 여부 관리 강화를 위해 항체검사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소 농가에 대한 항체검사는 기존 2.2% 수준에서 12%로 확대하고 돼지 농가는 연간 검사 횟수를 기존 3회(농장 2·도축장 1)에서 4회(농장 2·도축장 2)로 강화하도록 하였다. 백신접종 명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기존에는 위반 횟수별로 최소 20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부과했으나, '19.7.1일부터는 최초 위반 시 500만원까지 상향하였다. 또한, 구제역 발생 시 발생 지역에 인접한 시군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운반 차량에 대해 1일1농장 운행토록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최초 발생 시 해당 시도의 가축 시장을 우선 폐쇄하고 다른 시도에서 추가 발생 시에는 전국 가축시장을 폐쇄하도록 하였고, 의심신고 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과 농협 공동방제단을 함께 투입하여 초기에 소독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살처분 참여자에 대해서는 치료지원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심리적 치료 신청기간(6개월)도 폐지하였으며, 추가적인 심층치료 비용 발생 시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개선하였다.

〈 조류인플루엔자 〉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2018년 3월 17일, 충남 아산의 산란계 농장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해외에서 도래하는 철새 등으로부터 국내 유입되어 축산차량과 사람 등 매개체를 통해 농장 내로 유입된 것이 주요 발생 요인으로 분석되어 있다. 따라서, 2019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럽과 주변국 등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 나가고 있다.

〈표 2-5-5〉 연도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현황

| 구 분 | 발생 건수(건) | 발생기간(일) | 살처분 가축수(만마리) |
|----------------------|----------|---------|--------------|
| '14.01.16.~'15.11.15 | 391 | 517 | 2,477 |
| '16.03.23.~'17.06.19 | 421 | 170 | 3,807 |
| '17.11.17~'18.03.17. | 22 | 121 | 654 |

그간 연도별 고병원성 AI 확산과 대규모 피해의 원인으로 방역인력 부족 등에 따른 살처분 지연, 밀집사육으로 인한 축산업의 구조적 한계, 농장의 차단방역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를 극복하고자 2014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대책이 마련된 지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7년 6월 전통시장과 거래하는 소규모 농장 등 방역이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총 36건의 고병원성 AI(H5N8형)가 다시 발생하였다.

AI 등 거듭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방역업무를 전담하는 방역정책국이 2017년 8월 신설되었고, 언제든지 AI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존의 대책을 보완하는 AI 방역종합대책이 2017년 9월 마련되었다. 또한, 2017년 겨울철에는 2018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AI 위험지역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휴업보상제), 거점소독시설 조기 설치, 도축장 검사강화, 전통시장 오리류 유통 금지 등 AI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였다.

2017년 11월 17일,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H5N6형)가 다시 발생하였으나, 농식품부는 AI 방역매뉴얼(긴급행동지침) 보다 1~2일 빠른 초동 대처와 오리 사육제한, 신속하고 과감한 살처분 등 예전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통해 2018년 3월 17일까지 총 22건의 발생으로 AI 확산을 차단하여 이전 발생시기('16.3.~'17.6.) 대비 발생 건수를 95%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8년 7월 AI 청정국 선언 이후 비발생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관 협업을 통한 상시 방역관리체계 구축으로 AI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이전에 없던 질병으로 중국, 베트남, 북한 등 주변국에 발생하다가 우리나라에서도 19년 9월 16일에 처음으로 발생하였으며, 10.9일까지 23일간 14건 발생한 뒤 현재까지는 양돈농장에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지역별 발생 건수는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이었다.

〈표 2-5-6〉 연도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

| 구 분 | 발생 건수(건) | 발생기간(일) | 살처분 가축수(만두) |
|--------------------|----------|---------|-------------|
| '19.9.16~'19.10.9. | 14 | 23 | 38 |

ASF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치사율도 100%에 육박하는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8월 중국에서 첫 ASF가 확인되자마자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제도와 인프라를 마련하고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관리 노력을 해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18년에 제정하고, '19년에 추가 보완하였으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유럽 발생국가 현지조사 등을 통해 '19년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을 마련하고, ASF의 주요 전파요인인 남은음식물류폐기물 공급을 제한(돼지사료 사용금지)하는 내용으로 19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19년 5월 북한에서 최초로 ASF 발생이 확인되자마자 북한 접경지역 시군인 강원, 경기북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주요 도로 등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강원도·경기도·인천광역시에 방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접경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상시 예찰과 정밀검사, 현장 방역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9년 9월 16일, 경기도 파주 소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하였으나, 발생 즉시 가축질병위기경보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농식품부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농식품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7차례 실시하고, SOP보다 과감한 발생시군내 모든 돼지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 조치,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을 구분한 ASF전파요인인 차량, 돼지, 분뇨의 통제 조치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역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는 발생한지 23일만에 접경지역 외 농장으로 전파를 차단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ASF는 현재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뿐아니라, 유럽 등 전세계에서 지속 발생 및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야생멧돼지와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는 상황이므로 현재도 방역당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며, 사육돼지로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표 2-5-7〉 국내 야생멧돼지 및 환경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현황

| 구 분 | 발생 건수(건) | 발생기간 | 비고 |
|-------|----------|-------------------|-----------------|
| 야생멧돼지 | 740 | '19.10.2~'20.9.20 | 멧돼지 폐사체 또는 포획개체 |
| 환경 | 34 | '19.12.3~'20.8.19 | 토양, 수질, 분변 등 환경 |

〈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

소 브루셀라병은 *Brucella abortus*가 원인체인 세균성질병으로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이자 사람의 제3군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2004년부터 근절을 목표로 양성축 살처분과 거래 시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 도태 등의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13년부터 브루셀라병 양성율은 0.1%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발생감소를 위해 집단 발생 농가와 반복 발생농가 등에 대해 관리농가로 지정하여 검사를 강화(종전: 연1회 이상 1세 이상 한육우 암소 검사 → 강화 : 3년간 연2회 이상, 한육우 거세우를 제외한 전두수 검사)하고, 신규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발생 후 1개월 내에 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며,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으로 브루셀라병 검사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17.10월)하여 추진하였다. 아울러, '18.6월 고시를 개정하여 브루셀라병 발생농가의 도태규정을 보완(균분리검사에서 균이 확인될 경우 동거축 도태 권고 가능)하고, 발생농가 가축 재입식 전에 소독상태를 점검토록 하며 감염소의 유사산이나 3회 이상 반복 발생 또는 사육두수의 1/3이상 감염 등 감염위험농가에 대해 환경내 균분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생을 감소를 위한 발생농장·지역 중심의 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5-8〉 연도별 소 브루셀라병 발생현황, KAHIS

| 구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 건수(마리수) | 84(723) | 54(385) | 51(480) | 92(686) | 63(622) | 64(604)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소 결핵병은 *Mycobacterium bovis*가 원인체인 세균성질병으로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이자 사람의 제3군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결핵병은 만성 소모성질병으로 가축에게 있어 걸으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이나 쇠약, 마른 기침 등이 나타나므로 농가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표 2-5-9〉 연도별 소 결핵병 발생현황, KAHIS

| 구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 건수(마리수) | 430(4,109) | 338(2,885) | 354(3,239) | 443(3,497) | 427(2,789) | 430(3,919)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이에 따라 우리부는 결핵병 발생 감소를 위해 '16년11월부터 한육우에 대한 결핵검사를 강화하였다. 한·육우는 종전 연30만두 수준으로 모니터링 검사만 하였으나 1세 이상의 거래되는 한·육우에 대해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여 약 80만두 이상('19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과 마찬가지로 결핵병 신규 발생농가에 대해서도 발생 후 1개월내에 농장의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토록 하고, 민관 합동으로 농가를 교육·홍보하고 있다.

우리부는 앞으로도 소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발생 감소를 위해 발생지역과 농가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 전 소독 점검과 발생농장에 대한 도태 권고 규정 개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 소 해면상뇌증(BSE) 〉

소 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BSE)는 프리온이 원인으로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국내는 비발생으로 '14년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위험무시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위험무시국'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7년간 30만점 이상의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3~'19년까지 약 35만57백점을 획득), 2003년부터 농장과 도축장에 사육(계류) 중인 가축에 대해 가축방역관이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BSE 발생국산 수입소와 해당 소로부터 태어난 송아지(F1)에 대해 검사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표 2-5-10〉 OIE의 위험무시국 지위요건(예찰점수 산정기준): 7년간 30만점 이상 검사

| Age (year) | 정상도축 소 (Routine slaughter) | 폐사 소 (Fallen stock) | 사고 소 (Casualty Slaughter) | 유사증상 소 (Clinical suspect) |
|------------|----------------------------|---------------------|---------------------------|---------------------------|
| 1≤age<2 | 0.01 | 0.2 | 0.4 | N/A |
| 2≤age<4 | 0.1 | 0.2 | 0.4 | 260 |
| 4≤age<7 | 0.2 | 0.9 | 1.6 | 750 |
| 7≤age<9 | 0.1 | 0.4 | 0.7 | 220 |
| 9≤age | 0.0 | 0.1 | 0.2 | 4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우리부는 앞으로도 소해면상뇌증(BSE) 위험무시국 지위 유지를 위해 검사와 예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정부는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19년 9월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ASF의 사육돼지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접경지역 농장내 축산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정부 주도로

방역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자율 방역을 강화하고, 농협·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민간 방역기관과 정부간 그리고 정부 부처 간에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선진화된 방역체계가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2. 동물 및 축산물 검역검사 강화

■ 검역정책과 사무관 이재명

◆ 추진 배경 및 개요

2019년 현재 유럽, 중국, 아프리카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이 확산되고 있고, 구제역도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 몽골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이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경우 철새의 이동경로 아래에 놓인 국가들에서 발생되고 있어 이들 질병 발생 국가들로부터 가축전염병의 유입 위험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다수 국가와 FTA가 체결되어 축산물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 발전으로 인한 해외직구 등 국내 소비자 구매 형태 변화에 따른 수입국과 수입품목의 다변화로 가축전염병의 유입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와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축산업의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수입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검역을 강화하고 철저한 국경 검역조치를 통해 해외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해외 ASF 발생동향을 꾸준히 확인하여 ASF발생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ASF 모니터링 검사 등 검역을 강화하였다.

ASF 발생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로는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금지를 7.26 일자로 시행하였고, ASF 발생국산 돼지혈액 분말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10.9일 시행하였다.

ASF 유입방지를 위한 ASF 모니터링 및 정밀검사 등 검역강화 조치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베트남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베트남산 양돈용 수입사료에 대해 ASF 모니터링 검사를

2.19일부터 실시하고, 중국에서 가공한 후 국내로 수입되는 양 장(케이싱)의 생산과정에서의 ASF 교차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되는 양 장(케이싱)에 대해 ASF 정밀 검사는 2.22일부터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에서 자국 무역항에 도착한 중국산 돼지고기 454톤을 압수했다는 내용에 따라 3.18일부터는 국내 수입되는 모든 돼지고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사항 확인 등 수입검역을 강화하고, EU 내 ASF 발생 확산 가능성으로 인해 EU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무작위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4.19일부터는 기 실시중인 베트남산 양돈용 수입사료 모니터링 검사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산을 추가하여 양돈용 수입사료 모니터링 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4.25일부터는 중국에서 화북 지역의 각종 사료 원료에 대한 ASF 검사 결과 옥수수에서 일부 ASF 양성결과가 나오에 따라 중국산 사료용 옥수수에 대한 ASF 검사를 추가 실시하였다. 5.24일에는 수입 톱밥을 통한 ASF 유입방지를 위해 중국과 베트남산 미소독 톱밥에 대해 ASF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7.5.에는 필리핀에서 수입한 독일산 돼지고기에 ASF 발생국인 폴란드산 돼지고기가 혼입되어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국내 수입되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 폴란드산 돼지고기 혼입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업체인 ProFood社에서 수입된 모든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ASF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수입사료를 통한 ASF 등 가축질병의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조사료를 통한 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ASF 발생국산 조사료를 수입할 경우 해외 수출작업장 승인 및 열처리 조건을 준수하도록 ASF 발생국가를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적용대상국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11.7) 하였다.

2019년에는 수입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HPAI 발생으로 인해 가금 등의 수입이 금지되었던 국가(독일, 필리핀)에서 마지막 HPAI 발생농장의 소독조치 완료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나 HPAI 청정선언을 함에 따라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청정성 회복 여부를 평가하여 4.16일 독일산 가금류 및 식용란의 수입이 재개되었고, 필리핀산 닭고기 및 애완조류는 7.4일 수입을 재개하였다.

EU 회원국 중 네덜란드, 덴마크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가 통과되어 네덜란드 및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5.3일 제정·고시하고 수출작업장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도 완료하여 EU(네덜란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2-5-11〉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 추진 현황

| 구 분 | | | '15 | | '16 | | '17 | | '18 | | '19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동물 | 수출 | 마리 | 10,865 | 207,382 | 12,320 | 181,711 | 14,611 | 166,281 | 16,563 | 164,922 | 17,699 | 162,092 |
| | | 군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 | 마리 | 9,657 | 1,628,225 | 9,908 | 1,505,157 | 10,409 | 7,517,419 | 10,517 | 1,007,079 | 12,067 | 923,768 |
| | | 군 | - | - | - | - | 2 | 204 | - | - | 1 | 200 |
| 계 | 마리 | 20,522 | 1,835,607 | 22,228 | 1,686,868 | 25,020 | 7,683,700 | 27,080 | 1,172,001 | 29,766 | 1,085,860 | |
| | 군 | - | - | - | - | 2 | 204 | - | - | 1 | 200 | |
| 축산물 | 수출 | 톤 | 17,805 | 210,289 | 19,753 | 221,709 | 18,145 | 205,566 | 20,428 | 250,739 | 22,349 | 272,101 |
| | | 천개 | 5 | 4 | 62 | 93 | 50 | 80 | 18 | 25 | 49 | 2,844 |
| | 수입 | 톤 | 169,315 | 2,438,916 | 189,275 | 2,555,237 | 197,402 | 2,918,096 | 241,244 | 3,022,317 | 235,326 | 2,982,334 |
| | | 천개 | 409 | 1,338 | 420 | 1,390 | 687 | 4,764 | 480 | 1,713 | 474 | 1,624 |
| | 계 | 톤 | 187,120 | 2,649,205 | 209,028 | 2,776,946 | 215,547 | 3,153,662 | 261,672 | 3,273,056 | 257,675 | 3,254,435 |
| | | 천개 | 414 | 1342 | 482 | 1,483 | 692 | 4,844 | 498 | 1,738 | 523 | 4,468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통계

한편, 해외로부터 ASF, 구제역, 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 및 검역탐지견을 활용하여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축산물을 휴대하여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공익방송 등 언론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시 여권 내 검역 홍보스티커 부착, 기내방송 등을 실시하여 국내 입국 시 휴대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축산관계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공항·항만 동물검역기관에 신고 후 소독을 받을 수 있도록 국경검역관리시스템(KAQIS)이라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축산관계자 입국 신고율(2019년 기준 100%)을 높게 유지하는 등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국경검역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해외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정보를 OIE 및 각국 검역기관 홈페이지, 해외 언론매체를 통해 수시로 파악중이며,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검역시스템을 강화·운영 중이다, 선제적인 국경검역 강화 조치로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공항·항만 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경검역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주요 공항·항만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와 함께 국경검역관리시스템을 통해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등에 대한 소독 등 검역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검역탐지견 투입과 X-ray 검색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외국 방문 시 축산농가 출입 자제 등에 대한 국경검역 교육 및 홍보활동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외 위생정보에 대한 수집·검색을 강화하고, 법무부, 국토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경검역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더불어 과학적이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수입허용절차의 진행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및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상대국 수출 단계에서 해외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 강화를 통한 수입위생조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도착 시 철저한 수입검역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 및 축산물 검역체계 제도개선 통해 수입검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식물검역 강화

■ 검역정책과 사무관 황진원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등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식물검역을 실시하여 왔다. 1900년대부터 2019년까지 91종의 외래병해충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198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소나무재선충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정 후 2019년까지 약 1조3349억원을 투입한 만큼 방제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외래병해충은 유입시 농작물, 산림에 직접적인 피해로 수확량 감소, 방제비용 증가, 농산물 수출중단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물론 약제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등 자연환경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최근에는 FTA체결국 확대 등에 따른 농작물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경제발전에 따른 해외여행객 증가와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인해 위험도가 높은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이 한층 증가하고 있다. 외래병해충의 유입 경로는 수입식물뿐만 아니라 기류, 선박, 컨테이너 등 운송수단과 해외여행객이 무심코 가지고 입국하는 과실 등 매우 다양하여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철저한 국경검역을 통한 국내 유입 차단과 정밀한 예찰 및 신속한 방제를 실시하여 국내 정착 및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수입되는 식물류는 수입 전부터 수입 후까지 철저한 국경검역을 실시한 후 우리나라로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수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금지 품목은 과학적이고 정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수출국 현지에서 저온처리, 증열처리 등 사전 소독실시, 우리나라 검역관에 의한 수출국 현지에서 검역실시 등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하여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모든 수입 식물류는 도착지 공항·항만에서 철저한 현장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여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의 병해충 발생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또는 해외거주 해외병해충 모니터요원 등을 통해 입수하여 병해충 발생 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주식물(寄主植物)에 대한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식물 신고, 반입자제 등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외래병해충 발생국가 또는 휴대식물 반입량과 여행객이 많은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항공기·선박 노선에 대해 검역관 증원 배치,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 등을 통하여 불법 휴대식물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표 2-5-12〉 수출입 식물검역 실적(화물+휴대+우편식물)

| 구 분 | 단위 | 연도 | '00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 | | | 합계 | 건수 | 천건 | 306 | 4,205 | 3,579 | 3,904 | 4,249 | 4,211 |
| 수출 | 건수 | 천건 | 76 | 73 | 71 | 75 | 80 | 89 | 100 | 130 | 192 |
| 수입 | 건수 | 천건(C) | 230 | 4,133 | 3,508 | 3,829 | 4,169 | 4,122 | 4,859 | 4,488 | 4,684 |
| | 검역처분 | 천건(D) | 28 | 89 | 110 | 125 | 132 | 161 | 169 | 217 | 228 |
| | 처분비율 | (D/C,%) | 12.2 | 2.2 | 3.1 | 3.3 | 3.2 | 3.9 | 3.5 | 4.8 | 4.9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통계

〈표 2-5-13〉 수입식물에서 발견된 병해충 실적

| 단위 | 연도 | '00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 | 계 | 종수 | 360 | 624 | 625 | 645 | 693 | 712 | 718 | 748 |
| 건수 | | 6,233 | 9,824 | 7,494 | 7,850 | 12,074 | 13,529 | 12,586 | 13,680 | 15,876 |
| 병 | 종수 | 70 | 119 | 115 | 112 | 135 | 107 | 108 | 121 | 109 |
| | 건수 | 1,295 | 1,309 | 1,342 | 2,025 | 3,398 | 3,894 | 3,512 | 3,840 | 4,356 |
| 해충 | 종수 | 290 | 505 | 510 | 533 | 558 | 605 | 610 | 627 | 721 |
| | 건수 | 4,938 | 8,515 | 6,152 | 5,825 | 8,676 | 9,635 | 9,074 | 9,840 | 11,520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통계

한편, 국경검역 단계에서 검출하지 못한 병해충과 기류 등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방제하기 위해 농경지(농촌진흥청), 산림지(산림청), 국제공항·항만·격리재배검역지·수출단지(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해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예찰트랩 운영 및 예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외래병해충의 국내 정착·확산을 방지해 나가고 있다. 특히, '17년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붉은불개미가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전국 공항만 및 주변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였다. 또한 붉은불개미 유입 우려 15개 품목에 대한 검역 강화, 미가공 자연석 석재 및 중고 농기계·건설기계 등 병해충 전염 우려 물품에 대한 검역을 시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천항·부산항으로 수입된 중국산 고무나무묘목, 대나무, 크로톤묘목, 조경용 석재 등의 수입화물과 평택항·부산항·인천항의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를 발견하고 긴급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붉은불개미가 국내에 유입 확산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였다.

한편, 우리농산물의 수출확대와 신규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검역 협상을 적극 추진하여 '15~'19년 딸기(캐나다·베트남·호주), 배(브라질·아르헨티나·인도), 토마토(페루), 한라봉·천혜향·심비디움묘·호접란묘·파프리카(미국), 쌀·포도·파프리카(중국), 버섯류(브라질·멕시코), 다육식물·참다래(대만), 거봉포도(호주), 인공씨감자(콜롬비아) 등의 수출검역 요건을 타결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농산물 수입증가 등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위험요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유해한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과 국내 대응체계 강화, 농산물 수출활성화 및 검역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재수출을 목적으로 반입되는 금지품 종자의 수입허가제 도입, 미가공 자연산 석재에 대한 병해충전염우려물품 수입검역 실시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현장검역 및 정밀검역 방법 보완, R&D역량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식물검역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매년 급증하는 검역업무량에 비해 조직과 인력 확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식물검역 업무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인력운용 효율화 대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우리나라로의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 및 유입 시 조기 탐지를 통한 신속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역시스템을 지속 보완하고 있으며, 관련기관, 학계, 수입업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식물검역 강화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지자체, 학계, 농가,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역량의 효율적 활용과 제도개선을 통해 식물검역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

또한, 식물검역의 과학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병해충위험분석 기능 보강, 첨단 검역장비 확충, 선진 검역기술 개발 등 식물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과 국내 대응체계 강화 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중고차 등 병해충 및 흙 부착 등이 우려되는 비식물성 물품을 병해충전염우려물품으로 추가 지정하여 검역을 시행하고, 늘어나는 수출입 검역수요에 대응하여 저위험 수입식물에 대한 서류검역 대상 확대 등 병해충 위험도에 따라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축산물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 농축산물품질위생관리팀 사무관 이병용

◆ 추진 배경 및 개요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축 사육 단계부터 최종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평가하여 그 위해요소를 사전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충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to-Table) 위생·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생산단계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육 및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를 지속 실시하였다. 특히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는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잔류위반 농가나 긴급 도축, 주사지국이 있는 경우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를 확대하였다.

식용란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살충제 성분 검사, 진드기 방제 매뉴얼 배포, 효과적인 방제약품 보급, 사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부적합 농가가 '17년 78농가에서 '19년 2농가로 감소하였다.

원유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국가 잔류물질검사 제도(National Residue Program, NRP)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18년도 1차 시범조사에 이어 2차 시범조사를 통해 낙농가의 원유에 대한 항생물질, 농약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농가가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항생제 휴약기간 준수요령, 안전사용규칙에 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였다.

축산농장에서부터 위생 및 안전관리 기반이 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확대를 위해 HACCP 적용을 희망농가에 대해 전문 컨설팅 제공, 지도·홍보 등을 통해 HACCP 농장이 2012년 5,977개소에서 2019년 7,548개소로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아울러, HACCP 의무 적용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관리 제고를 위해 조사·평가와 위생감시를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도록 지도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20년도에도 가축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위생·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단계 식용란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20.7월부터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체계를 구축·도입하고, 식육의 잔류물질 관리를 위해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5.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김철기

◆ 추진배경 및 개요

EU와 OIE(세계동물보건기구)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복지시책이 강화되고 있다. 우선 2004년 EU헌법에 동물의 보호·복지 조항 명문화가 추진되었으며, 2006년에 EU집행위원회는 동물복지 제1차 5개년 행동계획 2006~2010을 발표하였다. EU는 화장품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2004년 화장품 완제품, 2009년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였고 2013년부터는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수입·판매를 금지하였다. 또한 2012년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2013년에는 돼지 스톨 사육을 금지하는 등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OIE에서는 2002년부터 동물복지 작업그룹을 중심으로 육상·해상·항공 운송, 도축, 질병 방역 목적의 살처분 등 9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여 2006년에 이를 제정하였으며, 육우 및 육계의 동물복지 생산시스템(Animal Production System)에 대한 지침도 추가 제정하였다.

국내의 경우 소득증대, 저출산·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되지 않아 유기·유실동물 및 동물학대가 증가 추세에 있고, 목줄·배설물 수거 등 동물소유자 의무 위반,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숫자는 바이오산업 등 활성화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물실험의 정당성·유용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동물실험 반대활동 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축산업은 그간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사양관리에 치중하여 여전히 동물복지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5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유실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도입한 동물등록제를 201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였고, 2019년 기준으로 약 209만 마리가 등록되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관리함으로써 잃어버린 동물을 신속하게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동물등록제도를 통해 2019년 발생한 유실·유기동물 약 135천 마리 중 소유주에게 반환된 동물은 약 16천 마리로 집계되었다.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부는 2012년 산란계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 젓소, 염소, 2016년 오리도 대상 축종을 확대하고 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란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관리의무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 대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에 해당내용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2019년 기준으로 144개 산란계농장, 89개 육계농장, 18개 양돈농장, 11개 젓소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육류 축산물에 동물복지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사육과정 뿐만 아니라 운송·도축단계에서도 동물복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물복지 운송차량·도축장 지정제를 2013년 10월에 도입하여 2019년 현재까지 7개 도축장과 239대 운송차량을 지정하였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동물실험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부는 윤리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 또한 동물실험의 3R원칙(동물실험 대체, 실험 동물수 최소화, 실험동물의 고통 최소화)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급하고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20년부터는 미성년자가 동물을 이용한 해부실습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초·중·고등학교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하였으며, 동물해부실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불필요하게 동물이 희생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동물보호법 개정 및 시행을 통해 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의 등록과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2009년부터 지자체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강원 등 9개소에 약 4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보호법령 및 관련 정책 이해도 제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다. 초·중·고등학생,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TV, 라디오, SNS, 영화, 입양캠페인, 사생대회 등 동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물보호·복지정책에 관한 정보의 통합 관리·공개 및 안내를 위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및 동물보호 상담센터(1577-0954)도 운영 중이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법령 등 제도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 유기금지, 안전조치의무 등 소유자 의무 이행을 위해 지도·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소유자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입양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유기·유실동물 입양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신규 서비스업 등록제(반려동물 미용업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반려동물 서비스업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관련 서비스업 창업 및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제3절 친환경농업육성

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정세희

◆ 추진 배경 및 개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농업환경 개선·보전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의 목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중·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유통·가공 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1995년에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 도입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1998년부터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대규모지구조성사업과 소규모지구조성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2004년부터는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농업 대·소규모 지구사업을 개편하여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사업방식도 지역 영농기반과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추진을 허용하고 사업비 또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2006년부터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정책추진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과는 별도로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광역단지 사업의 효율적 내실화를 위해 광역단지사업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을 통합하고, 우수 단지·지구에 시설·장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보완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생산·인증·유통과 소비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는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 중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는 생산 부문에 해당한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목적은 친환경농업의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통해 농약·화학비료의 사용량을 감축하여 농업환경을 개선·보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생산자단체(엽·근채류, 과채류 등은 2ha, 5호 이상)이며,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장비 및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국고 30%, 지방비 40~50%, 자부담 20~30%)하고 있다.

2018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 552개소를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11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대 및 농업환경 개선·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구·단지에 시설·장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보완사업을 도입하여 2018년까지 7개소를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6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지속·확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및 보완사업을 통해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등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농업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 보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에는 국비 39억원을 투입하여 18개소의 신규지구 및 보완지구를 추가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친환경비료 지원

■ 농기자재정책팀 사무관 이보영

◆ 추진 배경 및 개요

1999년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기준 약 84만톤으로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적정시비량 62만톤보다 약 30%가 더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농경지 토양에 염류가 과다 집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료를 과다 사용하여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은 잉여 비료성분이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과 호소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켜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정부 보조를 감축·폐지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표 2-5-14〉 세계 각국의 비료사용량

(단위 : kg/ha)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한 국 | 257 | 340 | 311 | 267 | 233 |
| 미 국 | 117 | 124 | 121 | 104 | 108 |
| 캐나다 | 54 | 41 | 52 | 48 | 40 |
| 브라질 | 121 | 126 | 165 | 149 | 112 |
| 칠 레 | 334 | 357 | 399 | 457 | 438 |
| 호 주 | 48 | 40 | 41 | 34 | 29 |
| 일 본 | 323 | 309 | 326 | 259 | 219 |
| 중 국 | 370 | 392 | 434 | 415 | 432 |
| 영 국 | 271 | 252 | 252 | 207 | 238 |
| 프랑스 | 180 | 178 | 196 | 143 | 140 |

* 자료출처 : FAO

◆ 추진 내용 및 성과

정부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1년부터 추진해 온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정부 보조를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오다가 2005년 7월 1일부터 완전 폐지하였다. 대신 유기질비료 지원을 2007년 135만 톤 473억 원을 2017년 320만 톤 1,60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이후 2019년 268만톤 1,341억원으로 축소되었다.

〈표 2-5-15〉 유기질 비료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천톤, 억원)

| 구분 | '09까지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 물량 | 9,950 | 2,500 | 2,468 | 2,622 | 2,732 | 2,570 | 2,775 | 2,886 | 2,876 | 2,756 | 2,573 |
| 금액 | 4,426 | 1,450 | 1,250 | 1,434 | 1,613 | 1,603 | 1,600 | 1,600 | 1,600 | 1,490 | 1,341 |

유기질비료에 대한 국고 지원조건을 변경하여 2010년까지 포대(20kg)당 단가를 정액제로 책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2011년부터 등급제를 통해 지원단가를 차등하여 지원함으로써 비료 품질이 우수한 비료의 사용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유도하였다.

〈표 2-5-16〉 유기질비료 지원조건(국고, '19년)

| 구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
| 유기질비료(원/20kg) | 1,100 | | |
| 부속 유기질비료(원/20kg) | 1,100 | 1,000 | 800 |

* 지방비 : 600원/20kg 의무부담(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아울러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처방, 작물별 적정시비 기준설정, 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의 농지에 포함된 유기물함량, 토양산성도, 토양검정시비처방 건수, 유기질비료 공급증가율,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율, 교육홍보 실적 등을 평가하고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토양과 작물에 적합한 비료가 적정량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등 토양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비료가격이 단기간에 102% 급등함에 따라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인상차액의 일부를 일시적으로(2008~2009)으로 지원하고, 2010년부터 화학비료 가격 보조를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전환하여 2010년 465천톤 600억원, 2011년 541천톤 298억원, 2012년 496천톤 198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농경지 토양검정 결과를 반영한 적정량의 비료 사용으로 비료 사용량을 줄이고도 생산량이나 품질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그 효과를 체험한 농업인이 농지와 작물에 적합한 비료를 선택하여 적정량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경영비 부담완화는 물론 토양환경보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퇴비의 품질등급제를 지속 실시하여 품질이 높은 비료에 대해 지원단가를 높게 지원함으로써 부속 유기질비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자체별 친환경비료지원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성고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차등하여 지원하는 등 토양의 지력 증진, 농업환경보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양검정을 통한 맞춤형 시비처방의 필요성과 방법을 교육하고 효과를 홍보하여 농지와 작물에 적합한 비료가 적정량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친환경농업 직불제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김진수

◆ 추진 배경 및 개요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 및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직불제를 도입하였다. 2002년부터는 수준 높은 친환경농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국의 저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직불금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를 대상으로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로 무농약인증은 3회, 유기인증은 5회, 유기지속은 영구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 한도는 0.1ha에서 5ha까지이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10천ha에 대해 매년 57억원,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137천ha에 대해 63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76천ha에 대해 287억원, 2009년에는 90천ha에 대해 345억원, 2010년에는 93천ha에 대해 376억원, 2011년에는 72천ha에 대해 302억원, 2012년에는 49천ha에 대해 294억원, 2013년에는 38천ha에 대해 243억원, 2014년에는 26천ha에 대해 165억원, 2015년에는 26천ha에 대해 170억원, 2016년에는 26천ha에 대해 169억원, 2017년에는 27천ha에 대해 167억원, 2018년에는 29천ha에 대해 210억원, 2019년은 31천ha에 22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5-17〉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실적

(단위: 억원, ha, 천 호)

| 연 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지급액 | 376 | 302 | 294 | 243 | 165 | 170 | 169 | 167 | 210 | 220 |
| 면적 | 93,318 | 71,766 | 48,921 | 37,080 | 25,383 | 26,100 | 26,444 | 26,853 | 29,370 | 31,197 |
| 농가수 | 116 | 88 | 60 | 45 | 30 | 29 | 30 | 30 | 32 | 33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2001년 전체경지면적의 0.2%(4,554ha)에 그쳤으나 2017년에는 4.9%(80,114ha)로 증가하였으며, 생산량도 2001년 전체 농산물생산량의 0.2%에서 2017년에는 3.1%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그 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과 엄격한 대상자 관리 등을 위해 사업지침의 내용 중 일부를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주요내용은 2009년까지는 1회 실시하였던 이행점검을 2회까지 실시하도록 시군구에서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임야의 경우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고 관리하면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나 엄격한 대상 관리를 위해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연도 중 인증만료 예정인 농업인에게 인증연장 신청 고지와 함께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여부 통지 시 향후 이행점검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선정여부 통지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오해의 소지를 줄였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무농약 및 유기재배 직불금 지급단가를 기존 지급단가의 약 50% 정도를 인상하였고, 유기재배에 한해 지급기간을 종전 3년(3회)에서 5년(5회)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는 유기재배 5년을 초과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유기재배 지급단가의 50%를 유기지속직불금으로 3년(3회)을 추가하여 지급하였다.

2013년부터는 이행점검 강화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직불금 신청기간을 3.1~3.31까지(30일)로 단축하고,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단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사업대상자 자격요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인증 현황 변경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 편의를 위하여 변경 항목 및 신청서식을 추가하였으며, 이행점검 종료 이후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농가의 직불금 수령 방지 및 관련 내용 확인 편의를 위하여 지자체 통보절차를 추가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친환경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단가를 인증단계별·품목군별로 차등 인상하고 유기지속직불금도 지급기한 없이 영구히 지급하도록 개편한 바 있으며, 이를 반영 하듯이 2019년 유기재배 면적에 대한 지급면적 및 지급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통해 친환경인증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비료 사용량이 2004년 385kg/ha에서 2019년 268kg/ha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농업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유기인증 면적이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 직불금의 정책효과로 풀이된다.

4.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 친환경농업과 서기관 조재성

◆ 추진 배경 및 개요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을 위해서 소비촉진 홍보,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 강화,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등 유통 효율화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사)전국친환경농업협회가 공동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등에 직거래 매취자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급식의 필요성,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미래 소비자 육성 등을 위한 사업 등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의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제고 추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단체의 명예감시원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유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인증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사업 추진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여 2006년 8.1억원 신규 조성을 시작으로, 2007년 16.2억원, 2008년 14.1억원, 2009년 20.6억원, 2010년 15억원, 2011년 13.6억원, 2012년 13.7억원, 2013년 14.6억원, 2014년 13.4억원, 2015년 15.7억원, 2016년 10억원, 2017년 22.9억원, 2018년 35.3억원, 2019년 39.7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 7월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여 각종 대중매체 홍보, 판촉행사,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시장개척, 친환경농산물 관련 축제지원 및 대량소비처 신규 발굴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이외에 국가인증농식품지원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대상 친환경농장 현장체험 및 이론교육, 친환경 가치 홍보를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촉진 사업을 추진하였다.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 수매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집중출하 방지로 농가소득 제고와 친환경농업 저변 확대 유도 및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용자)을 1999년을 시작으로 2014년 252억원, 2015년 174억원, 2016년 219억원, 2017년 294억원, 2018년 250억, 2019년에는 22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도 2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건립된 경기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직거래매취자금(용자)을 지원함으로써, 물류센터에 입주한 친환경법인의 자금운용 부담을 경감하여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추진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은 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06~'10년)을 수립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친환경농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총사업비 480억원(국비 229, 지방비 251)을 투자하여 경기도 광주시에 부지 69천㎡, 건축연면적 26천㎡(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경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12년 10월에 건립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산지중심의 차별화된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및 수도권 등 대량소비처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호남권(나주시)에 총사업비 278억원(국비 139, 지방비 139)을 투입하여 부지 30천㎡, 건축면적 14천㎡ 규모로 추가 건립을 추진하여 2017년 하반기에 건립 완공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지원, 친환경자조금 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급조절·가격안정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지자체, 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대량 수요처 발굴,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촉진 홍보, 가공·외식·수출 등 새로운 수요 창출, 온라인·모바일 등 신유통 채널 확충,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 등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5.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남기현

◆ 추진 배경 및 개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 등 제도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점 발생 등으로 2007년부터 사업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2007년 도입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사업 목적은 환경보전, 축산물의 안전성 보장 및 소득 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사업 주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지원대상은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 중 유기·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이며, 지원대상 축종은 2013년까지 한우(육우)·젖소(우유)·돼지·산란계(계란)·육계(토종닭)·오리·오리알에서 2014년에 메추리알·산양(식육·우)을 추가하여 총 9종이다. 직불금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2015년도부터 유기축산물 인증에 대하여는 지급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지급한도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한도를 늘려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5-18〉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지급단가(2019)

(단위 : 원/개, 마리/L)

| 구 분 | 한우 | 젖소(우유) | 돼지 | 산란계(계란) | 육계 | 오리 | 오리알 | 메추리알 | 산양 | 산양우 |
|------|---------|--------|--------|---------|-----|-----|------|-------|-------|------|
| 유 기 | 170,000 | 50/L | 16,000 | 10/개 | 200 | 400 | 20/개 | - | - | - |
| 무항생제 | 65,000 | 10/L | 6,000 | 1/개 | 60 | 120 | 2/개 | 4/10개 | 4,584 | 34/L |

주 : 육우는 한우의 50%금액, 토종닭은 육계의 30%금액 지급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금은 2009년 최초 도입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친환경축산물 농가수 및 출하량의 증가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2017년 8월 일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사건을 계기로 2018년부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신규

무항생제 인증농가를 제외하고, 기존 인증농가는 2019년까지만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직불금 지급 농가수 및 지급액은 2017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 1,209호를 대상으로 12,530백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되었다.

〈표 2-5-19〉 친환경 축산물 인증 현황

(단위 : 호, 톤)

| 구 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농 가 수 | 9,351 | 10,845 | 8,275 | 7,799 | 8,223 | 7,675 | 6,115 | 6,193 |
| 출 하 량 | 569,637 | 934,627 | 738,362 | 831,638 | 1,058,250 | 1,328,750 | 956,222 | 1,002,814 |

〈표 2-5-20〉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금 지급 현황

(단위 : 호, 백만원)

| 구 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농 가 수 | 760 | 1,314 | 2,032 | 1,903 | 1,741 | 1,485 | 1,244 | 1,209 |
| 예 산 액 | 7,000 | 10,025 | 16,283 | 17,257 | 17,257 | 16,653 | 16,653 | 15,665 |
| 지 급 액 | 6,998 | 9,995 | 16,205 | 17,159 | 17,254 | 15,165 | 13,426 | 12,530 |

◆ 평가 및 향후계획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금은 2009년 최초 도입 이후 2016년까지 전체 친환경축산물 농가수 및 출하량의 증가와 함께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 무항생제 인증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사건을 계기로 무항생제축산물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2019년까지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부터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형 직불금 중 선택직불금의 일환으로 지급되며, 직불금 지급대상은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 중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이다. 정부는 친환경축산물이 국제 기준에 맞춰 유기(Organic) 축산물로 단일화됨에 따라 친환경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기축산물에 대한 직불금은 현재와 같이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제6장 식품산업 선진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제1절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1.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

■ 식품산업정책과 사무관 이주영

◆ 추진 배경 및 개요

세계 식품시장은 2019년 기준 6.7조 달러 규모로 아시아·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1.1조 달러, 자동차 1.5조 달러와 비교하여 5~6배 큰 규모의 시장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식품시장도 2007년 107.5조원에서 2018년 230.2조원 규모로 연평균 7.2% 성장하는 등 식품산업은 국내 주요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계 유명 식품기업들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식품시장 선점을 위해 신규 시장 창출과 사회적 문제해결에 관심을 두고 연구개발(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세계 식품시장의 틈새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미래 유망 식품 개발에 필요한 실용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최근 고령 인구,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구조 변화에 따른 기능성 건강식품, 즉석식품 등 새로운 식품시장이 창출되고 있고,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세계 식품시장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이 들 국가의 세계 식품시장 점유율이 37%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식품 R&D 기술수준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비 79.5%(2018)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식품기업의 경우 10인 미만 기업이 전체 91.1%(2018) 수준으로, 투자 기반의 영세성이라는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기술 수준이 미흡한 주요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민간 분야의 자율적 R&D 투자 확대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식품분야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핵심 응용기술 개발 지원에 2019년까지 총 3,078억원을 투자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최근에는 기능성·전통식품, 식품품질관리, 식품핵심소재, 기자재·신가공, 맞춤형 혁신식품개발, 천연안심소재 산업화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식품 분야 기술 수준 향상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단축하고 있다.

〈표 2-6-1〉 식품 연구개발 투자 분야

| 내역 | 주요내용 |
|----------------|---|
| (1) 기능성·전통식품 | 국산 농산 원료의 주요 기능을 증진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 및 전통식품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 (2) 식품품질관리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 공급을 위한 식품 품질/유통 관리 기술개발 지원 |
| (3) 식품핵심소재 |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신소재 및 대체소재 기술개발 지원 |
| (4) 기자재·신가공 | 식품 기자재, 시설장비 개발 및 공정 효율화, 첨단 가공 기술개발 지원 |
| (5) 맞춤형 혁신식품개발 | 소비 트렌드에 맞춰 신시장 타겟 제품 및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식품 개발 |
| (6) 천연안심소재 산업화 | 천연 원료를 기반으로 동, 식물 등으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식품 소재화 시킨 제품 개발 |

2019년에는 총 119개 과제에 26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이전에 선정되어 연구 중인 58개 계속 과제에 172억원과 신규 과제로 51개 과제를 선정하여 88억원을 지원하였다. 제품개발로 인한 매출 증가 효과와 기술 수준 향상, 관련 산업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평가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신규과제 중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를 지정하여 연구기관을 모집하는 ‘지정공모과제’는 6과제 12억 원 규모, 연구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여 응모하는 ‘자유응모과제’는 55과제 76억 원 규모이다.

특히, 2019년에는 중소 식품기업의 경쟁력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단순 메뉴 또는 유통·판매기술 개발이 아닌 해당 기업군의 공동 수요에 기반한 제조기술, 공정 개선 등 현장 문제점 해결형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연구개발 비용 지원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등 식품산업의 인프라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식품 R&D 정책방향을 주도하고 신시장

창출 및 식품기업의 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다양한 R&D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내 식품업계 수요, 다국적 기업과 주요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 등을 고려하여 식품 분야 기술수준 향상, 생산성 제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대체식품, 맞춤형 식품, 푸드테크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표 2-6-2〉 식품 분야 유망기술 지원 계획

| 내역 | 주요내용 |
|------------|--|
| (1) 대체식품 | 식물성 소재 기반 대체식품 및 배양육 원천기술 개발, 대체식품 소재 다양화 |
| (2) 맞춤형 식품 |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포스트바이오틱스 소재·공정기술 개발, 개인 맞춤형 식품산업 기반 마련 |
| (3) 푸드테크 | ICT 기반 공정관리 고도화, 신가공기술 및 지능형·기능성·친환경 포장기술 개발 |

2.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사무관 강종수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촌 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도농 간의 소득 및 서비스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자생적 발전에 한계가 있어 농업·농촌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타산업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의 도모는 식품산업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게 되었으며, 2011년에는 기존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의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의 개편과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 발표 등 농어업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차 산업인 농어업을 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농수산물 및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산업화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9년까지 총 85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 전략품목 육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1년 사업단 선정부터는 기존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을 식품산업과 연계강화를 위해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개편하였다. 즉, 기존 품목별 클러스터사업에서 지역 특화품목을 광역화하고, 식품가공업과 연계하여 산업화할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어업을 2·3차 식품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2년부터는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사업 개시 전전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전년도에는 사업계획 진단 및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충실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015년부터는 지자체 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사업)으로 이관하여 신규사업 선정과 예산 편성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2020년 지방이양 사업으로 결정되어 2020년부터 지자체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농공상용합형 중소식품기업 육성

■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 강태원

농식품산업은 IT·BT·NT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 종자·제약·의료 등 전후방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 핵심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2010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수립·발표하고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이 전략에 따라 정부는 2013년까지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300개를 지정하였으며 '19년 현재 474개 업체를 선정하여 정책금융, 마케팅 등 내수시장 확대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유형 및 지정현황〉

| 지정년도 | 업체 유형별 지정현황 | | | | 계 |
|------|-------------|---------|-------|-------|-----|
| | 전략적제휴형 | 농어업인경영형 | 공동출자형 | 네트워크형 | |
| 2018 | 126 | 111 | 1 | - | 238 |
| 2019 | 111 | 118 | 1 | 6 | 236 |
| 계 | 237 | 229 | 2 | 6 | 474 |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유효기간 : 2년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유형 〉
 □ 공동출자형 : 농업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중소기업 설립
 □ 전략적제휴형 :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원료조달, 신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
 □ 농어업인경영형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가공단계까지 경영을 확장하여 가공식품, 미용제품 등을 생산
 □ 네트워크형 : 원료·자원 이용, 기술 개발, 생산·제조, 마케팅·판매 각 기능의 신축적 조합이 가능한 협력·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능에 따라 협업 추진(2019년 신규 유형)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업과 식품산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농산물 수급조절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우수한 지역기반형 식품기업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선발하여 육성함으로써 지역식품산업 발전 및 지역농산물 유통·소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은 농업인과 중소기업의 협력모델 및 구체적인 지원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식품산업과 농업의 동반성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기업이 상호협력하여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홍보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여 성공사례 도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 농업 및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3. 전통 발효식품산업 활성화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전통식품 산업의 규모¹⁰⁾는 약 6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식품산업 시장 규모(92조원)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인가구 증가, 편의식품 보급 등으로 장류, 김치 등 전통 발효식품의 소비가 감소 추세에 있고, 전통식품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신상품의 개발이나 연구, 품질 개선 등의 투자가 어려우며,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국내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발효식품의 중요한 요소인 유용 미생물의 개발 및 연구를 통한 신상품의 개발,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고, 발효 원료를 기반으로 한 소스산업 육성과 발효식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식품명인 제도 등 우수한 전통식품 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전통식품의 지속적인 홍보 및 유통소비 촉진 등으로 전통 발효식품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

◆ 추진 성과

전통 발효식품 육성사업은 유용 균주를 활용한 전통식품의 품질고급화 및 신제품 생산 지원을 통해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류, 발효차·발효음료 등 미생물의 개발 및 연구, 발효산업 육성을 위하여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장류 등 소스산업 육성을 위한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을 완료하였다.

각종 품평회, 페스티벌, 전시 판촉전을 통해 김치, 장류업체 등 전통식품 제조업체의 참가를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홍보할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전통식품을 직접 조리하고 시음할 수 있도록 식품명인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식품명인이 보유한 기능이 사라지지 않고 후대에 계승되어 발전 할 수 있도록 전수자 장려금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10) 2018년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종업원 수 10인 이상)

▶ 전통 발효식품의 소비 기반 확대

전통 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장류, 식초, 떡·한과 등 품목별 세분시장 조사, 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식품명인 실태조사 등 전통식품 산업에 대한 기초 정보, 통계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치 및 우리술 품평회, 김치 페스티벌 개최, 우리술 대축제, 전통식품 홍보관 운영 등 국내외에 우수한 전통 발효식품을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발효식품 중 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 프랑스, 일본, 베트남, 한국 5개국에서 김장 축제를 개최하여 우리의 김장문화와 김치의 우수성을 세계인이 함께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출 등 판로 확대와 전통식품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산 김치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브랜드 6점을 선정하여 TV홈쇼핑 입점을 통한 판로를 지원하였으며, 식혜·조청·김·전통주 등 전통식품 분야에서 우수문화상품 5개 제품이 선정되어 해외홍보관을 통한 해외 인지도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한국전통식품문화관에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시음·시식하고 식품명인에게 전통방식의 조리 비법을 배울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올해도 15천명이 다녀가는 등 매년 체험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래 세대의 주요 고객인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식습관 교육 등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전통식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고객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 전통 발효식품의 경쟁력 강화

중군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을 통해 장류, 식초에 들어 있는 우수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함으로써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신상품에 대한 상품개발, 포장재 개선, 품질 및 안전관리, 마케팅 지원을 통해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 전통 발효식품산업 기반 확충

국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발효차·발효음료, 장류 등 유용미생물 연구 및 기업 맞춤형 제품 생산 지원 등을 위하여 남해안권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 HMR 가정편의 지향형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장류를 기반으로 한 소스시장이 확대되면서, 소스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상품 개발 및 소스정보 제공 등 소스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내 소스산업화센터를 2019년 11월에 완공하였다. 소스산업화센터는 연간 100억 규모의 생산설비를 구축하여 기업공동 연구 및 ODM, OEM 등 장류 및 소스류 업체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 활성화

우수한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등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하여 잊혀져 가는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은 '94년 전통주 5명을 처음 지정한 이래 2019년 조청, 식초, 장류 품목에 3명의 명인을 신규 지정하면서 현재까지 총 78명의 명인이 활동 중에 있다. 식품명인은 기능 전수 활동, 전통식품 기능 시연 등 우리의 우수한 전통을 국내외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보유한 전통의 비법을 후대에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19년부터 전수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명인 전수자는 69명이 지정되어 활동 중에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 및 간편 편의형 식품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전통식품의 소비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전통식품의 품질향상 및 발효식품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전통식품 시장 규모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하여 우수한 전통식품 육성 및 전통 식문화를 보전하고, 김치품평회 등을 통한 전통식품 브랜드 육성과 해외에 김장문화를 알리는 월드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내외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였다.

앞으로 건강 지향적 소비패턴에 맞추어 전통 발효식품의 위생 및 안전관리, 토종 종균의 자원화 및 유용 균주를 활용한 품질 고급화, 발효식품 인프라 구축, 소비자 맞춤형 판촉 및 홍보 추진 등 전통 발효식품 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4. 전통주 등의 체계적 산업 육성

■ 식품산업진흥과 서기관 조경규

◆ 추진 배경 및 개요

2018년 국내 술 시장 규모는 출고액 기준으로 약 9조원으로서,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 등은 전체 술 시장의 11.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국내 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품질 고급화 및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09.8.26.)하였으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10.8.5. 시행)하여 우리 술 산업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1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전통주 등 산업진흥기반 조성,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 품질 고급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양조용 우수 발효제(효모, 누룩) 보급 실시

우리 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양조용 효모·누룩을 보급하여 품질 표준화와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간 전통주 업체에서는 대부분 수입산 제빵용 효모와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누룩을 사용하여 품질을 고급화하고 풍미를 다양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15년부터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개발한 전통누룩 추출 양조용 효모(10종)와 씨누룩(17종)을 우리 술 제조업체에 무상 공급해왔다. 양조 전용 효모 및 누룩 보급사업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기존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원활해지고, 우리 술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지원 사업 실시

전통주 산업을 6차 산업화하여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자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환경개선, 품질 관리, 홍보, 스토리텔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체험과 관광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19년도에는 4개소(국순당, 도란원, 좋은술, 여포와인농장)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38개 업체가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되었다.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된 업체들은 관광객 체험행사를 통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고, 방문객의 현장 구매가 늘어나면서 매출액도 증가하였다. 정부는 각 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양조장을 적극 발굴하여 2022년까지 50개소의 '찾아가는 양조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의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개최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 술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그 해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하여,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류 5개 주종별로 우수 제품 3점씩(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총 15점과 최고의 제품 1점(대통령상)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최고의 상인 대통령상에는 농업회사법인 장희(주)의 '세종대왕어주 약주'가 선정되었으며, 시상식은 우리술 대축제 개막식에 맞추어 11월 15일에 개최되었다.

우리술 품평회에서 수상한 제품은 온·오프라인 판촉 기획전, 유통업체 및 바이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지자체, 유관기관 그리고 국내·외 각종 행사에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개최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는 전국의 우수한 우리 술을 한 자리에 모아 소비자와 생산·유통업체가 어우러져 다양한 술을 즐기고 소통하는 대표적인 술 축제이다. '2019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는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aT센터에서 3일간 개최되었으며, 전국 98개 업체, 14,350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여 우리 술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우리술 대축제는 소비자에게 우리 술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생산자에게는 타 업체와 교류를 통해 품질 고급화의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 술 산업이 지속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 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 대한 우리 술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 술 품질인증제 활성화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1년 1월 1일부로 술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 한국식품연구원을 인증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사후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2012년에는 술 품질인증대상 품목에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를 추가하였고,

2016년에 기타주류를 추가하여 현재 총 8개 주종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생산자는 차별화된 마케팅이 가능하고, 소비자는 우수한 제품을 믿고 선택할 수 있어 우리 술의 품질경쟁력 향상 및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전통주 갤러리를 통한 우리술 홍보

정부는 2015년 2월, 서울 인사동에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전통주에 대한 전시·체험·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통주 갤러리’를 개관하였으며, 젊은 소비자의 방문을 늘리기 위해 2016년 12월 서울 강남역 인근으로 확장 이전하였다. 전통주 갤러리에서는 전통주에 대한 무료 전시, 교육, 시음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내방객을 위하여 외국어 안내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유통·외식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통주 취급 및 판매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언론·방송 대상으로도 홍보를 실시하여 국내 유명 호텔, 레스토랑 등에 전통주가 새로 입점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특별 세미나도 개최하여 전통주 문화 확산 및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에는 체코, 이탈리아, 프랑스의 한국대사관·영사관과 협업하여 해외에 우리 술을 알리는 행사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로 2019년 한 해 총 17,009명이 전통주 갤러리를 찾았으며, 앞으로도 전통주 홍보·자문의 구심점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우리술 품평회 및 대축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술 품질인증제, 전통주 갤러리 운영 등 정부의 노력으로 우리 술 품질을 고급화하고 국산 농산물의 소비도 촉진하여 우리 농식품 산업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우리 술 품질향상,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사무관 강중수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림수산물 분야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의 해외 의존이 심화되면서 국내의 농림수산물 생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반면, 식품산업 분야는 식생활소비 패턴이 외식 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등 크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식품시장규모는 2013년 약 6.3조달러로 IT 시장(0.9조) 및 자동차 시장(1.3조), 철강(0.8조)의 시장보다 5~8배 큰 규모의 시장으로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증가, 신흥개발국 성장, BT·ICT 등 기술활용 푸드테크 시장 성장 등에 따라 세계 식품시장은 지속적으로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 국내 식품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고, 일부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 영세 사업체로 R&D 투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마케팅 능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1인 이상 식품 제조업체 중 종업원 10인 미만인 업체가 약 91.3%를 차지하고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30~6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매출액 대비 R&D 투자규모는 0.6% 수준으로 선진국(1.6~2.6%)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농어업과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전북 익산시 왕궁면 일원 약 232만㎡의 부지에 식품기업과 식품연구소 등이 집적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식품연구소, 식품 관련 대학, 기업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집적효과를 전국으로 확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건축비만) 648억원을 투입하여 3대 핵심 기술 지원센터 등 6개 H/W를 구축하였고 R&D와 인력양성 등 기업 기술지원(SW)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를 이루어 우리 농어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08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입지를 전북 익산(왕궁면 일원)으로 선정하였으며,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그 사업시행은 LH 공사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7.15)

2009년에는 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09.11)와 지자체의 문화재 지표조사 및 3대 영향평가(환경·재해·교통)를 거치고, 2010년에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1.25)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육성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투자유치, 산단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중앙·지자체·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2011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로의 국내외 식품기업의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시설 구축을 담당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11.2)하였으며, 2012년 3월 26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직속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을 신설하였다.

산업단지 조성 분야는 LH 공사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승인을 국토해양부에 요청('11.12)하였으며, 2012년 6월에는 국토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아 2013년 하반기 중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고 2014년 3월 산업단지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6개 기업지원시설은 2016년 10월 준공하였고, 2017년 12월 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2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국내외 기업·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투자유치관 운영 및 투자유치 전문 홍보 등을 통해 2019년까지 국내기업 89개사 및 외투기업 1개사와 분양을 체결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내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식품전문 산업단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선도기업과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인 바, 투자유치 타깃 기업을 선정하고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원료·인력·판촉·수출 등 비즈니스분야와 제품개발·공정개선·시제품생산 등 기술분야의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첨단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존의 기업지원시설 외에 농식품 원료 중계·공급센터와 기능성식품제형센터, HMR지원센터, 청년식품창업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국내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식품기업 대상 기술지원사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6.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추진

■ 식생활소비정책과 사무관 이성준

◆ 추진 배경 및 개요

최근 서구적 식문화의 무분별한 유입과 바쁜 현대인의 생활 패턴,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수반된 불균형적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 당뇨와 같은 생활습관병 발생이 늘고 있다. 풍족해진 식재료들은 과도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매년 7조원에 이르는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 식문화의 우수성 및 중요성이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에 따라 먹을거리가 다양해졌으나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우리 농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식생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실정이다.

- * 비만인구비율¹⁾(19세 이상) : ('01) 29.6% → ('13) 31.8 → ('16) 34.8 → ('17) 34.1 → ('18) 34.6
- * 당뇨병¹⁾(30세 이상) : ('01) 8.6% → ('13) 11.0 → ('16) 11.3 → ('17) 10.4 → ('18) 10.4
- *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²⁾(연간) : ('05) 약 3조 400억원 → ('13) 약 6조 7천 → ('18) 약 11조 5천
- *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연간) : ('05) 약 6천억원 → ('14) 약 8천억원 → ('18) 약 8,390억원
- * 수입식품 대비 국산 농산물에 대한 지불 의향⁴⁾(성인, 수입식품 가격=100) : ('17) 112.5 → ('18) 113.4 → ('19) 111.7

- * 출처 : 1)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비만 유병률·당뇨병 유병률)
- 2)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만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 3)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현황
-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이에 2008년 12월 수립한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의 3대 추진전략인 '안전 농식품 공급'의 세부 추진과제로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홍보 강화'를 제시하였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09.5)됨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의 식생활 교육 전개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바른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식생활교육지원법」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가정·학교·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식생활 체험활동 활성화 등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 국가식생활교육 위원회(위원장 : 농식품부장관, 민간위원 공동)
-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식생활 조사·연구

-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조사·연구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또는 전통 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건립 및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지원, 식생활 교육 참여자(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교육 연수기회 제공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국가 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10.2.)하는 한편, 제2차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심의(’15.2.25.)를 거쳐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15~’19) 수립(’15.2.), 제3차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심의(’20.1.10.)를 거쳐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4)을 수립하였다.

특히, 관계부처(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합동으로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을 마련(’16.3)함으로써, 각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제정·보급하던 식생활지침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천가능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식생활로 함께 하는 농업, 건강한 국민, 포용하는 사회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환경·건강·배려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취약계층과 미래 세대를 고려한 사람 중심 교육 실시, 농업·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확대, 지속가능한 식생활 확산으로 우리 농식품 소비 기반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2차 기본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저소득층·고령자·임산부 등)을 위한 체계화된 교육, 농업·환경의 가치를 이해하는 식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19년 기준 우수농어촌식생활체험공간은 265개소('17, 233개소), 식생활교육기관을 61개소('17, 59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식생활교육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또한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어린이집 대상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지원, 초등학교 대상 쌀 중심 식습관 학교 운영, 교육대학교의 식생활교육 교과목 개설, 고령자 대상 식생활·건강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을 중심으로 바른 식생활 5대 실천지침*·식생활교육의 달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바른 식생활교육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높여 사회 전반에 바른 식생활·식습관의 가치를 확산시켰다.

* 제철 우리·지역 식재료 활용, '한국형 식사' 중심 다양한 식품 섭취, 아침식사하기, 가족과 함께 조리·식사하기, 음식 낭비 줄이기

◆ 평가 및 향후계획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4)」에 따른 연차별 식생활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세대를 고려한 사람 중심 교육, 농업·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른 식생활·식습관 실천 교육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바람직한 농식품 선택능력을 배양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및 소비촉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식생활로 함께 하는 농업, 건강한 국민, 포용하는 사회 실현이 가능하도록 식생활 개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소비 활성화

▮ 식량산업과 사무관 박성용

◆ 추진 배경 및 개요

쌀 생산량은 정제 혹은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쌀 소비량은 가구구조 변화(단독·맞벌이 가구 증가), 먹거리 다양화 등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적극적인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과 쌀가공산업 육성 정책 추진 등 쌀 수요 기반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쌀 소비 시장의 안정을 꾀하여, 주식인 쌀에 대한 이해와 쌀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쌀 소비 활성화 사업을 2003년부터 전개하게 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초기에는 쌀 소비 잠재력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20~30대 젊은 주부를 주 대상으로 하여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와 캠페인을 중심으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등과 함께하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 영양사 등 전문가를 통한 쌀 요리 레시피 개발·보급 등을 통해 쌀 중심의 식생활을 장려하였다.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간편식 시장 확대에 따라 쌀=밥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식자재로서 쌀에 대한 홍보와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이를 위해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12.5월 시행)하여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제1차 기본계획'('14~'18)에 이어서 '제2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19.6월)하여 추진 중에 있다.

'19년에는 '쌀이답이다'를 주제로 영상공모전과 매체홍보 등을 활용하여 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올바른 소비문화를 알리는 한편, 쌀 중심 식습관 학교 운영을 통해 쌀가공품 급·간식 제공 및 쌀 중심의 바른 식습관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우리 쌀, 우리 농산물 이유식 레시피 공모전을 진행하여 최종 20종의 레시피를 선정하였고, 소책자 제작·배포를 통해 쌀 이유식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미래세대가 재미있고 쉽게 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놀이 콘텐츠를 제작하여 확산하였고,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 대상으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여 아침 먹는 문화를 확산하는 등 실질적인 쌀 소비 효과도 제고하였다.

쌀가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매년 400억원 규모의 시설·개보수·운영 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국산 가공용 쌀 가격을 인하하여 특별공급 하는 등 산업 육성을 지원하였다. 경쟁력 있는

쌀 가공식품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쌀가공품 품평회(TOP10)를 ‘통해 우수 쌀 가공식품 10종을 선정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판매망을 이용한 판촉 홍보를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정책으로 가공용 쌀 소비량은 2011년 402천톤에서 2019년 553천톤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면류 등 간편 식사용 가공식품의 쌀 소비량이 크게 증가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향후 미래세대, 청년세대에 맞는 쌀 중심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초등학생 대상 쌀중심 식습관 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통해 아침결식률을 완화할 예정이며, 쌀 기념일 연계 홍보(테이마케팅)를 통해 쌀과 더욱 친근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쌀 및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별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박람회 참가 등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2절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한식 세계화

1. 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 수출진흥과 사무관 노승호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식품 수출은 FTA 확대 등 개방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농어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 과정에 있어서 HACCP, ISO, GAP 등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농식품 수출은 국내 농식품의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즉, 수출은 고품질 안전 농식품 생산을 유도하고, 수입 농식품과의 경쟁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내로 유통될 물량을 해외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수출로 인해 국내 유통 물량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수출로 인한 농가 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농식품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산출해 본 결과,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유발계수(0.848)는 조립가공제품(0.649), 건설 분야(0.804)보다 높고, 신선농산물과 음식료품 분야의 취업유발효과는 정밀기기 분야에 비해 각각 3.3배,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5 및 고용표 2018). 이에 따라 농식품 수출은 국가전체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증대시켜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며, 농가 소득증대 및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 밖에도 식문화 전파를 통한 국가위상 및 품격 제고, 농어업의 자신감 회복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인삼, 포도, 김치 등 신선 식품 수출 호조 및 일본·미국·ASEAN 등 주요 국가 수출 확대에 따라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7,025.7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부류별 수출동향을 보면, 신선식품은 2018년 대비 8.2% 증가한 13.8억불, 가공식품은 0.1% 감소한 56.4억불을 기록하였다. 연간 1억불 이상 수출 품목은 10개이며, 특히 인삼류(2.1억불)는 최초 2억불 수출 달성, 김치(1.1억불)는 '12년 이후 1억불 재달성을 기록하였다.

〈그림 2-6-1〉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



* 농식품 수출액 : ('80) 11.7억달러 → ('00) 15.1 → ('05) 22.2 → ('10) 40.8 → ('18) 69.3 → ('19) 70.3

〈표 2-6-3〉 연도별 농식품 수출 동향

(단위: 백만불, %)

| 구 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A) | 2019(B) | 증감률 (B/A) |
|---------|---------|---------|---------|---------|---------|---------|---------|---------|--------------|
| 농식품 합계 | 5,644.8 | 5,724.6 | 6,182.7 | 6,104.0 | 6,465.0 | 6,826.5 | 6,925.7 | 7,025.7 | 1.4 |
| ○ 신선농식품 | 1,111.5 | 1,210.3 | 1,153.7 | 1,035.9 | 1,109.4 | 1,095.3 | 1,276.0 | 1,381.2 | 8.2 |
| ○ 가공식품 | 4,533.3 | 4,514.3 | 5,029.0 | 5,068.1 | 5,355.6 | 5,731.2 | 5,649.7 | 5,644.5 | △0.1 |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전년에 이어 ASEAN(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 일본(7.8%), 미국(9.0%)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며, 신선 식품 수출이 호조를 보인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14.9%), 태국(7.4%)이 수출 확대를 주도하였다. 한편, 중국(△0.4%), EU(△7.0%)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전년 대비 국가별 시장 점유율은 일본(20.3%) 및 미국(12.4%)이 각각 (일본 1.2%p, 미국 0.8%p) 증가하였으며, 특히 아세안 주요 시장인 베트남(7.3%) 점유율은 전년대비 0.8%p 상승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중국(15.7%)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0.3%p) 하였으며, OIC(9.7%)는 소비세 인상 등 이슈에 따라 켈런 수출 대폭 감소로 전년 대비 2%p 하락하였다.

〈표 2-6-4〉 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달러, %)

| 구분 | 일본 | 중국 | 미국 | 홍콩 | 대만 | ASEAN | EU | OIC |
|-------------------|---------|---------|-------|-------|-------|---------|-------|-------|
| 1) '19년 수출액(백만달러) | 1,426.9 | 1,106.0 | 874.2 | 352.9 | 309.7 | 1,372.4 | 385.1 | 683.9 |
| 2) 국가별 비중(%) | 20.3 | 15.7 | 12.4 | 5.0 | 4.4 | 19.5 | 5.5 | 9.7 |
| 3) 전년대비 증가율(%) | 7.8 | △0.4 | 9.0 | △5.0 | △0.8 | 5.0 | △7.0 | △15.9 |

* 1억달러 이상 수출국(15개국) :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호주,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시장 개척이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현지 소비자 선호에 맞는 제품 개발부터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한 신규 바이어 발굴, 식품 박람회 참가, 해외 마켓 테스트 등 수출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도 일·중·미 3개국에 편중된 수출현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식품 수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시장다변화 선도기업 70개사를 선정·육성하고 다변화 전략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으며 적합제품 개발부터 현지 유통매장 입점까지 시장개척 전반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의 동남아 및 신흥시장에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할랄·코셔 등 특수 시장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한류를 활용한 한국농식품 홍보마케팅 추진을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 및 한국농식품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아세안 시장의 전체 수출규모 대비 차지 비중은 19.5%로 전년대비 0.6%p 증가하는 등 신흥시장으로의 한국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현재 한국 농식품 수출은 일본, 중국, 미국 등 기존시장에서 신규시장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 수출 주력시장은 한국과 식문화가 유사하고 근거리에 있는 일본, 중국(동부연안), 미국(교포중심 시장) 등 3개국으로, 전체 수출액의 48.5%(19)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품목의 경우 3개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동 등의 위기에 취약하고, 이들 시장에서 우리 수출업체간 과당경쟁 발생, 저가 수출로 인한 품질저하, 현지 업체와의 가격경쟁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2020년에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비대면·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신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 다변화, 한류스타 등을 활용한 수출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비대면, 온라인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온라인몰 판로를 확대하고, SNS 플랫폼, O2O 등 새로운 유통망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바이어 상담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는 유관협회 등 다양한 민간주체와 새로운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남방·신북방지역 등 시장개척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다변화 선도업체 육성, 농식품 청년해외 개척단 운영 등으로 업체의 신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K-pop, 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인기를 농식품 수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류 연계 소비자 홍보도 지속 추진한다. 한류스타와 연계하여 동영상, 이미지 등 홍보 콘텐츠를 만들고, 농식품 마케팅 행사, SNS, 동영상 플랫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 수출시장내 비관세관련 전문자문기관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수출기업들의 위생·검역, 라벨링, 상표권 등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 해소에 힘쓰고 One-Stop 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서 수출준비부터 시험수출까지 수출 전과정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한국 농식품 전반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 수출과 국내 농업연계를 강화하고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으로 농식품 수출의 질적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과채류 등 신선농산물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품에서 국산원료 사용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등 수출과 농가 소득 및 국내 농업발전과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품목별 수출통합조직을 지속 확대하여 수출단일 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출통합조직을 통해 수출업체간 과당경쟁이나 저가수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출 농산물에 대한 품질 및 안전관리를 자발적으로 하는 등 민간의 수출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업체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정부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바이어 알선 및 상담매칭 통합서비스(BMS) 기능을 강화하여 바이어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수출지원 사업이 보다 효율화·체계화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2.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 세계화

■ 외식산업진흥과 서기관 정문기·사무관 이현·사무관 류성훈

◆ 추진 배경 및 개요

정부는 '05년부터 전통문화 콘텐츠를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이미지를 고양 시키고자 한식(韓食)을 포함한 한(韓)스타일¹¹⁾ 육성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06년 6월 국가이미지위원회에서 '한스타일육성종합계획' 중 한식 분야는 농식품부가 주무부처로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07년 1월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¹²⁾를 목표로 한 한식 세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한식 조리법 표준화 및 해외 한식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태 조사 등 인프라 구축과 해외공관과 연계한 식문화 홍보행사 등을 추진하여 왔다.

'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2월에 출범하였고, 6월 28일 '식품산업진흥법'이 시행되는 등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과 법령이 정비되어 한식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09년 4월에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 한식'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한식 세계화 5대 전략¹³⁾을 마련하여 국내와 해외로 나눠 9대 중점과제¹⁴⁾를 확정하고 국내외 홍보와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한식의 국내 산업화, 추진체계 구축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한식 세계화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한식 산업화 세계화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09년 4월 7일 한식 세계화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후 범부처적, 민간 참여적 한식 세계화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한식세계화추진단을 구성하였다. 한식세계화추진단은 한식 세계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10년 3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본격적인 한식 세계화 추진을 위해 한식재단을 설립하는 등 한식 세계화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11) 한(韓)스타일(HanStyle)이란 우리 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띠며,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가 가능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국악) 등의 전통문화에 담겨 있는 한국적 양식을 일컫는다.

12) 세계 5대 음식은 일반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태국을 일컬으며, 한식은 ethnicfood 중 20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미국 NRA, 2002.)

13) 5대 전략 : ①인프라 구축 ②R&D 확대 ③인력양성 ④기업투자 활성화 ⑤식문화 홍보

14) 9대 중점과제 : (국내) ①법·제도 마련 등 한식 산업기반 구축 ②한식 요리명장 양성 ③스타 한식당 육성 ④한식 체험 기회 확대 (해외) ⑤한식 세계화 R&D 확대 ⑥국산 식재료 공급 활성화 ⑦한식 이미지 제고 ⑧한식 문화 알리기 ⑨한식 브랜드 100 프로젝트

'13년까지는 지금까지의 한식세계화사업이 한식을 해외에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국내 한식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 확산을 병행(two-track)하는 방향으로 한식 정책의 틀을 전면 전환하는 '한식진흥 발전방안'을 마련('14.1)하여 지역별·분야별로 특색있는 우리 음식을 발굴·표준화하고, 한식 홍보영상·요리법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문화적·역사적 한식 원형자료 D/B화·자원화 등을 추진하는 등 한식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한식정책협의회'를 발족하여 문화와 한식을 접목하는 '한식진흥 정책 강화방안'을 마련('15.10), 한식문화관 조성('16.4) 및 운영을 통해 한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식 세계화는 홍보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한식에 대한 해외 인지도 제고 등 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19년까지 뉴욕, LA, 애틀랜타, 시애틀, 동경, 상해, 연변, 홍콩, 파리, 런던, 시드니, 오클랜드, 자카르타 등 해외 주요 도시에 22개 해외한식당협의회를 결성하고, 한식 홍보행사, 종사자 교육,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15년 밀라노 엑스포를 비롯, 여러 국제행사 시 한식 오·만찬 제공, 한식 급식사업 진행, 한식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한식을 해외에 자연스럽게 홍보하였다. 해외 우수 한식당 발굴·홍보를 통한 한식의 이미지 개선 및 한식 저변 확대를 위해 유럽, 일본, 미국, 중국 등지에서 해외 우수 한식당 추천제 사업도 실시하였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금까지 '한식 영세프·중견셰프 양성과정 및 '한식해설사 과정' 등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이전에 해외 학교에 한식 강좌를 개설하거나 호텔셰프를 초청하여 교육했던 것을 '19년에는 국내 한식 인력을 직접 해외 교육기관과 호텔에 파견하여 국내 한식 인력의 해외 전문을 확대하고 현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였다. 물론 한식을 매개로 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해외 한식인턴 취업지원, 청년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 등)을 추진하는 등 '18년에 이어 한식 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였다.

'19년에는 온라인 매거진(한식읽기 좋은 날)의 구독자 수가 대폭 증가되어 대국민 한식 접점을 확대해 나갔으며, 한식문화관에서는 외국인,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한식 체험을 다양화하였다. 또한, '장 문화'가 '2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대표종목으로 선정('19.12월)되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특히 '19년 8월에는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식진흥법」이 제정되어 한식 진흥·확산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하위법령 등 제정 절차를 거쳐 '20.8.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한식 정책 추진에 따라 한식의 해외 만족도(미국 뉴욕기준)는 '09년 34.5%에서 '19년 95.7%까지 상승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한식당 수 증가¹⁵⁾와 함께 우리 전통장류(된장·고추장·간장) 수출¹⁶⁾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한류

15) 2009년 : 9,253개소 → 2017년 : 30,227개소

16) 2010년 : 2만 1,000톤 → 2018년 : 3만 6,000톤

실태 조사결과(2019)”에 따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한 연상 이미지로 가장 많이 떠올리는 콘텐츠에 “한식”이 포함(2위)되어 한식의 “한류”의 확산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져 세계적인 미식가들의 가이드북, “미쉐린 가이드”에서도 한식은 약진했다. '19년에 해외에서 미쉐린 별을 받은 한식당은 6개소로 '10년 전무했던 것에 비하면 한식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식의 세계적 위상 강화를 통해 국내 한식 기업의 해외 진출도 증가하여 '08년 27개 업체 109개 점포에서 '10년 30개 업체 170개 점포, '14년 46개 업체 348개 점포, '16년 73개 업체 732개 점포, '19년 72개 업체 1,094개 점포 매장으로 증가하였다.

지속적 성장 추세인 국내 외식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1년 3월에 외식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고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그 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은 외식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외식산업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식산업진흥을 위한 육성시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통한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우수외식 업지구 육성,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외식사업은 '12년부터 외식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17년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추진하였다. '19년 외식사업은 전년도 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한 외식산업 진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다. 우선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실질적인 매장 운영기회를 제공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운영(5개소)하였고, 이를 통해 40개 팀 212명이 실제 외식업 경영을 경험하였다.

외식업체 경영 안정을 위해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용자)을 확대(75억원→100억원)하였고, 지역단위 외식업 지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농업과 외식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35개 조직을 지원(최대 5백만원)하여 약 16억원의 국산 농산물 구매실적을 달성하였고, 외식업 경영주와 우수 농산물 생산자 간 직거래를 활성화 하는 1:1 상담회를 개최하여 35개 기업·조직이 참여하였다.

또한,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식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사업, 해외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외식업 경영주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국내외 외식 트렌드, 외식업체 경영실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 등 정보·통계 제공기능도 지속하였다.

특히, '19년에는 경기 침체 등 개별 외식업소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외식소비 촉진을 위해 5월을 외식의 달로 선포하고, 5~8월과 9~11월에 걸쳐 2차례의 푸드페스타를 진행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그간 한식 정책은 해외 한식문화 확산을 통해 한류의 지속과 확장에 기여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및 수출확대 등 민간경제 활성화 지원에도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19년에는 해외 한식 인턴 100명을 지원하고 한식인력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교육기관 10명, 호텔 27명 파견)했으며, 해외한식당협의를 통한 식재료 수출도 '18년 3개 협의체(상하이, 뉴욕, 쿠알라룸푸르) 기준 56.9톤에서 '19년 105.5톤으로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발전을 위한 한식진흥법의 시행('20.8.28)을 위해 하위법령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한식분야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 지원하며, 한식관련 행사 및 각종 조사사업 등은 정책 고객의 의견청취 강화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 한식의 우수성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한식업계의 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식 소비촉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외식산업은 지속적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저임금 상승, 식재료 가격 불안정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개별 외식업체의 경영난은 심화되어 왔다. 따라서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비 절감, 청년일자리 창출, 해외진출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왔다.

'20년에는 외식경기 활성화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외식산업 진흥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외식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푸드페스타를 실시하고,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규모를 확대하며, 외식업체 육성자금 융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 외식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유희공간에서 외식창업 청년들이 외식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차료, 창업 공동체 육성자금, 홍보·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IV.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농촌 조성

제7장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활력 증진

제1절 농어촌 복지여건 개선

1.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 농촌정책과 사무관 송현주

◆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WTO,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고령화, 과소화 되는 농어촌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04.3월)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위원회'를 구성·운영('04.12월)하였다.

범정부 차원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추진으로 복지·교육·생활인프라 등 농어촌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도시와 농어촌간 공공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여전하고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여건의 개선이 미흡하여 농어촌 주민의 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을 느낄 수 있는 정책목표 제시가 필요하였다.

〈표 2-7-1〉 도시-농어촌 서비스 차이

| 구 분 | 도 시 | 농어촌 |
|--------------------------------|---|--|
| 약국 비율('20) | 92.1%(21,287개소, 시지역) | 7.9%(1,820개소, 군지역) |
| 보육시설 설치 비율('19) | 83.0%(31,034개소, 동지역) 98.1%(어린이집이 있는 동의 비율) | 17.0%(6,337개소, 읍·면지역) 66.3%(어린이집이 있는 읍·면의 비율) |
| 상수도 보급률('18) (지방·광역상수도 보급률) | 99.7%(특광역시) 99.1%(일반시 동지역) | 77.0%(면지역) |

(자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병의원 및 약국 현황, 보건복지부 2019 보육통계, 환경부 2018 상수도통계)

이에 따라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목표치의 최소 기준을 설정·관리하는 제도인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10~'14) 기본계획 수립('09.12월)으로 제도의 도입·운영 계획이 구체화되었으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10.7월)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11.1월)을 거쳐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2년부터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였으며, '13.9월에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 부문 “경찰 순찰” 항목을 신설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도록 하는 등의 서비스 기준 개정을 추진하였다.

〈표 2-7-2〉 농어촌서비스기준

| 부 문 | 핵심항목 | 국가최소기준 | '19년 기준치 (%) |
|--------------|--------------------|---|--------------|
| 1. 보건·복지 | 1) 진료서비스 |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능하다. | 80 |
| | 2) 응급서비스 |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97 |
| | 3) 노인 |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80 |
| | 4) 영유아 |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80 |
| 2. 교육 | 5) 초·중학교 |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 100 |
| | 6) 평생교육 |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 40 |
| 3. 정주생활 기반 | 7) 주택 |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 95 |
| | 8) 상수도 |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 82 |
| | 9) 난방 |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 70 |
| | 10) 대중교통 | 마을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 100 |
| | 11) 광대역 통합망 |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 90 |
| 4. 경제 활동·일자리 |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100 |
| 5. 문화·여가 |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 50 |
| 6. 환경·경관 | 14) 하수도 |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85 |
| 7. 안전 | 15) 방범설비 |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 60 |
| | 16) 경찰 순찰 |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 100 |
| | 17) 소방 출동 |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 55 |

이후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15~'19) 기본계획 수립('14.12월)으로 농어촌 주민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구성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과 매칭될 수 있도록 7개 부문, 17개 항목으로 수정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 이행실태 점검 방법 및 통계자료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은 <표2-7-2>에서 제시한 국가최소기준의 최근 수치를 공식통계, 행정조사, 부처협조 자료를 통해 파악하는 과정이다. 점검에 필요한 자료들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통계수치를 사용하였으나 자료의 공개가 늦게 이루어지는 일부 공식통계, 지자체 행정조사 및 중앙행정기관 협조 자료는 '19년 이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전 자료를 사용하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핵심항목의 경우 '19년의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가 '19년의 농어촌 현황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9년에는 먼저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농어촌 서비스 기준 7개 분야(①보건·복지, ②교육, ③정주생활기반, ④경제활동·일자리, ⑤문화·여가, ⑥환경·경관, ⑦안전) 17개 항목을 22개 세부기준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평가('18.12월)하였다.

138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점검·평가를 실시한 2019년 결과를 2018년 이행실태 수치와 비교하면, 보건·복지 부문의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노인,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상수도, 난방, 경제·일자리 부문의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환경·경관 부문의 하수도 항목, 안전 부문의 방범설비, 소방출동 총 9개 항목의 달성도가 증가한 반면 영유아, 초·중학교, 평생 교육 3개 항목은 전년대비 이행실태 수치가 하락하였다.

- 보건·복지 부문: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노인 항목은 개선, 영유아 항목은 이행실태 수치 감소
 - 모든 주요 과목의 1차 진료서비스 가능 비율: ('18) 71.0% → ('19) 72.5%
 - 응급환자 발생 시 30분 이내 응급처치 서비스 가능 비율: ('18) 99.4% → ('19) 99.5%
 -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비율: ('18) 73.3% → ('19) 76.1%
 -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중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인 비율: ('18) 69.0% → ('19) 67.9%
- 교육 부문: 초·중학교, 평생교육 항목 모두 이행실태 수치 감소
 - 초·중학교가 모두 운영되고 있는 읍·면의 비율 ('18) 70.3% → ('19) 69.8%

- 평생교육시설이 1개소 이상인 비율: ('18) 20.4% → ('19) 18.8%
- 정주생활기반 부문: 상수도, 난방 항목은 개선, 광대역통합망 항목은 목표치 달성 후 관련 통계자료 수집이 종료, 대중교통 항목은 이행실태 수치가 전년과 동일
 - 시·군의 면지역에서 광역 및 지방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 비율: ('18) 72.9% → ('19) 75.8%¹⁷⁾
 - 읍 지역에서 도시가스가 보급된 가구의 비율: ('18) 63.1% → ('19) 65.9%
 - 행정리 중 일일 3회 이상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한 지역 비율: ('18) 88.6% → ('19) 88.6%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이행실태 개선
 - 창업 및 취업 관련 전문 컨설팅 및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군 비율: ('18) 73.2% → ('19) 76.1%
- 문화·여가 부문: 이행실태 수준 유지
 - 시·군내의 문화시설에서 월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시·군의 비율: ('18) 93.5% → ('19) 93.5%
- 환경·경관 부문: 하수도보급률 전년대비 개선
 - 하수도 보급률: ('18) 82.9% → ('19) 85.2%
- 안전 부문: 방범설비 항목과 소방 출동의 이행실태 개선
 - CCTV 설치 행정리 비율: ('18) 53.6% → ('19) 57.1%
 - 화재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 현장에 도착한 비율: ('18) 18.8% → ('19) 42.2%

지역별(시·도) 결과에서는 광역시(부산, 대구)와 수도권에 근접한 경기도의 경우 다른 도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준수하여, 지역별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시 내의 군 지역(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은 제외)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항목 대부분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높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경기도는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소방출동 항목을 제외한 11개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높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를 보였다.

기준 항목별로 2019년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시·군의 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항목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진로서비스, 영유아, 경제활동의 3개 기준 항목에서 중기 목표를 기 달성한 농어촌 시·군의 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경제활동, 문화여가 부문과 일부 항목(응급서비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기 목표를 기 달성한 지역이 많지 않았다. 이행실태가 지속적으로 향상된 항목(상수도, 난방, 하수도 등)일지라도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아직 소수이다.

17) 읍·면이 설치된 도농복합시와 모든 군을 점검·평가의 대상으로 한다(단,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는 분석에서 제외).

군지역의 경우 영유아 항목에서 중기 목표 달성 지역이 감소한 반면, 도농복합시는 영유아와 평생교육 2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 지역이 감소하였다. 도농복합시에 비해 취약한 여건을 가진 군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기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하는 서비스 공급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 수립('14.12월)을 계기로 삶의 질 향상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 점검·평가, 환류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간 공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또한, 2015년부터 국가단위의 핵심(공통) 농어촌서비스기준 외에 광역자치단체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을 도입하여 지자체별 이행실태의 점검·평가 실시를 지원하고 서비스기준을 비롯한 삶의 질 향상 계획이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삶의 질 관련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4) 수립과 병행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도 개편 추진 중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 개편의 핵심 방향은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의 생활SOC 확충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기초생활인프라 기준의 시설 공급 조건과 비교할 수 있도록 일부 항목을 추가하고 접근성 개념을 적용한 목표치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2.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

▮ 농촌정책과 사무관 송현주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어촌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시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에 도시와 같이 공공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리한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 사업체의 영세성, 계절제 근무, 경제활동인력의 특성, 낮은 재정자립도, 사회자본 부족 등 농어촌 여건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농어촌영향평가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농어촌이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고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10~14)을 수립하면서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도입이 결정(09.12월)되었고, 이후 농어촌영향평가로 제도명을 변경하여 세부적인 도입방안을 위한 마련하고 시범운용을 거쳐 '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영향평가의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11.7월)

◆ 추진내용 및 성과

제2차 삶의 질 계획기간에 농어촌영향평가는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문평가를 실시하고 9개 부처와 9개 도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 전문 평가의 경우 총 8개 정책(2011년 2개정책, 2012년 2개 정책, 2013년 4개정책)에 대한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를 통해 도농 간 비교분석 자료를 생산하고, 정책 평가 종합 및 개선 과제를 발굴하며,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2014년에는 2011~2012년에 진행한 전문평가에 대한 추수 평가(follow-up assessment)를 실시하여 영향평가 제도의 유효성과 성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검토 결과 해당 사업이나 정책이 이미 시행된 이후에 영향평가가 이루어져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체평가의 경우 '13년에 4개 중앙부처와 9개도에서 일시적으로 실시하였으나 호응과 수행 의지가 적어 관련 부처나 지자체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에서는 농어촌영향평가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15년도에는 사전영향평가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 결과 각 부처나 지자체의 정책 수립 시 농어촌 사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법·제도 및 추진기반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전의무화 전면 도입 이전에 전문지원기관을 주축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농어촌에 차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개선된 영향평가 제도에서는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라는 이원화는 유지하되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농어촌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사전적인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즉, 영향평가의 정책 개선에 관한 시의성과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어촌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맞추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어촌영향평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삶의 질 정책 연구 네트워크와 현장자문단을 활용하여 농어촌영향평가 대상 이슈를 발굴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15년은 2개 이슈(주거급여 개편, 지방교육재정 개혁)에 대해서 농어촌영향평가 전문평가를 수행하였으며, '16년은 4개 이슈(‘농촌 일자리 지원사업, 그 역할과 개선과제는?’, ‘대체·전환복무 제도 폐지가 농어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공중보건의사제도를 중심으로)’ 등)에 대한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를 수행하였다.

'17년에는 농어촌 영향평가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농어촌 영향평가지침(안)’을 마련하였다. 법령상 영향평가제도의 운용지침에 대한 수립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였다. 본 지침에서 농어촌 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를 제시하였고, 영향평가의 수행 의무 등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침에서는 농어촌 영향평가에서 삶의 질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개선하였다. 삶의 질 위원회에서 영향평가의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 결과 및 정책 환류 방안을 논의하도록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관계 부처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책 반영도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18년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에 포함되거나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 외에, 중앙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영향평가의 취지에 따라 정책 이슈를 제기하는 ‘농어촌 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주가·교통·교육 부문 이슈와 과제’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9년에는 ‘농어촌 영향평가 운영지침(안)’의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작성하여 '20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였다.

‘농어촌 영향평가 운영지침(안)’에서 제시한 영향평가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과제는 관계 부처 및 차시단체장, 전문가 등에게 추천을 받아 발굴하며, 삶의 질 위원회가 심의하여 승인하도록 한다. 이후 전문지원기관은 해당 과제에 대해 식견을 갖춘 전문가와 공동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삶의 질 위원회는 영향평가 결과와 정책 환류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영향평가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영향평가 대상 정책 소관 부처는 삶의 질 위원회에서 심의한 정책 개선 및 조정 사항에 대해 후속조치 이행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표 2-7-3〉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수행 절차(안)

| | |
|---------------|---|
| ① 후보 과제 발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 과제 발굴 - 각 부처·전문지원기관·분과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 ↓ | |
| ② 위원회 과제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에서 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2개 이상) |
| ↓ | |
| ③ 위원회 심의·승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평가 시행계획 심의·승인(매년) |
| ↓ | |
| ④ 영향평가 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지원기관 등 전문 연구기관이 영향평가 수행 |
| ↓ | |
| ⑤ 위원회 결과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사항 보고 |
| ↓ | |
| ⑥ 위원회 후속조치 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속 조치(정책개선과제) 이행·보고(위원회) |

◆ 평가 및 향후계획

도농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특수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농어촌영향평가 제도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통해 정책 수립 시 농어촌에 차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 부처와의 협의 과정이 생략된 채, 전문지원기관 중심의 개별적인 연구 수행 형태로 추진되면서, 관계 부처가 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비된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안)을 바탕으로 영향평가 준비 단계에서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고, 삶의 질 위원회를 통해 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환류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향평가방식을 연구과제 형태의 전문영향평가 방식 대신, 현재 중요 정책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3.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 농촌사회복지과 사무관 이윤식

◆ 추진 배경 및 개요

▶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부터 추진되었으며, 2000년 12월부터는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상 어려움과 경제능력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률을 22%로 확대(중전 : 15%)하였다. 또 2004년 1월에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WTO-DDA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농수산물 개방 등으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연금 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 지원 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을 연도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에는 8%, 2005년에는 18%, 2006년에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 목표치인 28%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휴·폐경지 등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 재해 시 보험료 납부유예, 소득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주민 등 요양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표 2-7-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실적

| 연도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국 지 원 율 | 28% | 28% | 28% | 28% | 28% | 28% | 28% | 0~28% | 0~28% | 0~28% | 0~28% | 0~28% |
| 월 평 균 지 원 세 대 (천세대) | 484 | 457 | 435 | 413 | 402 | 387 | 368 | 351 | 335 | 326 | 318 | 314 |
| 지원예산 (전년대비 증감) | 1,559억 (8.9%↑) | 1,559억 (-) | 1,626억 (4.3%↑) | 1,718억 (5.7%↑) | 1,704억 (0.8%↓) | 1,789억 (5.0%↑) | 1,838 (2.7%↑) | 1,730 (5.9%↓) | 1,682 (2.8%↓) | 1,686억 (0.2%↑) | 1,695억 (0.5%↑) | 1,515억 (10.6%↓)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 지역은 농어촌과 준농어촌이며, 준농어촌은 농어촌 외의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6년 7월과 2008년 4월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취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까지 준농어촌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농어촌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동안 국회 및 감사원에서 지적한 ‘고소득·고액재산가가 더 많은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하였다.(’15.1.28). 동 법 시행을 위해 농어업인의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마련(’15.3.24)하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을 구체화하였다.(’15.7.29) 즉,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자 중 보험료부과점수 1,801점부터 2,500점까지의 소득·재산 상위 5~1%까지는 정액지원(14,078 세대 지원축소), 보험료부과점수 2,501점 이상인 최상위 1%(3,630세대)를 지원제의 함으로써 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연간 85.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

▶ 연금보험료 지원

1995년 7월에 전국 농어업인과 군 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제도는 2017년 현재 월평균 376천명의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199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최저등급 보험료의 1/2을, 2004년 7월부터는 기준등급 이하는 본인 보험료의 1/2 금액을 정률, 기준등급 초과는 해당 기준등급의 1/2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등급체제로 되어 있는 표준소득월액을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지원함으로써 연금제도를 내실화하였다.

그동안 정책 수혜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시 농어업인 확인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하여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14년 12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국민연금공단 전상망 연계를 완료하고, '15년 1월 경영체등록농가에 대한 농어업인 확인서류 제출 면제를 통한 지원신청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11만명의 농어업인의 서류제출 면제의 혜택을 누리고, 별도 증명서류 발급·제출에 소요되는 시간 감소로 약 13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표 2-7-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 구 분 | 2004.7 ~ 2005.12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기준등급 (기준소득 월액) | 12등급 (440천원) | 13등급 (480천원) | 14등급 (520천원) | 620천원 | 730천원 | 790천원 | 850천원 | 910천원 | 910천원 | 910천원 | 910천원 | 970천원 |
| 지원금액 (월/원) | 8,800~ 19,800 | 9,900~ 21,600 | 9,900~ 23,400 | 9,900~ 27,900 | 9,900~ 32,850 | 9,900~ 35,550 | 11,700~ 38,250 | 11,700~ 40,950 | 12,150~ 40,950 | 12,600~ 40,950 | 12,600~ 40,950 | 13,500~ 43,650 |

* 1995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의 지역가입자의 단계별 보험료 확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짐.

〈표 2-7-6〉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실적

(단위 : 억 원)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502 | 605 | 673 | 731 | 793 | 888 | 861 | 984 | 924 | 1,238 | 1,403 | 1,638 | 1,751 | 1,759 | 1,777 | 1,963 |

◆ 평가 및 향후 계획

▶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반적인 의료 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농어업인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보장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이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의료·보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 보험료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소득감소 등으로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연금보험료 수급 대상이 되는 농어업인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하고, 가입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4.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지원

▮ 농촌사회복지과 사무관 신승현

◆ 추진 배경 및 개요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UR타결 등으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4년도 2학기부터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해 무이자로 학자금을 용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용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자녀, 취약 계층 자녀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학자금 용자를 받은 학생은 졸업 후 2년 거치기간을 거쳐 1학기 분을 1년 이내에 상환하면 된다. 사업

운영을 위해 매년 용자재원의 일부를 사업을 위탁한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기존 정부 출연금 재원을 활용하여 별도 국고출연금 없이 학자금 용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15,220명을 대상으로 357억원(상환금 채용자액 포함)을 지원하였다.

〈표 2-7-7〉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현황

| 연도 | 국고 출연금 | 용자 현황 | |
|-----------|---------|---------|-----------|
| | | 지원자수(명) | 용자금액(백만원) |
| 1994~2010 | 408,849 | 364,345 | 751,673 |
| 2011 | 60,482 | 33,273 | 110,295 |
| 2012 | 35,507 | 33,694 | 92,496 |
| 2013 | 31,100 | 40,267 | 102,115 |
| 2014 | 20,800 | 41,661 | 99,707 |
| 2015 | 11,400 | 37,191 | 90,121 |
| 2016 | - | 28,974 | 68,042 |
| 2017 | - | 25,797 | 60,477 |
| 2018 | - | 21,614 | 50,555 |
| 2019 | - | 15,220 | 35,738 |
| 합 계 | 568,138 | 642,036 | 1,461,219 |

2004년부터 교육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당해 사업은 사업시행 이래 수혜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우선, 도입 당시에는 학기당 용자 한도액이 100만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한도액을 확대하였다. 2001년에는 학기당 150만원, 2003년에는 2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학교에서 통보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는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 주민의 대학생 자녀 이외에 농어업인 본인 대학생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원격대학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또한 2009년부터 지원 시 직전학기 성적(70/100점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연동되도록 하였고, 2011년 용자금 상환 거치기간을 연장(1년→2년)하여 수혜자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였다. 2014년에는 장기연체자의 회생을 지원하고, 상환율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약정제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에는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제3자의 용자상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농업인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과 연계하였고 일반/취업후상환 대출을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으로 전환대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8년 2학기부터는 ‘거치·상환기간 선택제’를 도입하여 기존에 졸업 후 2년 거치, 1년 상환하는

방식에서 거치 및 상환기간을 각각 최대 10년씩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별 경제적 여건에 따른 상환규모 조정으로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등 학자금 대출지원 확대를 위한 신청편의성 제고 및 상환제도 개선을 도모하였다. 2019년 1학기부터는 농어촌용자 전환대출을 용자심사 완료 후 학생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전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장애·사고 및 질병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지원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수혜 학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신청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대학 외에도 농촌 지역의 고등학교, 타학자금대출 수혜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상환 유예 지원대상을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폐업한 경우도 인정하는 한편 대출자 및 단기연체자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환안내를 실시하여 장기 연체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사업관리를 내실화하여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5. 여성·취약농가 지원 확대

■ 농촌여성정책팀 사무관 김성경, 농촌사회복지과 사무관 이윤식

◆ 추진 배경 및 개요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농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보육시설 등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젊은 농업인들이 도시로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양육 부담에 따른 출산 기피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젊은 층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이관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다.

▶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사고나 질병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다문화, 고령농 등 취약 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다. 농어촌 인구 과소화 등으로 농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즉각적인 노동력 보충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기초적인 가사생활 보장을 위해 2005년에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2006년부터 취약농가 인력 지원사업(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9년에는 공동아이돌봄센터 37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동식놀이교실 6개소를 지원하였다.

〈표 2-7-8〉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실적

(단위: 개소)

|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 10 | 21 | 25 | 27 | 28 | 29 | 29 | 37 |
| 이동식 놀이교실 | 2 | 3 | - | 3 | 2 | 3 | 3 | 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영농도우미는 농업인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이 어려울 경우 영농을 대행할 수 있는 도우미를 최대 10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 70천원의 70%를 국고로 지원하며, 30%는 자부담이다. 2007년까지는 65세 이하, 3ha 미만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농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2008년에는 69세, 5ha 미만, 2009년은 70세 이하, 2010년은 75세 이하, 2013년은 80세 이하까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지원 조건도 2008년은 14일 이상 입원 시 지원하였으나, 2011년에는 5일 이상, 2013년에는 3일 이상, 입원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고, 2019년에는 17천 농가에 83억원을 투입하여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였다.

행복나눔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고령가구, 다문화 가정, 장애인, 조손가구 등 취약 농가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행복나눔이를 최대 12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행복나눔이의 1일 활동비 15천원의 70%를 국고 지원하며, 30%는 농협에서 부담한다. 2006년에는 65세 단독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200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가구를 포함하였고, 2009년에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2010년에는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보건복지부의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65세 이상 부부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토록 하였으나, 농촌 지역의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부처간 협의를 통해 '14년부터 지원을 재개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농어촌지역의 공동이용시설인 경로당에 행복나눔이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에는 15천 가구에 16억원을 투입하여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였다.

〈표 2-7-9〉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추진실적

(단위 : 천호, 백만원)

| 연 도 | 계 | | 영농도우미 | | 행복나눔이 | |
|------|-------|-------|-------|-------|-------|-------|
| | 지원농가수 | 지원금액 | 지원농가수 | 지원금액 | 지원농가수 | 지원금액 |
| 2010 | 33 | 6,520 | 13 | 5,460 | 20 | 1,060 |
| 2011 | 28 | 6,520 | 14 | 5,460 | 14 | 1,060 |
| 2012 | 25 | 6,300 | 15 | 5,460 | 10 | 840 |
| 2013 | 25 | 7,140 | 15 | 6,300 | 10 | 840 |
| 2014 | 26 | 7,560 | 16 | 6,720 | 10 | 840 |
| 2015 | 32 | 8,610 | 17 | 7,140 | 15 | 1,449 |
| 2016 | 32 | 8,610 | 17 | 7,140 | 15 | 1,449 |
| 2017 | 32 | 8,610 | 17 | 7,140 | 15 | 1,449 |
| 2018 | 29 | 8,610 | 15 | 7,252 | 14 | 1,337 |
| 2019 | 31 | 9,968 | 17 | 8,330 | 14 | 1,617 |

* 예산 편성액 기준으로 재조정

◆ 평가 및 향후 계획

▶ 농촌 보육여건 개선

농촌의 보육여건을 개선하여 젊은 층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농촌 특성에 맞는 보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복지부)과 병행하여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추가 지정하여 농촌 보육시설 개소 수를 확대 하고, 시간 돌봄, 계절 돌봄 등 농촌 지역의 다양한 돌봄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비 확보 애로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수요조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또한, 행복나눔이 지원을 통해 농촌 취약농가의 기초생활 유지에 기여를 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취약계층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도우미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상수준 확대

■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 임채홍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업은 광업, 건축업 등과 함께 작업 중 사고나 질병의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농업인은 항상 농작업 과정에서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농업인은 농작업과 관련한 사고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의의 사고 시 농업인의 재산 및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사고 및 농기계 사고를 보상·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사업(2012년 3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공제사업에서 보험사업으로 변경)을 1996년부터 도입·운영(보험료의 50% 국고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안전재해보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년에는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을 개발·보급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안정망을 확충하였으며, 보험료 산출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전년 대비 약 10%의 보험료를 인하함으로써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상품 및 제도 개선

2019년에는 '2020~202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11월)을 통해 예방사업 실행 체계 및 환류시스템을 정비하여 국가차원의 안전재해 예방 기반을 구축하였고 특히, 영세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50%→70%), 현장의견을 반영한 상품개선 등으로 가입률('18 : 63.3% → '19 : 64.8%)을 제고하였다.

▶ 사업 홍보 강화

농업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기획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농업인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역농협의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서도 보험상품을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농진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기계 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농기자재 박람회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업인안전보험은 1996년부터 정부가 지원한 이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까지 7,825억원의 장해·사망 보험금 및 치료·입원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작업 재해사고 이후 농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농업인을 보호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표 2-7-10〉 농업인안전보험 추진 실적

(단위 : 천건, 억원)

| 구분 | 합계 | 2008년 까지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사업량 (계약건수) | 16,999 | 8,311 | 791 | 804 | 817 | 803 | 807 | 784 | 776 | 744 | 710 | 807 | 845 |
| 지급보험금 | 7,825 | 2,163 | 400 | 425 | 446 | 474 | 516 | 488 | 478 | 477 | 525 | 653 | 78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NH농협생명(주), 농업보험정책금융원

향후에는 '농업인 안전보험 발전방안'을 마련 및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매년, 농진청)을 통해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안정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농업인안전보험 사망보험금 연장특약(보험기간 내 '농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이후 이를 직접 원인으로 보험종료 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 도입을 통한 보장성 강화, 비슷한 보장범위의 보험상품을 통합하여 운용 효율성 제고 등으로 가입률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 농지연금 활성화

■ 농지와 사무관 복육규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나, 농업인의 노후생활은 불안정한 여건에 놓여 있다. 이에,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농지연금 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추진 성과

농지연금은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담보농지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수급자가 사망하는 등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환 또는 농지의 저당권 실행으로 농지연금의 채무(월 지급금 등)를 회수한다.

2019년까지 총 가입건수는 14,492건이며, 총 4,880억원의 연금을 지급하였다. 가입한 농가가 받는 평균 월 연금액은 농가당 90만원이고, 평균 연령은 74세로 나타났다.

〈표 2-7-11〉 농지연금 사업 추진 실적

| 구분 | 가입(건) | 평균 연금액(만원) | 담보농지(m ² , 백만원) | |
|-------|--------|------------|----------------------------|-------|
| | | | 평균면적 | 평균평가액 |
| 계 | 14,492 | 902 | 3,756 | 172 |
| 종신형 | 6,417 | 837 | 3,810 | 218 |
| 종신정액형 | 4,579 | 849 | 3,909 | 210 |
| 전후후박형 | 688 | 913 | 3,691 | 212 |
| 일시인출형 | 1,150 | 746 | 3,485 | 254 |
| 기간형 | 8,075 | 954 | 3,713 | 136 |
| 기간정액형 | 8,029 | 954 | 3,710 | 136 |
| 경영이양형 | 46 | 914 | 4,182 | 111 |

◆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가입요건 완화, 이자율 인하,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및 평가를 상향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였고, 2017년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등 연금 수령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적은 연금액에 대한 불만 해소를 위하여 2018년 농지연금모형 재설계 연구용역을 실시, 담보농지 평가를 상향 및 기초변수 조정 등을 통해 연금액 인상 효과가 있는 제도적 검토를 완료하였다. 이로 인해 고령농의 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가입건수가 연평균 15.8%씩 증가하며 농업인의 호응이 커지고 있다. 2019년도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3,209건으로 전년보다 21.0% 증가했다. 향후에도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현장밀착형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통합형 지역개발 및 농어촌 산업육성

1. 농촌 종합개발

■ 지역개발과 사무관 박혜민

◆ 추진배경 및 개요

‘09년까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부처별 특성에 따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각각의 세부사업을 추진해 행정구역단위 분산투자, 중앙부처의 과도한 간섭, 지역 간 유사·중복사업 추진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0년부터 국토를 초광역개발권, 5+2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3개 차원으로 구분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광역발전계정을 신설하고 지역개발계정의 200여개 세부사업을 22개 단위사업(시도 자율편성사업 18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4개)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발전정책의 광역화·효율화·자율화를 추진해왔다.

포괄보조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10년부터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을 대상으로 '09년 이전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던 1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4개 사업유형(읍·면소재지 종합개발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신규마을 조성,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해왔다. 각 사업유형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4개의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지역희망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확대하고 역량에 맞는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5년부터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군 역량 강화' 및 '기초생활인프라'의 유형으로 사업추진 내용을 개편, '18년에는 '시·군 역량 강화' 유형에 '현장포럼', '재능나눔' 편입 및 '농촌신활력플러스' 유형 신규 추진, '19년에는 '농촌중심지활성화'를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으로 유형을 세분화하고, '농촌다움복원', '농촌형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사업을 신규추진하였다.

〈표 2-7-12〉 일반농산어촌 123개 시·군

| 구분 | 해당 시·군 |
|--------|---|
| 경기(10) |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
| 강원(9) |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
| 충북(11)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 충남(15)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전북(13) |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 전남(21) |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 경북(23)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
| 경남(18)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
| 세종(1) | 세종시 |
| 제주(2) | 제주시, 서귀포시 |

〈표 2-7-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 구 분 | 세부유형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
| 농촌중심지 활성화 | 농촌중심지활성화 |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지원조건(5년 이내, 국고 70%, 지방비 30%) - 150억 + α |
| 기초생활거점 | 기초생활거점 |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지원조건(5년 이내, 국고 70%, 지방비 30%) - 40억 + α |
| 마을만들기 | 종합개발 |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지원조건(5년 이내, 국고 70%, 지방비 30%) - 10억원 |
| | 자율개발 |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지원조건(5년 이내, 국고 70%, 지방비 30%) - 5억원 |
| | 신규마을 | ○ 지원내용 - 마을기반조성, 공동이용시설, 마을운영·관리 등 ○ 지원조건(5년 이내, 국고 70%, 지방비 30%) - 1.5~36억원 |
| 시·군 역량 강화 | 역량강화 | ○ 지원내용 - 마을역량진단, 주민 및 지자체 역량강화, 중간지원조직 등 ○ 지원조건(1년, 국고 70%, 지방비 30%) - 3억원 + α |
| | 현장포럼 | ○ 지원내용 - 지역주민 주도 공동체 중심 협의 프로그램 지원 ○ 지원조건(1년, 국고 70%, 지방비 30%) - 실소요액 |
| | 재능나눔 | ○ 지원내용 - 도시민의 다양한 자원 활용 농촌지역 필요 재능나눔활동 지원 ○ 지원조건(1년, 국고 70%, 지방비 30%) - 실소요액 |
|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빈집정비 농업기반정비 | ○ 지원내용 - 농산어촌의 기초생활환경 등 종합적 정비·확충 ○ 지원조건(1년, 국고 70%, 지방비 30%) - 지자체의 계속소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
| 농촌신활력 플러스 | 농촌신활력플러스 | ○ 지원내용 - 다양한 자원 및 민간 자생조직 활용 산업고도화, 사회적경제조직육성, 일자리창출 ○ 지원조건(4년, 국고 70%, 지방비 30%) - 70억 |
| 농촌다움복원 | 농촌다움복원 | ○ 지원내용 - 농촌지역 난개발 방지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창의적 사업 지원 ○ 지원조건(5년, 국고 70%, 지방비 30%) - 20 + α |
| 농촌형공공 임대주택 | 농촌형공공임대주택 | ○ 지원내용 - 고령화·과소화 되는 농촌지역의 고령자 등에게 주거·문화·의료 등 복지서비스 제공 ○ 지원조건(3년, 국고 70%, 지방비 30%) - 한도내 |

〈표 2-7-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내용 예시

| 기능별 사업 | 세부사업 | 사업 내용 예시 |
|------------------|----------------|---|
| 기초생활 기반 확충 | 문화 | 다목적마당(예시 :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레포츠 시설, 쉼터 등), 마을방송, 향토자원정비 등 |
| | 복지 | 고령자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휴, 공동급식 등), 다목적회관(농어업인회관 등), 서비스 전달시설(이동식 세탁소, 도서관, 커뮤니티 버스 등), 마을문화시설(마을박물관, 마을도서관, 마을공부방 등) |
| | 주거·수질 환경 개선 | 빈집정비, 신규마을기반조성, 지붕 및 담장정비, 공동쓰레기 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혐오시설 철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
| | 지역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5일장) 정비(간판정비, 비가림시설 등) 등 |
| | 도로·교통 | 연결도로,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소형교량, 공동주차장, 교통안전환경개선, ICT 연계 교통시스템 등 |
| | 안전· 재해대비 | 재난대피안내판, 간단응급처치장비, 안전펜스,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 보안등, 공동 방역시설 및 장비, 범죄예방환경조성(CPTED) 등 |
| | 상하수도 |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
| 지역소득 증대 | 생산기반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 |
| | 소득기반 | 특산물 소규모(집하장, 선별장, 가공장, 저장창고, 로컬푸드판매장, 로컬푸드 반가공 시설 등) 공동 시설,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
| 지역역량 강화 | 체험관광 | 농산어촌체험시설(폐교활용, 생태체험장, 야영장 등), 전망대,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
| | 경관·생태 | 마을경관 가꾸기(수목식재, 산울타리 조성 등), 생태쉼터(둑병정비 등), 마을 도랑·샘터·옛길 복원 및 정비, 소규모 친환경에너지시설 등 |
| 지역역량 강화 | 교육·훈련 | 리더양성, 전문가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 및 장비 구입,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
| | 홍보 | 홍보·마케팅(지역축제 활성화, 정보화교육, 마을기록화, 마을신문 등) |
| | 지역 활성화 | 유지관리활성화프로그램,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연계 프로그램, 사회적경제조직 등 전문조직 발굴 및 육성, 공동체활성화,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등 |
| | 사업지원 |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수립, 감리비,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총괄계획가, PM단, 현장 활동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경비(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0년부터 '14년까지 시도, 시·군에서 수립하는 시도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시·군 단위로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기획·시행하도록 하였으나, '15년부터는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대체하여 포괄보조계획의 법정계획화를 유도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및 사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해 시·군의 사업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정주체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 및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으로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복지·소득 증진,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생활환경 개선, 마을개발사업 등을 통한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인에 기여하였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시·군 스스로 통합적인 중장기 농촌계획의 수립체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중장기 비전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질 제고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상향식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체계를 단계적·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운동 확산을 유도하였으며,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과 시민의 귀농·귀촌 유인에 기여하였다. '19년에는 123개 시·군 1,964개 사업에 9,256억원을 지원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기초인프라를 확충하였다.

〈표 2-7-15〉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도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 | 2019 |
|----|---------|---------|
| 계 | 879,351 | 925,595 |
| 세종 | 4,903 | 5,492 |
| 경기 | 32,741 | 36,843 |
| 강원 | 55,104 | 66,563 |
| 충북 | 90,500 | 88,928 |
| 충남 | 94,592 | 114,452 |
| 전북 | 107,502 | 128,899 |
| 전남 | 182,312 | 179,730 |
| 경북 | 144,703 | 142,004 |
| 경남 | 148,866 | 143,468 |
| 제주 | 18,128 | 19,216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예산설명서

◆ 평가 및 향후 계획

포괄보조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각 시·군의 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사업 대상 선정 및 투자로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아울러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으로 마을개발사업의 통합적 지원과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지역경관 개선,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역별 특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 내용의 창의성 저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간 갈등, 소득사업 사유화 등 부실 운영, 중간지원조직이나 현장 지원체계 미비로 인한 주민 지원체계의 부족,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각 시·군의 창의적인 사업기획을 위한 다양한 사업군 신설로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마을단위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 자체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역할 분담 및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시·군 역량 강화 사업비를 확대·차등화하여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사후 역량 강화 지원을 마련하였다. 또한, '16년 신규사업부터는 마을 역량에 따라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및 ‘자립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역량 단계별로 지원가능 사업을 체계화하였다.

2. 농촌 주거환경 개선

■ 지역개발과 사무관 정수진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지역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면서 도시민 유치 촉진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농촌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부처 간 업무 조정에 의해 1976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정비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와 협업으로 '15년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취약지역(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추진 성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조성하여 연간 1만동 이내로 지원하며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 확대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재원을 5,500억원('17년 5,0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농촌주택개량자금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 등을 할 때 소요되는 건축비를 지원하며,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중 대출자가 선택할 수 있다.

〈표 2-7-16〉 농촌주택개량사업 개요

(단위: 동, 백만 원)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지원물량(계획)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세대당 용자한도액 | 실소요비용 | 200 | 200 | 200 | 200 |
| 용자재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50,000 | 550,0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

또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도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낙후된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여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소외 지역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위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15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주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상하수도 설치·개량 지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공동화장실 확충,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지붕누수 보수, 벽체 및 창호단열, 보일러 개보수, 노인·장애인 주택 장애물 제거 등 집수리,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사업 홍보,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로 기초생활인프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3년간 추진하며 '15년 첫해에는 지자체의 공모를 통하여 55개 지구(마을)를 선정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예산 300억원을 지원하였다. '16년에는 '15년 선정 계속지구(55개소)와 '16년 선정 신규지구(44개소)에 국고 38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7년에는 '15년 선정 계속지구(55개소)와 '16년 선정 계속지구(44개소)와 '17년 선정 신규지구(35개소)에 국고 535억원을 지원하였다. '18년에는 '16년 및 '17년 선정지구에 국고 380억원을 지원하였다. '19년에는 생활 SOC 확대 차원에서 주거환경이 취약한 72개 지구를 선정하여, 계속지구 35개소를 포함하여 총 국고 453억원을 지원하였다.

'15~'19년 선정 206개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면, 3,263동의 빈집이 철거되고, 13,061동의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철거·개량되고, 5,513동의 재래식화장실이 철거 또는 수세식으로 개선되며 기초생활인프라(상·하수도 정비, 마을 안길 등)가 정비되는 등 15,797가구, 31,064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촌 주거환경 개선 정책은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19년에는 주택개량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확대 추진하여 농촌주택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문화 정착에 노력하였다.

'15년도에는 안전과 위생에 취약한 마을을 사업대상지로 하여 상·하수도, 비포장의 좁은 마을 안길 등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개별 요소를 일괄 계획하여 기초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신규로 도입한 노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주거환경이 취약함을 인지하고 있지만 고령화·저소득 등으로 현실적으로 개선의 여력이 부족한 주민에게는 슬레이트 지붕주택, 집수리, 재래식화장실 등 까지 정비·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사업은 마을에 꼭 필요한 소규모 활동(휴먼케어)과 주민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소프트사업 측면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 역할도 하고 있는 점은 이 사업을 평가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약지역 주민도 기본적인 삶의 질을 충족하며 살 수 있도록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3.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기술서기관 손경자

◆ 추진배경 및 개요

계속되는 이상기후와 가축질병 및 자유무역확대로 농업·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부는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ICT를 농식품 분야에 적용하는 등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ICBM(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드론, AI트랙터 등이 농업인을 대신하거나, 작물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등 최첨단 농업기술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고해상도 위성·항공영상을 이용한 농경지 전자지도를 구축하였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팜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 첨단기술을 산업화하고, 안전한 농식품 공급 및 빅데이터 기반의 농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스마트 팜 보급 확대를 통한 첨단 미래 농업 기반 구축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생산성 향상과 함께 안전하고 균일한 품질 등 시장요구에 대응이 가능하며, 유능한 청년을 농업에 유입시키고,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정부는 2014년 이후 시설원예 및 축산분야 스마트팜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시설원예(누계) : '14년 405ha → '19년 5,383/ 축산(누계) '14년 23호 → '19년 2,390

2019년에는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량 32.1% 증가하였고, 자가노동시간은 1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

또한, 스마트팜은 국정과제이자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선정('17.11)되어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수립·발표('18.4, 경제관계장관 회의)하여 청년인력 육성, 기술혁신, 전후방산업 성장 등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에 4개소(전북, 경북, 전남, 경남)를 선정하여 '22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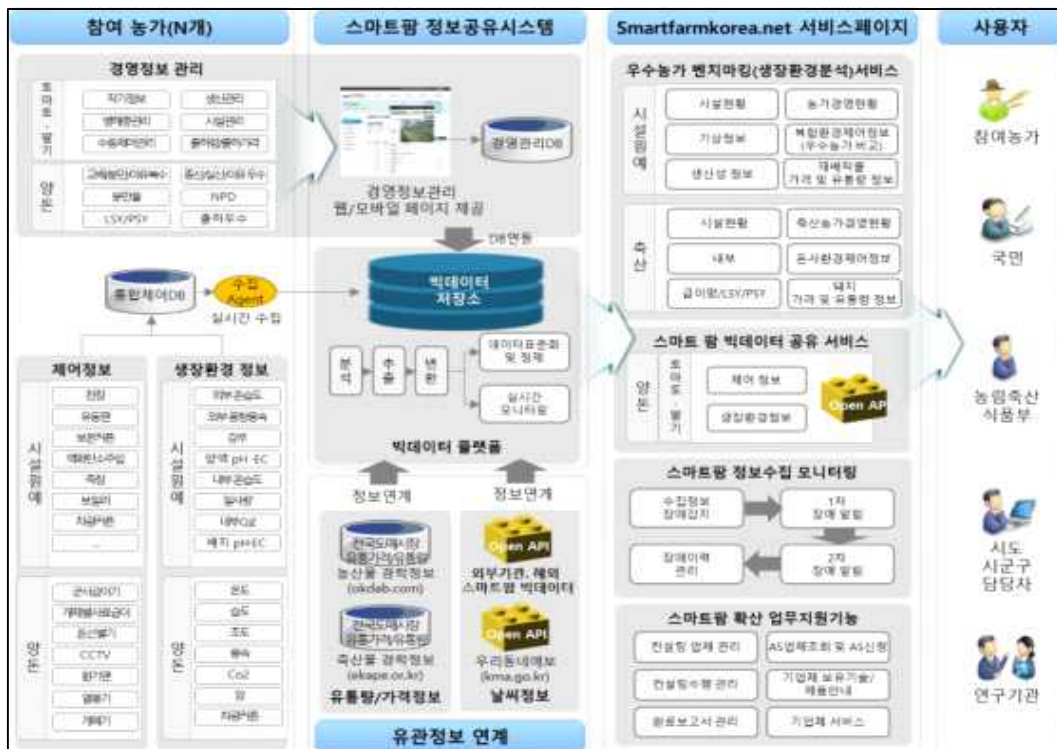
스마트팜의 현장 확산을 보면, 스마트팜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농가에 대해 설치 단계별로 3단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도입 전 단계에서는 농가시설에 적합한 ICT 융복합 시설을 추천하고, 도입 단계에서는 농장에 최적화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도입 후에는 장비 고장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창농·창업할수 있도록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실습형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팜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스마트팜 119(통합콜센터, 1522-2911)와 현장 지원센터(12개소, 지자체 농업기술원 연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밴드(스마트팜 불만제로) 등 A/S 지원체계를 다양화하여 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팜 우수사례 발굴, 사업설명회 개최, 농업관련 박람회 참가를 통해 스마트팜 정책 및 성과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스마트팜 수요를 촉진하고 첨단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팜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팜 도입 우수농가와 환경제어 정보를 비교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집된 스마트팜 데이터는 오픈API형태로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그림 2-7-1〉 스마트 팜 2.0 서비스 개념도



* 출처: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스마트팜 2.0 추진계획, 2018

▶ 팜 맵 기반 통계·행정자료 연계를 통한 스마트농정 통계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고해상도 위성·항공영상, GIS(지리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국 농경지의 면적 및 속성정보(논, 밭, 과수 등)를 제공하는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을 구축하고 있다. 필지별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직불제, 친환경인증, 농촌공간계획 농지분포 현황 분석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현장을 반영한 스마트농정 추진기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2-7-2〉 농경지 전자지도 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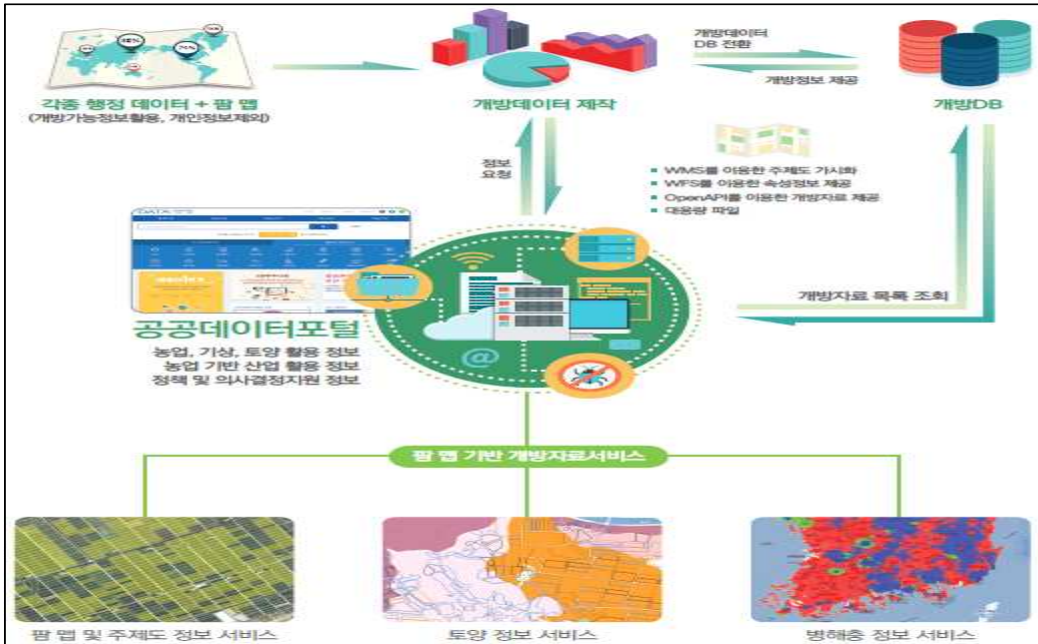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스마트농정 통계체계 구축 기본계획, 2020.]

팜맵은 2013년에 각 도별 한 면에 시범구축을 추진하고 2014년부터 3년간 3개도 권역으로 전국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부터 당해 입수 가능한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1년에 반 판씩(좌판, 우판) 2년 주기로 전국 팜맵을 현행화하고 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팜맵 자체 변화율, 농식품부 경영체 정보, 통계청 경지면적조사, 국토부 국토변화정보를 분석하여 변화율이 높은 일부 시군을 선정하여 위성영상 및 지자체 영상을 참고하여 팜맵을 갱신하고 있다. 또한, 팜맵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현장검증, 공공측량, 감리뿐만 아니라 상시 자체검증 등 6단계 검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한 팜맵을 활용하여 직불금 등 보조금 현장점검 대상농가의 선정방식을 과학화(행정정보만을 활용한 추출에서 공간분석기반 표본 추출체계로 전환)하고, 농업정책의 기반인 연속지적도의 장점을 융합한 팜맵 2.0을 구축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보조금이 집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환경부, 통계청,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팜맵을 제공·지원 중이다.

2019년에는 팜맵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 스마트 국토엑스포(국토교통부 주최)에 참가하여 전시부스를 운영하면서 팜맵 활용모델 홍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친환경인증 정보, 농촌공간계획 농지분포 현황 등 활용모델을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기관별 각종 행정·통계 자료와 연계한 다양한 주제별 전자지도를 제공하여 농업인과 농정업무 담당자의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7-3〉 2018~2019년 팜맵 기반농업활동 지원정보 개방



[출처 :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스마트농정 통계체계 구축사업 원료보고서, 2018]

아울러, 행정안전부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사에 필요한 농업활동 지원정보(팜맵, 팜맵 기반의 토양·농업기상·병해충 정보)를 2019년에 5월부터 개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로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농정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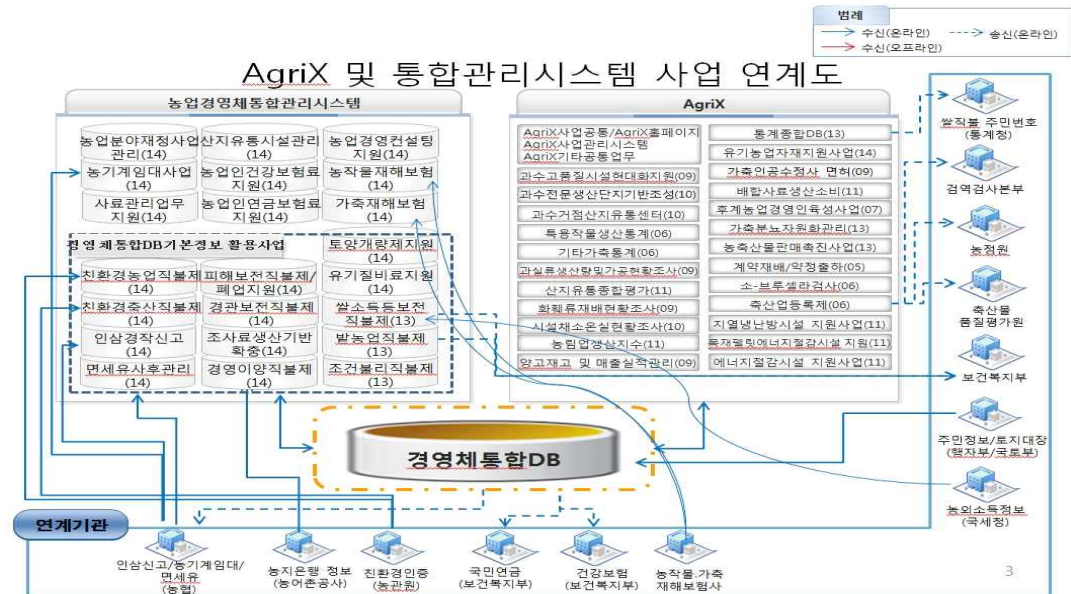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농식품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DB(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양질의 농업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중심으로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을 통합하고 재배품목, 농지정보, 사육규모, 보조사업 신청 현황 등 56개 항목을 관리하는 등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농업보조금 지급 및 관리를 효율화 하는 등 지속적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초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농지별, 재배품목별 등 다양한 농업경영정보와 읍면동 단위의 농업 현황을 바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를 구축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시군 또는 읍면동 단위의 세부적 농업현황 파악이 가능하여 지역중심의 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 추진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체별 보조금 수혜이력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유기질비료 지원 등 개별 농가의 보조금 수급 내역 등의 정보가 담긴 115개 농식품 사업도 경영체 DB와 연계하였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보조금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의 중복, 편중지원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업경영체 통합DB(데이터베이스)를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자체에서 추진하는 농업보조사업 관리 및 지역 중심 농업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농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2-7-4〉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연계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은 사업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이행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보조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체 농림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농식품 분야 보조·융자사업을 통합·연계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획득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농업경영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과거 비농업인의 직불금 부당수령, 직불사업간 중복 수령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던 일부 직불금의 수급 현황을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고 중복수급 등 부당 보조금 수령을 원천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다. 또한 쌀, 밭, 조건불리 등 각종 직불금 신청도 통합됨에 따라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성도 제고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조금의 정상화 및 효율적인 정책자금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경영체DB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보조사업 관리지원, 지역 농업정보 확인 등 지방농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ICT를 통해 자동 취득된 생육·환경정보를 기계가 스스로 학습·분석하여 최적화하는 인공지능(AI)형 제어 스마트 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확산을 유도해 나가는 등 농업인의 스마트 팜 활용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정책결정지원 및 농업인에게 시의성 있는 영농정보 제공을 위해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경지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관련 정보 발굴, 정보의 융·복합 개방 및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공공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기관별 정보화 계획과 정보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객관적으로 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4차 산업을 기반으로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고,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4. 농촌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확대

■ 농촌산업과 사무관 이동민·김동남

◆ 추진 배경 및 개요

여가, 휴양, 삶의 질 향상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국민의 체험·여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관광 형태도 유명 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 중심의 체험관광·휴양 등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및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내관광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 웰빙 생활 중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러한 여건변화를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 도모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도시방문객들이 농촌체험관광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고 있다.

2015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운영 전 과정을 지자체로 이관하여 지자체의 책임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였으며 2019년에는 총 1,05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마을리더 및 사무장 등이 마을운영에 필요한 농촌관광정책방향, 서비스마인드, 마케팅 등 기본교육과정과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과정을 편성하여 차별화된 농촌관광을 주도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마을들의 체험프로그램 개발, 방문객 관리, 도시민 유치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제도를 2006년부터 도입하여 2019년에는 521개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폭넓은 도시민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 도심에서 “도농교류의 날(7.7) 및 농촌여름휴가 캠페인”과 관계기관 합동 “농산촌 여름휴가보내기 대국민 캠페인(7~8월)”을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매월 계절·테마별로 우수 농촌여행지 및 농촌여행코스를 선정하여 홍보하고,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농촌관광객 유치를 확대지원하고 산림자원과 연계한 특별 농촌여행상품 12종을 개발·운영 및 설·추석 연휴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여행주간과 연계한 “농촌 여행주간”을 2회 운영(2·9월) 운영하여 농촌관광지 할인행사 및 이벤트 등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웰촌포털(www.welchon.com), SNS 채널(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운영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농촌관광 등 다양한 도농교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시민의 농촌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2019년에는 980개 마을에 체험안전보험, 989개 마을에 화재보험가입을 지원하고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2회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대상 서포터즈 2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외국인 대상 맞춤형 여행상품 77종을 개발하고 306회 운영하였으며, 주간 미군 대상 팸투어도 4회 실시하였다.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 등 수준을 차별화하고,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3년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등급제는 농촌관광 사업자의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4개 부문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여 부문별로 1~3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2019년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촌민박 326개소에 대한 등급평가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 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소득 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회복의 전기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도농상생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1사1촌 운동 확산 등으로 농촌관광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농촌관광 등 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내·외국인 관심 제고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지원 및 농촌관광 시설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주도의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보급에 따른 획일적 관광콘텐츠 제공에서 탈피하기 위해 농촌 현장 주도로 지역의 음식·숙박·체험을 연계한 특색 있는 체류형 농촌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체험마을 등 농촌관광 사업자와 전문가·현장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농촌관광 협의체를 통한 상향식 농촌관광 콘텐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험마을사무장 운영에 대한 계속 지원과 농촌 관광사업 등급제도를 개선하여 품질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초·중학생과 민간단체의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확대하고 중학교 자유학년제 진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체험처 품질제고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1사1촌 운동, 농촌 여름휴가 캠페인 추진, 도농교류 정부포상, 외국인 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5. 향토자원 산업화

▮ 농촌산업과 사무관 김방연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역특화사업 내의 세부사업 형태로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신설하였다. 2005년 제1차, 2006년 제2차 향토자원 발굴조사를 통해 선정한 49개(2005년 19개, 2006년 30개) 자원에 대해 ‘시·군별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제시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토자원 발굴 형태의 사업에서 공모형태의 사업(정부편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신규 선정한 사업대상 30개 향토자원에 대한 산업화 지원을 위해 사업설명회,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지역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와 사업 추진 마인드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또한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평가를 통해 환류되도록 하였고,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통해 성과관리도 강화하였다. 또한 2012년, 2013년도에는 농촌 부존자원에 대한 가치 및 산업화 가능성 등의 분석에 기초한 향토산업 등 농촌 산업화 지원을 위해 161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원일제조사 및 보완 조사를 실시하여 1,011개의 자원을 발굴하였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 중인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해 농촌의 향토자원을 지역 핵심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 내 향토자원의 산업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등), 하드웨어(생산시설, 판매시설 등) 분야를 포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지자체 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사업)으로 이관하여 신규지구 선정부터 예산편성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방식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으로 채택하였다. 중앙부처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정부는 시장개방, 농가소득 정체,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 위축 → 일자리 축소 → 농촌 활력 저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단위에서는 부존자원의 효과적인 발굴과 이를 산업화 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0년 시작된 농촌자원복합산업지원사업은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산업을 연계·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지역도 나타났으나, 일부 사업간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역단위의 사업추진 역량이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단위의 사업추진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간의 효율적인 연계 추진 등을 도모하고자 기존 균특회계가 광특회계로 개편되는 시기에 맞춰 2010년 이전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던 여러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인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향토산업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제한적 H/W 분야와 함께 지적재산의 권리화, 연구용역·컨설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네트워킹 구축 등 S/W 분야에 걸쳐 포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산·학·관·연간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사업추진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의 부존 향토자원 257개를 발굴하여 산업화를 추진하고, 2018년 현재 추진중인 향토산업육성사업 48개 지구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동안 농업 생산 위주의 1차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산·학·관·연의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화 기술개발, 농업의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 1·2·3차산업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17〉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실적

| 구 분 | 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사업량(개소) | 257 | 18 | 28 | 28 | 28 | 29 | 26 | 24 | 19 | 14 | 15 | 11 | 8 | 9 |
| 예산(억원) | 3,522 | 43 | 90 | 286 | 344 | 406 | 409 | 438 | 397 | 328 | 224 | 219 | 167 | 171 |

* 2007~2008년도 선정지구에 대한 사무리사업비까지는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지원하고, 2009년도 신규선정분부터는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2010년도부터는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2015년부터는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 및 제주계정에서 지원, 2018년부터는 균특회계 지역자율기반계정 및 제주계정에서 지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포괄보조금 통합 첫해인 2010년에는 16개 내역사업에 대하여 2,359억원, 2011년에는 17개 내역사업에 대하여 2,435억원, 2012년에는 13개 내역사업에 대해 2,031억원, 2013년에는 6개 내역사업(유형)에 2,280억원(수산분야 174억원 포함), 2014년에는 1,763억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6차 산업화지원 유형을 추가하여 7개 내역사업에 1,578억원, 2016년에는 1,567억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농촌공동체우수사업지원을 추가하여 8개 내역사업에 1,563억원, 2018년에는 1,319억원, 2019년에는 1,267억원을 지원하여 총 매출액 3조 5,178억원, 총 고용인원 10,532명 등 농촌지역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다. 다만 종전의 여러 개별사업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사업은 목표와 내용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고 있다

(표 2-7-18)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분야별 지원 실적

| 구 분 | 계 | 기획평가 구축지원 | 농산물생산· 유통기반구축 | 농산물제조· 가공지원 | 체험·전시 지원 | 농촌체험· 관광지원 | 농공단지조 성 지원 | 6차산업화 지원 |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
|------|---------|--------------|------------------|----------------|-------------|---------------|---------------|-------------|---------------------|
| 2010 | 2,359억원 | - | 1,035 | 396 | 10 | 392 | 523 | - | - |
| 2011 | 2,435 | - | 848 | 501 | 13 | 547 | 526 | - | - |
| 2012 | 2,031 | - | 557 | 545 | 38 | 429 | 462 | - | - |
| 2013 | 2,106 | 4 | 561 | 572 | 50 | 416 | 503 | - | - |
| 2014 | 1,763 | 4 | 601 | 511 | 38 | 351 | 258 | - | - |
| 2015 | 1,578 | 6 | 553 | 417 | 10 | 241 | 271 | 80 | - |
| 2016 | 1,567 | 4 | 489 | 386 | 11 | 306 | 253 | 118 | - |
| 2017 | 1,563 | 5 | 464 | 360 | 64 | 358 | 133 | 163 | 16 |
| 2018 | 1,319 | 5 | 451 | 338 | 5 | 271 | 99 | 141 | 9 |
| 2019 | 1,267 | 7 | 431 | 327 | 28 | 173 | 135 | 158 | 8 |

* 2013년의 2,106억원은 수산분야 174억원 미포함 금액, 2017년부터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이 농특회계에서 이관

◆ 평가 및 향후계획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촌지역의 향토자원의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 핵심사업으로 사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지구를 선정하여 지속 추진하되, 사업계획 수립단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반면,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부여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과 연계하고, 부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감액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부진지구의 경우는 익년도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특별 컨설팅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에 따라 ①농촌산업화기획·평가체계 구축 지원, ②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③농산물제조가공지원, ④농산물 체험·전시지원, ⑤농촌 체험·관광지원, ⑥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개보수 지원, ⑦6차산업화지원, ⑧농촌공동체회사 지원 등 8개의 사업 유형으로 구성하여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량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 강화하여 예산집행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우수사례·우수경영체를 발굴하여 타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사업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20년도부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지방이양되어, 향후에는 사업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기존에 투입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역특화산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6. 농공단지 조성사업

▮ 농촌산업과 사무관 정명희

◆ 추진배경 및 개요

농공단지조성 지원제도는 탈농인구의 재촌 흡수,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1984년에 7개 시범단지 조성 이후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이 시행되었다.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하나로서 지정·개발·관리 등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지정 승인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시책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지역의 지역별 구분 및 농공단지 조성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표 2-7-19) 농공단지 부처별 지원 현황

| 부 처 명 | 지 원 내 용 | 관 련 법 |
|---------|--------------------------------------|-----------------------|
| 산업통상자원부 | 농공단지 시책 총괄, 관리 및 입주기업지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의 지역별 구분,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 농어촌정비법 |
| 해양수산부 | 특화농공단지 수산분야 | 농어촌정비법 |
| 국토교통부 | 농공단지 지정 및 입지기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환경부 |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지원 | 환경정책기본법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을 낙후도(재정자립도, 산업집적도, 산업단지 면적 등)를 감안하여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업종의 특화여부에 따라 농공단지 유형을 일반단지,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등 3개로 구분, '13년부터 일반 및 전문단지 신규조성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특화단지에 한해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입주 기업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농공단지 기반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공단지는 2019년도에 6개소 조성, 64개소 개보수 등 70개소에 135억원을 지원하여 2019년 말 기준으로 472개소를 지정하고 442개소 조성을 완료하였다.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2019년 말 7,486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7,193개 업체가 공장을 설립·가동 중에 있으며, 고용인원 152천명, 생산액 56조 642억원(업체평균 84.2억원), 연간 수출액 119억 86백만 달러(업체평균 178만 달러)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추진되어 온 농공단지 관련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에 저렴한 산업입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원 제공 등 농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농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이나 대도시 집중 산업의 지방분산 유도 등 국가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20년도부터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방이양되어, 향후에는 사업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기존에 투입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역특화산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7. 사회적 경제

■ 농촌사회복지과 사무관 이지은

◆ 추진배경 및 개요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직·간접적인 지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농업·농촌분야에도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존재한다. 2019년말 기준, 7,378개의 농업·농촌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이 활동 중이며, 법인유형별로 살펴보면 협동조합 5,598개, 농업법인 614개, 기타(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비영리단체 등) 1,166개소이다.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이 많고, 이 중 2,234개의 조직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농장·농촌공동체 회사 등 부처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업·농촌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있고, 농촌공동체회사,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농식품부가 선정·관리·인가하고 있다. 농촌공동체회사는, 2011년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활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활력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농어촌공동체회사'로 선정하여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양수산부와 분리되면서 지금의 농촌공동체회사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고, '19년까지 누적 272개소의 우수 농촌공동체회사를 지원하였다. 한 회사 당 총 5천만원 사업비의 50%를 국비 지원하며, 제품 홍보, 마케팅, 교육,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촌공동체회사는 기존의 농업법인 및 기타 법인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우에 선정될 수 있고, 선정되는 경우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게 된다.

2018년부터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농장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조직으로서,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귀농귀촌희망자 등과 함께 농산물 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농촌주민과의 교류활동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농장에 프로그램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개선비 등을 개소당 연간 6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전국 18개 농장이 활동 중이다.

향후에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및 제도적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맞춤돌봄사업 등 기존 사회보장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제3절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구축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농업기반과 사무관 송영호

◆ 추진배경 및 개요

과거의 경지정리는 당시의 영농 수단인 경운기 등을 이용한 영농방식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필지는 600~1,200평 규모로 작고, 농로가 협소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 대형 농기계 작업이 어렵다. 또한 수로는 용수로 및 배수로를 겸하고 있어 물 관리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역 중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하고 필지 규모가 작아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는 평야부의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재정비하는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4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시·도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인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회계 명칭을 변경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사업내용은 기존에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를 주 대상으로 필지 규모를 3천 평 수준으로 대형화 하고, 용·배수로 신설 및 구조물화를 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며, 농로를 3~7m 폭으로 확장·포장하는 것으로 1994년 가을에 5천ha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국고 2조 7,961억원을 투입하여 135.9천ha를 완료하였다.

지방재정 부담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했던 50ha 미만 지구를 대상지에 포함해 목표면적을 150.8천ha에서 169.6천ha로 조정 ('09.7월)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원 단가를 적용토록 하였다.

〈표 2-7-20〉 대구회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 구 분 | 목 표 | 2018년 까지 | | 2019년 계획 | | 2020년 이후 |
|--------------|--------|----------|-------|----------|-------|----------|
| | | 누계(%) | 누계(%) | 누계(%) | 누계(%) | |
| 사업량(천ha) | 169.6 | 135.9 | 80.1 | 1.8 | 81.2 | 31.9 |
| 사업비(억 원, 국고) | 37,632 | 27,961 | 74.3 | 437 | 75.5 | 9,234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대구회 경지정리사업으로 영농기계 대형화에 맞는 영농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향상 및 영농편의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기능조정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밭 기반 정비사업

■ 농업기반과 사무관 송영호

◆ 추진배경 및 개요

1970년대 일부 지역에서 밭 용수 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쌀 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 영향으로 우량 밭이 논으로 전환되어 밭 정비가 정착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 증대와 더불어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신선 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밭작물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밭 기반 정비 여건이 성숙되어 1994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전국 단위의 밭 기반 정비를 시행하게 되었다.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시·도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인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회계 명칭을 변경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해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개발, 농로개설, 밭 경지정리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국고 2조 2,268억원을 투입하여 118.5천ha를 추진하였다.

한·중 FTA 등에 대비하여 2015년부터 밭 기반 정비 대상지역을 집단화 규모 30ha에서 10ha 이상으로 완하여 목표면적을 110천ha에서 180천ha로 확대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원단가를 적용토록 하였다.

〈표 2-7-21〉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 구 분 | 목 표 | 2018년 까지 | | 2019년 계획 | | 2020년 이후 |
|--------------|--------|----------|-------|----------|-------|----------|
| | | | 누계(%) | | 누계(%) | |
| 사업량(천ha) | 180 | 118.5 | 65.9 | 3.2 | 67.6 | 58.3 |
| 사업비(억 원, 국고) | 38,774 | 22,268 | 57.4 | 569 | 58.9 | 15,93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쌀 기반 정비사업으로 고소득 작물에 대한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향상과 영농편의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기능조정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자체 주관으로 선호하는 지역과 규모로 정비하도록 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 농업기반과 사무관 송영호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어촌지역의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농식품부가 농어촌 소득원 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 1991년 12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어촌 소득원 도로사업이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로 이관되어 1991년부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이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 위주로 추진되어 농로 및 경작로 확·포장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농식품부 주관으로 기계화 영농에 의한 영농편의 제공과 농산물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시·군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회계 명칭을 변경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산단지외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8년까지 국고 2조 3,495억원을 투입하여 목표연장 35천km 중 28.3천km를 완료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원 단가를 적용토록 하였다.

〈표 2-7-22〉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 구 분 | 목 표 | 2018년 까지 | | 2019년 계획 | | 2020년 이후 |
|--------------|--------|----------|-------|----------|-------|----------|
| | | 누계(%) | 누계(%) | 누계(%) | 누계(%) | |
| 사업량(천km) | 35 | 28,3 | 80,9 | 0,5 | 82,3 | 6,2 |
| 사업비(억 원, 국고) | 29,689 | 23,495 | 79,1 | 454 | 80,7 | 5,74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 평가 및 향후계획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주산단지와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개선에도 이바지하였으며,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기능조정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 간척지농업과 서기관 신동원, 농업기반과 사무관 임정근

◆ 추진배경 및 개요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노후한 시설물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지성 호우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해 침수, 시설물 붕괴 등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게 사실이다. 이러한 피해는 농경지 침수 뿐 아니라 인근 주택가는 물론 인명 사고와도 관련이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이에 따라, 안정영농기반구축을 위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배수개선사업과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수개선은 2010년부터는 국가재난방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까지 국고 6조 8억 원을 투입하여 189.8천ha를 완료하였다.

또한 최근 기후 변화 및 기상 이변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증가된 강우량 등이 반영된 배수개선 설계기준을 개정 및 시행('12.4월)하여 선제적 방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강우패턴 변화, 농의 재배작물 다양화 등을 감안하여 배수개선 대상면적을 확대(232천ha→303천ha, '13.2월) 하였다.

〈표 2-7-23〉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 구 분 | 목 표 | 2018년 까지 | | 2019년 계획 | | 2020년 이후 |
|--------------|---------|----------|-------|----------|-------|----------|
| | | 누계(%) | 누계(%) | 누계(%) | 누계(%) | |
| 사업량(천ha) | 302.7 | 185.8 | 61.4 | 4.0 | 62.7 | 112.9 |
| 사업비(억 원, 국고) | 118,491 | 57,247 | 48.3 | 2,761 | 50.6 | 58,48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방조제개보수사업은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단면 보강, 배수갑문 교체 및 부속시설의 사전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방조제·배수갑문 2,869지구(국가관리 241, 지방관리 2,628)를 대상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총 1,836지구(국가관리 202, 지방관리 1,634)를 완료하였다.

〈표 2-7-24〉 방조제 개보수 추진현황

| 구분 | 목 표 | 2018년 까지 | | 2019년 계획 | | 2020년 이후 |
|---------|--------|----------|-------|----------|-------|----------|
| | | 누계(%) | 누계(%) | 누계(%) | 누계(%) | |
| 사업량(개소) | 2,869 | 1,815 | 63.2 | 21 | 63.9 | 1,033 |
| 사업비(억원) | 32,069 | 18,198 | 56.7 | 435 | 58.1 | 13,43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 평가 및 향후계획

최근 기후 변화와 논에서의 재배작물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강우 패턴 분석과 농업 기반시설의 재해대비 능력을 조사하여 배수개선 설계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배수개선 및 방조제개보수사업이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 효과가 조기에 발생할 수 있도록 준공위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5. 수리시설개보수

■ 농업기반과 사무관 강대일

◆ 추진배경 및 개요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의 수리시설은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이 많아 최근의 기상변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 등 강우패턴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재해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노후화된 용·배수로는 용수누수가 많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후된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이 절실한 실정으로 노후·파손 또는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을 대상으로 수리시설의 상태 및 재해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7-25〉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 계 | 저수지 | 양·배수장 | 취입보 | 집수암거 | 관정 |
|--------|--------|--------|-------|--------|-------|--------|
| 계 | 72,610 | 17,240 | 8,723 | 17,955 | 2,615 | 26,077 |
| 30년 이상 | 43,786 | 16,624 | 3,901 | 16,082 | 2,450 | 4,729 |
| 30년 미만 | 28,824 | 616 | 4,822 | 1,873 | 165 | 21,348 |

자료: 2019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 추진내용 및 성과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와 시설관리자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5,11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수지, 양·배수장 등 보수·보강을 추진하여 104지구를 준공하였고, 누수과다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197km를 구조물화 또는 친환경 수로 등으로 정비하였다.

〈표 2-7-26〉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 총계획 | 2019년 까지 | 2020년 계획 | 2021년 이후 |
|-----|-------|----------|----------|----------|-----------|
| 사업비 | | 149,323 | 97,238 | 5,648 | 46,437 |
| 사업량 | 수 원 공 | 5,842개소 | 3,763개소 | 146개소 | 1,933개소 |
| | 수로정비 | 21,600km | 9,223km | 583km | 11,794천km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 평가 및 향후계획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적기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대비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리시설 안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 농촌용수개발사업

■ 농업기반과 서기관 이재천 사무관 송영호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촌용수개발은 영농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 물이 부족해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 양수장, 보,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가뭄에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래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국가로 지목되면서 이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농촌의 다양한 용수 수요에 맞추어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추진 성과

그동안 꾸준한 용수개발 사업을 통해 일시적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영농기반은 구축되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발생빈도 및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농업용수 공급기반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연간 예산지원 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부족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시행 중인 지구는 완공 위주로 집중하여 투자하고 신규 착수 지구수는 최소화하는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논 면적은 844천ha로 수리시설 설치를 통해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리답 면적은 696천ha(82.5%)이고, 수리시설 없이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수리불안전답(천수답) 면적은 148천ha이다. 또한 10년 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은 526천ha(62.3%)에 불과하므로 용수개발사업을 통해 수리안전답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2-7-27〉 연도별 논 및 수리답 현황

| 연 도 | 단위 | 2000 | 2003 | 2006 | 2009 | 2012 | 2015 | 2017 | 2019 |
|-----------|--------|-------|-------|-------|-------|------|------|------|------|
| 논 면 적(A) | 천ha | 1,149 | 1,127 | 1,084 | 1,010 | 966 | 908 | 865 | 844 |
| 수 리 답(B) | 천ha | 880 | 878 | 859 | 806 | 778 | 734 | 707 | 696 |
| | (B/A)% | 76.6 | 77.9 | 79.2 | 79.8 | 80.5 | 80.8 | 81.7 | 82.5 |
| 수리안전답(C) | 천ha | 421 | 440 | 478 | 504 | 573 | 549 | 534 | 526 |
| | (C/A)% | 36.6 | 39.0 | 44.1 | 49.9 | 59.3 | 60.4 | 61.7 | 62.3 |
| 수리불안전답(D) | 천ha | 269 | 249 | 225 | 204 | 188 | 174 | 158 | 148 |
| | (D/A)% | 23.4 | 22.1 | 20.8 | 20.2 | 19.5 | 19.2 | 18.3 | 17.5 |

자료 : 2019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동 사업은 수혜면적 50ha 이상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65개 지구(22.9천ha)에 2,669억원을 투입하여 10개 지구 2.5천ha를 준공하였고, 2020년도에는 2,484억원을 투입하여 60개 지구(22.0천ha)중 10개 지구 4.8천ha를 준공함으로써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표 2-7-28〉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추진현황

| 구 분 | | 총계획 | 2018까지 | 2019계획 | 2020이후 |
|----------------------------|----------|-------|--------|--------|--------|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90~’30) | 사업량(천ha) | 136.4 | 102.2 | 2.5 | 31.7 |
| | 추진율(%) | 100 | 74.9 | 76.8 | 100.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동 사업은 기존 수리시설의 용수공급능력(부족, 잉여)을 체계적으로 연계 배분·활용하여 여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간·수계간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9지구(5.0천ha)에 798억원을 투입하여 1개 지구 0.4천ha를 준공하였고, 2020년도에는 570억원을 투입하여 9개 지구(수혜면적40.8천ha)중 1개 지구(수혜면적25.4천ha)를 준공함으로써 기 개발된 여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여 가뭄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표 2-7-29〉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추진 현황

| 구 분 | | 총계획 | 2018까지 | 2019계획 | 2020이후 |
|----------------------------|----------|-------|--------|--------|--------|
|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 (’08~계속) | 사업량(천ha) | 8.0 | 2.5 | 0.4 | 5.1 |
| | 추진율(%) | 100.0 | 31.2 | 36.3 | 100.0 |

▶ 소규모 용수개발

수리시설이 미비된 수혜면적 50ha 미만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원활히 공급하여 안정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국고 2,045억원을 투입하여 4.3천ha를 준공하였다.

한편, 소규모 용수개발은 2010년부터 시·군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7-30〉 소규모 용수개발 추진 현황

| 구 분 | | 총계획 | 2018까지 | 2019계획 | 2020이후 |
|------------------|----------|------|--------|--------|--------|
| 소 규모 (’03~계속) | 사업량(천ha) | 11.0 | 4.3 | 0.2 | 6.5 |
| | 추진율(%) | 100 | 39.1 | 40.9 | 10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 지표수 보강개발

농업용수가 부족한 기존 수리시설을 확장·개발하여 저수용량 및 용수공급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물 부족지역 해소 및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국고 1조 1,611억원을 투입하여 35.7천ha를 준공하였다.

한편, 지표수보강개발은 2010년부터 시·군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7-31〉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 현황

| 구 분 | | 총계획 | 2018까지 | 2019계획 | 2020이후 |
|--------------------|----------|------|--------|--------|--------|
| 지표수 보강 (’95~계속) | 사업량(천ha) | 48.6 | 35.7 | 0.6 | 12.3 |
| | 추진율(%) | 100 | 73.5 | 74.7 | 10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 평가 및 향후계획

그간 다양한 농촌용수개발사업을 통해 용수공급을 위한 수리시설이 전체 논면적의 82%수준 설치되어 안정영농기반 구축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10년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담은 61.7%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연강수에 의존하는 천수담이 18%정도 임을 감안할 때 수리안전담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과거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논 농업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논 뿐만 아니라 밭작물과 생활·환경용수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용수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농업용 저수지는 국민들의 관광·레저, 지역주민의 쉼터로서 농촌경관 조성 및 공익적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의 발생빈도가 증가추세에 있어 가뭄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다만, 소규모 용수개발사업과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기능조정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 대단위 농업개발 및 간척사업

■ 간척지농업과 서기관 이형주, 조래청 사무관 정경현, 김성률

◆ 추진 배경 및 개요

1960년대까지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은 대부분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개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1970년대부터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금강, 영산강 등 대규모 하천수계를 중심으로 권역화하여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및 간척 등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며, 그 개발유형에 따라 육지부와 해안부로 구분한다.

〈표 2-7-32〉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개발유형

| 구 분 | 지구명 | 개발유형 | 재원 |
|--------------------|---------------------------------|---|--------|
| 육지부 (4) | 금강Ⅱ,홍보, 영산강Ⅳ, 서산A | 기존농지개발(육지부) -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시설재정비 등 | 농지관리기금 |
| 해안 + 육지부 (5) | 영산강Ⅲ-1 영산강Ⅲ-2 화옹, 시화, 새만금 | 간척농지 및 기존농지개발 - 간척농지조성,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 * 간척농지조성 : 시화·화옹, 새만금 * 간척 및 육지부개발 : 영산강Ⅲ-1, 영산강Ⅲ-2 | |

◆ 추진 내용 및 성과

1970년대부터 25개 지구 310천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17개 지구 166천ha를 완료하였고, 금강Ⅱ지구 등 9개 지구 144천ha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까지 5조 6,922억원을 투자하여 급수면적 20,229ha, 경지정리 13,974ha, 배수개선 1,547ha, 간척농지 11,732ha를 조성함으로써 가뭄 및 수해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였다.

최근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농업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간척지의 다원적 활용차원에서 2014년부터 화옹지구 4공구 768ha에 유리온실, 친환경축산단지, 말조련단지 및 종자연구단지 등 복합단지(에코팜랜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표 2-7-33〉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현황

| 지 구 별 | 위 치 | | 개발면적 (ha) | 사업기간 | 총사업비 (백만원) |
|-----------|-----|------------|--------------|-----------|---------------|
| | 시도 | 시군 | | | |
| 계(17지구) | | | 166,097 | | 4,649,761 |
| 금 강 | 전 북 | 부여, 익산 | 12,148 | '70 ~ '76 | 16,823 |
| 평택 | 경 기 | 평택, 화성 | 18,419 | '70 ~ '77 | 37,657 |
| 영 산 강(Ⅰ) | 전 남 | 나주, 담양 | 34,500 | '72 ~ '79 | 81,238 |
| 경 주 | 경 북 | 경주 | 1,140 | '74 ~ '77 | 4,916 |
| 계 화 도 | 전 북 | 부안 | 2,467 | '74 ~ '79 | 12,521 |
| 창 념 | 경 남 | 창녕 | 2,269 | '75 ~ '81 | 17,358 |
| 임 진 | 경 기 | 파주, 고양 | 7,185 | '75 ~ '83 | 45,807 |
| 남 강 | 경 남 | 진주, 함안 | 5,754 | '77 ~ '85 | 61,903 |
| 낙 동 강 | 경 북 | 안동, 예천 | 3,600 | '78 ~ '84 | 23,029 |
| 미호천(Ⅰ) | 충 북 | 음성, 진천 | 11,554 | '77 ~ '89 | 104,871 |
| 논 산 | 충 남 | 논산, 공주 | 9,938 | '78 ~ '90 | 94,035 |
| 금 강(Ⅰ) | 전 북 | 서천, 군산 | 하구둑 | '83 ~ '90 | 101,000 |
| 삼 교 천 | 충 남 | 아산, 당진 | 24,574 | '75 ~ '94 | 235,546 |
| 대 호 | 충 남 | 서산, 당진 | 7,419 | '80 ~ '96 | 185,630 |
| 영 산 강(Ⅱ) | 전 남 | 목포, 나주 | 20,700 | '76 ~ '98 | 354,472 |
| 미 호 천(Ⅱ) | 충 북 | 청원, 청주 | 4,430 | '89 ~ '12 | 323,947 |
| 새만금(외곽시설) | 전 북 | 군산, 김제, 부안 | 방조제 | '91 ~ '11 | 2,949,008 |

새만금사업은 2010년 외곽시설인 방조제 축조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구상의 개발방향과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변화된 개발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문가 간담회,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2011년 3월)하였으며, 이후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과 여건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새만금 기본계획」으로 공간구상계획을 변경(2014년 9월)하였다.

새만금 전체 내부개발토지(29,100ha)의 30%에 해당하는 9,430ha를 2024년까지 농생명용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선행 공종으로 농생명용지 조성 구간의 방수제 축조공사를 추진하였고, 2019년까지 54.2km를 완성하여 공정률 87%를 달성하였다. 2013년 6월에는 새만금방조제 내측 농생명용지 조성 대상지 9,430ha 중 2019년까지 1,513ha를 준공하였고, 6,627ha를 추진 중에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20년에는 금강Ⅱ지구 등 9개 지구에 국고 3,497억원(농지관리기금)을 투자하여 금강Ⅱ지구 경지재정리 596ha, 화옹지구 1,087ha 준공, 영산강Ⅲ-2지구 간척농지 120ha 착공, 새만금지구 방수제 7.9km 및 농생명용지 6,627ha를 계속 추진하는 등 영농기반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7년 준공된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5공구(1,513ha)는 농학계 대학시험포(170ha) 및 농업특화단지(700ha)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나머지 농생명용지(10개 공구 7,917ha)는 2024년 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표 2-7-34〉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시행지구 현황

| 지구별 | 위 치 | | 개발면적 (ha) | 사업기간 | 총사업비 (백만원) |
|---------------------|-------|-------------------|--------------|-----------|---------------|
| | 시도 | 시군 | | | |
| 계(9지구) | 5개 시도 | 20개 시·군 | 144,294 | '89 ~ '27 | 7,816,633 |
| 금 강Ⅱ | 충남·전북 | 서천·완주·부여·군산·익산·김제 | 43,000 | '89 ~ '22 | 937,117 |
| 홍 보 | 충 남 | 홍성·보령 | 8,100 | '91 ~ '25 | 615,267 |
| 영산강Ⅳ | 전 남 | 무안·신안·함평·영광 | 16,730 | '01 ~ '27 | 891,973 |
|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재정비 | 충 남 | 서산 | 6,446 | '08 ~ '24 | 298,944 |
| 영산강Ⅲ-1 | 전 남 | 영암·해남·강진 | 13,160 | '95 ~ '23 | 599,400 |
| 영산강Ⅲ-2 | 전 남 | 해남 | 7,840 | '97 ~ '24 | 438,741 |
| 화 옹 | 경 기 | 화성 | 4,482 | '91 ~ '22 | 980,891 |
| 시 화 | 경 기 | 안산·화성 | 3,636 | '98 ~ '24 | 437,156 |
| 새만금(내부개발) | 전 북 | 부안·김제·군산 | 40,900 | '09 ~ '24 | 2,617,144 |

V. 농식품산업 국제협력

제8장 체계적인 대외 협상 및 해외 농업 자원 개발

제1절 체계적인 대외 협상

1. WTO/DDA 협상 대응

■ 농업통상과 사무관 박승민

◆ 추진배경 및 경과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에 따라 상품,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국제 무역질서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UR 협상 부문 중 농업협상은 정치적·사회적 민감성으로 인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분야였다. UR 농업협상은 세계 농산물 무역에 있어 공정경쟁 도입을 목표로 했던 만큼 시장접근, 국내보조 및 수출경쟁 등 분야에 있어 무역왜곡적 요소 제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체계화된 농산물 세계무역 규범인 WTO 농업협정이 체결되었다.

WTO 농업협정 제20조는 UR 협상 이후로도 농산물 무역 자유화를 위한 개선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0년부터 WTO 농업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이 출범하였다. 이어서 제4차 각료회의에서 2003년 3월까지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을 위한 세부원칙(Modality)을 만들고 2003년 9월까지 각국이 세부원칙에 따라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를 제출한 후 2004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결정하였다.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중간단계로 세부원칙의 기본골격(Framework)만이라도 합의하는 방안을 시도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2004년 8월 기본골격 합의(Framework Agreement)로 결실을 맺고 협상의 불씨를 살리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각료회의에서는 수출보조금 철폐 시한에 합의하였으나 기타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2006년 4월 말까지 세부원칙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006년에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공식을 포함한 세부원칙 초안이 마련되었고, 이를 기초로 2007년과 2008년에는 협상이 보다 밀도 있게 전개되었다. 각 분야별로 많은 제안서가 나왔으며, 세부원칙 초안도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2008년 7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서 세부원칙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등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 대립으로 결국 타결에 실패하였다.

2008년에는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2월에 세부원칙 수정안, 5월에 2차 수정안, 7월에 3차 수정안을 연이어 배포함에 따라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수준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8년 12월에는 의장이 세부원칙 4차 수정안(Rev.4)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비공식 각료회의를 추진하였다. 당시 4차 수정안에 회원국들이 거의 합의할 분위기라는 관측까지 나왔으나 비공식 각료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면서 결국 합의는 무산되었다.

이후 협상은 정체기로 접어들었으나, 2011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를 계기로 회원국들은 기존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에서 후퇴해 조기 수확(early harvest)이 가능한 소규모 패키지(small package)를 구성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제네바에서 열린 제8차 각료회의에서 조기 수확 방식 도입 의지를 재확인하고 차기 각료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였다. 그 결과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각료회의에서 WTO 출범 후 처음으로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해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농업 부문에서는 ① 개도국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 PSH) 잠정해법, ② 허용보조(Green Box) 내 일반서비스 목록 확대, ③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관리 개선, ④ 수출보조 폐지에 대한 홍콩 각료회의 결정 지지, ⑤ 면화 교역 관련 논의 강화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다.

2015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0차 각료회의에서는 ① 수출경쟁 분야에서 수출보조 철폐, 수출신용 최대 상환기간 설정, 수출 국영무역기업 운영에 대한 원칙, 식량원조의 현금화 제한, ②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별도 논의 지속, ③ 개도국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영구해법 관련 기존 결정 확인 및 논의 가속화, ④ 면화 수출보조 폐지 및 최빈개도국 생산 면화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적용 등이 합의되었다.

2017년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11차 각료회의는 핵심 의제에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각료선언도 없이 종료되어 실패한 협상으로 기록되었다. 농업 부문에서는 국내보조 감축 및 이와 관련하여 개도국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등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제11차 WTO 각료회의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끝난 이후, 2018년 선임된 WTO 농업협상그룹 Ford 의장(가이아나 대사)은 우선 협상의 기술적·분석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회원국들의 구체 문건 제출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8년 9월 이후 매월 농업협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농업협상그룹 월례 회의 외에도 7개의 실무 소그룹(국내보조, 개도국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시장접근,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수출경쟁, 수출제한, 면화)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술적 사안을 논의하고 이를 농업협상그룹 월례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국내보조 및 수출경쟁, 시장접근, 수출제한, 면화 등 관련 일부 문건이 회담되었고, 이 중 우리나라 포함 수입국 그룹은 수출제한 관련 2007-12년 간 회원국들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반기에는 총 12여 개의 구체적인 문건이 제출되는 등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제11차 각료회의 이전의 기존 입장과 비슷한 수준을 견지함에 따라 실질적인 협상 진전은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9년 개도국 특혜 관련 입장 발표, 쌀 관세화 이해당사국(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태국)과의 양자협의 종료 등 농업협상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종결됨에 따라 불확실성은 감소된 상황이다. 또한 농업통보 실적도 대폭 개선하여 투명성 관련 논의에서의 입지도 강화되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WTO 농업협상에서 선진국·개도국, 농산물 수출국·수입국이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WTO 개혁논의, 미·중 무역갈등,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협상 등으로 인해 차기 각료회의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주요 회원국과 협상그룹에서 각자의 관심 이슈에 대해 객관화된 수치 및 분석자료를 꾸준히 제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20년 6월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2차 WTO 각료회의는 DDA 협상 구도 아래 진행되는 현재의 WTO 협상이 종료되고 새로운 방식의 차기 WTO 협상이 개시될지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농업협상그룹 회의 논의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 사안별 우리 입장을 재점검하는 한편, 농산물 수입국 그룹과의 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 FTA 협상 대응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서기관 김성구

◆ 추진배경 및 개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및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 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한 종류로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공동시장→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

2019년 12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484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 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는 26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55%)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1995년 이후에만 90.5%에 해당하는 438건이 체결·발효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의 세계 통상 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어, 많은 국가가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진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GATT(General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FTA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발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2003년 이래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거대경제권,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를 통한 FTA 네트워크 확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및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9년 12월 말일까지 우리나라는 16건 55개국과 FTA를 체결·발효하였는데 FTA를 체결한 상대국(들)과 발효 시기는 다음과 같다.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아세안*('07.6), 인도('10.1), EU*('11.7), 페루('11.8), 미국('12.3), 터키('13.5), 호주('14.12), 캐나다('15.1), 중국('15.12), 뉴질랜드('15.12), 베트남('15.12), 콜롬비아('16.7), 중미('19.10.1 니카라과, 온두라스, '19.11.1. 코스타리카, '20.1.1. 엘살바도르 우선 발효)

*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아세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EU (유럽연합 28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2019년 우리나라는 한-영 FTA('19.6), 한-이스라엘 FTA('19.8), 한-인도네시아 CEPA('19.11)를 타결하였으며 국내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영국 FTA를 체결함으로써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에 대비하여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이 끝나고 한-EU FTA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는 것이 중단된 때 한-영국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한-이스라엘 FTA는 2016년 협상을 개시한 이후 6차례의 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타결되었으며 한-인도네시아 CEPA는 2014년 협상이 중단되었으나 2019년 2월 협상 재개에 합의한 후 4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 선언('19.11)을 하였으며 향후 정식 서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주요 FTA 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추진중에 있다.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 경제 공동체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협상개시 선언하였으며, RCEP 정상회의('19.11)에서 2020년을 타결 목표 시점으로 계획하고 있다. 우리의 대응방향은 농업분야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우리 농산물 수출 가능성을 모색 중에 있다.

둘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을 추진 중에 있다. 메르코수르는 중남미 최대시장**과의 교역 규모 확대 필요 및 중·일 등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 경제 공동체

** 남미지역 인구의 70%(2.9억명) 및 GDP의 76%(2.7조불) 경제규모 시장

2004년 11월 한·브라질,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한·메르코수르 TA 추진이 합의되어 현재 후속 절차가 추진중에 있다. 우리의 대응방향은 메르코수르 회원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응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20년에도 FTA 협상과 개선협상이 지속 개최될 예정으로, FTA 사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가 자문 및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FTA 농업협상에서 우리 측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농민단체 설명회·간담회, 지역설명회 등을 통하여 협상 진행상황 및 결과를 설명하는 등 농업계의 불안감 완화를 위한 소통 및 공감대 형성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제2절 국제협력 및 해외농업자원 개발 강화

1. 국제농업협력사업 내실화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문경덕

◆ 추진 배경 및 개요

경제발전에 있어 상호의존도가 증대되고 있는 글로벌시대에 국가 이미지 제고와 FTA/DDA 등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 강화와 국익증대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2010년 11월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고, 국가별 협력전략(CPS)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마련, 지원규모 확대 등 범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동남아 및 아프리카 개도국을 중심으로 우리의 새마을운동 등 농업·농촌 발전 경험과 기술을 벤치마킹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해외농업개발 및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등 우리 농업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도 개도국과의 협력기반 조성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개도국에 대한 농업 관련 기술전수 프로젝트 사업 등을 통해 UN에서 정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에 적극 참여하여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 및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한편, 양자 간의 호혜적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개도국 국민의 70~8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농업이 주산업이며, 빈곤문제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지원 분야가 농업과 농촌개발임을 감안할 때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제농업협력사업은 첫째, 우리나라 농업·농촌개발의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여 개도국의 농가소득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둘째, 아국에 우호적인 세력 확보로 DDA/FTA 협상 측면 지원, 셋째, 농식품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업·농촌개발 부문 국제협력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중 빈곤 종식, 기아 종식 및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국제 농업협력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6년부터 국제협력을 위하여 4억원가량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100억원, 2012년 105억원, 2013년 128억원, 2014년 141억원, 2015년 148억원, 2016년 156억원, 2017년 173억원으로 매년 예산이 증가하였고, 특히 2018년에는 460억원의 식량원조사업을 시작으로 651억원, 2019년 66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또한, 사업 개수로는 11개('06)에서 신규 협력사업의 추가, 타당성조사 등의 사업을 확대하여 23개('11), 18개('12), 21개('13), 18개('14), 20개('15), 25개('16), 26개('17), 30개('18), 30개('19)로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수립한 '농림 분야 ODA발전방안'에 따라 단기성(1-2년이내), 소규모(약1억)인 일반협력사업을 지양하고, 원조효과 제고를 위해 인적·물적지원을 패키지로화한 중장기 기획협력과 공동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사업 개수가 2012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에는 '국제농업협력(ODA)사업 개선방안' 마련으로 ①사업 성공유형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ODA 전문성을 배양하고, ②수원국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기획하고 기획과정에서 사업기확안의 타당성 검토절차를 강화하였고, ③사업 추진상황과 종료 후 운영상황을 점검토록 개선하였고, ④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사업의 성공,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적 환류가 가능하게끔 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는 글로벌 농업 ODA 포럼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국제기구 및 개도국과의 글로벌 농업개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2018년에 제2회차 포럼을 개최하여 국제기구 및 개도국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국제농업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위상을 널리 알릴수 있게 되었다. 2019년에는 국제기구 및 개도국과 신규사업을 협의하고 사업성과를 점검함으로써 농업분야 양자 및 다자성양자 사업의 체계적인 발굴과 성과 제고에 기여하였다.

2009년 이후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모잠비크를 필두로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가나, 카메룬, 르완다 등이 대상국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신남방 및 신북방 등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몽골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로인해 2019년에는 아시아 5개 국가, 아프리카 6개 국가, 남아메리카 등 2개국가 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획협력사업 22개, 컨설팅사업 3개국, ‘개도국 조류독감 대응능력 제고사업’ 등 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 다자성양자 사업으로 5개를 추진하였고, 농식품부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별로 해당업무에 대한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표 2-8-1〉 농식품부의 협력사업 지역별 현황

(단위: 사업수, 개)

| 연도 | 아시아 | CIS | 아프리카 | 중남미 | 다자/기타 | 계 |
|------|-----|-----|------|-----|-------|----|
| 2012 | 9 | | 7 | | 2 | 18 |
| 2013 | 11 | | 7 | | 3 | 21 |
| 2014 | 8 | | 4 | | 6 | 18 |
| 2015 | 10 | | 4 | | 6 | 20 |
| 2016 | 11 | | 7 | 1 | 6 | 25 |
| 2017 | 10 | 2 | 8 | 2 | 4 | 26 |
| 2018 | 13 | 1 | 10 | 1 | 5 | 30 |
| 2019 | 16 | 1 | 7 | 1 | 5 | 30 |

한편 농식품부는 유·무상 ODA 협의체인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개도국 농업, 농촌 분야 ODA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소속기관, 양청 및 산하기관(단체)이 참여하는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농업·농촌개발 분야 ODA의 중복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관 간 사업 연계 추진으로 원조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농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기업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기업의 해외 진출과 ODA를 연계, 민간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는 등 내실화를 높여 나가고 있다.

그 간의 대표 성과로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센터 역량강화사업('14~'18)로 베트남 축산질병 검역 및 연구기반을 마련하여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축산물 질병통제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질병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2013년 기준으로 동물질병 진단 건수가 270%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고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협력 사업으로 국가별 국가농식품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공공행정 ODA 적용의 모범사례(Best Practice) 제시를 통해 농업ICT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신남방 대상국 중 메콩유역 국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확산기반을 마련하였고 스마트농업 노하우 전파를 위한 국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원국 정책수립을 지원하였고 우리 농기업을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개도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식품부 지원은 2006년도에 도입되어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등 소규모·단기성 협력지원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 중장기 기획협력사업과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위주로 개편하고, 관련 법·제도·조직 등을 체계화, 효율화함으로써 사업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에 수원국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과 기술전수를 요청하는 개도국의 다양한 수요 및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가위상에 비해 여전히 지원규모가 작은 편으로, 아직은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7개 기획협력사업에 대한 외부 종료·사후 평가를 실시해왔다. 특히, 사업성과의 지속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4월에는 사업 성공유형을 발굴하고, 수원국 수요를 보다 반영하며, 사업 종료 후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국제농업협력(ODA)사업 추진 및 평가 방식을 개편하였다. 2019년에는 ‘라오스 시엥쿠양주 관개시설 설치사업’, ‘미얀마 농촌개발 및 영농기술 전수사업’,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한 3건의 종료·사후평가를 실시하였고, 농식품부 평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도출하였다.

앞으로 정부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기조에 부합하기 위하여 컨설팅 사업의 대상국을 확대 및 다양화함으로써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발굴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개도국의 식량안보, 빈곤 퇴치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농업·농촌개발 등 농정정책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며, 사업평가 및 환류를 통해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고, 일부 종료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활용을 지원하며, 개도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농촌분야 ODA사업이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식량원조사업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박다음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 식량이 부족하여 유엔세계식량계획(WFP)로부터 1963년부터 약 20년간 지원을 받아왔었다. 이후 1970년대 식량증산을 통한 주곡 자급 달성,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쌀 재고 증가 등 식량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1984년에 기아 종식을 달성하며 수혜국을 졸업하고, 동시에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격상되었다.

2009년 OECD/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우리 정부는 높아진 국제위상에 걸맞게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전략('15.3월 수립)을 통해 대규모 분쟁과 난민 위기, 평화구축 및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6년 약 200만 톤이라는 역대 최고의 쌀 재고량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쌀 활용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 쌀의 해외 원조를 추진하여 인도적 지원 확대와 함께 국내 재고미를 해소하고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식량원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7년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가입을 결정한 후 우리나라 쌀을 원조하기로 하는 계획에 대한 재정적 검토를 마치고 같은 해 12월에 국회 비준을 거쳐 2018년 1월 UN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가입 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연간 공여 규모를 460억원으로 결정하고, FAC에 연간최소공여 규모를 통보하였으며, 국제식량 원조 전문기구인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아프리카 및 중동 4개국(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에 대한 식량원조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사업 수행 위탁을 위해 우리 정부는 WFP와 식량원조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2018.2월)하였으며, WFP에 약정액을 공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공여자금은 WFP가 쌀을 매입하고, 해외 운송, 보관, 분배, 모니터링을 하는데 활용된다.

2018년 사업은 2017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2018년 식량원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식량원조용 쌀은 2016년산 구곡으로 결정하고, 원료곡 수송(3월 초~4월 중순),

원료곡 가공 및 포장(3월 하순~5월 초순), 선적 개시(3월 하순~5월 중하순) 등의 일정으로 추진되었다. 예멘 17천톤, 에티오피아 15천톤, 케냐 13천톤, 우간다 5천톤이 5월 국내 선적항을 출항하여 6~7월 수원국에 도착하여 7월부터 현지 분배가 이루어졌다. 같은 해 7월에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케냐에서 한국쌀 전달식에 참석하였다. 동 행사에 참석했던 우리나라 대표단은 케냐의 난민캠프를 방문하여 캠프 내의 쌀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현지 난민들이 우리나라 쌀을 배급받아 조리한 밥을 섭취하는 실태까지 확인하였다.

2019년에는 2018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식량원조사업을 지원하되, 식량위기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예멘 19천톤, 에티오피아 16천톤, 케냐 10천톤, 우간다 5천톤을 지원하였다.

WFP 모니터링 결과, 우리 쌀을 지원한 수혜국 난민 및 취약계층의 영양이 개선되고, 식단 다양화에 기여하여 사업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혜자들은 우리 쌀이 돌 등 이물질이 없어 조리가 편하고, 품질이 높고 맛이 좋아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우리 정부의 식량원조사업을 통해 매년 약 280만명(연 누적 900만명)의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난민 및 이주민 등에게 우리 쌀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하나인 기아해소를 위해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식량원조사업을 통해 지원한 국가는 대부분 장기간 분쟁상태에 놓인 곳이며,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난민캠프가 주요 대상이었기에 식량위기상황에 처한 국가의 취약계층에게 현물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긴급식량공급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과잉 생산으로 인해 재고관리의 부담이었던 국내산 쌀을 해외원조로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처를 발굴하여 국내 쌀 수급안정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국내산 쌀의 식량원조 지원은 과거 국민의 주식인 쌀이 없어 배고픔을 경험한 나라,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급속 성장한 대한민국이 수원국과 국제사회에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식량위기 상황, 국제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원국 및 물량을 점차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국내 쌀을 지속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내 쌀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해외원조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여 식량원조사업의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원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한 물가 상승, 위험도 증가 등으로 인해 현지 원조 활동에 필요한 물류비,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은 차년도 예산 확보 등 계획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보완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3.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종화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매년 필요 곡물의 70% 이상(1,600만톤 수준)을 수입하는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으로, 농경지면적이 2019년 기준 1,581천ha로 국내 부존자원 활용으로는 식량자급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곡물도입방식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안정적으로 곡물의 해외공급선을 확보하고자 2009년부터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착수하였다. 이 사업에서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활성화 및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해 재정, 금융, 기술·정보 제공 및 외교 등 측면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에 부족한 곡물을 확보한다는 당초의 목적달성 뿐 아니라 우리 농산업의 외연 확대를 돕는 데도 크게 힘을 보태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병행하여 추진 및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은 지난 11년간(2009~2019년) 261억원을 집행하였고, 융자사업은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농기계 구입, 건조·저장·가공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1,799억원을 14개 국가에 진출한 41개 기업에 융자금을 지원하였다.

▶ 해외농업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해외농업개발은 2009년 추진 당시 해외농업 및 임산 자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소관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2년부터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제정·시행(12.1.15)하면서 독자적인 법체계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같은 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해외농업개발 추진의 기본 틀인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을

9월에 수립하여 공고하고, 2013년에는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4년에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상 개발대상 자원인 임산자원을 산림자원 개념으로 확대하고 해외 농업 자원과 산림 자원의 개발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산림청장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협력법 개정 작업을 착수하였고, 2015년에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으로 개정·시행(15.7.21)되었다. 또한, 2016년에는 농자재 생산, 식품 가공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진출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해외곡물 공급기반 저변 확대 등을 위해 기존의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2017년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영농기업이 다수 진출한 러시아 연해주를 식량안보 및 농산업의 외연확장을 위한 해외농업개발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연해주 농업개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한-러 연해주 농업개발 공동연구(16.6월~17.12월)를 완료하였다. 또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17.12월)하여 향후 5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의 방향을 정립하였다.

2018년에는 신북방정책과 연계,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북방지역의 농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신북방 농업분야 진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18.12.12)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19년에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중점 지원하는 등 용자사업 개선방안을 수립(19.11월)하였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의 국내 반입 절차 마련을 위해 비상시 해외농업자원 반입 매뉴얼을 수립(19.12월)하였다.

▶ 보조사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보조)사업은 해외농업 진출유망국가를 대상으로 주요 곡물생산, 물류, 유통, 농지 확보 등 농업투자 여건을 조사하는 국가정책조사와 민간기업의 관심지역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민간농업환경조사 사업을 비롯하여 해외농업 개발 서비스 홈페이지(www.oads.or.kr) 운영을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 진출기업의 현장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지역별·분야별로 특화된 전문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해외농업개발 인력양성교육 및 해외인턴 지원 및 연해주 영농지원센터를 통한 기술·행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해외 진출 기업 확대와 투자 증가 등 해외농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2-8-2〉 2019년도 보조사업 실적 및 성과

| 구 분 | 추진 실적 | 성 과 |
|-----------------|--|---|
| ○ 인력양성교육 | - 지역분야별 해외진출 특화교육(2개과정, 22명) - 맞춤형 심화교육(1회, 11명) - 해외국제곡물교육과정(10명) - 영프론티어 공모전(1회, 6개팀) | - 해외농업개발 사업현장에 필요한 분야별 교육을 내실화하여 기업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실무역량 강화에 기여 - 해외농업개발분야 청년층 참여의지 고취로 해외진출 기회의 확대에 기여 |
| ○ 해외인턴 | - 2014~2019년 24명 | - 청년일자리 창출 및 해외농업 진출에 기여(기업채용) |
| ○ 조사·컨설팅 | - 국가정책조사: 1997~2016 24개 국가 조사 - 민간투자환경조사: 2009~2019 62개 기업 지원 - 컨설팅: '19년까지 17개 기업 23회 지원 | - 기업의 진출 및 투자 타당성 등 조사지원 및 정보제공으로 진출기업의 리스크 관리 지원 및 해외진출 정착에 기여 |
| ○ 정보제공 | - 정보지(저널, 연해주 진출역사) 제작 배포 - 해외농업개발 포털 개선 및 운영 - '해외농업포럼' 등 전문가 회의(6회) - 해외농업개발 워크숍 개최(1회) - 해외정보수집 및 협력 전문관 운영(캄보디아) - 농업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2회, 러시아, 우즈베크) | - 민·관·학계의 정보 교류, 최신 해외농업개발 동향에 대한 공유 및 민간 애로사항 청취로 진출기업의 해외정착 등에 기여 |
| ○ 연해주 영농지원센터 운영 | - 영농·농기계 점검(9회), 극동 해외농업진출 가이드 제작, 기업간담회(9회) - 곡물생산 및 국내반입 확대 TF회의(3회), 국내수요자단체 초청 현장설명회(3회) - 진출지원 데스크 운영(사무공간 지원, 상담 등) - 현지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 등 | - 러시아 연해주 진출기업에 체계적 기술·행정 지원 등 현장밀착형 맞춤 지원을 통해 진출기업의 현지 정착, 생산성 향상 및 국내 반입 확대에 기여 |

▶ 용자사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용자)사업은 민간기업의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부대시설 및 건조·저장·가공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용자금은 금리 연 2.0%, 5년 거치 10년 상환이 조건이다. 2019년에는 5개 기업에 90억원을 지원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해외농업개발 사업자의 개발면적 및 곡물 확보량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외농업개발의 특성상 해외 진출 기업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며, 곡물 확보량 및 국내 반입량을 대폭 확대하는데도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사업목표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해외농업자원 확보기반 마련으로 하고, 곡물 생산뿐만 아니라 농기자재, 농식품 가공·유통 등 연관 산업까지 투자환경 조사영역을 확대하여 전·후방 연관 산업의 동반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4. OECD 활동

▮ 농업통상과 사무관 이승욱

◆ OECD 농업 및 식품 분야 활동 개요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OECD 농업위원회(Committee for Agriculture),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회의(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농업무역공동작업반회의(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Trade), 농업환경공동작업반회의(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등 산하 작업반회의, 각종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에 참여하여 논의에 대응하여 왔다. 농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회의에서는 회원국 농업정책에 대한 점검·평가, 식품경제, 농업환경, 무역 쟁점에 대한 연구·분석, 농산물 시장 및 유통기능 향상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가별 농업정책 검토를 실시하여 정책 개선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OECD 세계 농업전망 모형인 Aglink-Cosimo를 활용한 중기 농업전망을 제공하여 농산물의 생산·소비·무역·가격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OECD와 FAO가 공동으로 향후 10년 농업전망(Agricultural Outlook)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최근 발간 주요 연례 보고서의 주요 내용

▶ 2019~28년 OECD-FAO 농업전망

OECD와 FAO는 2005년 공동 발간을 시작한 이래 매년 세계 농업전망을 발간해오고 있다. 2019년 7월에는 '2019~28년 OECD-FAO 농업전망(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9~2028)'을 내놓았다. 이는 매년 급격히 부상하는 시장과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를 증진하고자 세계 주요 농산물 품목과 시장에 대한 중기 평가를 담은 보고서로서, FAO의 품목 전문성과 광범위한 대상국, OECD의 정책 전문성이 조화되어 농정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식품 소비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인구 증가가 소비 증가의 주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품 수요는 인구 증가율이 높은 인도, 아프리카,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 증가에 따른 육류와 유제품 소비 증가로 축산분야가

확대되어 일부 곡물은 식품보다 사료로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가공식품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도 육류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측면에서 향후 10년 간 농작물 생산은 약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지면적의 변화는 거의 없고 종자개발, 효과적 비료 사용, 질병 대응력 제고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생산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류에서는 가금류 생산 증가가 두드러지고, 낙농품은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대에 힘입어 축산물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역의 경우 향후 1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수출 증가가 크고, 중국·과 아프리카는 지속적으로 농식품 순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품목별 소수 국가에 집중되고 수입은 보다 많은 국가에 분산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은 대부분 품목에서 실질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류, 육류, 낙농품, 유지 작물(콩 등)의 실질 가격이 현재 수준 이하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대부분 품목의 실질 가격이 연간 1~2%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쇠고기와 양고기의 하락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019년 OECD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2019년 7월, OECD는 '2019년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9)'를 발간하였다. OECD는 매년 체계적으로 회원국의 농업정책을 점검·평가하며, OECD 회원국들의 정책변화를 생산자지지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 등의 지표를 가지고 분석한다. 본 보고서는 회원국의 주요 농업정책, 특히 지지정책의 수준, 구성, 변화 등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2019년에는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53개국(OECD 회원국 36개, EU국가 중 비(非)OECD 회원국 5개, 신흥경제국 12개)이 분석대상이다.

국가마다 농업 규모, 특성, 전체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르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식량안보 및 영양 수준 제고, 투명하고 개방된 국제 무역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 삶의 질 개선, 기후변화 완화 및 대응, 위험에 대한 탄력성 확보 등과 같은 공통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OECD 회원국 및 주요 신흥 경제국 등 53개국의 농업 부문에 대한 총 지지(Total Support Estimate, TSE)는 2016~18년 연평균 6,220억 달러였으며 이 중 생산자에 대한 지원(Producer Support Estimate, PSE)이 72%인 4,450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생산자에 대한 지지가 농가 수취액에서 차지한 비율은 18% 수준이며, PSE의 약 70%가 시장가격지지(국내외 가격차이) 등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형태로 지원되었다고 OECD는 지적하고 있다.

그간 보다 효과적이고 덜 왜곡적인 방향으로 상당한 정책 전환이 있었지만 최근 진전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OECD 국가의 농가수취액 중 생산자지원추정치의 비율(%PSE)이 2000-02년 30%에서 2010년대 20% 이하로 감소하였으나, 2016-18년 OECD 국가의 %PSE는 18% 수준인 가운데 일부 국가는 50%에 이르며, 일부 신흥경제국은 지원을 늘렸다.

OECD는 농식품 분야의 기회를 활용하고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일관성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고품질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는 농식품 분야에 기회를 제공하지만, 제한된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하며, 농식품 부분의 생산성 향상, 환경성과 제고, 복원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상충되는 정책 목표를 가진 정책을 줄이는 한편, 식품사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조합을 고려하면서 종합 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왜곡적 지원은 점진적 철폐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시장 가격지지(MPS, 국내외 가격차를 의미)는 시장 신호를 왜곡하여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저해하고, 관세 등으로 국내가격을 국제가격보다 높게 유지하는 조치 뿐만 아니라 수출세 등으로 국내가격을 낮게 하는 조치도 시장을 왜곡한다는 입장이다.

생산성 높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향상의 관건인 농업 혁신시스템(R&D 등)에 안정적인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고, 물류시스템·정보통신기술 등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및 병충해·가축질병에 대한 검사 대응 시스템 강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산자에 대한 지원은 목표와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하고(targeting), 환경·동물복지 등 공공재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효과적인 농가소득 지원을 위해서는 저소득을 야기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정밀한 목표 설정(targeting)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농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농업정책을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총 농업지원 수준(TSE)은 8.6%(1986~88년)에서 1.8%(2016~18년)로 상당히 줄어들었고, 생산자지원 수준(PSE)도 70%(1986~88년)에서 52%(2016~18년)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PSE는 OECD 평균보다 3배 높은 수준이며, PSE 대부분(90%)이 국경조치(관세 등)에 기인한 시장가격지지인바, OECD는 국경보호 및 품목특정 지원을 점진적으로 제거해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가 개편중인 직불제와 관련하여 직불금이 특정 품목의 생산·가격과 연계되지 않고 환경보호나 공공재 공급 등 명확한 사회적 가치를 목표로 해야한다고 권고한다. 농업재해 보험 관련 민간부문의 역할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보험료 보조 수준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정부는 작물·시장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농업 프로젝트 등 농업분야 연구개발(R&D) 관련 공공투자가 늘고 있으나,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민간의 투자와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 OECD 농업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 활동

OECD 농업위원회는 2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회원국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이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의 활동은 3개 작업 분야(농업정책 및 시장, 농업환경, 농업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2차 농업위원회 회의('19.5.15.)에서 사무국은 G7 및 G20 논의동향, 농업분야 혁신·생산성·지속가능성 연구 진행상황, 2016년 OECD 농업장관회의 후속조치 등을 논의의제로 제시하였다. 2019년 G20 회의는 5.11-12일 일본 니가타에서 '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와 모범사례'를 주제로 G20 농업장관회의가 개최되어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다고 의장국인 일본이 설명하였다. 혁신보고서의 경우 회원국들은 국별 보고서 및 종합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권고자 실제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며, 무역, 교육, 재정 등 이번 작업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주제를 향후 추가로 연구할 것을 사무국에 제안하였다.

제173차 농업위원회 회의('19.11.20~21.)에서는 정부 지원 측정을 위한 증거기반 접근, 가격 관련 정책, 2021~22년 사업예산계획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OECD 글로벌 무역포럼에서 발표된 농업 등의 정부지원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가 공유되었고 향후 사무국은 농업지원 분석 지표(시장가격지지 등)를 정교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2021~22년 사업예산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회원국들의 관심주제를 공유하였고, 사무국은 이를 바탕으로 초안을 만들어서 '20년 4월 농업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76차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 회의('19.3.25~26.)에서 사무국은 농업 분야의 혁신·생산·지속가능성(일본 및 종합보고서), 건강한 식품선택 장려, 국제식품시스템의 과제 등을 논의 의제로 제시하였다. 혁신보고서의 경우 대부분의 회원국이 공개를 지지하였으나, 일부 회원국들은 종합보고서에서 공급사슬에서의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논의 등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혁신보고서는 5월 회의를 통해 공개여부가 결정하기로 하였다.

제77차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 회의('19.5.27~28.)에서는 농업위원회의 핵심보고서인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농업전망」 최종본을 각각 6월과 7월에 출간하기로 결정하였고, 「글로벌 식품시스템, 농식품 분야 혁신·생산성·지속가능성, 농업 디지털화」 관련 연구 방법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업정책 점검·평가 보고서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정부의 농업 지원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농업전망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의 쌀 곡종(자포니카, 인디카) 분리 등 분석모형(Aglink-Cosimo)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78차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 회의('19.12.3~4.)에서는 '농업정책 점검·평가, 농업전망, 글로벌 식품시스템'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81차 농업무역공동작업반 회의('19.5.29.)에서는 '비관세 조치의 무역촉진 효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SPS 절차개선 연구'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사무국은 OECD 연구모형(METRO, Aglink-Cosimo)을 활용한 중국 곡물가격지지 철폐정책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영향 분석 연구계획을 발표하였다.

제82차 농업무역공동작업반 회의('19.12.2.)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비관세장벽 관련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2020년 의장단을 구성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 농식품 시스템의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논의되었고, 향후 식품시스템, 다자주의 등과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비관세장벽 관련, 일부 국가는 비관세조치의 무역촉진효과에 대한 내용에 반대하고 무역제한 및 왜곡 효과에 집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47차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19.4.1.~2.)에서는 농식품 부문 바이오경제와 지속가능성, 농업 부문 디지털 기술 활용, 농업정책과 환경 지속가능성의 연계성 검토, 농업부문 기후변화 완화 정책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농업환경지표를 활용한 대쉬보드 수정안이 제시되었다.

제48차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19.10.22.~23.)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환경정책 설계 개선 및 성과 모니터링, 농업환경지표, 농업용수 정책, 농림업 및 기타 토지 사용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조사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정책전략과 과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회원국 정책 공유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에서 뉴질랜드, 한국, 네덜란드 및 아일랜드가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농업부문 정책사례를 소개하였다. 차기 의장단 선출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영아 부연구위원이 부의장으로 재선임되었다.

5.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활동

■ 국제협력총괄과 서기관 김경은

◆ FAO 개요

FAO는 세계 인류를 위한 식량안보(food security) 달성, 즉 인류가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안전하고 영양 균형적인 식량에 언제라도 접근 가능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인류의 영양상태 개선, 농업생산성 제고, 농촌인구의 삶의 질 개선 및 세계경제 발전에의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업개발 지원, 영양·식량·농림축수산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회원국의 농업정책 기획·개발에 필요한 자문 제공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FAO는 1945년 10월 26일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된 설립 총회에서 「FAO 헌장」을 채택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46년 12월 14일 FAO 제2차 총회에서 유엔과의 제휴협정이 채택되고 유엔총회가 이를 인준함으로써 유엔 최초의 상설전문기구가 되었다. FAO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으며, 2019년 현재 194개 회원국, 1개 회원기구(EU), 2개 준회원국(페로 제도, 토켈라우 제도)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FAO 의사결정기구(governing bodies)는 총회, 이사회, 세계식량안보위원회, 7개의 상임위원회(프로그램, 재정, 헌장 및 법률, 상품문제, 수산, 산림, 농업, 식량안보위원회) 및 5개의 지역총회(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중앙아시아, 중남미·카리브, 근동·북아프리카)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49개 이사국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계속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그림 2-8-1〉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의사결정기구(Governing Bodies) 개요



총회(매 홀수연도)와 지역총회(매 짝수연도)는 2년마다 번갈아 개최되며,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한다. 총회는 정책 결정, 예산 승인, 정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가입 승인, 사무총장 및 이사회 독립의장 선출, FAO 헌장 개정, 식량 및 농업에 관한 각 회원국 정부에 대한 권고, 산하 위원회 또는 이사회 의결 사항의 검토 등의 중요 사항을 최종 의결한다.

FAO에는 총 11,561명의 인력이 근무('19년 기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정규 직원은 총 16명('19년 기준)이다.

FAO의 재정은 회원국 정규분담금(정규예산, Net Appropriation)과 자발적기금(Extra-budgetary)으로 구분된다. 정규분담금은 회원국별 인구, 소득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유엔의 국가별 분담금 산정기준을 토대로 FAO 총회에서 결정한 회원국별 정규분담금 비율에 따라 회원국이 납부한다. 우리나라의 2018~2019년 정규분담금 비율은 2.039%로, 194개 회원국 중 13번째에 해당된다. 자발적기금은 정규예산과 연계되는 사업예산 지원, 현지프로그램, 기술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FAO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운영 절차의 효율성 제고, 직원 역량 제고, 본부 조직의 간소화 및 지역사무소 기능 강화, 대내외적 협력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2008년부터 본격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11월 개최된 제34차 총회에서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즉각 행동계획(Immediate Plan of Action)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고, 2008년 제35차 특별총회에서 세부적인 개혁조치사항을 담은 즉각행동계획(IPA) 5개년 계획(2009~2013)을 승인하였다. 2013년 제38차 총회에서 즉각행동계획(IPA) 이행 및 FAO 개혁에 관한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9년에는 FAO 총회(제41차: 6.22~29), 2차례의 이사회(제161차: 4.8~12, 제163차: 12.2~6)가 개최되었다. 이 밖에도 세계식량안보위원회(제46차: 10.14~18) 등 다양한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농업현황 및 국제사회 기여활동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6여년간 FAO와 논의해 온 한국협력연락사무소(PLO)설립이 결실을 맺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FAO와 한국협력연락사무소 설립 협정을 체결하였다. 5월에는 호세 그라치아노 다 실바 사무총장이 방한하여 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하였다.

▶ FAO 총회

제40차 FAO 총회는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FAO 회원국 및 비정부기구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기아종식(Zero hunger)과 가장 취약한 인구에 초점을 둔 빈곤퇴치에 주력, 열대농업에 중점, 건조지농업 및 디지털농업 촉진, 농업 생산 및 가치체인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중국 Qu Dongyu 후보가 사무총장(임기: 2019.8.1.~2023.7.31.)으로 선출되었다. 2020-21년 사업예산안과 국가별 분담금 비율이 승인되었고 2020-21년 우리나라 분담율은 2.267%로 전체 회원국 중 11번째가 되었다. 또한, 차기 이사국으로 미국, 독일, 영국 등 35개국이 선출되었으며, 2018-19년도 기술위원회(수산, 산림, 농업, 상품문제), 식량안보위원회의 결과보고서와 지역총회 결과보고서 등이 승인되었다.

수석대표(권희석 주이탈리아대사)는 이주, 농업 및 농촌개발을 주제로 한 수석대표의 기초연설시 우리나라의 농촌 생활환경 개선 정책을 소개하고, 회원국에 대한 기술 및 인프라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 FAO 이사회

2019년에는 총 2차례의 이사회가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에서 개최(제161차 : 4.8~12, 제163차 : 12.2~6) 되었다.

제161차 이사회에서 이사국들은 총회에 앞서 2020-21년 사업예산안에 합의했으며, 2018년 중기계획 검토 보고서를 비롯하여, 제126차 프로그램위원회, 제174·175차 재정위원회, 제108차 현장 및 법률문제위원회 결과보고서 등을 승인하였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41차 총회에서 실시 될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앞서, Qu Dongyu(중국), Catherine Geslain-Lanéelle(프랑스), Davit Kirvalidze(조지아), Ramesh Chand(인도) 후보자의 연설과 지역별 질의세션이 진행되었으며, 41차 총회에 대한 준비가 논의되었다.

제163차 이사회에서는 41차 총회의 결정사항과 지침을 반영한 2020-21 사업예산 조정안이 승인되었으며, 제127차 프로그램위원회, 제176~178차 재정위원회, 제109차 현장 및 법률문제위원회, 제46차 세계식량안보위원회 결과보고서 등이 채택되었다. 또한, 이사회는 신임 사무차장(DDG)으로 Ms. Elizabeth A. Bechdol(미국)을 선임하였으며, WFP 집행이사국(6개국)을 선출하고 2018년도 WFP 집행이사회 연례보고서를 승인하였다.

▶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제46차 세계식량안보위원회는 10월 14일에서 18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114개 회원국을 비롯하여 비정부기구, 국제농업연구기구, 국제 및 지역 금융기구, 자선재단 등 식량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였다.

위원회는 2019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현황, 식품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개발 경과, 식량안보와 영양을 증진시키는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을 위한 농업생태학적 접근법과 기타 혁신에 관한 보고서 등을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2020-23 CFS 다개년사업계획을 승인하고, CFS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Thanawat Tiensin(태국)을 CFS 신임 의장으로 선임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FAO는 19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국제사회에서 세계 식량 및 농업 관련 가장 영향력이 큰 국제기구 중 하나이다. 2019년 말 현재 미래 세대 스마트팜 지원 사업(19~22년) 등 3개 사업을 공동 협력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식량 및 농업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FAO 내 한국인 진출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분담금 등을 고려한 적정 진출 규모보다 적은 저채용국(19.2.24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어 인력 진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국제사회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위직 등 다양한 직급으로의 지속적인 인력 진출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FAO 공동협력사업 등의 확대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0년 12월 일 인쇄

2020년 12월 일 발행

발행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전화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23

디자인 및 인쇄 :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세종인쇄정보
